

연구보고서 2017-40

근로빈곤층의 부채에 대한 질적 연구

- 부채 발생과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노대명 · 박창균 · 박상금 · 한솔희 · 김솔휘

【책임연구자】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 저서】

아시아 사회보장정책 비교연구-아시아 주요국 사회보장체계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공저)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에 따른 빈곤층 기초생활보장 평가모형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공저)

【공동연구진】

박창균 중앙대학교 교수

박상금 사회연대은행 상임이사

한솔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김솔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연구보고서 2017-40

근로빈곤층의 부채에 대한 질적 연구

- 부채발생과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발행일 2017년 12월

저자 노대명

발행인 김상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제8-142호)

인쇄처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가격 10,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ISBN 978-89-6827-454-1 93330

발간사 <<

우리 사회는 수년 전부터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가계부채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여, 경제와 사회 전체에 매우 큰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은 정부 차원에서 서둘러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임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2017년 10월경부터 가계부채 탕감 및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저소득층, 특히 근로빈곤층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 바람직한 변화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빈곤층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많은 해결과제가 남아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먼저 근로빈곤층의 특성을 감안하여 가계부채 대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차원에서 벗어나 이들의 경제사회적 자립을 촉진하는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고용정책 및 복지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문제이다. 이어 근로빈곤층 과중채무자가 직면하고 있는 생활상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주거와 교육 그리고 생계를 위한 부채를 안고 있는 근로빈곤층이 더 이상의 채무를 지지 않게 하는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당국 외에도 고용노동부나 보건복지부와의 정책적 연계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근로빈곤층이 과중채무로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연구를 기획하였다. 그것은 이 연구가

근로빈곤층 가계부채 문제를 금융 측면 외에도 노동과 복지, 개인과 가구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이 연구는 근로빈곤층 과중 채무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들이 처한 문제를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정량적 분석에 질적 분석을 결합시키는 형태로 연구가 진행되었던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대명 선임연구위원의 연구책임으로 이루어졌으며, 같은 연구원의 한솔희 연구원, 김솔휘 연구원이 참여하였고, 외부에서는 중앙대학교 박창균 교수와 사회연대은행의 박상금 상임이사가 참여하였다. 이 연구에는 주변의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다. 먼저 바쁜 생업에 종사하는 와중에도 인터뷰에 응해 주신 열 분에게 감사드린다. 이어 인터뷰를 수행하기에 앞서 인터뷰 대상을 선정하고 섭외하는 힘든 일에 많은 도움을 주셨던 사회연대은행의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린다. 끝으로 이 연구보고서를 검토하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원내 및 원외의 검토자분들께도 감사드린다.

이 연구 결과가 향후 근로빈곤층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좋은 정책이 생겨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2017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상 호

목 차

Abstract	1
요약	7
제1장 서론	11
제1절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13
제2절 연구 방법	18
제3절 연구 내용과 그 한계	20
제2장 이론적 검토	23
제1절 부채 문제의 역사적 진화	25
제2절 가계부채의 이론과 조작적 정의	36
제3절 가계부채와 근로빈곤의 문제	49
제4절 가계부채의 발생과 파급효과	61
제3장 주요국 가계부채 문제와 빈곤층 지원정책	73
제1절 각국 가계부채 문제의 추이와 최근 동향	75
제2절 영국의 가계부채 실태 및 지원정책	92
제3절 프랑스의 가계부채 실태 및 지원정책	114
제4절 일본의 가계부채 실태 및 지원정책	136

제4장 저소득층 가계부채 실태 진단 153

제1절 들어가며 155

제2절 소득계층별 가계부채의 규모와 추이 156

제3절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보유 형태 164

제4절 저소득층 가계부채의 부담 실태 175

제5절 소득분위별 가계부채 결정 요인 184

제6절 소결 189

제5장 근로빈곤층 가계부채의 특성과 결정 요인 191

제1절 들어가며 193

제2절 근로빈곤층의 규모와 특징 194

제3절 근로빈곤층의 가구 특성과 취업 특성 200

제4절 근로빈곤층의 소득과 소비 그리고 부채 206

제5절 가계부채에 대한 소득계층별 태도 219

제6절 가계부채가 근로빈곤에 미치는 영향 229

제7절 근로빈곤층 가계부채 결정 요인 237

제8절 소결 245

제6장 근로빈곤층 가계부채의 발생 원인과 파급효과 251

제1절 들어가며 253

제2절 연구방법과 조사의 개요 254

제3절 가계부채 발생 원인과 그에 대한 인식 266

제4절 가계부채 및 과중채무의 파급효과 275

제5절 과중채무와 채무불이행으로의 진입과 탈출	285
제6절 복지정책과 비영리지원기관의 역할	300
제7절 소결	308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311
제1절 연구 결과의 학술적 시사점	313
제2절 금융정책과 관련된 정책 제언	317
제3절 사회정책과 관련된 정책 제언	337
참고문헌	355

표 목차

〈표 2-1〉 유럽 주요국의 과중채무 기준의 범주와 세부 지표	45
〈표 2-2〉 대출 용도의 구분	47
〈표 2-3〉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기관의 유형	49
〈표 2-4〉 근로빈곤층 개념에 대한 정의	51
〈표 3-1〉 OECD 주요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 추이	78
〈표 3-2〉 OECD 주요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 추이	79
〈표 3-3〉 소득계층별 미결제 부채 및 연체가구 비율(2008년 기준)	88
〈표 3-4〉 아동 유무에 따른 과중채무가구 비율(2008년 기준)	89
〈표 3-5〉 소득 감소 원인별 과중채무가구 비율(2008년 기준)	90
〈표 3-6〉 영국의 소득5분위별 부채 보유 가구/개인의 비율 및 부채	95
〈표 3-7〉 영국의 가구유형별 부채 보유 가구 비율 및 부채금액	96
〈표 3-8〉 영국의 혼인상태에 따른 부채 보유 개인 비율 및 부채금액	97
〈표 3-9〉 영국의 주요 가계부채 구조조정 프로그램	105
〈표 3-10〉 부채 보유자의 연령대별 부채 사유(2015년 초 기준)	120
〈표 3-11〉 직업 범주 및 부채 사유에 따른 부채가구 비율(2015년)	121
〈표 3-12〉 총재산 100분위 및 부채 사유에 따른 부채가구 비율	122
〈표 3-13〉 가처분소득 100분위와 부채 사유에 따른 부채가구 비율	123
〈표 3-14〉 가구 유형 및 부채 사유에 따른 부채가구 비율(2015년)	124
〈표 3-15〉 일본 가계의 부채와 소득 추이	139
〈표 3-16〉 일본에서 다중채무가 원인이 되어 자살한 사람의 수 추이	143
〈표 3-17〉 개인파산 사유(다중채무에 빠진 원인)	147
〈표 3-18〉 일본 연금담보대부제도와 생활복지자금대부제도의 비교	150
〈표 4-1〉 소득분위별 총자산 보유액 추이: 2012~2016년	158
〈표 4-2〉 소득분위별 평균 부채 보유액 추이: 2012~2016년	158
〈표 4-3〉 소득분위별 부채 보유 가구 부채 보유액 추이: 2012~2016년	162
〈표 4-4〉 소득분위별 순자산 보유액 추이: 2012~2016년	163

〈표 4-5〉 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 추이: 2012~2016년	164
〈표 4-6〉 소득분위별 부채 구성	166
〈표 4-7〉 소득분위별·부채유형별 금융부채 보유 가구 비율	168
〈표 4-8〉 담보대출 보유 가구의 소득분위별 부채 조달원별 비중	169
〈표 4-9〉 신용대출 가구의 소득분위별 부채 조달원별 비중	171
〈표 4-10〉 소득분위별 담보대출 상환 방법 비중	173
〈표 4-11〉 소득분위별 신용대출 상환 방법 비중	173
〈표 4-12〉 소득분위별 담보대출의 용도 비중	174
〈표 4-13〉 소득분위별 신용대출의 용도 비중	174
〈표 4-14〉 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 추이	177
〈표 4-15〉 소득분위별 자산 대비 부채 비율 추이	177
〈표 4-16〉 소득분위별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 추이	179
〈표 4-17〉 소득분위별 부채상환비율 추이	180
〈표 4-18〉 소득분위별 주관적 부채 부담 지표 추이	183
〈표 4-19〉 가계의 부채 보유 결정 요인: 소득분위별 분석	186
〈표 4-20〉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결정 요인: 소득분위별 분석	188
〈표 5-1〉 소득계층별/가구유형별 가구 비율 및 가구원 비율(2015년 기준)	200
〈표 5-2〉 근로빈곤가구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가처분소득 기준)	202
〈표 5-3〉 근로빈곤가구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가처분소득 기준)	203
〈표 5-4〉 근로빈곤가구의 가구원 및 취업자 특성(2015년 기준)	204
〈표 5-5〉 근로빈곤가구의 취업자 구성(2015년 기준)	205
〈표 5-6〉 근로빈곤가구의 기본적 특성(가처분소득 기준)	208
〈표 5-7〉 근로빈곤가구의 학생 분포(가처분소득 기준)	209
〈표 5-8〉 근로빈곤가구의 소득계층별 소득, 재산 및 부채	211
〈표 5-9〉 근로빈곤가구의 소득과 소비	213
〈표 5-10〉 근로빈곤가구의 부채와 상환 부담(가처분소득 기준)	214
〈표 5-11〉 근로빈곤가구의 부채와 추정된 부채상환 부담의 비교	217
〈표 5-12〉 소득계층별 부채 보유 여부	220

〈표 5-13〉 소득계층별 부채 규모 변화(1년 전 대비)	221
〈표 5-14〉 소득계층별 부채 규모 변화 예상(1년 후)	221
〈표 5-15〉 소득계층별 부채 증가 원인	223
〈표 5-16〉 소득계층별 원리금 연체 여부	224
〈표 5-17〉 소득계층별 원리금 연체 이유	225
〈표 5-18〉 소득계층별 원리금 상환에 따른 가계 부담 여부	225
〈표 5-19〉 소득계층별 부채 상환에 따른 가계 지출 감소 여부	226
〈표 5-20〉 소득계층별 부채 상환 부담으로 지출을 줄인 항목	227
〈표 5-21〉 소득계층별 부채 상환 가능성에 대한 전망	228
〈표 5-22〉 가처분소득/조정된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계층 분포	232
〈표 5-23〉 추정모델별 가계부채 상환에 따른 소득 지위의 변동	233
〈표 5-24〉 가계부채 관련 지출을 고려한 근로빈곤층 규모	235
〈표 5-25〉 가계부채 관련 지출을 고려한 근로빈곤층 규모	236
〈표 5-26〉 근로연령가구의 소득계층별 가계부채 결정 요인 분석 결과	240
〈표 5-27〉 신용카드 대출 결정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244
〈표 6-1〉 인터뷰 응답자의 개인 및 가구 특성의 요약	262
〈표 7-1〉 신용등급별 신용대출 변화	319
〈표 7-2〉 신용대출 금리 비교	320
〈표 7-3〉 서민금융기관 구조조정 현황	323
〈표 7-4〉 정책 서민금융상품 현황	325
〈표 7-5〉 수급가구와 비수급가구의 비교	341
〈표 7-6〉 2018년 기준 주거급여 지급을 위한 기준임대료	346
〈표 7-7〉 2018년 교육급여의 지원 수준	347

그림 목차

[그림 2-1] 가계부채의 구성도	40
[그림 2-2] 가계부채의 생산과 확대 그리고 재생산 메커니즘	62
[그림 2-3] 가계부채가 사회에 미치는 충격	68
[그림 3-1] 각국 가계부채의 가처분소득 대비 비중 추이	77
[그림 3-2] OECD 주요국의 가계부채 추이와 그 유형별 특징	81
[그림 3-3] OECD 주요국의 가계부채 추이와 그 유형별 특징(계속)	82
[그림 3-4] OECD 주요국의 평균 가계부채 비중 및 증가율 추이	83
[그림 3-5] 영국의 가계부채의 부채유형별 분포(2014/2016)	98
[그림 3-6] 영국의 가계부채에서 다중채무의 구성(2014/2016)	99
[그림 3-7] 프랑스의 부채가구 비율 추이(1989~2016)	116
[그림 3-8] 프랑스의 사유별 부채가구 비율 추이(1989~2016)	117
[그림 3-9] 프랑스 가구의 대출용도별 대출 의향의 추이	118
[그림 3-10] 가구재정상황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인식 변화	119
[그림 3-11] 과중채무위원회에 제출된 지원신청서와 접수된 신청서 추이	125
[그림 3-12] 프랑스 과중채무자의 연령 분포(2016년 기준)	126
[그림 3-13] 프랑스의 과중채무 지원 절차	130
[그림 3-14] 2016년 과중채무위원회의 신청서 접수 및 적용상황별 구성 분포	134
[그림 3-15] 일본 가계의 부채 규모 및 연소득 대비 부채 비율 추이	138
[그림 3-16] 일본의 소득5분위별 가계저축과 부채 비교(2016년 기준)	140
[그림 3-17] 일본 가계저축과 부채의 세대주 연령대별 구성(2016년 기준)	141
[그림 3-18] 일본의 대부업법 개정 이후 다중채무 실태 변화	142
[그림 3-19] 일본의 자살률 변화와 자살의 원인·동기별 기여도 추이	144
[그림 4-1] 소득분위별 평균 부채 보유액 증가율 추이	160
[그림 4-2] 소득분위별 부채 보유 확률 추이: 2012~2016년	161
[그림 4-3] 소득분위별 금융부채 중 담보대출 비중	167
[그림 4-4] 소득분위별 한계가구 비율 추이	182

[그림 4-5] 부채 보유 가구 중 소득분위별 한계가구 비율 추이	182
[그림 5-1] 1990년 이후 소득유형별 빈곤율 추이(2인 가구 이상)	195
[그림 5-2] 1990년 이후 소득유형별 빈곤율 추이(전체 가구)	197
[그림 5-3] 1990년 이후 소득유형별 취업빈곤율 추이	198
[그림 5-4] 2006년 이후 소득별 취업빈곤율 추이	199
[그림 5-5] 소득계층별 가구유형별 부채 상환 부담	219
[그림 7-1] 금리구간별 가계신용대출 비중	321
[그림 7-2]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및 예산 추이	339

Abstract <<

Household Debt of the Working Poor in Korea: Qualitative Analysis of the Causes and Ripple Effects

Project Head · No, Daemyung

Household debt in Korea has been rapidly increased and its impacts on economy and society are also getting bigger. The government devises various household debt restructuring measures in order to cope with its potential risks. First of all, we should acknowledge that increase in household debt may influence the reduction of savings and eventually negatively affect economic growth. However, household debt not only influences lives of individuals and families but also the society as a whole. Especially, household debt of the working poor, whose income is relatively low and budget for spendings is tight, should be dealt with more discrete policy measures. The working poor are engaged in economic activities and support family, but hold bigger potential risks of having household debt due to their low income and instability in employment, or losing a job. Also, it should be noted that once a household has debt, it is likely to lead to default.

This study looks into other countries' experiences focusing on cases of England, France, and Japan. The reason why the

countries are chosen is to investigate how household debt issues emerged in different economic and social systems, how finance authorities in each country coped with the problems, and how differently their impacts appeared. The analysis showed that England left the problems until worsened and later enforced stricter regulations on credit suppliers. This is an example that household debt issues, especially the household debt of the low-income group, may be resolved in large part by the financial authorities' willingness. France, on the other hand, adopts strict regulations on financial market and credit supply to the low-income households. Also, France takes systematic approaches to mend the household debt problems in connection with welfare policy. Japan experienced household debt problems earlier than other countries and has taken measures after having gone through social problems such as suicides as a result of multiple debts. The particular point of Japanese household debt restructuring is that it focused on controlling ripple effects from multiple debts and suicides. It is worth noting that Korea's household debt has largely followed the experience of Japan. Although Japan implemented stricter regulations on financial market after amendment of the Money Lending Business Act, Korea still neglects problems from proliferation of lenders.

Chapter 4 focused on the household debt by income groups and of the working poor. It analyzed differences between the

low income group and other income groups in respect to size and burdens of household debt and possibility of repayment. Recently, strict regulations are implemented and the increasing trends of household debt have slowed down, however, the low-incomers' burdens already reached to a serious level. Examining indicators of debt burdens such as debt to income ratio, debt to asset ratio, and repayment rate of principal to income, low incomers' debt burdens are revealed far greater than the high income group's, and the low income group is exposed to structural vulnerability as having more credit loans with adjustable rate. It is unlikely that deteriorating quality of low income group debt harms stability of financial system. However, considering their vulnerable socioeconomic status, it is very likely that their household debt may lead to social problems.

Chapter 5 examines household debt of the working poor in respec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arning ability and needs for spendings. The working poor, among the poor, presuppose a certain level of earning ability as being able to work or in the range of working age. However, they are relatively vulnerable in labor market. The proportion of temporary workers, daily workers, self-employed small business owners, and the unemployed are very high compared to the total average. Consequently, they are the group whose earning ability is weak. The problem is that households with children or children in school are more often found in the group, which shows

4 근로빈곤층의 부채에 대한 질적연구 - 부채발생과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higher pressures on household spendings. This implies the higher possibility that the working poor in Korea may put up with having household debt due to the low income level and bigger needs for spendings. Also, cost of living and debt caused by consumption account for a large portion of the working poor's household debt. Looking into the use of household debt, living expenses as its biggest share and education costs take up 38.2% and 15.2%, respectively. However, combining all factors related to housing, it becomes a bigger share than the education costs. This suggests that preventing debt caused by living expenses makes a crucial policy objective.

In Chapter 6, we tried to answer questions that are difficult to examine through empirical analysis. It aims at identifying the causes and courses of household debt, its impacts on family, debtors' difficulties, and efforts to escape from household debt by interviews with the over-indebted. The result showed that actual female household heads, who compose the biggest portion of the over-indebted among the working poor, fell into divorce and over-indebtedness due to their spouse's debt. They have been putting efforts sacrificing their health, but still have difficulties to take care of children. Also, the reason why they struggle to repay debt is found in the process of using credit cards in order to maintain necessary expenses, mainly to pay rent. Moreover, many of the female household heads who are in the regenerative or credit recovery process were aware of

these risks. Many over-debtors were attempting to start a business, left being unable to get a job due to their default status, which causes a vicious cycle of debt.

In conclusion, we made policy proposals on household debt of the working poor, largely dividing them into financial policy and social policy. Regarding financial policies, it takes the perspective of normalizing the small loan financial market. The policy option suggests redesigning the MISO financing program, which has been promoted by the government, fostering the cooperative financial institutions, and promoting the borrower-friendly credit counseling system. In the case of social policies, the policy option suggests strengthening the role of social security system. Given the low income of the working poor, it means that household debt should be curtailed as expanding income by public transfers that supplement earned-income. To this end, it is suggested that strengthening income security for the over-debtors among the working poor through rearranging basic livelihood system, establishing employment support programs considering their employment capabilities, and establishing statistical infrastructures for the over-debtors in the working poor in order to clearly grasp the size and reality of the targeted group. In particular, reflecting the Japanese experiences, the measures for the shocks from the household debt should be coordinated with the multiple indebtedness and suicides.

요약 <<

최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으며, 그것이 경제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점점 커지고 있다. 그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가계부채 대책을 통해 그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 물론 가계부채 증가가 저축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성장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개인과 가족의 삶, 더 나아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지출 부담이 큰 근로빈곤층 가계부채 문제가 이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각별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근로빈곤층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실직과 고용불안 등의 이유로 소득이 낮고 불안정하여 다른 집단에 비해 부채를 지게 될 잠재적 위험이 큰 집단이다. 따라서 일단 가계부채가 발생하면 그것이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질 위험성 또한 크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한 외국의 경험을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일본 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 있다. 이 세 국가를 선택한 이유는 서로 다른 경제사회시스템 하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어떻게 나타나고, 각국의 금융당국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 왔으며, 그 성과는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영국은 가계부채 문제를 소홀하게 다루어 문제의 심각성을 키우고, 뒤늦게 신용 공급자들에게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경우이다. 그것은 금융당국의 정책 의지에 따라 가계부채 문제, 특히 저소득층 가계부채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

음을 보여 주고 있다. 반면에 프랑스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 공급이 통제되어 있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저소득층 가계부채 문제를 복지정책과의 연계 하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체계화되어 있는 경우이다. 일본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일찍이 가계부채 문제를 경험하였고, 다중채무로 인한 자살 등의 사회문제를 겪은 이후 뒤늦게 대책을 강구한 경우이다. 그리고 일본 가계부채 대책의 특이점은 다중채무와 자살 문제 등 그 파급효과를 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는 상당 부분 일본의 전철을 밟아 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 대부업법이 개정되어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이후에도, 한국에서는 여전히 대부업체가 확산되어 왔다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를 소득계층별로 그리고 근로빈곤층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그것은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문제가 그 규모와 부담 정도 그리고 상환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다른 소득계층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최근 들어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강력한 규제조치가 취해지면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부담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소득 또는 자산 대비 부채 규모,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 등 부채 부담을 측정하는 각종 지표를 점검한 결과 저소득층의 부채 부담은 고소득층에 비하여 월등히 높을 뿐 아니라 변동금리 신용대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구조 측면에서도 취약성을 노출하고 있다. 저소득층 부채의 부실화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상태로 전이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으나 이들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감안할 때 사회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제5장에서는 근로빈곤층 가계부채 문제를 이들의 소득능력과 지출 욕구 사이의 관계라는 관점에 따라 살펴보았다. 근로빈곤층은 빈곤층 중에서도 근로능력이 있거나 근로연령대에 속한 집단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소득능력을 전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집단이다. 임시직이나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그리고 실업자의 비중이 전체 평균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가구의 소득능력이 취약한 집단인 셈이다. 문제는 이들의 경우, 아동이나 학생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그만큼 지출 부담이 큰 집단인 셈이다. 이는 한국의 근로빈곤층이 낮은 소득과 큰 지출 욕구로 인해 상시적으로 가계부채를 감수할 개연성이 크다는 점을 말해 준다. 그리고 이들의 가계부채는 다른 소득계층과 달리 생계형 또는 소비형 가계부채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가계부채의 용도를 보면, 생활비 마련이 38.2%로 가장 높고, 교육비 마련이 15.2%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주거와 관련된 항목을 모두 더하면, 그것이 교육비보다 큰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근로빈곤층 가계부채에서 생활비로 인한 부채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라는 점을 말해 준다.

제6장에서는 근로빈곤층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논증하기 힘든 질문에 대해 질적 접근방법을 통해 답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가계부채가 발생하는 원인과 경로, 그것이 가족의 삶에 미치는 파급효과, 그리고 이들이 가계부채에서 탈출하기 위한 노력과 어려움에 대해 근로빈곤층 과중채무자의 입을 통해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 결과, 근로빈곤층 과중채무자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실질적 여성가장들은 상당수가 남성 배우자의 부채로 인해 이혼과 과중채무자로 전락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혼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자녀 양육에 집중하

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이 과중채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가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지출, 주로 임대료를 지불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이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과정에 있는 여성 가장 중에서도 상당수가 이러한 위험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빈곤과 가계부채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들의 자립 노력이 쉽지 않다는 점에 있었다. 많은 과중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이력으로 취업하지 못하고 창업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것이 부채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결론에서는 금융정책과 사회정책으로 나누어 근로빈곤층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하고 있다. 먼저 금융정책과 관련해서는 서민금융 시장의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정책 제안으로는 현재 정부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미소금융대출 사업의 재설계, 협동조합형 서민금융기관의 육성, 채무자 친화적 신용상담제도의 활성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어 사회정책과 관련해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역할 강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것은 근로빈곤층의 낮은 소득능력을 감안하면, 근로소득을 보충하는 공적이전소득의 확대를 통해 가계부채 발생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하여 근로빈곤층 과중채무자에 대한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이들의 취업능력을 고려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근로빈곤층 과중채무자에 대한 통계 인프라 구축을 통해 표적집단의 규모와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가계부채 문제의 충격을 다중채무자 및 자살 문제와 연동시켜 대비할 것을 제안하였다.

*주요 용어: 근로빈곤층, 가계부채, 과중채무, 질적분석

제 1 장

서론

제1절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방법

제3절 연구 내용과 그 한계

제1절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최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으며, 그것이 경제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점점 커지고 있다. 그에 따라 정부는 가계부채 관련 대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 일차적으로 가계부채 증가가 저축 감소를 통해 경제성장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차단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가계부채 문제가 개인과 가족의 삶,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지출 부담이 큰 근로빈곤층 가계부채 문제가 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각별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근로빈곤층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실직과 고용불안 등의 이유로 소득이 낮고 불안정하며, 그로 인해 다른 집단에 비해 가계부채를 지게 될 잠재적 위험성이 큰 집단이다. 그리고 일단 가계부채가 발생하면 낮은 상환능력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질 위험성 또한 큰 집단이다.

그렇다고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 그것을 통제하고 억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현대사회에서 가계부채는 이미 일상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으며, 많은 사람에게 부채는 일시적인 소득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 또는 사업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보편적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행위는 신용과 책임(부채)을 전제로 하며,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사회시스템의 안정을 위

해 매우 중요하다. 설사 역사적으로 그리고 국가마다 가계부채 문제를 관리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정치, 경제, 사회시스템의 유지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는 점은 공통적인 현상이었다.

지난 20년간 서구 각국의 사례를 보면, 일부 국가는 가계부채 문제가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정치 현안으로 부각되기 전까지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처럼 보인다. 그 결과, 시민들이 가계부채 문제로 심각한 타격을 받은 이후에야 허둥지둥 대책을 강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그 심각성은 단순히 가계부채의 크기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부채가구가 적절한 상환능력만 있다면 또는 신용 공급자들이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였다면, 또는 정부가 금융시장의 이상 움직임을 감지하고 효과적으로 통제하였다면, 심각한 상황에 처하지 않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한 위기에 직면하지 않았던 국가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다.

물론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기는 매우 힘들며, 이는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불확실성과 관련이 있다. 첫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채무자 부채상환능력의 불안정성이다. 산업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노동시장에서 실업과 고용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많은 채무가구의 상환능력이 단기간에 취약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빈곤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중산층 또한 실직이나 사업 실패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금리와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성에서 비롯되는 위험이다. 2000년대 중반 서구의 많은 국가에서 부동산가격 상승과 함께 가계부채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며, 리먼 쇼크로 금리가 인상되고 실업률이 증가하자 채무불이행과 개인파산이 가파르게 증가하였다는 점이 이를 말해 준다. 셋째, 신용 공급자들이 차주

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대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리먼 쇼크 직전까지 많은 국가에서 신용 공급자들이 경쟁적으로 대출을 확대하였고, 그 과정에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초과한 대출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2003년 신용대란 또한 신용 공급자들의 경쟁적 카드 발급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별반 다르지 않다. 가계부채 문제는 그것을 둘러싼 환경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금융당국의 섬세한 개입, 특히 적기의 효과적인 개입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는 어떠한가. 신용대란 이후 정부는 신용 공급과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하였고,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 상환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정부는 내수 촉진이나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지난 수년간 가계부채 규모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2016년 말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총액은 1344조 원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는 2000년대 후반 각국의 금융당국이 취했던 조치와는 상반된 것이었다.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deleveraging) 문제가 거론되는 이유이다. 물론 이는 부동산가격 하락과 시장금리 상승 등의 문제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가계부채 문제는 중산층을 비롯한 전체 소득계층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근로빈곤층에게는 더 크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체 가계부채에서 근로빈곤층 가계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의 확산은 중산층의 빈곤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회시스템의 안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근로빈곤층 가계부채 문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들은 가처분소득에서 가계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만큼 상

환능력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 대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과거 많은 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신용회복위원회나 미소재단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했던 사례를 들 수 있다. 이 정책들의 골자는 새로운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이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거나,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제도 등으로 원리금과 이자 등의 채무를 조정해 주고,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자립을 촉진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책으로 근로빈곤층 가계부채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가계부채 상환 부담은 일부 줄어들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근로빈곤층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문제 제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문제 제기가 필요한가. 그것은 현재 이들의 가계부채 발생을 억제하거나, 연체나 채무 불이행을 예방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가 이들의 삶과 사회 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들의 낮은 소득과 그로 인해 억제된 소비 욕구, 취업과 창업을 통한 자립 여건의 취약성, 빈곤과 부채 충격에서 이들을 보호해야 할 사회보장시스템의 취약성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셈이다.

현재 근로빈곤층은 낮은 소득능력으로 인해 소비 욕구가 극도로 억제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저임금 또는 저소득에 기인하지만, 가구 여건상 자녀 부양 등으로 인한 지출 부담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가구의 필수적 지출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절약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임을 말해 준다. 그것은 절약이 아니라 박탈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거와 교육 그리고 의료비 등의 지출은 해당 가구의 소득으로 감당하지 못하면,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라도 보전되어야 하는 필수재의 성격을 갖는다. 근로소득이나 복지 지원 그리고 제3자의

지원이 따르지 않으면, 부채를 유발할 개연성이 큰 욕구인 것이다. 실제로 많은 근로빈곤층은 이러한 기초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계형 부채를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빈곤층의 입장에서는 박탈과 부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가혹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재 근로빈곤층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인 셈이다.

그러나 기존의 근로빈곤층 가계부채 대책은 크게 두 가지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하나는 앞서 언급한 부채 상황에 따른 지출 부담의 경감이었고, 다른 하나는 취업을 통한 부채 상환 능력의 제고였다. 하지만 이 두 정책은 결과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근로빈곤층의 낮고 불안정한 소득으로는 부채 부담을 덜어 주더라도 생활상의 어려움으로 다시 부채를 지게 되기 때문이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 중 실제 그로부터 탈출한 사람의 비중이 낮다는 점이 이를 말해 준다. 결국 소득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취업 촉진을 통한 각종 지원대책 또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들의 낮은 취업능력과 양질의 일자리 감소가 그 원인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부채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근로빈곤층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근로빈곤층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실태를 진단하고, 그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근로빈곤층 가계부채에 대한 실증 분석(양적 접근방법)을 통해 이들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근로빈곤층의 가계부채의 유형과 규모 등을 다른 소득계층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둘째, 과중채무를 안고 있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사례 연구(질적 접근방법)를 통해 이들의 부채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근로빈곤층 당사자와 그 가구 구성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

보는 것이다. 그것은 가족 해체와 가계부채로부터의 탈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들의 경제사회적 자립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고용과 적절한 노동소득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하지만 정작 근로빈곤층의 가계부채가 이들의 취업과 자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는 양적 접근방법과 질적 접근방법을 결합하는 방식을 통해 문제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양적 접근방법을 통해 근로빈곤층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그것이 답하지 못하는 문제, 즉 가계부채의 발생 원인과 확대 경로 그리고 그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질적 접근방법을 통해 보완하는 방식이다.

제2절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근로빈곤층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질적 접근방법(qualitative approach)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빈곤층 가계부채 문제는 질적 접근방법만으로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근로빈곤층 가계부채에 대한 양적인 접근방법(quantitative approach)을 통한 분석에도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그것은 근로빈곤층 가계부채 문제의 실태를 보여 주는 것 외에도, 정량적 접근방법을 통해 설명하기 힘든 문제점을 드러내는 데 그 목적이 있었음을 밝혀 둔다. 결국 양적 접근방법과 질적 접근방법을 결합하는 방식을 통해 문제에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근로빈곤층 부채 문제와 관련해서 질적인 접근방법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근로빈곤층에게서 가계부채가 발생하고 그것이 과중채무와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상황은 매

우 복잡하기 때문이다. 근로빈곤층 가계부채가 과도한 소비와 도덕적 해이 그리고 금융에 대한 무지의 소치 때문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한 측면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처럼 부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기존의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을 통해서도 좀처럼 파악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방법 외에도 과도한 부채를 지고 생활하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가계부채 문제의 복잡성과 그것이 제기하는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에 천착하고자 하였다.

물론 이 연구는 질적 접근방법 외에도 근로빈곤층 가계부채 문제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연구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첫째, 문헌연구이다. 이 연구는 가계부채의 발생 구조와 경로, 그리고 그것이 전체 경제시스템과 개별가구의 소득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해당 개인의 취업이나 자살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외 연구 결과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와 그것을 야기한 제반 원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더불어 가계대출 문제와 관련해서 소득분위별 또는 소득계층별 가계대출 비중과 이자 부담, 그리고 과중채무 문제 등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였다. 그중에서도 근로빈곤가구의 가계부채와 과중채무 그리고 이자 부담 등에 따른 기존 연구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더불어 외국의 근로빈곤층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도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참고로 분석 대상 국가는 가계부채 부담 정도와 최근의 실태 변화 등을 고려하여 영국, 프랑스, 일본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통계분석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외국의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OECD, IMF, BIS 등 국제기구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한국과 외국의 가계부채 문제의 특징을 비교하였다. 국내의 가계부채 문

제에 대해서는 한국은행과 통계청 그리고 금융위원회에서 발간하는 행정 집계자료 및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소득계층별 가계부채 및 그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및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셋째, 앞서 언급했던 질적 분석이다. <질적 자료 분석>이란 설명이나 이론을 정립하거나,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주제-개념-과정-상황 등을 확인하고, 코딩작업 등을 통해 자료를 해석하는 방법을 지칭한다. 구체적으로는 자료를 범주화하고, 범주 간의 관계를 탐색하고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Lewins, Silver, 2007). 질적 자료 분석의 구체적인 방법은 1) 수집한 자료에 대한 반복적 독해, 2) 분석 대상 자료의 핵심 내용을 범주화하고 구조화, 3) 구성된 범주의 결합과 재구성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가진 범주/주제/유형을 도출, 4) 자료에서 도출된 가설을 검증하거나 대안적 설명을 탐색, 5) 분석 결과에 대한 의미 부여(해석)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가계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과중채무가구, 채무불이행자 포함 가구, 신용회복 및 개인파산자 포함 가구 등을 대상으로 근로빈곤층의 가계부채 발생 원인, 증가 경로, 파급효과 등을 묻는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면접조사 대상은 근로빈곤층 중 과중채무가구 및 채무불이행경험가구이며, 사회연대은행이 상담했던 집단 중 해당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으로 선정하였다.

제3절 연구 내용과 그 한계

이 연구는 모두 7개의 장(chapters)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을 제외한 6개 장의 구성과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제2장은 가계부채에 대한 이론적 검토로 이 문제가 갖는 다양한 특성을 설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질적 접근방법을 강조하는 이 연구의 목적과도 관련성이 있는 대목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왔으며,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어떻게 경제사회 시스템과 관련되어 있는지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 밖에도 최근 주목받고 있는 과중채무 및 다중채무 문제에 대해서도 간략히 언급하였다. 그리고 근로빈곤층의 특성을 언급함으로써 왜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 근로빈곤층에 집중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다.

제3장은 주요국 가계부채 문제의 현황과 대책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이 장은 가계부채 대책 일반보다는 저소득층 및 근로빈곤층 대상 가계부채 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외국은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일본으로 제한하였다. 이 세 국가를 선정한 이유는 가계부채 문제, 특히 빈곤층 가계부채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 국가들이 금융정책과 고용정책 그리고 복지정책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빈곤층 및 근로빈곤층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정책과 고용정책 그리고 복지정책이 어떻게 연계되어야 하는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4장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실태와 문제점을 저소득계층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이 장은 실태분석에서 저소득층에 국한된 분석을 하기보다, 전체 소득계층과 저소득층 가계부채 문제를 비교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것은 근로빈곤층 가계부채 문제가 다른 소득계층 및 자산계층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 장에서는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부담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다른 소득계층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

제5장은 근로빈곤층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양적 분석에 할애하고 있다. 제4장에서 소득분위별로 양적 분석을 하였다면, 여기서는 전체 소득 계층을 빈곤선을 기준으로 네 개의 집단(빈곤층, 중하층, 중상층, 상위층)으로 구분하고, 그중에서도 근로연령층 가구주가 있는 빈곤가구, 즉 근로빈곤층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왜 근로빈곤층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가를 설명하기 위해, 근로빈곤층의 취약한 소득능력(가구주의 불안정한 고용지위와 가구 내 취업가능인구의 부족 등)과 다른 가구와 큰 차이가 없는 지출 욕구 등을 대비시키고자 하였다. 그 밖에도 이 장은 근로빈곤층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확인하기 힘든 문제를 드러내는 데 그 목적이 있었음을 밝혀 둔다.

제6장은 근로빈곤층 중 과중채무자에 대한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질적 분석 결과를 담고 있다. 여기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내용은 가계부채 문제가 이들의 노동과 소비 그리고 가족관계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근로빈곤층은 대부분 가족을 부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들이 도덕적 해이나 사치 등으로 인해 그러한 문제에 직면하였거나,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일부의 주장이 실제 그러한지 확인하는 목적 또한 갖고 있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근로빈곤층 개별 가구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복잡성을 드러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계부채 대책과 고용정책 그리고 복지정책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제7장은 위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구 결과의 정책적 함의와 정책 제안을 하고 있다. 다소 긴 분량으로 작성된 이 장에서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한 언급, 몇 가지 구체적인 가계부채 대책 관련 제안, 그리고 근로빈곤층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등을 담고 있다.

제 2 장

이론적 검토

제1절 부채 문제의 역사적 진화

제2절 가계부채의 이론과 조작적 정의

제3절 가계부채와 근로빈곤의 문제

제4절 가계부채의 발생과 파급효과

제1절 부채 문제의 역사적 진화

이 연구는 근로빈곤층 가계부채에 대한 연구이다. 따라서 국가나 공공 기관이 채무자가 되는 공공부채가 아니라, 개인이나 가구가 채무자가 되는 가계부채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그 역사적 기원과 발전과정, 그리고 부채와 빈곤의 관계 등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장이 천착했던 문제의식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 공급의 위험성과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1. 부채 개념의 어원과 역사

어원(語源)을 보면, 부채를 지칭하는 영어 표현인 debt라는 단어는 대략 13세기에 출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것은 프랑스어의 dette(부채) - 더 정확하게는 프랑스 고어(古語)의 dete에서 - 그리고 라틴어의 debitum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실제로 부채라는 용어가 역사적으로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추적하기란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화폐나 근대자본주의 문명이 출현하기 전부터 부채란 실재하고 있었고, 그것은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였으며, 그에 따라 부채 문제를 규제하는 공동체적 규범이 존재해 왔다는 점이다. 이 공동체의 규범은 개인과 개인 간의 공평한 계약관계로서의 금전적 채

무를 확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동체의 재화를 재분배함으로써 약자를 보호하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모스(Marcel Mauss)가 말하는 일종의 선물(don)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렇다고 고대공동체의 규범을 오늘날 그대로 되풀이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21세기 확산되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 적지 않은 시사점을 주는 것이 분명하다.

오늘날 부채(debt, dette)는 주로 금전적 채무(dette monétaire)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사실 부채는 화폐가 생겨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개념이며, 다양한 형태의 채무를 아우르고 있는 개념이다. 그리고 부채는 단순히 금전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측면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부채는 역사적으로 도덕적 채무(dette morale)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그것은 그 시대의 공동체적 규범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공동체의 재화를 재분배하는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채란 국가권력과 종교권력을 통해 도덕적 채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며 체계화되고 제도화되며, 화폐경제를 통해 금전적 부채 개념으로 정교화되게 된다. 부채는 사인(私人) 간의 쌍무적 계약관계에 의한 공평한 관계처럼 인식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공동체의 재화를 재분배하는 과정에 작용하는 다양한 권력관계를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

도덕적 채무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발견되는 표현이다. 가족이나 지인의 호의에 대해 갚아야 할 부채감을 갖는 경우, 누군가에 목숨을 빚졌다고 말하는 경우, 이러한 부채는 도덕적 채무에 해당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채무와 채권관계를 특정하기 힘든 추상적인 도덕적 부채 개념이 현실에서 사회 구성원을 규제하는 강제력을 갖고 하나의 제도로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형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국가나 종교세력이 원죄나 업보 등 도덕적 채무의 개념을 근거로 사회 구성원에게 조세나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강제하였다는 점이 이

를 말해 준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러한 강제력은 현대국가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그러한 강제적 징수가 민주적 정치시스템을 기반으로 제정된 법률을 통해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그 차이가 있는 것이다.

도덕적 채무와 금전적 채무 간의 역사적 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오늘날 부채가 금전적 채무를 지칭하고 있으며, 국가의 정책적 개입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는 분명하다. 도덕적 채무가 그 관계를 특정하기 힘들다면, 금전적 부채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구분이 분명하고, 부채의 규모를 양적으로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채무 이행 여부 및 정당성에 대한 판단 또한 용이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단적인 예로 오늘날에도 금전적 채무는 <부채금액>과 <일자>가 명시되어 있고, <채무자의 서명>이 있는 경우에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금전거래에서도 숫자와 글자로 병기하게 하고, 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글자로 쓰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이러한 방법은 금전적 채무가 갖는 명확성과 무관하지 않다.

역사적으로 부채의 출현과 그와 관련된 규범의 형성 그리고 관련된 제도의 생성과정 또한 금전적 부채로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데이비드 그래버(David Graeber)는 자신의 저서 『Debt: the first 5000 years』에서 부채 개념과 국가의 형성 그리고 돈의 탄생을 연계시켜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부채 개념은 기원전 6000~3500년에 존재했던 수메르문명에서 발견된다. 물론 그것은 금전적 채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역의 교환이나 재화의 교환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환시스템에서 채무는 자신의 신체나 자신의 가족 구성원을 담보로 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자신이나 가족 구성원이 채권자의 노예가 되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수

메르의 왕은 이따금 이러한 채무관계에 개입하여 노예가 된 채무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도 했다(Graeber, 2011).

금전적 부채 개념이 보다 체계화되고, 그에 대한 국가의 규제가 출현된 것 또한 기원전 2000년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였다. 당시에 부채가 체계적이고 수량화된 형태의 금전적 채무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고 당시에 이미 금전적 부채에 대한 이자율(*le prêt à intérêt*) 개념이 존재하고 있었고, 최고이자율에 대한 법률이 존재하고 있었다. 기원전 1750년부터 함무라비법전은 이자율을 정하고 있는데, 재화에 따라 최고이자율을 20~33%로 제한하였다. 이후에도 금전적 부채와 그에 상응하는 이자율에 대해서는 많은 국가가 법률로 정하고 있다. 물론 사인(私人) 외에도 국가나 공동체 또는 법인도 채무자와 채권자가 될 수 있었으며, 그 관계를 규정하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정비되기 시작하였다(Goetzmann & Rouwenhorst, 2005).

그렇다면 금전적 부채는 어떻게 화폐와 교환시스템 속에서 발전하게 되었는가. 그래버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국가는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려면 사회와 국가의 존재가 필수적이므로 각 개인과 가족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해야 할 채무를 지고 있다는 믿음을 전파시켜 왔다. 그리고 이러한 권력구조의 형성에 부채 개념을 활용해 왔다. 국가 또는 그것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군대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각 사회 구성원에게 부과하는 논리였던 것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역사적으로 근대 민주주의국가가 형성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국가는 소수에게 권력이 독점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현실에서 지배구조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에게 세금이나 부역 등을 부과하는 정당화 논리로 부채 개념을 활용해 왔던 셈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추상적 부채를 수량화하는 방식, 즉 세금과 이를 부과하기 위한 화폐와 교환시스템이 생겨났다는 것

이다. 이와 관련해서, 14세기 중세 이탈리아의 피렌체에서 시의 부채가 모든 시민이 구입하는 재화에 세금의 형태로 부과되었던 것을 예로 들고 있다(Graeber, 2011).

2. 소비사회와 금융산업의 진화

근대 자본주의사회의 형성과 함께 인류는 공동체의 부조리한 규범에서 해방되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개인과 개인의 공정한 계약이라는 표현 속에 내재된 권력질서의 문제이다. 각 노동자가 자본과 해야 하는 고용계약, 그리고 빚을 얻기 위해 금융기관이나 다른 개인과 해야 하는 채무계약 등이 그것이다. 다수의 노동자들은 계약관계하에서도 여전히 가난에 시달려 왔다. 그리고 이들은 이전 사회의 빈곤층과 다름없이 박탈과 부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문제는 극심한 박탈을 감내하거나 부채를 감행하는 어떠한 선택도 행복한 결말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에서 역사적으로 부채는 그것이 갖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큰 주목을 받아 왔던 것이다.

서구 복지국가에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경제성장과 대규모의 고용 창출, 고용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의 강화, 그리고 다양한 경제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사회보장제도의 구축 이후의 일일 것이다. 물론 20세기 다른 많은 국가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 저발전국 대부분은 여전히 산업화 단계에 진입하지 못했으며, 고용에 대한 법적 보호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사회보장제도 또한 미비했다. 그리고 이들 국가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빈곤과 박탈 또는 부채라는 힘든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더욱이

큰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은 금융기관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대부업체 등을 통해 고리의 자금을 이용하고 그로 인해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은 많은 저발전국과 신흥산업국에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는 남과 북의 국가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이 크게 다른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부채 발생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최소한의 생활상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선택이고, 다른 하나는 더 나은 소비 또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선택이다. 많은 사람이 자신과 가족의 삶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 소비재를 구입하기 위해 부채를 감수한다. 그것은 주거와 의복, 의료와 식생활 등을 지칭한다. 하지만 부채는 종종 소비사회가 조장하는 욕망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리고 이러한 욕망의 표현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없을 수 없다. 더욱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각 개인의 도덕적 해이를 비난하기만 할 일도 아니다. 각 개인이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고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문제는 자본주의사회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 욕망을 부추기는 소비사회로 성장해 왔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버린 소비를 위해 돈을 숭배하고, 이를 위해 부조리에 타협하고, 공동체의 규범과 연대성이 사라지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일상생활이 식민화되고 있다는 주장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²⁾

스펙터클을 통해 소비사회가 형성되는 과정은 문화적 전염 또는 문화적 전파의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문화적 전염이란 지배계층 또는 상

2) 소비사회의 스펙터클과 일상생활의 식민화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는 Guy Debord(1970), *La Société du Spectacle*, Editions Gallimards, Henri Lefebvre(1961), *Critique de la Vie Quotidienne*, Editions L'Arche를 참조.

층의 소비양식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확산되고 다른 계층이 이를 모방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과정은 근대문명의 탄생 과정에서 잘 드러나게 된다. 과거 귀족사회의 사치스러운 소비와 예술을 부르주아계급이 모방하는 형태가 그것이다.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 궁궐의 장식을 모방한 장식을 붙이고, 그들의 의상을 따라 하며, 회화와 음악을 소비했던 것 등이 이를 말해 준다.³⁾ 좋은 주택과 장식, 의상과 식생활 그리고 마차 등의 운송수단은 이러한 모방의 중요한 대상이었다. 이러한 문화의 전파성은 오늘날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사실 마차가 자동차로 바뀌었으며, 소비의 품목이 다양해졌을 뿐, 소비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방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면에 여전히 그 사회의 부와 권력 그리고 질서의 모방이라는 속성이 잠재되어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21세기에도 스펙터클이 계속되고 소비가 권장되는 자본주의사회의 본질에는 큰 변화가 없다. 다만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소비 확대와 가계부채 증가가 나타나는 데는 다음 두 가지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나는 문화적 전파의 신속성과 공간을 넘어서는 확산성이다. 19세기 말 서구에서 신문이 노동자들의 여론을 형성하는 중요한 매체였다면, 20세기 중반에는 TV와 영화 그리고 음악 등이 중요한 매체로 자리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매체의 성장은 생산과 유통에 간여하는 거대 자본의 이해관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상품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광고와 스펙터클, 그리고 TV와 영화 등을 매개로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실제로 1950년대 이후 미국의 대량소비문화는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게 된다. 21세기에는 보다 발전된 새로운 대중매체

3) 이 주제에 대해서는 Nobeert Elias(2012), *Civilization : On the Process of Civilisation*, edited by Stephen Mennell et. al, UCD Press를 참조.

가 생겨나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스펙터클을 연출하던 기존의 매체에 인터넷을 매개로 형성된 새로운 매체가 결합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새로운 매체란 유튜브(YouTube)나 SNS 등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 매체들은 정치적으로는 권위주의 체제에 저항하는 민주적 정치 참여의 수단이자 개성에 따른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갖기도 한다. 이 점에서 억눌린 욕구와 욕망을 해소하는 새로운 방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소비를 위한 소비로 전락하고, 소득능력을 넘어선 소비로 이어지는 순간, 부정적인 측면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금융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소비사회는 과거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 점이다. 발전된 금융서비스와 그것에 대한 정부 규제의 약화는 거의 모든 계층에서 소비를 확산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였다. 이는 축적된 금융정보시스템과 빅데이터 등을 토대로 차주(借主)의 상환 가능성을 평가하는 기법의 발전 등에 힘입은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금융서비스에 접근하기 힘든 계층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종종 공동체적 규범이나 책임성보다는 더 많은 수익을 위해 신용 공급을 무차별적으로 확산하는 금융시스템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물론 저발전국의 경우, 여전히 금융서비스로부터 소외된 계층이 존재하며, 이들의 금융 소외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다른 많은 국가에서는 제1금융권, 제2금융권, 대부업자로 이어지는 포괄적이고 다양한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서비스가 자리 잡고 있으며, 신용카드 등을 매개로 금융서비스의 접근성이 확대되면서 빈곤층을 포함한 전 소득계층에서 부채 문제가 심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Clerc, 2003, p. 79).

3. 21세기 가계부채 문제의 몇 가지 특징

전 세계적으로 금융산업이 발전하고, 소비자금융이 성장함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 금융 소외나 과도한 부채 문제가 크게 개선되었다. 물론 이 또한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를 경험한 이후 개선된 일이지는 하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금융서비스는 가난한 사람들의 접근성을 차단하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금리와 부당한 추심 등을 방치하는 문제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경제시스템과 금융시장의 후진성 문제이기도 하지만, 민주정치 부재와 정부 정책의지의 문제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언급하겠다.

첫째, 비교적 최근 쟁점화되었던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의 문제이다. 사실 약탈적 대출이 이루어진 것은 역사적으로 아주 오래된 일이다. 채무와 관련된 명확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대부분의 사회에서 부채란 약탈적 성격을 갖기 쉬웠던 것이다. 하지만 정작 그것이 무엇을 지칭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개념화되지 않아 왔다. 이러한 개념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미국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일이었다.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되던 금융서비스에 대한 탈규제가 시작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공격적 신용 공급이 발생하게 되었던 시점이다. 이 과정에서 수익 창출을 위해 대출자(借主)를 기만하는 다양한 방식의 약탈적 대출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 문제는 2007년 리먼 쇼크를 계기로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기에 이른다. 그리고 미국의 연방정부와 일부 지방정부는 뒤늦게 약탈적 대출에 대한 법적 대처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연구와 정책방안에서 약탈적 대출에 대한 유형화가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그중 몇 가지 예를 들면, 근거

가 취약한 이유로 대출자(借主)의 상환 위험을 과장하여 이자율이나 상환 조건을 불리하게 설정하는 경우, 대출과 관련된 보험을 강제함으로써 더 비싼 비용의 추가 대출을 하게 하는 경우, 대출 기간이나 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는 경우,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로 단기대출을 행하는 경우,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당한 대출 등을 약탈적 대출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⁴⁾ 이처럼 약탈적 대출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약탈적 대출이란 1) 대출 신청자의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심사하지 않고, 2) 대출 수수료나 이자율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3) 변제능력을 초과한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한정미, 양기진, 2013, p. 24)를 지칭하는 것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상대적으로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가 잘 정비되었던 서구 국가에서 이러한 약탈적 대출이 확산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금융자본의 국가 간 이동이 용이해지면서 발생하게 된 약탈적 금융기법의 세계화 문제이다. 이는 한국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용이할 것이다. 한국 사회는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경제 영역에서의 세계화와 탈규제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고 1999년에는 이자제한법을 폐지하기도 하였다. 문제는 일본의 경우, 같은 시점에 최고이자율을 낮추는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당시 일본 사회에서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고 규제를 받게 된 대부업체들이 한국에 상륙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그리고 일본은 이 시점부터 가계부채 문제 특히 다중채무와 관련해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하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약탈적 대출이나 고리대금업으로

4) 참고로 오하이오 주정부의 상무성이 발표한 한 문건은 금융소비자에게 다음 질문에 스스로 답해서 '아니요'라는 답이 있다면, 그것이 약탈적 대출이 아닌지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다. : 1) 자신의 과거 신용기록을 고려할 때, 현재의 이자율이나 비용이 너무 높은 것은 아닌가. 2) 대출이 단순히 담보가치만이 아니라 나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책정된 것인가. 3) 대출조건이 나에게 제대로 설명되었는가. 4) 나에게 제시된 대출유형과 대출서비스가 내 욕구와 이해관계에 적합한가 등이 그것이다(State of Ohio, Department of Commerce, 2013, p. 2).

인한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반면에 이후 한국 사회는 이른바 대부업체의 천국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그리고 각종 대중매체가 대부업체의 대출 상품을 광고하는 기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는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실업과 고용불안 등으로 빈곤층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소비욕구를 부추기는 동시에,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를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더불어 추심기법에도 놀라운 발전이 있었다. 그것은 뒤늦게 법적 규제가 취해지기 전까지 많은 대출자(借主)에게,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상흔을 남겼다. 그리고 이러한 추심에는 금융기관의 이른바 악성채무에 대한 처리가 포함되어 있었다.⁵⁾

셋째, 빈곤층을 대상으로 수익을 창출하며, 선의의 소액대출사업을 위기로 몰아넣은 사건이다. 2000년대 후반부터 세계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빈곤산업(poverty industry) 또는 빈곤비즈니스(poverty business)의 문제는 저발전국에서의 가계부채 문제가 갖는 특성을 잘 보여 준다. 빈곤비즈니스란 지금까지 금융기관들이 도외시했던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및 각종 사업으로 일정 수준의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다소 허황된 모델에 기초한 것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빈곤층을 대상으로 소액대출을 하고 매일 또는 매주 단위로 상환을 받는 소액대출사업(micro-financing business)이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 비즈니스모델이 1990년대 중반부터 저발전국의 비영리민간단체가 선의로 시작했던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 또는 소액창업대출사업)의 성공에 편승한 것이었다. 마이크로-크레딧은 빈곤층과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의 소액을 무담보로 대출하여 창업을 돕고 금융교육을 시킴으로써 빈곤 탈출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후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된 유누스(Ynus)가 설립한 그라민은행 등

5) 한국 사회의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비판적 분석으로는 송태경(2011)을 참조.

은 빈곤층을 대상으로 소액대출을 하여 성공하였고, 서구의 금융자본들은 이 사업의 높은 상환율을 근거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허황된 믿음을 전파하였다. 이때부터 서구 각국의 금융기관들은 저발전국의 소액대출기관에 경쟁적으로 자본을 투입하기 시작하였다. 사실 이러한 경쟁적 투자는 빈곤층 자립이라는 선의로 포장된 투자 명분과 새로운 수익모델의 창출이라는 기대감이 합쳐져 만들어 낸 결과였다. 상환능력이 취약한 빈곤층에 대한 신용 공급 과잉은 경쟁적인 자금 대출과 허술한 심사 그리고 정비되지 않은 관리체계와 맞물려 대규모 부실을 촉발하였다. 사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문제의 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그 결과, 일부 국가에서는 과도한 대출을 하게 된 빈곤층이 상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였고, 소액대출사업은 사실상 붕괴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한 예로, 볼리비아 등 중남미의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사실상 상환 불능을 선언하는 상태에 이르렀다(Schicks, 2011; 후 싱클레어, 2015).⁶⁾

제2절 가계부채의 이론과 조작적 정의

오늘날 가계부채는 삶의 일부가 되었다. 소비생활의 단계마다 우리는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 살고 있는 아파트와 신용카드로 구매한 작은 물건들까지 사실 빚이기 때문이다. 빚이란 미래 소득을 당겨써서 현재 삶

6) 한국 사회 또한 1999년을 기점으로 비영리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소액창업대출사업이 시작되었고, 사회적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유엔이 2005년을 마이크로-크레딧의 해로 선포한 시점에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다행한 것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소액대출사업이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흐름에 휘말리지 않았다는 것이고, 불행한 것은 우리 사회가 마이크로-크레딧의 육성 방향을 잘못 설정하여 사업의 대형화와 형식화의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한국의 빈곤층 소액창업대출사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와해시켰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의 만족도를 높이는 합리적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의미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과도한 부채(이하에서는 과중채무)로 이어지고, 연체와 채무불이행을 초래하는 상황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여기서는 가계부채와 과중채무 문제의 특성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1. 가계부채에 대한 몇 가지 이론

부채 문제에 대한 학문적, 그리고 비판적 관심은 2000년대 이후 크게 증가한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2008년 리먼 쇼크로 인해 각국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이처럼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된 상태까지 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비판 또한 활발하게 제기되었다. 그리고 어떠한 방향에서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부채 문제를 보는 다양한 관점 또는 이론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가계부채의 발생 동기와 관련해 기존의 대표적 가설 또는 이론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항상소득가설(permanent income hypothesis), 2) 생애주기가설(life cycle hypothesis), 3)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이 그것이다. 참고로 항상소득가설과 생애주기가설은 현재 소비가 지금의 소득뿐 아니라 미래 소득을 고려해서 이루어진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동소이하다. 첫째, 항상소득가설은 경제학에서 저축과 부채에 대한 각 개인의 선택을 설명함에 있어 널리 채택되고 있는 주장이며, 유사한 다른 많은 가설이 전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 가설은 각 개인이 장기적 관점에서 자신의 항상소득을 정하고 그에 따라 항상소비를 결정하며, 특정 시점의 소득이 소비를 초과하면 저

축을 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빚을 얻는 방식으로 일정 수준의 소비, 즉 향상소비를 유지한다고 말한다(Friedman, 1957). 둘째, 생애주기가설은 항상소득가설을 보완하여 각 개인이 평생소득 관념에 따라 생애주기별로 저축을 하거나 빚을 지는 방식으로 소비수준을 유지한다고 주장한다. 소득이 지출을 초과하면 저축을 하고, 그 반대의 경우 빚을 내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항상소득가설의 전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그것이 생애주기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노동시장에 막 진입한 초기에는 소득이 지출보다 적고, 청·장년기에는 소득이 지출을 초과하며, 노년기에는 다시 소득이 지출보다 낮은 특성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초년에는 부채를 지고, 청·장년기에는 저축을 하며, 노년에는 그 저축으로 생활하게 된다는 것이다(Ando & Modigliani, 1963). 셋째, 전망이론은 행동경제학을 기초로 금융소비자가 부채와 관련해서 취하는 선택이 갖는 비합리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의 두 가설과는 차이가 있다. 각 개인이 합리적 선택을 하고 있다는 가정보다 실제 어떠한 선택을 하며, 그것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이론의 요지는 각 개인이 저축과 부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가져올 득실을 따져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고정된 기준점을 갖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점을 지칭하며, 그 해석에 있어서도 주관적 선호에 따른 가중치가 적용된다는 것이다(Kahneman & Tversky, 1979).

현실에서 각 개인은 장차 자신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을 고려하여 소비와 저축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젊은 시절에 저축을 하고, 노년에 그것을 소비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말해 준다. 하지만 이것이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합리적 선택의 형태를 취하는 것만은 아니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많은 사람이 자신이 미래에 얻게 될 소득을 고려하여 소비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미래

에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면, 이러한 가설은 힘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현실의 근로빈곤층의 저축과 부채를 설명하기에는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이 점에서 근로빈곤층의 부채 문제를 설명하기에는 전망이론이 더 큰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뒤의 인터뷰 결과에 대한 해석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근로연령층은 미래를 낙관함으로써 부채를 감수하고 소비를 하게 된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가족생활에서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 부채를 감수하기도 한다. 심지어 그것이 가져올 파국을 알면서도 부채를 택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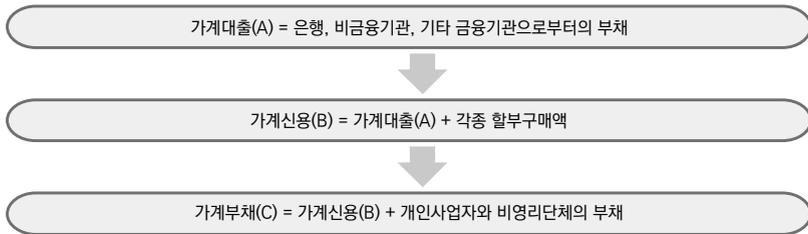
2. 가계부채 개념의 정의

부채는 개인이나 기관 등 누군가에게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는 돈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가계부채(household debt)란 한 가구가 다른 개인이나 기관에게 지불해야 할 돈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채무 주체는 가구가 아니라 해당 가구를 대표하는 가구주나 개인이다. 이는 가계부채 연구에서 분석 단위를 가구로 설정하지만, 개인 부채 데이터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분석상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따라서 가계부채는 가구 구성원 개인이 다른 개인이나 기관에게 지불해야 할 금전적 부채의 총량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분석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가계부채란 구체적으로 어떤 부채를 의미하는가. 가계부채란 가계대출과 가계신용 등 다양한 개념을 구분하는 것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가계대출이란 각 개인이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그리고 기타 금융기관(보험, 연금 등)에서 빌린 부채를 지칭

하는 표현이다. 여기에는 주택담보대출 이외에도 각종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다. 이어 가계신용이란 위에 언급한 가계대출에 판매신용, 자동차 및 각종 재화에 대한 할부구매 등을 합한 부채를 지칭한다. 끝으로 가계부채란 위에 언급한 가계신용에 개인사업자와 비영리단체가 지고 있는 부채를 합한 것이다(김정식 등, 2012, p. 4).

[그림 2-1] 가계부채의 구성도



자료: 김정식 등(2012), 주요국의 가계부채 조정과정 및 대응정책 분석의 그림을 수정.

결국 가계부채 개념은 가장 협의의 가계대출, 좀 더 넓은 의미의 가계 신용, 그리고 광의의 가계부채로 정의될 수 있다. 이처럼 첫 번째나 두 번째 기준을 활용하여 가계부채 규모를 추정하는 경우, 그것이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기준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가계부채의 국제 비교에서는 주로 세 번째 개념, 즉 광의의 가계부채 개념이 활용되기 때문이다. 즉,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나타내는 OECD의 가계부채(household debt) 지표는 광의의 가계부채 개념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첫 번째 기준에 따라 측정된 가계부채 규모 등은 국제비교에 활용된 규모와 다른 것이다.

학술적으로 연구자마다 가계부채를 정의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앞서 언급했던 첫 번째나 두 번째 개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분석에 활용하는 데이터 자체가 주는 제약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구

단위의 서베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 가계부채를 두 번째나 세 번째 기준에 따라 측정하기 힘들다. 가구 단위의 지출정보에서 각종 할부구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힘들고, 비영리단체의 부채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 결과는 가장 좁은 의미의 개념, 즉 가계대출을 기준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로 학술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는 가계부채를 금융부채와 임대보증금으로 구분하여 세부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임대보증금을 포함시킨 것은 한국의 가계부채에서 전세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나머지 금융부채는 1) 담보대출(주택담보, 기타 부동산담보, 예금·적금·펀드·채권 담보대출), 2) 신용대출(마이뉴스통장), 3) 신용카드 관련 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 대환대출 등), 4) 외상 및 할부(외상, 할부, 카드 선포인트 할부 등의 미결제 잔액), 5) 기타 부채(갯돈을 탄 후에 낼 금액)로 구성되어 있다.

3. 과중채무 개념의 정의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 중 하나는 과중채무(over-indebtedness) 개념이다. 하지만 과중채무가 어떤 상태를 지칭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된 개념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와 연구자에 따라 대출에 적용되는 기준을 지칭하거나, 부채가 많은 사람을 정의하는 데 사용하는 포괄적인 기준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과중채무 여부에 대한 조작적 정의 또한 연구자나 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⁷⁾

7) 가구 및 개인의 과중채무 문제는 매우 복잡한 문제로,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영역, 다양한 이해관계 그리고 각국의 문화적 태도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이유에서 과중채무에 대한 법률적이고 조작적 정의에 대한 합의는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각국 정부는 자신들이 처한

과중채무는 총가처분소득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 등 객관적 기준을 사용하거나, 각 개인이나 가구가 채무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를 기준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대별할 수 있다. 현실에서 가계 부채의 과중 여부는 각 개인이 처한 소득과 재산 그리고 연령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부채와 저축에 대한 태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복잡성을 감안한 것이다. 문제는 학술적으로야 과중채무를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지만, 정부나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부채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실제 정부가 부채 안정화를 위해 취하는 행정적 기준이나 금융기관이 대출 내실화를 위해 대출 자격을 정하는 기준 등이 존재하고 있다. 이 점에서 대출 규제에 사용되는 객관적 기준 또한 과중채무를 측정하는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European Union, 2008, p. 34).

참고로 2000년 유럽연합 경제사회위원회(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또한 개별 가구가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판단하고 유형화할 보편적인 단일한 기준을 정의하기 힘들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2007년의 유럽평의회 부채 문제에 대한 법률적 대책 모색을 위한 전문가그룹 또한 유사한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각국의 과중채무 적용 기준 및 개별 기관과 연구자들의 다양한 과중채무 개념 및 기준을 비교해 본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개념 정의를 관통하는 여섯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1) 적용 단위가 가구이며, 2) 계약서로 작동된 금융부채를 대상으로 하며, 3) 부채 상환과 관련된 지속적인 상환능력(payment capacity)을 고려하고 있으며, 4) 부채의 구조적 특징,

경제상황과 정치구조 그리고 부채 문제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가계의 과중채무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법률체계의 공정성, 2)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3) 사회문제의 정치적 파급성 등이 그것이다.

즉 초단기적인지 일정 기간 지속되는 문제인지를 감안하고, 5) 최저생활비를 고려해서 설정해야 하며, 6) 자산 매각 등을 통해 부채를 상쇄시킬 수 없는 상태인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에 언급한 여섯 가지 기준은 총 네 가지 층위(dimension)로 범주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1) 경제적 층위, 2) 시간적 층위, 3) 사회적 층위, 4) 심리적 층위가 그것이다(EU, 2008, pp. 36-37).

과중채무를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에도 몇 가지 방법이 존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총부채상환비율(Debt-to-Income ratio: 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SR) 기준을 예로 들 수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원리금 상환액, 나머지 부채는 이자 상환액을 합산하여 그것이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지칭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모든 부채에 대한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국가와 전문가마다 어느 기준이 보다 명확하고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외의 주요 국가들은 과중채무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하나의 객관적 정의를 채택하는 추세인가. 그리고 그에 따라 객관적인 지표를 생산하고 있는가. 여기서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 그리고 한국의 사례를 간략하게 설명하겠다.

먼저 미국에서 가계부채의 과중채무 여부를 판정하는 단일한 정부기준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과중채무란 금융기관들이 심사 과정에서 대출을 기피하는 기준선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 금융시장에서 대출기관은 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에 따라 차주의 대출금 상환능력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차주의 부채가 과중한 경우, 대출을 거절하거나 이자율을 조정하는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모기지론을

받기 위한 DTI 기준은 약 43%를 적용하고, 신용카드나 개인대출에 대해서는 33%를 과중채무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좀 더 도식화하여 DTI가 40%를 넘어서면 부채가 과도하다고 간주하기도 한다.

유럽연합에서도 과중채무에 대한 합의된 정의나 지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2013년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수행했던 과중채무 개념에 대한 연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중채무의 다양한 특징을 포착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점을 말해 주고 있다. 이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과중채무 가구란 1) 대출 상환금이 소득의 일정비율, 즉 30~50% 구간을 넘어서는 가구, 2) 실업 등의 이유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아직 연체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말하는 가구, 3) 부채 상황을 포함한 각종 지출을 하고 나면, 가처분소득이 최저소득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4) 필수재를 구입하기 위해 대출에 의존하는 가구, 5) 평균적인 대출 수 이상을 가진 가구, 6) 미상환 대출금의 평균액이 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기준 이상인 가구를 지칭한다는 것이다(Alleweldt & Kara, 2013, p. 26).

하지만 현실에서 유럽 각국이 과중채무 문제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영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이들 국가 모두 현재의 소득으로 채무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과중채무로 이해하는 것은 동일하다. 하지만 정책 지원이나 부채 탕감의 조건에 대해서는 다소 관점의 차이가 있다. 독일은 과중채무 문제를 '생활비 절약에도 불구하고(in spite of a reduction of the living standard)' 채무를 이행하기 힘든 상황으로, 프랑스는 '선의를 갖고 있음에도 비직업적인 사유로' 채무를 이행하기 힘든 상황을 지칭하며, 영국은 '채무 상황에서 연체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를 과중채무의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D'Alessio & Lezzi, 2013, p. 4).

〈표 2-1〉 유럽 주요국의 과중채무 기준의 범주와 세부 지표

범주	지표
부채 수준	(담보 & 무담보대출) 부채 상환 지출이 총소득의 30%(50%) 이상인 가구
	(무담보대출) 부채 상환을 위한 지출이 가구총소득의 25% 이상인 가구
	(담보 & 무담보대출) 부채상환을 위한 지출 후 가구총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가구
연체	대출 상환 또는 각종 지출을 2개월 이상 연체한 가구
부채 개수	대출이 4개 이상인 가구
부채체감	부채 상환이 '매우 과중하다'고 응답한 가구

자료: D'Alessio & Iezzi. (2013). Household over-indebtedness: definition and measurement with Italian data.

우리나라 또한 가계대출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출 신청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과중채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재 적용되는 기준은 총부채상환비율(DTI)이며, 2017년 현재 수도권은 대출 한도는 DTI의 60%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 활용한 과중채무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새로운 기준으로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DSR이 주택담보대출 외에도 각종 신용대출과 자동차 할부금, 신용카드 미결제분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적용되던 DTI가 차주의 상환능력을 과대평가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보다 포괄적으로 부채와 상환 부담을 고려한 DSR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DSR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차주의 부채상태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며, 신용정보원은 대출 신청자가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각종 대출의 잔액, 만기일, 대출금리, 약정개월, 상환방식, 연간 원리금 상환액 등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여 DSR을 산출하게 된다. 그 밖에도 담보인정비율(Loan-to-Value ratio: LTV)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금융기관이 담보대출을 하는 경우, 담보물에 대해 인정해 주는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차주가 주택 등의 담보물을 맡기고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의

비율을 지칭하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이라고도 말한다.

과중채무에 대한 연구는 어떠한 가구를 과중채무 가구로 규정할 것인가. 앞서 각종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활용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공개된 데이터가 허용하는 제한된 정보를 토대로 개별 가구의 과중채무 여부를 정의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 많은 연구들은 1) 총부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나 2) 총부채와 부채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는 3) 총부채와 월 상환액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활용하고 있다. 그 밖에도 DSR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가계부채를 상환하기 힘든 한계 가구를 DSR이 40%를 초과하고, 금융부채/금융자산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가구로 정의하는 것이다(주원, 2016, p. 32).

4. 가계부채의 동기(용도)와 대출기관

가계부채에 대한 연구에서 가계부채의 총량을 파악하는 것은 정책적 활용가치가 크지 않다. 오히려 그것이 어떠한 사유로 발생하고 있으며, 어떤 공급자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는 가계부채를 조절해야 하는 경우, 정책적으로 어떤 공급기관을 대상으로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지, 더 나아가 가계부채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제사회정책을 강화해야 하는지 그 근거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가계부채가 발생하는 주요 동기는 궁극적으로는 소비와 투자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부채는 그 용도가 소비를 목적으로 한 것인 동시에, 투자의 성격을 갖기도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택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주택은 거처이자 투자 대상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부채의 경우에는 그 궁극적인 용도를 특정하기 힘들며, 현실적으로 구분하기도 어렵다. 이 점에서 가계부채는 1) 주거 마련을 위한 부채 (소비 + 투자 용도), 2) 자산 및 소득 증대를 위한 투자 성격의 부채, 3) 소비 지출을 위한 부채, 4) 채무 상환을 위한 부채로 대별할 수 있는 것이다.

〈표 2-2〉 대출 용도의 구분

대분류	소분류
주거 용도 (소비+투자)	- 거주주택 마련 - 전(월)세 보증금 마련
투자 용도	- 거주주택 이외의 부동산 구입 - 주식투자 등 투자금 마련 - 사업자금 마련
소비 용도	- 의료비 지출 - 주거비 지출 - 교육비 지출 - 생활비 지출
채무 상환 (소비+투자)	- 갯돈 수령 후의 입금액 - 부채상환액 - 신용카드 대출 - 외상 및 할부미상환액

전체 가계부채에서 주거 관련 담보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다.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빠져드는 원인 또한 주택가격의 하락이라는 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주거 용도는 아니지만 다른 주택이나 부동산 마련을 위한 부채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중산층 가계에 큰 충격을 주었던 부채로 주식 투자와 관련된 부채를 들 수 있다. 이는 금융산업의 발전 정도와 이와 관련된 정부 규제 등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데, 1990년대 중반 이후 많은 국가에서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한 가계부채가 발생하기도 하였

다. 그리고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가계부채는 대부분 필수재의 성격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빈곤층의 경우, 소비를 위해 부채를 감수하는 경우에는 가족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월세 지출이나 의료비 지출 그리고 식생활비 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대학교육이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많은 학비를 지출해야 하는 국가에서는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로 인한 부채 문제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인적 투자를 위한 지출이지만, 졸업 이후 노동시장에 안착하는 초기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최근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다.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부채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지적해야 하는 점은 그것이 모두 필수재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사실상 소비문화가 확산되면서 중산층은 물론이고 저소득층 사이에서도 사치재에 가까운 소비를 위해 부채를 지는 사례도 종종 발견되고 있다. 끝으로 이미 발생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지출, 일종의 디레버리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채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청산가치가 부채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이를 위한 부채가 발생할 개연성은 크지 않다. 그리고 한국의 껌돈과 같이 이미 받은 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환하는 것 또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에 현재 소득을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기타 외상 구매액은 최근 각국의 가계부채 문제, 특히 과중채무 문제에서 중요한 문제로 간주되고 있다.

가계부채를 얻게 되는 경로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래 표는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을 담당하는 기관 및 개인을 구분하여 보여 주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제1금융권은 주로 은행을 지칭하며, 제2금융권은 저축은행이나 농협, 새마을금고, 그리고 보험회사 등을 지칭하고, 제3금융권은 대부업체 등을 지칭한다. 그 밖에도 직장대출이나 개인대출, 그리고

판매자가 제공하는 외상거래 등이 그것이다. 참고로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제2금융권 보험회사에서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하는 약관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2-3〉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기관의 유형

대분류	소분류
제1금융권	- 은행
제2금융권	- 저축은행 - 비은행금융기관(단위농협, 수협/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 보험회사, 여신전문기관
제3금융권	- 대부업체 등
기 타	- 직장, 각종 공제회, 개인 - 신용카드 관련 대출 - 외상 및 할부미상환액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어떠한 집단이 어떠한 대출기관으로부터 부채를 지고 있는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제1금융권이 상대적으로 상환능력이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대출하는 반면, 제2금융권과 제3금융권으로 갈수록 상환능력이 낮은 집단이 대출을 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금융권마다 부채 상환능력이 높은 집단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물론 이는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에 해당되는 문제이다.

제3절 가계부채와 근로빈곤의 문제

빈곤층 중에서도 부채를 감수해야 할 어려움에 더 자주 봉착하는 집단은 아무래도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근로연령

층 중 불안정하고 낮은 소득으로 자녀나 부모를 부양하는 과정에서 부채에 호소하게 될 상황에 더 자주 노출되기 때문이다. 물론 중산층이라고 이러한 위협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빈곤층이나 중산층이 증가하지 않는 소득으로 계속 인상되는 소비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빚을 내는 것뿐이다”라고 말하는 이유일 것이다(Kumhof & Rancière, 2010, p. 29).

1. 근로빈곤층 개념의 정의

근로빈곤층 개념은 각국의 전문가와 정책결정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 국제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Pena-Casas & Latta, 2004, p. 7). 따라서 근로빈곤층에 대한 연구는 본론에 앞서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한 설명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것은 그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그것이 드러내는 특징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홍경준, 2005, p. 139).

통상적으로 근로빈곤층은 “가구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중 유급노동을 하고 있거나 일자리를 찾고 있는 집단”을 지칭하는 개념이다(노대명, 최승아, 2004, p. 29). 그리고 이 개념은 가구 단위의 빈곤과 개인 단위의 근로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다른 개념이 될 수 있다.

먼저 빈곤선은 근로빈곤층의 소득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것은 각국의 독자적 빈곤선(national poverty line)⁸⁾을 적용할 수도 있으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중위소득의 40~60%를 빈곤선으로 적용할 수도 있

8) 한국은 2015년 7월 이전에는 최저생계비(Minimum Living Standard)를 빈곤선처럼 활용하기도 하였다. 이는 한국 고유의 빈곤선(National Poverty Line)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각종 복지제도의 행정적 소득기준선을 의미한다.

다. 그 차이는 빈곤선, 즉 소득기준선의 고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어 <근로> 또는 <일한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따라 집단의 구성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특정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취업상태에 있는 사람을 일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으며, 일정 기간 중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일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취업상태를 파악하는 개념은 정태적 접근방법으로, 연간 일정 기간(주로 6개월) 이상 일한 사람을 포괄하는 개념은 동태적 접근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노대명, 최승아, 2004, pp. 34-35).

아래 표는 근로빈곤층 개념이 취업상태와 종사상 지위를 토대로 어떻게 범주화되는지 보여 주고 있다. 여기서 근로빈곤층은 좁은 의미의 취업빈곤층(Group I), 넓은 의미의 경제활동빈곤층(Group II), 가장 넓은 의미의 근로빈곤층(Group III)으로 유형화된다는 점을 말해 주고 있다.

<표 2-4> 근로빈곤층 개념에 대한 정의

범주			종사상지위	I	II	III
경활인구	근로	임금노동자	상용직	취업 빈곤층	경제 활동 빈곤층	근로 빈곤층
			임시직			
			일용직			
		비임금노동자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비경활인구	비근로	실업자				
		NEET, 노인, 장애인, 아동, 주부				

자료: 노대명, 최승아(2004), 근로빈곤층의 소득·고용실태 연구, p. 37의 표를 일부 수정.

하지만 현실에서 많은 서베이데이터는 이러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에 언급한 모든 방식으로 근로빈곤층 규모를 파악하고 부채 문제를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그것에 준하는 개념으

로 근로연령빈곤층(working-age poor) 개념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 개념은 빈곤가구 구성원 중 일정 연령대의 집단을 지칭하는 것이다. 참고로 OECD는 근로연령층을 15~64세의 인구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5~64세 인구 중 빈곤가구에 속한 집단이 근로연령빈곤층이 된다. 본 연구에서도 가계금융복지조사 등 서베이데이터를 활용함에 있어 주로 근로연령빈곤층 개념을 채택할 것이다.

2. 근로빈곤층의 발생 원인

근로빈곤층은 그것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에 따라 다른 형태와 규모 그리고 특징을 갖게 된다. 따라서 어떤 요인이 근로빈곤층의 형태와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지 간략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근로빈곤층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Pena-Casas & Latta, 2004, pp. 31-59). 그것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산업구조 변화, 2) 고용의 질과 고용보호법제, 3) 기회불평등의 구조, 4) 사회보장체계 등이 그것이다(송호근, 2002, pp. 23-50; 홍경준, 2009, pp. 173-180).

위에 언급한 요인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구조가 산업화 이전 단계인지 탈산업화 단계인지에 따라 노동시장 구조가 다른 성격을 갖게 되고, 그에 따라 근로빈곤층의 형태도 바뀌게 된다는 점이다. 1990년대 이후 각국이 경험하고 있는 탈산업화는 노동시장에서 비정형화된 고용형태를 낳고 있으며,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또한 새로운 고용형태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다. 새로운 고용형태를 가진 일자리는 그 유연성이 크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근로빈곤층은 이러한 위협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집단들이다.

둘째, 노동에 대한 유연화 압력이 강해지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어떠한 제도와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개입하는가에 따라 근로빈곤층의 형태도 달라지게 된다. 지나치게 경직된 고용보호법제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고착화시킨 것이나, 지나치게 유연화된 고용보호법제가 다른 성격의 근로빈곤층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이를 말해 준다. 다소 도식적으로 표현하면, 경직적 고용보호법제를 가진 국가에서는 실업자, 특히 장기실업자를 중심으로 근로빈곤층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과도하게 유연화된 노동시장하에서는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노출된 저소득 노동자를 중심으로 근로빈곤층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러한 조절방식은 각국의 민주화 정도나 노동조합의 영향력 그리고 사회적 합의의 전통 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셋째, 기회불균등의 심화 또한 근로빈곤층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다. 물론 국가마다 기회불균등의 형태와 정도는 다르다. 비교적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기회불균등은 학력과 성별에 따른 취업과 임금의 차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저학력 여성이 가구주인 한부모가구의 근로빈곤 문제가 심각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그 밖에도 서구 국가에서는 인종이나 종교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한국 사회는 성별과 학력에 따른 취업과 임금 등에서의 차별이 심각한 경우라고 말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근로빈곤층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성별 임금격차라고 말할 수 있다. 최근 서비스업종에서 여성취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임금 불평등이 심해지는 것도 근로빈곤층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넷째, 사회보장제도의 포괄성과 효과성 정도 또한 근로빈곤층 문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회보장제도는 소득보장제도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와 현물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근로연령층이 직면하게 되는 경제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한다. 건강과 주거 그리고 교육 등에 대한 정책

이 그것이다. 그리고 소득보장제도 또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실업의 위험에 처한 근로빈곤층은 실업급여나 그에 상응한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 이는 실업보험이나 실업부조 그리고 사회부조제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면, 근로빈곤층 발생을 억제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말해 준다. 실제로 서구 복지국가들은 각종 소득보장제도를 통해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근로빈곤층 규모를 크게 줄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근로빈곤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복합적이다. 저성장이거나 경기침체가 실직이나 저임금 위험을 증가시켜 근로빈곤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고 경제성장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비정규직이 일반화되어 있고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면, 취약계층이 근로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성은 커지게 된다. 최종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포괄성과 보장 수준 또한 근로빈곤층의 규모와 형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심상용, 2006).

결국 근로빈곤층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은 산업기술의 급속한 발전과정에서 기업들이 경쟁력 제고 또는 수익 창출을 위해 노동을 유연화하려는 힘과 고용 안정과 임금 보장을 통해 소득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힘 사이의 관계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힘 관계 속에서 최저임금, 고용보호, 사회보험, 직업훈련 그리고 빈곤층 소득 보장 등 다양한 수단을 선택하고 조합하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각국의 근로빈곤 문제가 다른 특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3. 근로빈곤층의 직업능력과 가구 여건

근로빈곤층은 어떠한 특징을 가진 집단인가.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 특성을 언급하고자 한다. 1) 궁극적으로 저임금/고용불안에 노출된 집단에

게서 근로빈곤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는 점이다. 2) 연령과 직업숙련 측면에서 청년과 고령자, 그리고 저숙련집단에게서 근로빈곤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3) 가구 특성과 관련해서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취업자가 적은 가구에게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4) 저숙련과 경력 단절 그리고 이혼 등의 위험이 중첩된 여성에게서 근로빈곤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첫째, 근로빈곤층은 노동시장에서 저임금 또는 저소득을 경험하는 집단에게서 발생한다. 이 문제는 25~54세의 핵심 근로연령층이라도 저임금-저숙련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반복해 왔던 계층에게서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그것은 비정규직과 같이 고용이 단절될 확률이 높은 집단이나, 영세자영업자와 같이 사업소득이 불안정한 집단, 그리고 고용이 안정되어 있지만 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집단에게서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근로빈곤층은 국가에 따라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장기실업 상태에 빠지는 형태나, 반복적 고용 단절을 경험하는 형태, 또는 이러한 양상이 중첩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프랑스의 한 연구 결과는 경제활동근로빈곤층(active poor) 중 59%만이 연중 계속 일했다고 답한 반면, 비빈곤층은 85%가 그렇다고 답하고 있다(Pena-Casas & Latta, 2004, p. 27에서 재인용). 한국의 근로빈곤층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낮은 노동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시간당 임금이 낮은 것도 문제이지만 고용 단절과 시간제 근로 등으로 월간 노동시간이 짧아 정규직 노동자와의 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백학영, 2010, pp. 103-109). 한국 사회에서 근로빈곤층은 실직하더라도 장기실업 상태에 빠지기보다 다시 노동시장으로 빨리 복귀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가능성이 낮아 저임금 함정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은 것이다(최옥금, 2005, p. 33; 이병호, 반정호, 2009, p. 216).

둘째, 인구집단별로 생애주기에서 소득 발생이 저조한 집단을 중심으로 근로빈곤 문제가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먼저 고령자나 노인은 핵심 근로연령대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소득이 감소하고 빈곤 위험이 있지만,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잘 정비된 경우에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즉 노인빈곤율이 매우 낮고 취업률 또한 낮은 것이다.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는 여전히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노인취업률이 높지만 그것이 충분한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아 노인빈곤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어 청년은 노동시장의 진입 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근로빈곤의 위험이 크며, 노동시장의 폐쇄성이 큰 유럽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이미 오래전부터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물론 청년층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빈곤율이 통계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한국 사회가 그 경우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자녀의 경제적 독립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국가에서는 청년층의 고용불안과 저임금 그리고 빈곤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서구 복지국가에서 청년층은 기존의 사회보험제도라도 보호하기 힘들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한국 사회 또한 청년층의 실업과 고용불안 그리고 빈곤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이들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과 성별격차 그리고 학력격차가 미치는 영향을 통제해야 하는 복합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변금선, 2012, pp. 271-273).

셋째, 근로빈곤층은 가구 여건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가구 내에 저임금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가 2인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는 빈곤상태로 빠질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러한 이유에서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은 추가로 일할 수 있는 가구 구성원의 취업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 문제는 가족 내 근로연령층의 취업을 억제하는 요인, 즉 상시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나 환자 그리고 노인이 존재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돌봄과 취업 사이에서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중 저임금 노동으로 돌봄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할 수 없거나, 돌봄을 대신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취업을 포기하게 된다. 여성 한부모 가구들이 주로 직면하는 문제이다. 이는 단순히 여성가장에게 직업훈련을 시켜서 좀 더 임금이 높은 일자리로 이동시킨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구 내 요인의 영향을 말해 준다(석재은, 2004, pp. 188-189; 김은하, 2008, pp. 18-24; 최옥금, 2008, pp. 71-72; 변금선, 2012, p. 269).

근로빈곤층의 이러한 특성은 이들이 개인과 가구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기본적인 욕구의 절박성과 이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의 부족, 그리고 취업활동을 제약하는 다양한 문제를 잘 보여 준다. 근로빈곤층이 가계 부채 문제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집단이라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4. 근로빈곤층과 가계부채 문제

오늘날 가계부채는 경제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부채가 없이 생활하기란 불가능하다. 실직이나 사업 부진 등에 따른 소득 감소 문제가 발생하면, 저축이 없는 가구라면 당연히 박탈과 부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근로빈곤층은 부채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의 발생 확률이 높고, 일단 부채가 발생하게 되면 상환능력이 낮아 부채의 악순환에 빠질 위험성이 크다. 노동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에르(Pierre)에게 돈을 빌려 폴(Paul)의 빚을 갚는 방식을 되풀이할 위험성이 큰 것이다(Kumhof & Ranci re, 2010, p. 3).

근로빈곤층은 소득이 낮고 불안정한 상황에서 가족 부양에 따른 지출을 감당하기 벅겁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추가 지출이 필요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어떤 것은 지출을 줄이고 박탈을 인내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대표적인 지출 절감 항목이 바로 교육비이다. 대다수 근로빈곤층은 자녀 교육비 지출을 늘리고 싶지만, 현실에서는 가장 먼저 줄일 수 있는 지출이 되기도 한다. 당장 가족의 거처를 유지하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임대료나 식생활비는 줄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어떤 소비 지출은 도저히 줄일 수 없으며 부채를 통해서라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문제는 소비 영역에서 신용카드나 할부판매가 증가하면서 이들에게서 소비와 관련된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제6장, 근로빈곤층 과중채무자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 말해주는 것처럼, 이들은 신용카드로 생활비나 임대료를 지불하는 과정에서 더 심각한 부채 문제에 빠져들게 된다. 저소득층에게서 생활비 조달이나 부채 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생계형 부채가 신규대출의 증가로 이어질 개연성 크다는 연구 결과 또한 이러한 위험성을 말해 주는 것이다(조영무, 2015, p. 27). 참고로 생활비 및 부채 상환 등을 목적으로 한 신용대출 비중은 2012년 40.1%에서 2015년 43.0%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1, 2분위 등 저소득층의 경우 비중이 각각 2012년 54.3%, 41.9%에서 2015년 61.6%, 48.0%로 각각 7.3%포인트, 6.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현대경제연구원, 2016, p. 4).

공급자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가 존재한다. 현재 근로빈곤층은 각종 생계형 대출을 위해 비은행금융기관을 이용하거나, 대부업체, 심지어는 일수나 월변 등을 이용하고 있다. 이는 저신용자 비중이 높은 근로빈곤층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정책당국의 책임 문제 또한 적지 않다.⁹⁾ 먼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문제를 지적할

9)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문제를 다룬 전성인의 2011년 원고를 참조.

수 있다. 제1금융권은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는 대신 신용카드를 통해 높은 수익을 거두고,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 그리고 기타 사금융기관은 공세적 대출 광고와 높은 금리로 저신용자와 빈곤층을 표적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어 금융기관들 또한 각종 대출의 만기 연장을 쉽게 허락하는 방식으로 임해 왔다. 원금 상환 없이 대출 만기를 연장함에 따라, 상환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덜어 주고 부채 감축을 위한 노력을 소홀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이는 근로빈곤층이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상환함으로써 부채 문제를 장기화하는 경향과도 관련이 있다. 끝으로 신용카드 대출 등이 익명성과 편의성을 이유로 근로빈곤층이 지나치게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다는 점이다.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나 각종 할부구매는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고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점에서 편의성이 높은 반면, 이자 또한 매우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근로빈곤층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언급해야 할 사항은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증가와 그에 따른 빈곤화 문제이다. 이는 한국 근로빈곤층의 부채 문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먼저 OECD 국가에서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은 2015년 현재 평균 14.8%이지만, 한국은 21.4%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자영업가구는 임금근로자가구에 비해 더 많은 가계부채를 갖고 있으며, 부채의 질 또한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사업 부진이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 부채 원리금을 제대로 갚을 여력이 없을 뿐 아니라, 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의 청산 또한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부채를 해결할 개연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경우,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할 개연성이 높은 것이다(김재철, 2017, pp. 1-4).

문제는 박탈과 부채라는 두 가지 선택 중 어느 것도 근로빈곤층과 해당

가족 그리고 국가와 사회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다. 근로빈곤층 당사자와 아동의 결핍은 자녀에게 지우기 힘든 상처를 남기고, 빈곤을 대물림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주거비나 의료비 등을 조달하기 위해 부채를 져야 하는 상황 또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상환능력이 낮은 근로빈곤층에게 과도한 부채를 지게 하는 것은 이후에 발생할 상환연체와 채무불이행 그리고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방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낮은 소득으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근로빈곤층이 장기간 감당해야 할 대가 또한 혹독하다. 설사 전환대출이나 신용 회복 등의 절차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빈곤층과 가구 구성원이 감당해야 할 고통은 여전히 매우 크다.

사회보장제도와 금융정책, 특히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소극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많은 근로빈곤층은 여전히 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남겨져 있으며, 이들의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상환능력이 부족한 집단의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근로빈곤층 지원정책 또한 방대한 사각지대를 남겨 두고 있으며, 이들의 근로소득을 통해 충족되지 않는 욕구를 해소하는 데 소극적이다. 이는 각종 정책이 근로빈곤층으로 하여금 부채를 통해 삶을 영위하게 방임하는 측면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지나치게 잔여적인 정책의 포괄범위는 중산층 이상의 소득계층이 부채로 인해 빈곤화되는 위험에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 원승연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위험을 경고한 바 있다. 이미 가난한 최하위소득계층을 제외한 모든 소득계층에서 금융부채 수준과 소득분위의 하락 가능성이 비례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대출에 필요한 신용등급이 낮거나 미래소득이 불안정한 집단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의 대출을 이용하게 될 개연성이 크고, 소득 불안과 채무상환 부담의 증가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원승연, 2015, pp. 6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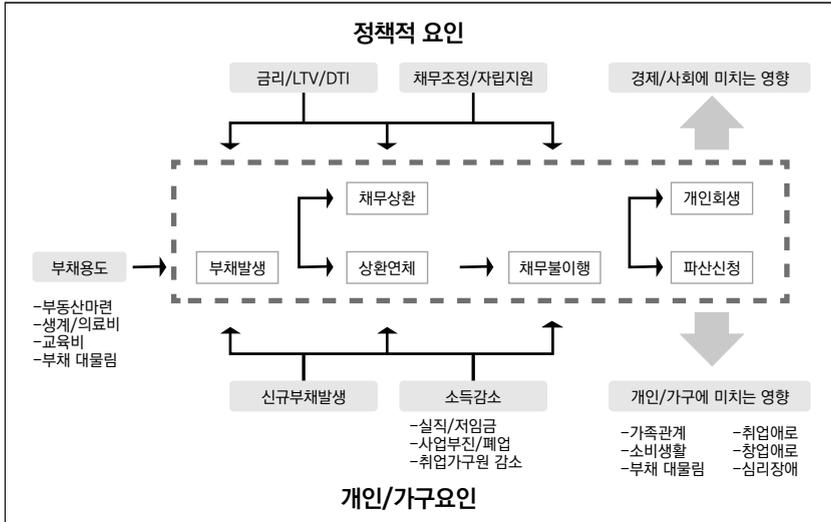
제4절 가계부채의 발생과 파급효과

가계부채는 다양한 경로로 발생하고 증가하며 과도한 부채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또한 다양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각 개인의 합리적, 비합리적 선택도 큰 영향을 미치지만, 이러한 선택과 무관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또한 존재한다. 그것은 경제적 충격과 같은 요인 외에도 각국의 경제사회정책, 특히 금융정책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한번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되면 그것을 해결하기까지 큰 고통이 수반된다는 점이다.

1. 가계부채의 발생 및 확대의 메커니즘

개별가구에게서 부채가 발생하고, 그것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고, 연체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고, 개인회생 및 파산에 이르는 과정에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각 개인이 부채에서 벗어나거나 악순환 고리에 빠져드는 경로는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경로는 각 개인의 선호나 합리적 판단에 따라 선택되는 것만도 아니다. 그것은 때로 취업상태나 소득 감소 등의 상황, 금융시장 여건과 정부정책 등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생애주기에서 각 개인이 직면하게 되는 실직이나 파산, 그리고 예기치 않은 큰 지출이 필요한 사건 등은 각 개인의 합리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금리 변동이나 부동산가격 변동 또한 각 개인의 선택에서 벗어난 일이다. 끝으로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된 정부정책이나 부동산대책 또한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래 그림은 가계부채가 발생하고 증가하며, 채무불이행과 파산 등에 이르는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한 것이다.

[그림 2-2] 가계부채의 생산과 확대 그리고 재생산 메커니즘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원인과 관련해서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수요 측면의 원인으로는 1) 주택가격 상승이나 유동성 증가에 따른 주택 구매의 증가, 2) 대출금리의 인하, 3) 주택이나 부동산 구입에 혜택을 주는 조세제도, 4) 경기침체에 따른 자영업자 등의 소득 감소, 5) 기업 부실에 따른 근로자 해고 및 실업의 증가(소득 감소), 6) 조기퇴직이나 실직 상황에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7) 저축률의 감소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공급 측면의 원인으로는 금융기관들의 과잉대출 및 카드 발급 경쟁을 예로 들 수 있다(김정식 등, 2012, pp. 5-6).

위에 언급한 제반 원인 중 최근 각국의 가계부채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원인은 저금리와 주택 구매 증가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미국 뿐 아니라, 덴마크나 스페인 등 많은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며, 최근 한국의 가계부채 또한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가계부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이를 말해 준다. 저금리 상황에서 금융

기관들은 앞다투어 대출을 확대하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였고,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기대감으로 많은 가구가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였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는 단기간에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OECD 국가 대부분이 1990년대 중반 이후 경험했던 현상이다.

하지만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는 고통스럽게 그것을 청산하는 디레버리징(de-leveraging) 과정을 거치게 된다. 2008년 리먼 쇼크 이후 금리가 인상되고 대출 조건이 엄격해지면서, 가계부채는 많은 국가에서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게 된다. 이는 1990년대 중반 금융기관들이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경쟁적으로 대출을 확대한 국가에서 나타났던 현상이다. 주택담보와 관련한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금리가 인상되자, 자산 대비 많은 부채를 지고 있던 가구들이 주택을 매각하고, 주택가격이 폭락하면서 담보가치 하락으로 다른 가구들도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연쇄작용이 일어났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위기를 경험한 국가에서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물론 그것이 가처분소득이 증가한 결과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많은 부채가구가 매입한 주택을 다시 매각하는 자산 감소를 통해 부채를 정리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경험하였다.

물론 부채 상환을 감당하지 못하는 현상은 빈곤가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해당 가구의 상환능력, 특히 소득능력을 초과한 부채를 지고 있는 과중채무(over-indebtedness) 가구의 문제인 셈이다. 하지만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중이 높은 집단은 아무래도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이나 빈곤층일 개연성이 높고, 이들은 고용불안에 따른 잦은 소득 단절로 연체나 채무불이행에 이를 위험성도 크다. 이는 부채금액이 작다고 문제가 덜 심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의미한다.

2. 과중채무의 발생 원인

왜 가계부채는 상환하기 힘든 과중채무로 발전하는가. 과중채무가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거시경제적 충격, 2) 가구원의 취업상태, 3) 높은 부채 상환 부담, 4) 개인의 비합리적인 소비행태 등이 그것이다(Disney, Bridges & Gathergood, 2008, pp. 27-34). 참고로 위의 네 가지 원인 중 앞의 세 가지는 사회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반면, 마지막 하나는 개인의 소비 관련 태도와 관련이 있다.

첫째, 거시경제 충격은 과중채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제로 유럽연합에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실업률 증가 충격이 과중채무 위험을 약 10% 이상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Du Caju, Rycx & Tojerow, 2016, p. 3). 다만 이 분석 결과는 경기 충격 이전에 과중채무가구 비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비율 증가가 크게 나타났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를테면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나 2008년의 리먼 쇼크 등이 거시경제적 충격에 해당된다.

둘째, 취업상태가 소득 감소와 연동되어 과중채무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실제로 취업자에 비해 비경제활동인구나 실업자가 소득 감소로 과중채무 상태에 빠질 확률이 높고, 취업자 중에서는 비임금 노동자의 과중채무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는 모든 국가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국가별로 보면, 실업이 과중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참고로 스페인, 프랑스, 포르투갈 등 라틴유럽 국가에서 실업자가 취업자에 비해 과중채무자가 될 확률은 2배 미만인 반면, 오스트리아와 벨기에, 이탈리아에서 그 확률은 4배 이상이다. 가구유형별 분석 결과를 보더라도 근로연령대 가구원의 취업상태가 중요하다는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단신

가구가 다른 부부가구에 비해 과중채무가구가 될 확률이 높고, 가구주 연령이 젊을수록 실업 충격으로 과중채무자가 될 위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말해 준다(Du Caju, Rycx & Tojerow, 2016, p. 4).

셋째, 금융제도가 과중채무와 그 악순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참고로 담보설정비용이 높은 국가에서 실업자와 퇴직자가 과중채무자가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출기관이 채무불이행 위험성이 큰 집단에게 더 높은 이자율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대출에 따른 손실 위험이 큰 경우, 높은 이자율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부담이 빈곤층을 과중채무의 악순환구조로 밀어 넣고 있는 것이다(Du Caju, Rycx & Tojerow, 2016, p. 25).

넷째, 차주의 금융 관련 지식과 태도가 과중채무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서 행동주의경제학에 근거한 전망이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개인이 대출을 선택함에 있어 미래소득을 과신하거나 경제상황을 잘못 판단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자기 과신이나 충동적 소비, 외부 시선을 의식한 태도 등 감성적 요인이 과중채무를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 원인은 과중채무 발생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교육이 퇴직자들의 과중채무 발생을 억제하는 예방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이러한 해석에 근거하고 있다(Du Caju, Rycx & Tojerow, 2016, pp. 12-13).

3. 과중채무가 개인과 가구에 미치는 영향

사람들에게 부채란 다양한 형태로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그 부채가 일정 한도를 넘어 상환능력을 넘어서게 되면, 그것이 사

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지게 된다. 현대사회처럼 거의 대부분의 가구가 다양한 형태로 부채를 안고 생활하는 경우, 부채에 대한 심리적 민감도는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과중채무로 발전하는 순간, 그것은 심리적 압박을 넘어 생활태도의 변화, 노동방식의 변화, 더 나아가 자살 생각 등에 이르는 다양한 충격을 가할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 연구자는 채무 상환의 압력이 심리적 긴장도를 높이고, 그로 인해 채무자는 인생의 페달을 격렬히 밟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Clerc, 2003, p. 83).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고, 더 많은 시간을 일하도록 압박하며, 주위를 둘러볼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 과중채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가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이나 자신의 가난이 부끄럽다는 수치심 등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 상태는 외부의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가 어떤 행동으로 발현되는가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이는 과중한 채무가 사람들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각국 또는 각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요인에 의해 매개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각국의 노동시장구조나 가족구조 그리고 문화적 태도, 더 나아가 정부정책 등에 따라 그 양태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체계적인 국제비교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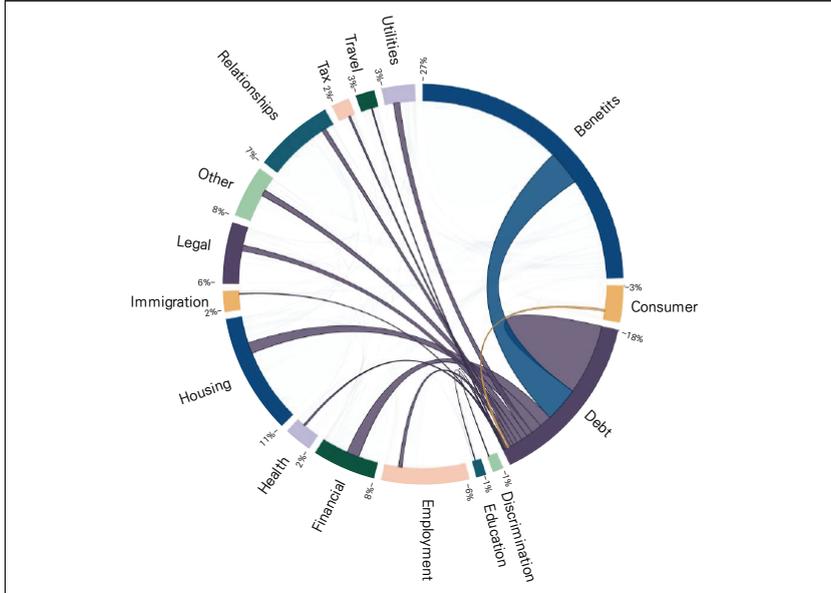
이처럼 신뢰할 만한 연구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운 그러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다소 도식화된 서구적 해석 또한 발견할 수 있다. 일찍이 미국 인류학자 베네딕트(Ruth Bénédicte)는 문화 패턴에 대한 연구 및 일본 문명에 대한 연구를 통해 동서양의 문화를 수치심(honte)의 문화와 죄

의식(culpabilité)의 문화로 구분한 바 있다. 그리고 수치심과 죄의식은 모두 각 개인의 내적 분열을 반영하지만, 전자는 문제의 원인을 주체의 밖에서 찾고, 후자는 그 원인을 주체의 내부에서 찾는다는 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좀 더 확대 해석하면, 수치심과 죄의식은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일본 사회에서의 자살은 부채를 상환하는 상징적 표현에 가깝다는 것이다. 즉 자살을 통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다시 그 집단으로 복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이다(Sarthou-Lajus, 1997, p. 167).

이제 이 문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각 개인이 과도한 부채를 지고 해결이 난망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직면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과중채무가 노동과 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또한 가족관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어떠한 과중채무가 가족들의 채무 상환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과중채무의 당사자는 어떠한 심리상태에 놓이게 되는가. 과중채무의 당사자에게 외부의 시선은 중요한가. 만일 그렇다면 그가 속한 집단 내에서 그러한 사실이 알려지는데 따른 어떤 불이익을 예상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모든 단계에서 각 개인은 어떠한 심리상태에 놓이게 되며,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는가. 이는 향후 가계부채, 특히 과중채무가 개인과 가구에 미치게 되는 영향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아래 그림은 통제할 수 없는 부채, 즉 일종의 과중채무가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물론 영국의 과중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라는 점에서 그 충격의 유형과 정도는 상이하게 인식될 수 있다. 하지만 가계부채 문제가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급여, 주거, 고용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등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인구집단별로도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 준다.

[그림 2-3] 가계부채가 사회에 미치는 충격



자료: Lane, J. (2016). A debt effect?: How is unmanageable debt related to other problems in people's lives? p. 15.

지금까지 연구 결과는 주로 가계부채가 어떤 집단 또는 어떤 소득계층에게 심각한 부담이 되는지, 구체적으로는 소비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과중채무가 어떤 소득계층이나 집단에게서 사회경제적 박탈을 얼마나 심각하게 조장하고 있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반면에 가계부채가 개인의 우울이나 자살, 그리고 이혼이나 가구 해체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이를 규명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그나마 과중채무가 자살이나 자살 생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최근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는 지금까지 많이 언급되어 왔던 연구보다 최근 진행된 연구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가계부채가 사회경제적 박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다. 오늘날 가계부채나 과중채무가 빈곤층이나 저소득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과중채무는 어떤 계층이든 개인파산 등의 형태로 빈곤층으로 추락시킬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과중채무란 개별 가구의 소득이나 자산과의 관계에서 규정되는 상대적 개념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빈곤층에게 과중채무란 채무 상황에 소요되는 지출을 높여, 소비 지출에 투입될 재원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극도의 결핍을 초래할 개연성이 훨씬 크다는 점은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가계부채가 생계, 건강, 주거 등의 영역에서 사회경제적 박탈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박탈이 소득수준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고소득층은 다른 비용을 절약하여 부채 상황에 다른 충격을 완화할 여력이 있지만, 저소득층은 기본적 욕구 자체가 박탈되는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다(박정민, 이승호, 2017, p. 104).

그리고 과중채무가 미치는 영향으로 자살이라는 극단적 충격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과중채무와 자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실증연구를 통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외국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참고로 일본의 자살 대책기구는 자살의 원인 중 하나로 경제적 원인, 특히 다중채무를 들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본격적인 실증연구를 통해 확인되지는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또한 이를 뒷받침할 데이터의 부재와 관련이 있다. 더욱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별도의 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양한 행정데이터의 연계를 통해 빅데이터를 구축함으로써 준비해야 할 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는 최근 한국복지패널데이터나 한국노동패널데이터 등을 토

대로 이러한 분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복지패널데이터는 가계부채가 각 개인의 심리상태나 자살 생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한 최근 연구 결과들은 가계부채에 따른 심리적 부담과 자살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장기 부채 부담 위험군에 속한 이들이 자살을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고, 그중에서도 사채와 카드빚을 가진 집단에서 그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그리고 사채나 카드빚을 지게 된 집단이 처한 상황의 시급성이나 부채 상환능력이 이러한 극단적 생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윤정, 송인한, 2015, pp. 74-75; 박정민, 오욱찬, 구서정, 2017, pp. 185-187).

가계부채 그리고 과중채무 문제가 개인과 가계에 미치는 충격은 우리 사회 전 소득계층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해야 할 점이다. 그것은 과중채무가 개인파산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 해당 개인이나 가구가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사회경제적 박탈이나 심리적 충격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4. 과중채무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에 대해

최근에는 각국의 가계부채 대책에서 네 번째 원인, 즉 채무자들의 금융 관련 지식과 태도를 강조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의 불합리한 소비태도에 주목하여, 금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빈곤층의 과중채무나 부채 상환 연체가 상환능력의 부족보다 상환의지의 부재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각국 정부는 금융교육을 통해 소비와 관련된 빈곤층의 태도를 바꾸게 하는 것이 과중채무 예방대책 중 가

장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 보다 강한 주장은 금융문맹(financial illiteracy)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국가는 과중채무 예방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금융교육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이 교육과정에는 정부뿐 아니라 시민단체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이 보고서의 제3장에서 다루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 정부의 저소득층 가계부채 대책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빈곤층에 대한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국가와 금융기관의 책임을 묻기보다 금융소비자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비판 또한 존재한다. 이는 빈곤층이 금융문맹이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빈곤층은 맹목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맥락 속에서 고유한 추론방식과 표현체계 그리고 평가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금융문맹이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빈곤층이 속한 공간이 갖는 고유한 회계방식과 사고 그리고 소비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프레임의 복잡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경제인류학적 관점에 기초한 이러한 분석들은 시간에 대한 관점,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도덕적 의무에 대한 태도 등이 지역이나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처럼 다양한 관점과 가치는 부채와 금리 그리고 상환 의무와 관련해서 다른 정책적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거래란 단순한 화폐거래가 아니라 사회적 정체성을 구축하는 구성요소이기 때문이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아무리 현대화된 금융지식에 기초한 교육훈련이라도 빈곤층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빈곤층은 저축과 부채에 대한 다른 프레임 워크를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고전경제학이 가정하는 물질적 편익의 극대화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

는 데 더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 금융거래는 사회적 정체성을 구축하는 기능 중 하나인 셈이며 빈곤층이 살아가는 공간 속에서 그들의 선택은 이성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적 금융지식과 태도는 권력을 가진 어떤 집단에게는 유용할 수 있지만, 빈곤층에게는 그리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Perrin-Heredia, 2009, pp. 100-110 ; Guéin, 2012, pp. 19-21).

빈곤층에게 가계부채 탕감, 금리 인하 그리고 채무 조정 등의 지원대책은 필요하다. 그리고 금융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 모든 주장과 대책을 선의로 간주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서벳(Servet)의 비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에 따르면, 21세기의 경제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 착취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소액대출사업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새로운 금융산업은 빈곤층이 기회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소득이나 사회보장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백을 메우는 데 보잘것없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정치경제학적 접근법은 금융교육에 대한 강조가 암묵적 또는 명시적으로 개인채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정부와 대주(貸主)의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국가의 협력이나 지원을 받은 대출기관의 무책임성을 충분히 확인시켜 주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즉 과중채무가 발생하는 구조적인 원인은 말하지 않고, 개인채무자의 가계관리 능력 부재로 문제를 호도한다는 것이다. 금융교육은 금융규제의 문제점을 흐리는 방법의 하나라는 것이다(Servet & Saig, 2013).

제 3 장

주요국 가계부채 문제와 빈곤층 지원정책

제1절 각국 가계부채 문제의 추이와 최근 동향

제2절 영국의 가계부채 실태 및 지원정책

제3절 프랑스의 가계부채 실태 및 지원정책

제4절 일본의 가계부채 실태 및 지원정책

3

주요국 가계부채 문제와 << 빈곤층 지원정책

제1절 각국 가계부채 문제의 추이와 최근 동향

21세기 전 세계의 많은 국가가 가계부채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국가는 뒤늦게 가계부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그것은 주로 부동산담보대출의 급격한 증가와 관련이 있으며, 그것은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와 그에 따른 금융기관들의 공격적 마케팅과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의 금융기관들은 빈곤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상환능력에 대한 신중한 평가 없이 대출을 확대하였다. 그로 인해 지금도 많은 국가에서 빈곤층 과중채무 문제가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물론 국가마다 저소득층 가계부채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황이 다르다. 어떤 국가는 이미 1990년대부터 가계부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전체적인 안정세 속에서 저소득층에게 나타나는 문제에 집중할 수 있었다. 다른 국가는 2008년 이후 저금리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하고 과중채무 문제가 전체 사회로 확산된 상황에 처해 저소득층 과중채무 문제에 집중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그리고 또 다른 국가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 금융산업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고 저소득층 가계부채 발생을 통제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러한 국가로 각각 일본과 영국 그리고 프랑스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이들의 사례는 다른 정치경제적 환경과 소득분배구조하에서 나타났다는 점에서 신중한 해석

과 시사점 도출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은 때로 모범사례로, 때로 반면 교사로 많은 학술적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

1. 각국의 가계부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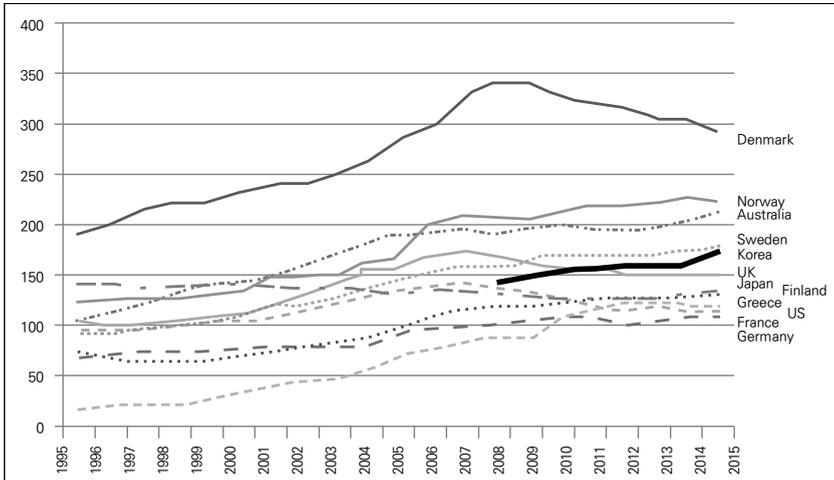
과거에도 가계부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며, 빈곤층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다. 하지만 21세기 가계부채 문제는 그 성격이 다르다. 오늘날 사람들은 더 이상 가계부채 없이 살아가기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가계부채를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 그것이 가진 순기능 또한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각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 추세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것이 경기상황과 실업률 증가에 따라 불가피한 것이든, 소비욕구의 증가에 따라 자연스러운 것이든, 부동산가격 상승에 편승하려는 사람들의 욕망의 표현이든, 부채가 많은 가구의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증가하여 채무 당사자와 해당 가구원의 삶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 특히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큰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는 경기침체를 초래하고 실업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리고 과중채무에 시달리는 가구와 그 구성원, 더 나아가 사회시스템 전반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각국의 가계부채 문제가 국가마다 상이한 양태로 발전해 왔다는 점이다. 물론 경제영역의 세계화로 개별국가의 경제와 금융이 세계 경제와 무관하게 작동하기 힘들며, 세계 금융위기와 같은 거대한 충격에 직면했다는 점에서 일련의 공통점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각국의 가계부채 문제는 각국이 처한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에

따라 상이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그 경로 또한 다양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아래 그림은 가장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각국의 가계부채 비중, 즉 가처분소득에서 가계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 그 흐름을 보여 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주요국의 가계부채 비중이 2000년대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예외적으로 가계부채 비중이 감소한 국가도 존재한다. 그리고 일부 국가는 가계부채 비중의 등락이 매우 큰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그러한 변동성이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그림은 1995~2015년 OECD 주요 국가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1] 각국 가계부채의 가처분소득 대비 비중 추이



자료: OECD. (2017). Dette des ménages(<http://oecd.stat>. 2017. 9. 10. 인출).

78 근로빈곤층의 부채에 대한 질적연구 - 부채발생과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표 3-1〉 OECD 주요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 추이

	호주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1995	103.6	192.1	71.0	66.4	97.2	17.0	38.5	139.4
1996	109.4	199.4	66.0	69.6	101.8	20.5	39.6	141.3
1997	119.6	212.6	63.0	72.8	105.4	21.6	42.1	138.9
1998	129.3	220.6	64.7	72.4	109.9	21.2	46.0	138.1
1999	139.8	225.5	66.0	74.9	114.8	23.5	50.8	138.7
2000	140.9	232.0	69.2	74.8	116.5	30.4	54.5	139.3
2001	146.2	236.8	70.8	77.0	113.0	37.4	56.5	139.6
2002	157.6	242.2	75.6	77.5	113.6	43.8	59.4	137.6
2003	168.1	247.4	79.9	81.1	112.0	47.8	62.5	136.4
2004	181.5	260.9	88.6	81.9	110.4	55.5	66.2	135.0
2005	190.1	281.7	99.2	88.4	108.1	67.6	71.3	134.3
2006	193.9	299.3	109.4	93.6	105.7	74.1	76.1	134.5
2007	195.8	324.6	114.7	96.6	102.6	82.7	80.2	130.5
2008	190.9	339.8	117.2	98.7	99.4	86.9	81.6	129.3
2009	197.7	339.8	117.5	104.3	100.3	87.6	86.5	127.6
2010	198.2	326.2	119.5	107.5	98.3	105.2	90.4	127.1
2011	196.5	319.9	122.5	107.1	96.5	111.9	89.9	126.7
2012	195.6	314.2	124.6	103.3	95.2	119.8	92.0	125.1
2013	196.5	305.8	124.4	104.2	94.5	122.4	90.7	128.4
2014	203.7	303.1	125.8	106.0	93.7	117.8	89.8	131.0
2015	211.8	293.1	129.5	108.3	92.9	118.6	89.2	135.1
2016		290.3	133.8					

자료: OECD. (2017). Dette des ménages(<http://oecd.stat>. 2017. 9. 10. 인출).

〈표 3-2〉 OECD 주요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 추이

	한국	노르웨이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
1995		123.4			90.2	102.2	94.6
1996		124.8			92.3	99.9	96.4
1997		127.1			97.4	100.9	97.5
1998		125.5			101.1	104.8	98.3
1999		129.3		79.7	104.9	107.6	102.3
2000		135.3		84.2	108.2	109.7	103.6
2001		148.2		87.1	118.7	116.3	107.4
2002		147.8		94.1	121.1	129.1	112.5
2003		151.4	19.7	102.3	127.5	141.2	120.4
2004		161.0	21.6	113.6	136.9	154.3	127.2
2005		166.7	25.1	128.2	146.9	156.9	135.0
2006		198.5	31.3	144.3	153.7	168.2	140.1
2007		207.2	39.4	154.4	157.4	173.3	143.5
2008	143.3	207.3	51.5	150.2	158.4	169.4	135.9
2009	147.7	206.4	52.7	145.2	163.1	161.4	134.5
2010	152.4	211.9	57.2	148.1	170.6	156.2	128.1
2011	157.9	216.3	60.5	142.4	168.5	156.9	120.2
2012	159.4	219.9	58.4	141.0	167.0	152.2	114.8
2013	160.2	221.9	60.1	134.3	169.5	150.3	116.2
2014	162.9	224.8	61.9	127.7	171.9	151.7	113.5
2015	170.0	221.4	64.2	121.9	177.8	149.5	112.1
2016		230.0			182.9	15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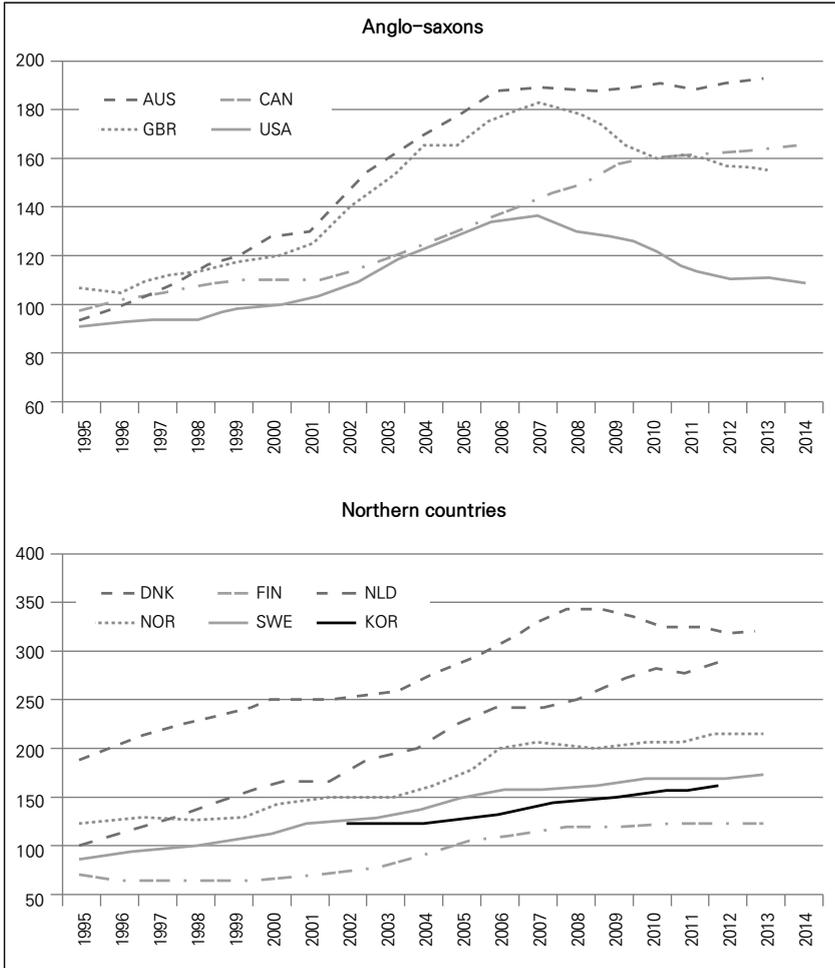
자료: OECD. (2017). Dette des ménages(<http://oecd.stat>, 2017. 9. 10. 인출).

2. 각국 가계부채 문제의 특징

OECD 주요국 가계부채 문제의 몇 가지 특징과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목하고 있다. 1) OECD 각국의 가계부채 수준은 국가별로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2013년을 기준으로 각국의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소 60%에서 최대 320%까지 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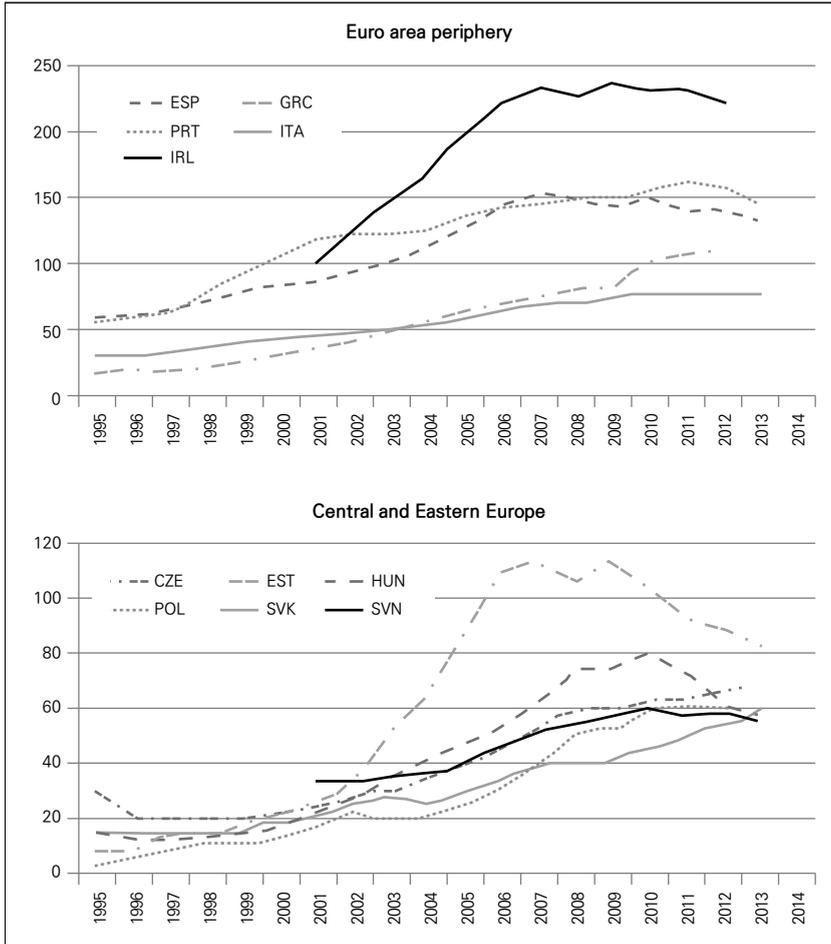
우 폭넓게 분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로는 금융시스템의 차이, 주택가격의 수준, 인구학적 특성, 공적연금제도, 사회안전망 그리고 저축과 부채에 대한 사회적 태도 등을 지적하고 있다. 2) 2000년대 초부터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양상에 따라 각국을 영미권, 북유럽권, 남부유럽권, 동유럽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북유럽권 중 스웨덴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아래 그림 참조). 3) 가계부채에 따른 지출 부담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가구가 많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소득수준이나 자산 규모에 비해서는 저소득가구의 부채 부담이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집단은 경기 충격이나 실업 등의 위험에 처하는 경우, 가계부채 부담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다양한 위험에 처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4) 총량적으로 가계부채는 자산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자산을 처분한 가치와 부채를 비교하는 경우, 전체적으로 자산 규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5) 가계부채는 가구유형별로 불균등하게 분포하고 있다. 이는 소득계층별 그리고 가구유형별로 가계부채의 가처분소득이나 자산 대비 비중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단신가구와 한부모가구에서 부채 비중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6) 연체와 압류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연체와 압류는 다음 두 가지 유형의 국가군에서 강하게 나타났는데, 하나는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서 대출기관이 과도한 리스크를 감수하였거나, 대출기관이 외국자본에 대한 의존성이 큰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경기침체와 주택가격의 변동이 큰 경우라는 것이다(André, 2016, pp. 6-13).

[그림 3-2] OECD 주요국의 가계부채 추이와 그 유형별 특징



자료: André, C. (2016). Household debt in OECD countries : Stylised facts and policy issues. p. 9 (figure 2).

[그림 3-3] OECD 주요국의 가계부채 추이와 그 유형별 특징(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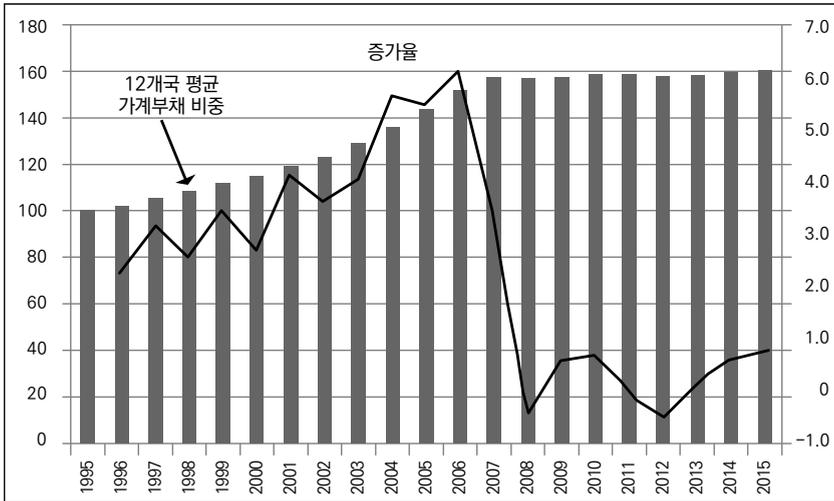
자료: André, C. (2016). Household debt in OECD countries : Stylised facts and policy issues. p. 9 (figure 2).

위에 언급한 각국 가계부채 문제의 특징과 관련해서 어떠한 점을 추가로 지적할 수 있는가.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물론 독일처럼 가계부채 비중이 지속적

으로 감소한 국가도 존재한다. 독일은 2000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116.5%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가계부채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 1995년부터 2015년까지 20년간 비교 대상 12개 국가 중 10개 국가에서 가계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8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은 7개 국가에서 가계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비교 대상 국가의 평균 가계부채 비중(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995년 99.7%(11개국 평균)에서 2015년 160%(12개국 평균)까지 증가하였다.

[그림 3-4] OECD 주요국의 평균 가계부채 비중 및 증가율 추이



주: 가계부채 비중 =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중

자료: OECD(2017), Dette des ménages의 자료를 가공(http://oecd.stat. 2017. 9. 10. 인출).

둘째, 1995년 이래 각국의 가계부채 문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 리먼 쇼크였다는 점이다. 아래 그림에서 평균 가계부채 비중의 증가율 또한 보여 주고 있는데, 2007년을 기점으로 그 증가율이 급락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리먼 쇼크는 상대적으로 세계경제시스템에 대한 의존성이 크고 금융정책에서의 제약이 많은 국가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 국가들은 저금리와 부동산 붐 그리고 신용 공급의 경쟁적 확대가 맞물려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다 이후 리먼 쇼크를 기점으로 급격한 가계부채 조정과정에 들어서게 되었다(Mian, Sufi & Verner, 2015, pp. 35-36). 미국에서 시작된 가계부채 문제가 각국의 경제성장률의 하락과 세계적 경기침체에 영향을 미쳤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리먼 쇼크가 가계부채의 양적 변화에 가시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국가 또한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각국의 경제 여건과 금융 노동시장 여건, 가계대출과 관련된 정책적 규제 정도, 그리고 부동산가격의 상승 속도 등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났음을 보여 준다.

셋째, 위의 그림의 추세 그리고 아래 표의 가계부채 비중의 국가별 최고시점을 보면, 지난 20년간 각국 가계부채가 언제 정점을 찍고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 흐름을 유형화할 수 있다. 여기서는 크게 다음 세 가지 경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전 기간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가군이다. 이들 국가는 가계부채 비중의 정점이 2013년 이후인 경우이다. 향후 추가적인 상승도 나타날 수 있는 국가들이다. 우리나라 또한 이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2008년 리먼 쇼크를 정점으로 가계부채 비중이 빠르게 감소하는 국가군이다. 이들 국가는 덴마크, 스페인, 영국, 미국 등을 지칭한다. 하지만 이 국가들 중에도 최근 다시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도 존재한다. 3)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국가군으로 일본과 독일이 해당된다. 이 두 국가는 리먼 쇼크 훨씬 이전 시점인 1996년과 2000년 가계부채 비중이 정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3. 각국의 가계부채와 과중채무(over-indebtedness)

각국에서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한 원인이나 그것이 사회에 미친 충격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연구 주제임에 분명하다. 그것은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가계부채가 어떤 집단에게 어느 정도의 경제 사회적 충격을 주었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충분히 연구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각국 정부나 학계 모두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연구 성과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다고 자평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각국의 가계부채 관련 연구나 정책이 주목하고 있는 공통의 문제, 즉 과중채무(over-indebtedness)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주로 저소득층에게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하겠다.

가계부채의 총규모가 증가하고, 가처분소득에서 가계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것만으로 그것이 문제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가계부채가 국가경제와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수준일 때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정의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과중채무에 대한 기준은 국가마다 상이하다. 이처럼 정부와 연구자마다 다른 기준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국제비교를 위해 합의된 과중채무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각국의 가계부채 문제에서 과중채무의 실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이 문제가 왜 정책현안이 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과중채무와 관련된 선행연구 중 각국의 과중채무 실태와 해당 집단의 특징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국제비교연구는 많지 않다. 그중 비교적 자세한 연구로는 폰드빌 등(Fondeville et al., 2010)의 연구를 들 수 있다. 2010년 발표된 이 연구보고서는 2008년 시점에서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과중채무 문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참고로 이 연구는 과중채무를 1) 재정상태가 어려워 은행계좌에서 마이너스 대출을 사용하는 집단, 2) 재정상태가 어려워 지난 3개월 내 카드 결제액을 모두 지불하지 못한 집단, 3) 신용카드나 비주거용 부채에 대해 연체를 하고 있는 집단, 4) 임대료 등을 연체하고 있는 집단, 5) 기타 각종 공과금을 연체하고 있는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으로 파악한 과중채무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중채무가구는 은행계좌로부터 마이너스 대출을 받은 집단의 비중이 11.0%로 가장 높고, 신용카드나 매장카드의 미결제 잔액이 있는 집단의 비중이 4.9%로 다음을 차지하고, 기타 부채금을 가진 집단이 2.1%를 차지하고 있다. 마이너스 대출을 이용하는 집단이 가장 많은 국가는 슬로베니아(27.7%)와 독일(25.7%)이다. 그리고 신용카드 결제액을 모두 결제하지 못한 가구가 가장 많은 국가는 영국(21.9%)이다.¹⁰⁾ 둘째, 과중채무자는 저소득층에서 발생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분석 결과를 보면, 전체 가구의 과중채무 발생 확률은 4.6%이며, 중산층과 상위층(중위소득 60% 이상)에서는 4.2%인 반면, 빈곤층(중위소득 60% 미만)에서는 7.0%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물질적 박탈을 경험하는 집단에서는 9.0%로 증가하고 있다. 빈곤층 중 과중채무를 경험하는 집단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영국(13.7%), 그리스(12.8%), 독일(9.3%) 순이다. 그리고 물질적 박탈을 경험하는 가구 중 과중채무집단이 가장 많은 국가는 오스트리아(27.4%)와 독일(22.2%) 순이다(아래 <표 3-3> 참조). 셋째, 미결제 부채 금액이 가처분소득의 100%를 초과하는 과중채무자는 청년층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발생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서

10) 해석에 주의할 점은 위에서 마이너스 대출이나 신용카드 결제액 미결제 등을 경험한 가구 모두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각국의 공적연금제도 성숙도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인다. 넷째, 미결제 부채금액이 가처분소득의 100%를 초과하는 과중채무가구는 아동이 없는 가구보다 아동이 있는 가구에서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들은 생애주기에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주거 마련이나 아동 양육 등의 지출이 큰 집단이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미결제 부채를 가진 가구의 비율은 아동이 없는 가구가 3.8%인 데 비해, 아동이 1명인 가구는 5.5%, 아동이 2명인 가구는 6.2%, 3명 이상인 가구는 9.1%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가구형태를 보면, 단신가구 중 이러한 문제를 경험하는 가구는 4.3%인 데 비해, 한부모가구는 9.5%로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아래 <표 3-4> 참조). 다섯째, 미결제 부채금액이 가처분소득의 100%를 초과하는 과중채무가구는 미혼가구가 5.0%인 데 비해, 결혼한 가구가 4.1%, 이혼 및 별거가구가 7.5%, 사별가구가 1.7%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혼을 경험한 가구에게서 과중채무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말해 준다. 특히 이혼가구 중 과중채무가구의 비율이 높은 국가는 키프로스(13.9%), 영국(12.8%), 그리스(12.4%), 독일(11.2%) 순이다. 여섯째, 미결제 부채금액이 가처분소득의 100%를 초과하는 과중채무가구는 자가가구보다 민간임대가구 및 공공임대가구가 각각 8.2%와 8.7% 순으로 담보부채가 없는 자가가구의 3.2%보다 약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끝으로 소득 감소를 야기한 사건을 경험한 가구 중 과중채무가구의 비율을 보면, 실직이 4.1%로 가장 높고, 질병이나 장애가 3.6%, 시간당 임금 감소가 1.4%, 아동 양육이 1.4%, 퇴직이 0.9% 순이다(Fondeville, Özdemir & Ward, 2010).

〈표 3-3〉 소득계층별 미결제 부채 및 연체가구 비율(2008년 기준)

	전체	중위소득 60% 이상	중위소득 60% 미만	물질적 박탈경험 집단
Belgium	2.1	1.5	5.6	12.2
Bulgaria	3.9	2.5	9.0	6.5
Czech	1.9	1.5	6.1	4.1
Denmark	2.0	1.6	5.4	17.7
Germany	10.2	10.4	9.3	22.2
Estonia	0.7	0.3	2.2	3.8
Ireland	3.9	3.0	8.9	8.1
Greece	5.3	3.4	12.8	11.0
Spain	1.1	0.6	3.1	8.6
France	2.3	1.7	6.6	-
Italy	3.5	2.7	6.9	9.8
Cyprus	7.8	7.6	8.7	15.1
Latvia	1.8	1.7	2.4	4.0
Lithuania	0.1	0.0	0.2	0.2
Luxembourg	0.7	0.5	2.0	5.3
Hungary	2.5	2.0	5.9	5.2
Malta	0.9	0.7	2.0	-
Netherlands	1.8	1.4	5.8	15.7
Austria	6.7	6.2	9.9	27.4
Poland	0.0	0.0	0.2	0.1
Portugal	1.0	0.8	1.7	3.5
Romania	1.7	1.1	3.1	2.7
Slovenia	4.4	4.0	6.9	13.4
Slovakia	1.9	1.3	7.4	4.2
Finland	1.0	0.6	3.3	6.4
Sweden	0.6	0.4	2.3	7.3
UK	11.8	11.3	13.7	19.1
EU	4.6	4.2	7.0	9.0

자료: Fondeville & Özdemir & Ward. (2010). Over-indebtedness : New evidence from the EU-SILC special module, European Commission, Employment, Social Affairs and Equal Opportunities. p. 32, 〈table 9〉.

〈표 3-4〉 아동 유무에 따른 과중채무가구 비율(2008년 기준)

	아동 수에 따른 가구유형				가구형태		
	없음	아동 1인	아동 2인	아동 3인+	단신 가구	한부모 가구	기타
Belgium	1.4	1.7	2.8	4.5	2.2	4.0	1.9
Bulgaria	1.8	5.3	4.8	13.5	3.2	8.6	3.9
Czech	1.6	1.7	2.9	3.5	2.3	3.9	1.8
Denmark	2.0	1.6	1.7	3.7	3.1	4.4	1.4
Germany	8.0	13.3	13.3	18.1	6.8	13.6	10.8
Estonia	0.5	0.6	1.2	1.1	1.2	1.9	0.5
Ireland	2.8	4.5	5.0	4.6	2.5	7.0	3.7
Greece	4.8	7.3	5.3	4.4	5.5	17.3	5.2
Spain	0.6	1.2	1.8	5.6	0.9	7.6	1.0
Italy	2.3	5.1	4.8	6.7	2.6	6.5	3.5
Cyprus	4.6	11.0	11.3	9.7	5.4	27.1	7.3
Latvia	1.6	2.1	2.9	0.5	1.9	3.7	1.7
Lithuania	0.0	0.2	0.0	0.0	0.0	0.8	0.0
Luxembourg	0.4	1.8	0.4	0.6	0.6	0.5	0.7
Hungary	1.6	3.2	2.8	5.8	1.8	4.8	2.4
Malta	0.0	0.0	0.0	0.0	0.0	0.0	0.0
Netherlands	1.5	1.9	2.6	1.9	3.2	5.2	1.4
Austria	5.6	7.3	9.0	7.5	6.5	15.7	6.2
Poland	0.1	0.0	0.0	0.0	0.1	0.0	0.0
Portugal	0.3	1.5	1.3	4.9	0.5	6.9	0.8
Romania	1.3	1.0	1.6	4.2	1.3	7.3	1.4
Slovenia	3.5	5.7	4.2	8.1	3.2	10.5	4.2
Slovakia	1.0	2.3	2.5	6.3	1.4	5.8	1.9
Finland	1.0	1.2	0.2	1.6	2.1	2.5	0.6
Sweden	0.5	0.7	0.6	1.4	0.8	2.1	0.5
UK	8.4	14.0	15.4	18.5	8.2	15.0	12.1
EU	3.8	5.5	6.2	9.1	4.3	9.5	4.8

자료: Fondeville & Özdemir & Ward. (2010). Over-indebtedness : New evidence from the EU-SILC special module, European Commission, Employment, Social Affairs and Equal Opportunities. p. 36, 〈table 11〉.

〈표 3-5〉 소득 감소 원인별 과중채무가구 비율(2008년 기준)

	전체	주된 소득 감소 원인					
		실직	질병/ 장애	임금 감소	자녀 양육	퇴직	이혼
Belgium	10.3	2.3	1.5	0.8	1.6	0.6	0.2
Bulgaria	21.9	8.3	2.4	1.9	2.8	0.7	0.2
Czech	17.6	2.9	1.0	2.1	2.6	0.9	0.4
Denmark	11.1	1.0	2.4	1.2	1.2	1.5	0.5
Germany	13.9	2.7	2.6	1.3	1.5	1.1	0.4
Estonia	9.4	3.4	2.6	0.8	1.2	0.3	0.2
Ireland	20.4	5.5	3.4	2.3	1.3	0.5	0.4
Greece	18.6	5.9	3.3	1.5	1.0	1.4	0.2
Spain	26.6	8.1	3.5	1.6	1.2	0.7	0.2
Italy	33.2	2.7	5.8	0.9	1.0	1.2	0.5
Cyprus	14.3	4.8	5.3	1.7	0.4	0.5	0.2
Latvia	21.8	6.1	3.5	1.6	1.3	0.3	0.3
Lithuania	23.1	5.0	1.5	1.9	2.2	0.2	0.3
Luxembourg	12.9	3.3	1.0	0.8	1.3	1.2	0.4
Hungary	27.9	7.8	3.3	2.3	2.4	0.9	0.7
Malta	:	:	:	:	:	:	:
Netherlands	9.8	2.2	1.6	1.2	0.3	0.7	0.3
Austria	19.3	2.6	1.7	1.0	1.7	1.3	0.5
Poland	17.1	3.6	3.0	1.4	0.8	0.5	0.4
Portugal	25.4	7.8	3.9	2.2	0.6	0.4	0.3
Romania	6.2	2.1	2.0	0.3	0.2	0.2	0.1
Slovenia	12.3	4.2	1.7	1.7	0.8	1.1	0.0
Slovakia	17.0	3.3	1.6	2.1	2.2	1.2	0.3
Finland	13.3	2.9	2.8	1.5	2.4	1.0	0.2
Sweden	13.0	1.7	2.0	1.0	2.4	1.2	0.3
UK	23.8	5.0	5.9	1.8	1.9	1.2	0.5
EU	20.1	4.1	3.6	1.4	1.4	0.9	0.4

자료: Fondeville & Özdemir & Ward. (2010). Over-indebtedness : New evidence from the EU-SILC special module, European Commission, Employment, Social Affairs and Equal Opportunities. p. 43, 〈table 17〉.

4. 분석 대상 국가의 선정

연구 주제와의 관련성 그리고 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가용성 등을 고려할 때, 위에 언급한 국가들 중 어떤 국가를 대상으로 가계부채 실태와 정책 사례를 살펴볼 것인지 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몇 가지 기준을 정해 분석 대상 국가를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여기서 고려한 기준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에 주목하였다. 이 점에 대해서는 2008년 가계부채 비중이 가처분소득 대비 339%까지 급격하게 증가한 뒤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덴마크가 해당이 될 것이다. 그리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진원지였으며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정치 문제가 되었던 미국 또한 해당이 될 것이다. 물론 추세를 보면, 미국 또한 리먼 쇼크 당시 가계부채 비중이 정점을 기록하고 이후 차츰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둘째, 이 연구가 근로연령층의 빈곤화와 가계부채 문제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계부채 문제가 야기한 사회적 충격이 컸던 국가에 주목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일본의 사례이다. 일본은 해당 기간 중 가계부채 비중에 큰 변화가 없었지만 다중채무와 과중채무 문제로 큰 홍역을 겪었기 때문이다. 이는 전체 가구에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높지 않다고 해서, 그 사회에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해 준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까지 가계부채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했던 영국의 사례도 매우 흥미롭다고 말할 수 있다. 부적절한 대출 관행과 그로 인한 사회적 충격 등의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 사례의 다양성에도 주목하

였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심각한 홍역을 겪은 후 매우 강력한 가계부채 대책, 특히 고금리단기대출에 대한 강력한 규제정책을 도입했던 일본과 영국의 사례가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00년대 초반 불법 대부업과 관련해 다중채무자 문제에 강력하게 대응했던 일본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2015년 고금리단기대출(이른바 payday loan)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도입했던 영국도 많은 시사점을 담고 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가계부채와 과중채무 문제에 대해 매우 엄격한 정책과 규제를 취했던 프랑스 또한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사례가 될 것이다.

이처럼 가계부채의 수준, 가계부채가 사회에 미치는 충격, 그리고 정부의 정책 대응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면, 일차적으로 덴마크 사례가 매우 흥미로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분석에 필요한 자료 수집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대신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컸고, 그와 관련된 연구자료도 축적되어 있으며, 자료에 대한 접근성도 높고, 관련 정책에서도 학술적, 정책적 시사점이 큰 국가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일본의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2절 영국의 가계부채 실태 및 지원정책

영국의 가계부채는 2008년 리먼 쇼크에 직면하기까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 그것은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부동산가격 상승이 예견되자, 많은 가구가 주택담보대출을 늘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고 대출기관의 상환 압력이 높아지면서, 부채상환금

의 연체나 채무불이행 그리고 개인파산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영국 정부는 2000년대 말을 기점으로 가계부채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특히 근로빈곤층의 가계부채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금융산업에 대한 적절한 규제의 부재는 상환능력이 부족한 집단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심사를 거치지 않는 부채를 양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대출의 가장 큰 피해자는 빈곤층이었다. 그에 따라 영국 정부는 2015년에 이르러서야 고금리단기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게 된다. 뒤늦은 결정이었지만, 이 조치의 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 영국의 가계부채 실태

Hartfree와 Collard는 2015년 발표된 한 논문에서 가계신용과 부채 문제가 탈빈곤정책의 중요한 일부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것은 빈곤을 예방하고, 빈곤 탈출을 지원하는 정책에서 근로빈곤층의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된 지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21세기 영국의 가계부채 문제가 근로빈곤층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반된 해석이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부채가 빈곤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빈곤이 부채의 원인이지 그 반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특히 소비성 부채의 증가가 과중채무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 대해서는 실증적 분석 결과가 존재하지만, 그것이 빈곤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논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Hartfree & Collard, 2015, pp. 207-208). 여기서는 영국 가계부채의 실태, 특히 과중채무자의 특성과 그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영국의 가계부채는 위의 국제비교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2008년 리먼 쇼크에 그 정점을 찍었다. 그리고 이후 가계부채의 보유 가구와 부채금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최근, 즉 2017년 영국의 가계부채, 그중에서도 소비성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는 최근에 발표된 자료를 토대로 영국 가계부채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먼저 소득분위별로 부채를 보유한 가구와 개인의 비율과 부채 평균금액 그리고 소득 대비 부채상환액을 나타내는 DTI 값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저소득층 또한 빈곤층의 가계부채 실태를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아래 표에 따르면, 2012년/2014년 기간 중 영국의 가계부채 보유 가구는 3~4분위 소득계층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하위 20% 소득계층 중 부채가구 비율은 약 42%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개인 단위로 추정하면, 개인소득 하위 20%에 속한 성인의 26%가 부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하위 1~2분위 소득계층의 평균 부채금액은 다른 소득계층의 3분의 1~3분의 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하위소득계층의 경우 소득이 낮아 정작 DTI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달리 표현하면,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취약한 것이다. 2012년/2014년 기간 중 빈곤층의 DTI는 0.83으로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5~6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이는 그 이전 기간인 2010년/2012년 기간의 1.28에 비해 감소한 것이다.

〈표 3-6〉 영국의 소득5분위별 부채 보유 가구/개인의 비율 및 부채금액

기간	소득 5분위	가구		개인		DTI 중위값
		부채가구 비율(%)	부채의 평균값(£)	부채개인 비율(%)	부채의 평균값(£)	
2012.7 ~2014.6	1분위	42	1,400	26	1,300	0.83
	2분위	47	2,000	30	1,100	0.12
	3분위	51	3,600	39	1,800	0.13
	4분위	53	5,000	44	3,100	0.15
	5분위	48	6,300	39	4,000	0.12
2010.7 ~2012.6	1분위	46	1,500	28	1,400	1.28
	2분위	49	2,300	33	1,100	0.12
	3분위	53	3,400	40	2,000	0.14
	4분위	55	5,500	45	2,900	0.15
	5분위	51	6,600	42	4,300	0.13

주: 가구와 개인단위 표를 결합하여 작성.

자료: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6). Household Debt Inequalities: Wealth in Great Britain. July 2012 to June 2014.

가구유형별로 부채가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60세 미만의 근로연령가구에게서 부채 보유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단신가구라도 60세 이상 단신가구 중 부채 보유 가구가 15%에 불과한 반면, 60세 미만의 단신가구는 그 비율이 48%에 이르고 있다. 이는 부부가구의 경우에도 동일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자녀가 있는 가구와 없는 가구의 부채 보유 비율이나 부채금액 평균값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한부모가구의 경우 유자녀 부부가구와 마찬가지로 부채 보유 가구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들 가구의 부채 평균금액은 유자녀 부부가구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들 가구의 경우에도 낮은 소득으로 인해 부채 부담은 매우 큰 상황이다.

〈표 3-7〉 영국의 가구유형별 부채 보유 가구 비율 및 부채금액

		부채가구 비율(%)	부채의 평균값(£)	가중화된 빈도
가구 유형	단신(60세+)	15	1,100	594,000
	단신(60세-)	48	1,800	1,548,000
	부부(60세+)	17	1,900	493,000
	부부(60세-)	60	6,000	1,707,000
	부부(60+&60+)/무자녀	34	2,600	282,000
	부부/유자녀	65	4,700	3,775,000
	부부/무자녀	63	4,600	1,325,000
	한부모가구/유자녀	65	1,400	981,000
	한부모가구/ 무자녀	63	2,100	719,000
	기타 유형	64	5,700	881,000
	전체 가구	48	3,400	12,305,000

자료: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6). Household Debt Inequalities: Wealth in Great Britain. July 2012 to June 2014.

개인 단위에서 혼인상태 유형별로 부채를 보유한 개인의 비중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먼저 사별을 한 개인의 부채 보유 비율이 16%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별거한 사람이 52%, 동거자가 49%, 이혼한 사람이 42%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결혼을 유지하고 있거나 미혼인 사람의 부채 보유 비율은 각각 34%와 35%로 중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평균 부채금액을 보면, 결혼한 사람과 동거 중인 사람 그리고 미혼자의 부채금액이 다른 부채가구의 약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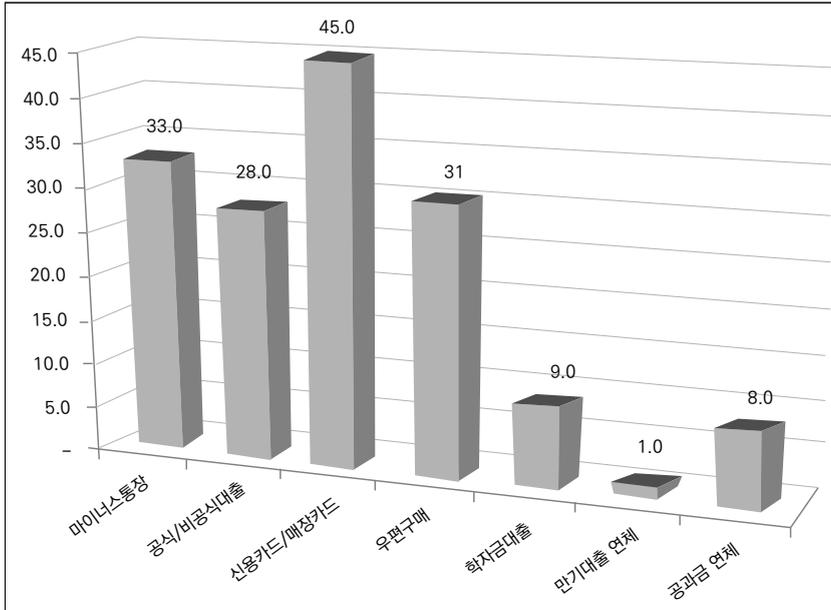
〈표 3-8〉 영국의 혼인상태에 따른 부채 보유 개인 비율 및 부채금액

		부채 보유 개인 비율(%)	부채의 평균값(£)	DTI 중위값
2012.7 ~2014.6	결혼	34	2,500	0.15
	동거	49	2,700	0.17
	미혼	35	2,000	0.18
	사별	16	1,000	0.08
	이혼	42	1,600	0.10
	별거	52	1,600	0.09
	전체	35	2,200	0.15
2010.7 ~2012.6	결혼	36	2,500	0.17
	동거	52	2,800	0.20
	미혼	39	2,200	0.22
	사별	16	900	0.07
	이혼	44	1,500	0.11
	별거	56	1,900	0.12
	전체	38	2,300	0.17

자료: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6). Household Debt Inequalities: Wealth in Great Britain. July 2012 to June 2014.

영국의 부채 보유 가구는 어떠한 부채를 이용하고 있는가. 아래 그림은 신용카드나 매장카드를 이용하는 비율이 4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어 마이너스통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33%이고, 우편구매나 통신구매에 따른 부채를 가진 가구가 31%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 밖의 각종 공식 또는 비공식 대출이 2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부채유형별 분포는 부채금액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이 소비성 부채를 안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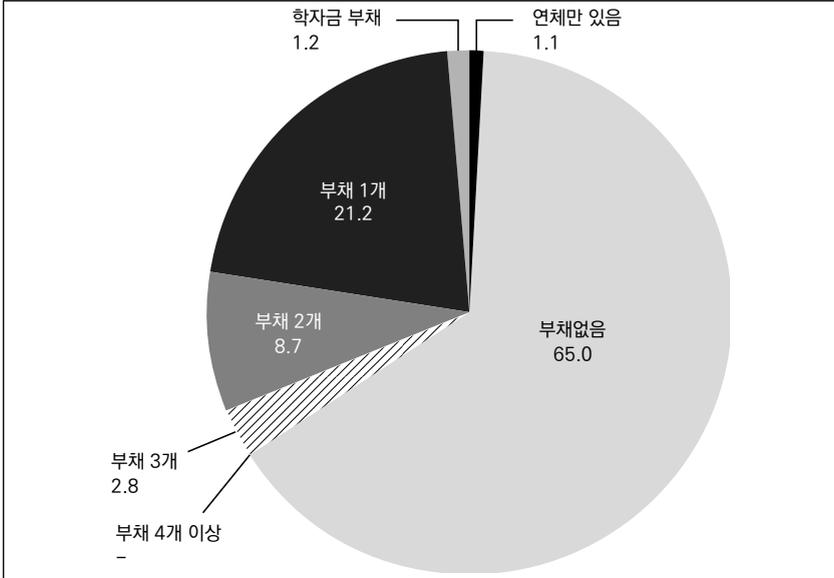
[그림 3-5] 영국의 가계부채의 부채유형별 분포(2014/2016)



자료: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6). Household Debt Inequalities: Wealth in Great Britain. July 2012 to June 2014.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 연체 등이 과중채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라면, 영국에서는 그와 더불어 다중채무 보유 또한 중요한 지표로 간주하고 있다. 아래 그림은 전체 부채 보유 가구 중 소비성 부채를 제외한 <주요 부채>의 개수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에 따르면, 주요 부채가 없는 가구가 65%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부채가 1개 있는 가구가 21.2%, 2개 있는 가구가 8.7% 순이다. 그리고 부채가 4개 이상 있는 가구는 1% 미만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학자금 부채가 있는 가구가 1.2%에 이른다는 점이다. 이는 청년층의 가계부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그림 3-6] 영국의 가계부채에서 다중채무의 구성(2014/2016)



자료: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6). Household Debt Inequalities: Wealth in Great Britain. July 2012 to June 2014.

영국에서 과중채무를 가진 빈곤층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가. 과중채무자에 대한 데이터가 구축되지 않았던 시점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말해 준다. 2006년 Citizens Advice가 작성한 과중채무자와의 상담기록 분석 결과는 영국 가계부채 문제에서 과중채무 문제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영국의 과중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 1) 5가구 중 2가구가 복지급여 수급자라는 점이다. 2) 평균 총가계부채는 약 1만 3153파운드(2003~2006년 약 30% 증가하였다). 3) 가계부채가 상담가구의 월 총소득의 17.5배에 달한다. 이는 2001년의 14배에 비해서도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4) 상담가구의 절반가량이 월 20파운드 미만(월 대략 3만 원)을 대출기관에 상환하고 있으나, 나머지 절반은 전혀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다. 5) 과중채무가구가 현재 부채 상환을 하지 않고 있는 부채와 관련해서 총액을 상환하는 데 약 77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6) 상담가구 중 약 10%만이 금융기관의 계정에서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평균 예금액은 불과 404파운드이다. 상담가구의 44%는 자동차나 주택과 같은 자산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이 자산은 실제로 현금화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7) 상담가구의 37%는 장애나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이다(Phipps & Road, 2006).

보다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과중채무자의 특성을 각종 조사데이터 및 행정데이터를 토대로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과중채무자는 저소득층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다. 참고로 소득 5분위 집단 중 하위 1분위 집단이 자신의 소득보다 많은 부채를 갖게 될 확률은 최상위계층에 비해 약 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점은 가계부채와 관련된 대부분의 조사보고서나 연구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항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아 소비가 제한된 집단에게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부채가 생겨나고, 이를 상환하지 못하는 부채의 악순환이 나타날 위험성이 큰 것이다. 2) 20~29세의 가난한 청년층에게서 과중채무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하지만 일반 청년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부채가 월 소득의 6개월분을 초과하는 것을 과중채무로 정의하는 경우, 20~29세 청년층이 30~39세 집단보다 과중채무자가 될 확률이 두 배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청년층이 과중채무자가 될 확률이 다른 연령집단보다 높다는 것은 대부분의 연구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3) 가구 내 부양아동이 있는 빈곤층 또한 과중채무를 가질 개연성이 크다. 특히 가구원이 많은 대가구의 경우일수록 그런 위험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녀가 없는 가구의 경우, 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 억제를 인내하기도 하지만, 자녀

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인내가 힘들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는 이미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이유에서 아이를 부양하는 근로빈곤층이 아이가 없는 근로빈곤층에 비해 부채와 과중채무에 노출될 위험이 큰 것이다. 4) 다중채무를 가진 빈곤층일수록 과중채무를 갖게 될 개연성이 높다. 실제로 채권기관이 많을수록 그러한 위험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주거래은행 등을 이용하는 중산층 이상의 소득자와 달리, 대출이 가능한 다양한 금융기관 및 대부업자로부터 부채를 지게 되는 빈곤층의 경우에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5) 소비성향이 강하고 구매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빈곤층일수록 과중채무를 갖게 될 개연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가계부채와 과중채무의 책임이 일정 수준은 채무 당사자의 소비심리라도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말해 준다. 6)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정신건강이 취약한 집단일수록 과중채무를 갖게 될 개연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재정적 어려움이나 상환 연체가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있다. 하지만 반대로 심리적 불안상태 등이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7) 그 밖에도 빈곤층 중 월세 거주자, 따라서 자산 규모가 낮은 집단에서 가계부채가 과중해질 위험성이 있다. 이는 임대료가 정기적이고 큰 규모의 지출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지출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집단에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과중채무로 발전할 위험성이 더 큰 것이다(Hartfree & Collard, 2014, pp. 8-9; Lane, 2016, pp. 8-10).

앞서 과중채무자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과중채무가 근로빈곤층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그 충격은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게 된다. 소득 제약으로 각종 소비 영역과 고용 그리고 사회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는 중산층

이나 고소득층에게서 가계부채가 부정적으로만 인식되지 않는 이유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즉, 이 집단에게서 부채란 소비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 지출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특히 과중채무가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충격과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다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1) 금융 소외로 소비생활과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 2) 가족이 해체되는 위험이 증가하는 것, 3) 건강상태가 나빠지는 것 등이다. 하지만 이러한 충격이 조사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증분석을 통해 입증된 경우는 많지 않다. 연구자에 따라, 특정한 충격은 확인되는 반면, 다른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충격이 확인되는 결과는 많지 않다. 위의 분석 결과와 관련해서 이를 뒷받침하는 몇 가지 선행연구 결과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Disney, Bridges & Gathergood, 2008).

첫째, 과중채무는 금융서비스 이용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제약이 증가하는 것이다. 실제로 과중채무자가 되면 추가적 대출에 제약이 따르며, 대부업자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높은 이자를 물어야 한다는 점에서 부채의 악순환 고리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불편이 뒤따르게 된다. 영국의 과중채무자나 금융소외자들은 공식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연금이나 복지급여를 받는 용도로 우체국카드계정(post office card account)을 개설하여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계정은 근로빈곤층 소비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불이익이 되고 있다. 상품 구매와 관련해서 할부구매나 카드 할인 등의 혜택을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과중채무자나 금융소외계층의 상당수는 대안적 은행이라 할 수 있는 Basic Bank를 이용하게 된다(Citizens Advice, 2015a).

둘째, 과중채무는 가족이 해체되는 위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과중채무로 파산하거나, 신용 회복 과정에 들어선 경우, 대부분의 자산을 매각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족이 해체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그리고 과중채무가 결혼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배우자의 부채가 다른 배우자의 소득과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의 부채 책임 이전이 가족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가족 해체를 촉발시킨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바로 아동들이다. 실제로 심각한 가계부채가 발생하고 가족 내 불화가 심화되는 경우, 그것은 아동들의 학교생활과 성적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Step Change, 2014).

셋째, 과중채무가 당사자와 배우자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상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채무 당사자의 우울증이나 자살 생각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최근에는 배우자나 지인의 부채로 인한 고통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그것은 사적 관계에 있는 사람과 심리적, 성적, 폭력적 의존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의 가계부채를 보증하거나 상환하는 문제에 연루되어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부부관계에서 배우자의 부채 문제가 상대 배우자에게 경제적, 심리적, 육체적으로 매우 큰 고통을 가져온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여성 5명 중 1명, 남성 7명 중 1명이 이러한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여성이 배우자나 지인의 가계부채 문제로 고통받을 위험성이 큰 것이다(Sweet, Nandi, Adam & McDade, 2013; Sharp-Jeffs, 2015).

2. 영국의 가계부채 대책과 저소득층 지원

지난 10년간 영국에서 가장 뜨거운 정치 현안 중 하나는 가계부채 문제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만큼 영국 사회가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정책에 주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2015년 이전의 대책들은 주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금리정책이나 대출규제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2000년 초부터 저금리의 장기화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리먼 쇼크가 발생하기 이전 시점인 2007년의 주택가격은 2002년 대비 59% 상승하였다. 금융기관이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확대하였고, 2008년까지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상승하였던 것이다. 장기간 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던 것 또한 주택 매입을 위한 담보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주택가격 상승에 편승하여 매매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수요가 가세한 것도 가계부채 증가의 한 요인이었다. 2008년 리먼 쇼크 이후 주택가격이 급락하고 가계부채의 부실이 확산되자 2009년 초부터 부채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되었다. 2009년 1월에는 주택 압류 가능성이 높은 가계를 대상으로 주택가치를 초과하는 대출금액을 정부(주택협회)가 대신 부담하거나, 해당 주택을 정부가 매입한 뒤 해당 가구에 재임대하거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자 지급액의 일부분을 보조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2009년 4월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가계에 대하여 일부 원리금의 상환을 연장해 주고 취약계층을 위한 압류방지기금(Preventing Repossession Fund)을 조성하였다(최인협, 2015, p. 4).

〈표 3-9〉 영국의 주요 가계부채 구조조정 프로그램

프로그램	시행 시기	주요 내용
주택담보대출자 구제 (Mortgage Rescue Scheme)	2009.1월 (2014.3월 말부터 신규신청 종료)	• 주택 압류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역기관의 심사를 거쳐 주택협회가 주택가격을 상회하는 대출금액을 대신 부담하거나, 프로그램 신청자의 주택을 주택협회가 매입* * 해당 신청자는 임차인으로 동 주택에 거주하되 낮은 임대료를 납부
주택담보대출이자 보조 (Enhanced Support for Mortgage Interest)	2009.1월 (2015.3월 종료 예정)	• 구직수당, 고용지원수당 등을 받고 있는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해 최대 20만 파운드 내에서 지원하고 영란은행이 고시하는 평균 주택담보대출 적용
주택담보대출 지원 (Homeowners Support Mortgage Scheme)	2009.4월 (2011.4월 종료)	• 향후 소득이 회복될 수 있는 일정한 조건1)을 갖춘 가계에 대해 최대 2년까지 일부 상환액의 지급을 재무부의 보증하에 연기하고 동 이연 분은 향후 원금으로 상환토록 함
압류방지기금 (Preventing Repossession Fund)	2009.4월	• 취약한 가계를 지역기관들이 재정적으로 지원(가계당 5000파운드 이내)할 수 있도록 2000만 파운드의 자금을 조성

주: 1) 2008년 12월 1일 이전 구입한 주택의 가치가 4000만 파운드 이하이거나 보유 금융자산이 1만 6000파운드 이하인 가구 등.

자료: National Audit Office,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2011년 5월); 최인협(201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4개국의 가계부채 대응사례 및 시사점,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5-5호에서 재인용.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되자 과중채무를 넘어 부채 상황이 힘든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제도를 강화하게 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개인파산에 이르기 전에 신청하는 개인회생지원제도와 개인파산제도이다. 먼저 개인회생지원제도(debt relief orders: DROs)는 2009년 도입되었으며, 가계부채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많은 개인과 가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 왔다. 물론 개인회생지원제도는 개인파산에 이르는 것보다 비용을 덜 들이면서 각종 부채를 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저소득층 및 무자산층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개인파산에서 그러하듯 모든 부채가 말소되는 것은 아니다. 학자금 대출이나 세금과 관련된 부채는 말소되지 않는다.

이어 개인파산제도(bankruptcy)는 주로 개인회생지원제도를 거쳐 진입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그것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없는 과중채무자들은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하게 된다. 개인파산을 이용하는 경우의 강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가장 큰 강점은 개인파산을 통해 일과 가정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2) 대출기관으로부터의 부채 상환 압력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3) 생활에 필요한 필수재와 일정 소득이 허용된다는 점이다. 4) 파산 결정(bankruptcy order)이 나면, 대출기관은 대부분의 대출금에 대한 회수 시도를 멈추게 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단점 또한 있다 : 1) 개인파산에도 약 680파운드의 수수료가 든다는 점이다. 2)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향후 3년 내에 부채를 상환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 3) 파산기간 중에는 새로운 대출이 불가능하고, 향후 6년간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이다. 4)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 경매에 부쳐질 수 있다. 5) 마찬가지로 사치품이나 자동차와 같은 물건도 매각된다. 6) 연금을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이 임박한 연령이라면, 그것도 차압되게 된다. 7) 회계업무와 같은 일부 직종에서는 파산 경험이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상적으로 고용주는 파산 경험을 이유로 고용에 불이익을 줄 수 없다. 8) 사업체를 갖고 있는 경우에도 매각되어 청산되게 된다. 9) 이민자의 경우라면, 파산 결정이 이민자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0) 모든 개인의 파산 결정은 공개적으로 발표되게 된다.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받아들여지면, 약 1년 뒤에 파산이 종료되게 된다. 관련기관에서 그것이 종료되었음을 통보하게 되며, 그 시점까지 지급되지 않은 부채는 소멸된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이나 공과금 및 세금 연체는 소멸되지 않는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설사 파산기간이 종료된 이후라도, 이 결정에 따른 각종 규정이 15년간 적용되게

되며, 그것은 이후의 금융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것은 주로 관련 기관 및 업무담당자(Official Receiver)에게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영국 정부는 2011년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한 새로운 접근방식에 기초한 대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Better Choices: Better Deals>이다. 이 대책은 부채 상담을 통한 금융소비자의 지혜로운 선택을 돕는 지원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과중채무에 시달리는 계층을 대상으로 부채 조정을 지원하는 기금을 확충하겠다는 거나, 법원을 통한 개인파산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주장보다, 각종 정보네트워크를 통합하여 모든 금융소비자가 쉽게 금융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데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Cabinet Office, 2011). 하지만 이러한 대책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소비자금융 및 소액대출사업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는 요구를 받게 된다.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서 영국 정부가 받았던 가장 대표적 비난 중 하나는 저금리와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담보대출 상승세를 억제하는 데 몰두하여 소비금융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 특히 저소득층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문제를 방치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주로 근로빈곤가구에서 무담보부채나 신용카드 사용 그리고 각종 공과금의 체납 등이 발생하는 것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영국 정부는 최근 수년간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던 기존의 불합리한 대출 관행을 통제할 수 있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 대책은 각종 대출사업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 무책임한 대출 관행을 개선하고, 2) 공격적인 대출 권유를 통제하고, 3) 대출기간과 조건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다.

소비자금융 그리고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출과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조치는 2015년 1월 시행된 고금리단기대출사업(High Cost Short Term Credit: HCSTC), 영국에서는 통상 payday loan에 대한 규제 강화 조치이다. 이 조치의 핵심은 대출기관은 대출금의 두 배를 초과하는 대출 상환금을 받을 수 없도록 금액 상한(price cap)을 설정한 것이다. 영국의 가계부채 대책에서 고금리단기대출기관에 대한 규제는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저소득층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조치가 취해진 셈이다. 이 조치 이후 해당 대출 상품 이용자와 상환 부담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럼에도 몇 가지 쟁점은 남아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영국의 저명한 가계부채 상담 단체인 Citizen Advice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1) 금융관리당국(FCA)은 책임성 있는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작성해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소득과 지출 관련한 증빙자료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2) 대출기관들은 대출신청자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그가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상환해야 하는지 쉽고 투명하게 전달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소비신용지침서(consumer credit rulebook)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3) 금융관리당국은 고금리단기대출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것이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4) 대출기관은 대출신청자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들을 격려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출상품을 판매하는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Citizens Advice, 2016a, 2016b).

그 밖에도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가 남아 있다. 첫째, 방문대출사업(doorstep loan market)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다. 방문대출사업이란 대출기관의 담당자나 개인대출자(貸主)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대출상품을 권유하고 판매하는 것이다. 이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담당자의 수익을 위해 고금리의 상품을 이용하도록 권유하는 경우가 많고, 금리와 상환조건 그리고 상환기관 등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방문대출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Falconer, 2017). 둘째, 현금자동지급기(automatic teller machines: ATMs) 수수료의 투명화 및 현실화 문제이다. 여전히 많은 사람이 현금자동지급기를 사용하고 있고,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비율은 전체 이용자의 40%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였다. 조사 결과는 조사 대상자의 약 20%가 일주일에 1회 이상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다. 문제는 수수료를 지불하면서도 이 기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주로 농촌지역이나 도시 주변부 지역에서 은행들이 문을 닫으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다. 또한 병원이나 대학과 같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영국의 부채상담기관이나 연구자들은 자동지급기의 수수료 내역을 공개하고 합리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oad, 2006). 셋째, 신용카드와 관련해서는 그것 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소비자회를 살아가는데 필수품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드발급기관 및 대출기관은 고객의 승인 없이 카드 한도를 높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만일 그러한 경우에는 카드 발급 및 대출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부채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용카드의 대출수수료를 조정하게 하는 것이다.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는 기관마다 다르게 적용되며, 적용 이자율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제대로 공지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넷째, 보증인대출(guarantor loan) 제도를 개선하는 문제이다. 이 대출은 보증인을 세우면 24시간 내에 신속한 대출이 가능하며,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금리단기대출과 유사한 특

성을 갖는다. 하지만 그것은 고금리단기대출보다는 대출 단위가 크고,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으며, 12~60개월에 이르는 장기대출이 많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섯째, 역사적으로 빅토리아법에 의해 규제를 받아 왔던 고금리대출인 로그북대출(logbook loan)을 개혁하는 것이었다. 이 대출은 대출신청자의 개인자산, 즉 자동차 등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국의 가계부채 관련 대책 중 저소득층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는 1990년 도입되고 2013년 폐지된 사회기금(Social Fund Reform)이다. 이 기금은 영국의 복지개혁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후, 금융 소외와 사회적 소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었다. 이 기금의 특징은 빈곤층 및 복지수급자의 금융 소외와 가계부채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무이자대출(interest free loans)과 지원금(grants)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주로 단기대출을 통해 저소득층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과 이들의 금융교육을 통해 빈곤층 대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채와 저축 그리고 복지급여를 관리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지원은 보육과 장례 그리고 에너지 지원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 기금은 급변하는 금융시장과 새로운 대부업체의 출현, 그리고 다중채무 등으로 인한 빈곤층 채무 조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2010년에는 이 기금을 개혁하는 방안이 제출되기도 하였다.¹¹⁾ 하지만 2012년 복지개혁법안이 통과되면서 기금 자체가 폐지되기에 이르렀으며, 나머지 기금은 각 지방정부로 이관되었다. 그리고 당시 저소득층 가계부채 문제를 지원하던 시민단체에서는 해당 사업이 지자체로 이관되는

11) 영국의 노동연금성은 2010년 3월 Social Fund Reform: debt, credit and low-income households라는 보고서를 통해 개편안을 제시한 바 있다.

경우, 실효성 있는 지원이 힘들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빈곤층의 가계부채 해소를 지원하는 별도의 정책이 크게 약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에서 저소득층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두드러진 지원서비스는 상담서비스(advice services) 중심으로 편성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각종 시민단체는 과중채무자에게 부채 조정과 관련된 상담서비스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부채 없이 생활하기 힘든 사회시스템 속에서 과중채무의 위험은 누구에게나 존재할 수 있고, 그러한 위험을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제3자를 통한 상담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구적으로 또는 지인을 통해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부채상담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상담서비스 중 상당수는 유료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유료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이라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료상담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의 한 연구 결과는 실효성 있는 가계부채상담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집단을 구분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강화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네 집단은: 1) 적절한 가격, 그러나 현재 가격이 아닌 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질의 부채상담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집단(affordable advice gap), 2) 부채 상담을 원하지만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집단(free advice gap). 약 1450만 명의 사람이 무료 부채상담서비스를 원하지만 지난 2년간 이용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3) 이러한 부채상담서비스를 원하지만, 그러한 서비스가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 있는

지 모르는 집단(awareness and referral gap), 4)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되기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상담을 받고자 하는 집단(preventative advice gap)이 그것이다(Citizens Advice, 2015b).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는 빈곤층의 자구적 부채 해결 노력과 시도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빈곤층, 특히 근로 빈곤층의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많은 과증채무자가 공식 금융기관이나 부채상담기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지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른바 자조적으로 부채 문제에 대한 자문(self-help debt advice services)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문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이러한 선택을 하는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사 대상의 절반가량이 자신의 부채 문제와 관련해서 지원받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대출기관과 합의에 이르는 경우는 20%수준에 불과하다. 그리고 거의 90%에 달하는 사람이 대출기관과의 상담에서 좋지 않은 경험을 한 것으로 답하고 있다. 이는 그들에게 일종의 무력감을 안겨 주고, 이로 인해 자구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대출기관은 차주가 상환에 응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리고 많은 대출기관이 저소득층 고객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태도가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물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대출기관이 신청자의 상환능력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하지 않고 대출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3. 영국 사례의 시사점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 영국의 정책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가계부채의 총량을 제한하는 정책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소비성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가계부채가 다양한 소득계층에서 발생하며,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대출 경쟁이 심화되는 경우, 실제 상환능력을 초과한 대출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이 점에서 부동산담보대출 등 중산층 이상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정책 외에도 실제 많은 시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 대책에도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비금융권의 다양한 대출기관 및 대출 관행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가 다 불거진 이후에 취해졌다는 점에서 정책적 대응이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비판도 있다. 실제로 영국 정부가 고금리단기대출, 즉 payday loan을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해서 본격적으로 개입했던 것은 2015년이였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은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Citizen Advice와 같은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영국의 저소득층 가계부채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규제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일 집단에 주목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 셋째, 영국의 가계부채 관련 정책에서 비영리자선단체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점이다. 이는 영국 정부가 이 문제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이전 시기 동안, 저소득층의 가계부채와 관련된 지원과 상담에 큰 기여를 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이 자선단체들의 또 다른 기여는 저소득층 가계부채와 과중채무 문제 등에 대해 정부를 압박하는 많은 정책 제안을 쏟아 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제안은 최근의 각종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참고로 Citizen Advice가 2010년 발간했던 〈Do the right thing〉과 2011년 발간했던 〈How to

do the right thing>은 금융정책 당국자들에 의해 종종 언급된 바 있다. 끝으로 영국의 가계부채, 특히 과중채무 문제, 그리고 그것이 개인과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조사와 연구가 축적되고 있으며,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 이는 영국의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빈곤층에 특화된 접근을 가능하게 할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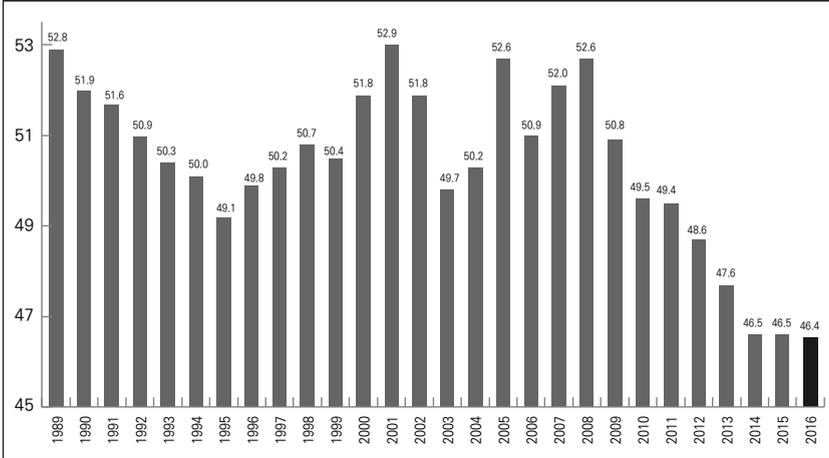
제3절 프랑스의 가계부채 실태 및 지원정책

프랑스는 장기간의 경기침체 속에서도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 그 심각성이 크지 않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 2017년 현재 상황에서도 프랑스의 가계부채 문제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하기 힘들다. 이는 금융시장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규제정책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빈곤층의 가계부채, 특히 과중채무 문제는 중요한 사회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빈곤층에 대한 사회보장이 상대적으로 잘 발달된 프랑스 사회에서도 빈곤층의 소비 관련 부채의 증가는 불가피한 것처럼 보인다. 양적으로 가계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가처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고저, 그리고 복지지출의 고저만으로 빈곤층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진단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최근에는 과중채무자(surendettés)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근로빈곤층 중에서 과중채무자의 비중이 높고, 이들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1. 프랑스의 가계부채 실태

프랑스은행(Banque de France)은 최근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참고로 프랑스의 전체 가계부채는 2005년 6억 6490만 유로에서 2015년 1/4분기에 11억 8900만 유로로 약 78.8% 증가하였으며, 이후에도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프랑스의 가계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그것은 매우 높은 수준의 공공부채와 달리, 가계부채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채가구의 비율 또한 최근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아래 그림을 보면, 하나 이상의 부채를 가진 가구의 비율은 1980년 후반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왔으며, 다시 1990년대 중반 이후 등락을 거듭하였고, 2008년 정점을 찍은 이후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점만 보면, 프랑스 가계부채 문제는 심각하다고 말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가처분소득에서 가계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중반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소득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증가했다. 비록 가계부채 비중이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 하더라도, 부채 증가에 따른 가계 부담이 증가한 것은 분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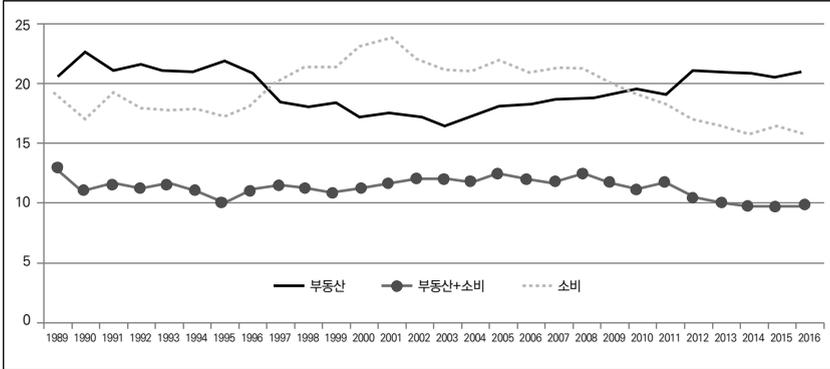
[그림 3-7] 프랑스의 부채가구 비율 추이(1989~2016)



자료: Observatoire des Crédits aux Ménages. (2017). Enquête réalisée en novembre 2016.

그리고 특이점은 최근 수년간 가계부채 중 특정 사유에 따른 부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가계신용평가원(Observatoire des Crédits aux Ménages: OCM)의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인들은 전체적으로 부채를 줄여 가는 추세를 보여 왔지만, 2012년 이후 부동산 관련 대출을 늘려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아래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프랑스 가계부채에서 소비 관련 부채는 2000년을 정점으로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왔고, 부동산 관련 담보 대출은 2008년 저점을 찍은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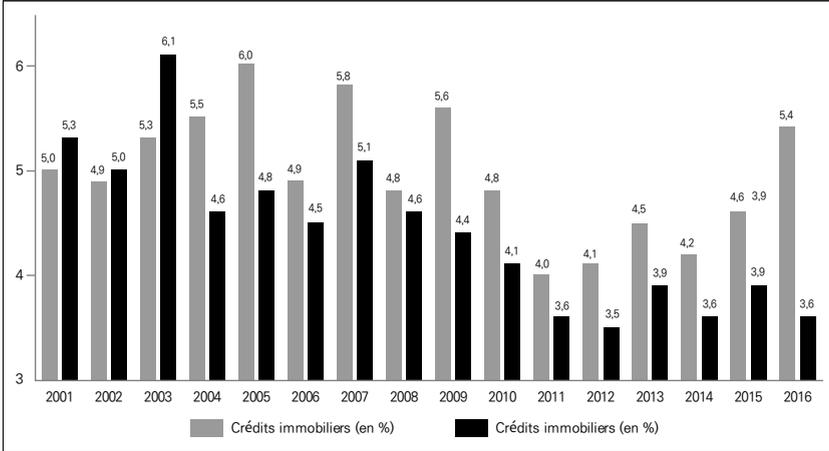
[그림 3-8] 프랑스의 사유별 부채가구 비율 추이(1989~2016)



자료: Observatoire des Crédits aux Ménages. (2017). Enquête réalisée en novembre 2016.

이는 시민들의 주택 구매 의사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2016년 현재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용도로 대출을 늘려 갈 의향이 있는지 묻는 조사에 따르면, 소비 지출을 위한 대출 의향은 크게 감소한 반면, 부동산 구매를 목적으로 하는 대출 의향은 최근 다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부동산가격의 인상 및 가처분소득의 증가 그리고 경기에 대한 전망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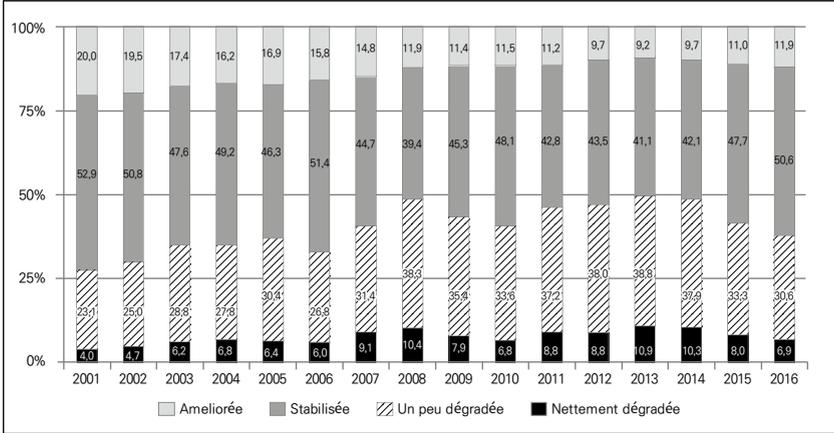
[그림 3-9] 프랑스 가구의 대출용도별 대출 의향의 추이



자료: Observatoire des Crédits aux Ménages. (2017). Enquête réalisée en novembre 2016.

이러한 평가는 재정상황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인식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어지는 그림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2008년을 기점으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인식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2014년 이후 재정상황이 안정화되었거나 개선되었다고 말하는 집단의 비중이 증가하였다는 점이 이를 말해 주는 것이다.

[그림 3-10] 가계재정상황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인식 변화



자료: Observatoire des Crédits aux Ménages - Enquête réalisée en novembre 2016.

프랑스 통계청의 최근 보고서는 어떤 집단이 어떠한 목적으로 부채를 지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로 아래 표는 각 연령집단 중 해당 부채를 가진 사람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며, 당연히 중복 응답이 가능하다. 아래 표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개인 단위의 부채 증가 발생률이 높은 것은 거주주택 구매와 관련된 담보대출이며, 성인인구의 20.6%가 부채를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이 차량 구매로 16.3%, 기타 부채가 13.8%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가장 주된 부채 사유가 주택 구매라는 점을 말해 준다. 하지만 이는 연령대별로 다른 특성을 보인다. 30세 미만 연령집단은 상대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가진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차량 구매를 위한 대출이 더 높다. 그리고 30~39세 연령 집단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많고, 차량 구매를 위한 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30대를 기점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보유한 집단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표 3-10〉 부채 보유자의 연령대별 부채 사유(2015년 초 기준)

(단위: %)

	전체	개인 부채 (2개 이상 중복 가능)						사업 부채
		합계	거주 주택 구매	기타 건물 구매	건물 공사	차량 구매	기타	
전체	45.7	45.0	20.6	6.2	6.6	16.3	13.8	2.2
30세 미만	41.3	41.0	14.6	3.5		16.1	11.5	
30~39세	65.8	65.3	42.7	8.0	6.3	22.9	15.1	2.7
40~49세	66.4	65.3	39.5	9.1	8.5	22.0	20.0	3.7
50~59세	56.4	54.6	20.8	10.3	9.7	20.4	17.4	4.4
60~69세	37.4	36.9	7.0	5.3	9.2	14.4	11.2	1.0
70세 이상	11.4	11.4	0.7	0.8	2.9	4.1	3.2	

주: 1) 응답이 20케이스 미만인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결측 처리.

2) 응답자는 가구 내 30세 이상의 가구원.

자료: Insee, Enquête Patrimoine 2014-15(2017. 10. 5. 인출).

아래 표는 직업별로 어떠한 집단이 어떠한 사유로 부채를 지게 되는지 보여 주고 있다. 아래 표를 보면, 가장 부채 보유 비율이 높은 집단은 농민으로 73.5%가 부채를 갖고 있으며, 다음이 자영업자로 72.1%가 부채를 갖고 있다. 이는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이들을 제외하면, 간부나 중간관리자, 전문직 등의 부채 보유 비율이 6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에 비해, 비전문직 노동자나 퇴직자 그리고 미취업자의 부채 보유 비율은 10~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사실 이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쉽지 않은 집단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거주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일반 봉급생활자나 비전문노동자의 보유율이 낮다는 점이 이를 말해 준다.

〈표 3-11〉 직업 범주 및 부채 사유에 따른 부채가구 비율(2015년 초 기준)

(단위: %)

	전체	개인 부채 (2개 이상 중복 가능)						사업 부채
		합계	거주 주택 구매	기타 건물 구매	건물 공사	차량 구매	기타	
전체	45.7	45.0	20.6	6.2	6.6	16.3	13.8	2.2
농민	73.5	55.1	22.1	16.7	15.3	13.0	0.0	39.0
수공업자, 상인 등	66.6	61.6	35.4	16.5	7.6	16.8	8.6	16.2
자유업자	72.1	67.9	34.1	26.2	10.6	14.6	0.0	11.4
간부	65.8	65.7	41.2	16.4	8.1	19.2	14.5	0.8
중간관리자	68.1	67.7	39.2	7.8	8.8	23.9	20.2	1.7
피고용자	52.9	52.9	20.2	4.9	5.0	21.7	20.6	
전문노동자	60.8	60.7	33.7	3.5	6.9	27.2	16.4	
비전문노동자	44.0	43.6	17.2		4.2	17.4	11.4	
퇴직 농민	12.9	11.2					0.0	
퇴직 수공업자 및 상인 등	22.1	22.1		5.6	4.4	7.6	0.0	
퇴직 간부 및 자유업자	29.2	28.7	4.9	4.8	8.6	13.3	3.3	
퇴직 피고용자	22.3	22.2	3.6	1.6	5.6	8.4	8.2	
기타 비경제활동인구	16.0	16.0					5.1	

주: 1) 응답이 20케이스 미만인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결측 처리.

2) 응답자는 가구 내 30세 이상의 가구원.

자료: Insee, Enquête Patrimoine 2014-15(2017. 10. 5. 인출).

재산 규모와 부채 보유의 관계 또한 흥미롭다. 재산 100분위 집단 중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집단은 하위 30% 이하 집단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하위 10%는 차량 구매와 관련된 부채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저소득층이나 자산이 없는 집단에게서 부채가 발생하기 힘든 구조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자산이 적은 하위계층에서 발견되는 부채는 주로 카드 사용 등과 관련된 소비성 부채인 것이다.

〈표 3-12〉 총재산 100분위 및 부채 사유에 따른 부채가구 비율(2015년 초 기준)

(단위: %)

	전체	개인 부채 (2개 이상 중복 가능)						사업 부채
		합계	거주 주택 구매	기타 건물 구매	건물 공사	차량 구매	기타	
전체	45.7	45.0	20.6	6.2	6.6	16.3	13.8	2.2
10분위 미만	19.3	19.3					15.7	
11~20분위	31.5	31.1				12.9	24.6	
21~30분위	34.8	33.8				20.2	17.3	
31~40분위	28.2	27.7	5.0	2.2		14.2	6.9	
41~50분위	46.4	45.7	25.8	3.3	6.7	14.9	10.7	
51~60분위	57.9	57.5	38.5	2.7	10.8	19.1	12.8	
61~70분위	63.1	62.7	42.4	5.1	10.3	24.2	10.6	1.8
71~80분위	59.0	58.5	35.9	8.1	11.9	22.3	8.7	2.7
81~90분위	56.6	55.1	30.1	14.1	13.0	17.4	7.6	4.6
90~94분위	59.7	57.7	30.8	22.8	8.6	15.3	6.2	6.3
95~99분위	62.9	60.6	27.8	29.3	13.4	14.6	5.3	9.9
99분위 이상	52.2	51.6	15.5	28.0	9.4	17.8	1.5	8.3

주: 1) 응답이 20케이스 미만인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결측 처리.

2) 응답자는 가구 내 30세 이상의 가구원.

자료: Insee, Enquête Patrimoine 2014-15(2017. 10. 5. 인출).

소득계층을 100분위로 구분한 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더라도 위에 나타났던 현상은 거의 동일하다. 그것은 저소득계층이라도 자산을 보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 구매와 관련된 부채 보유 가구가 소규모 존재하고 있지만, 나머지 부채와 관련해서도 보유 비율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개인 비율만으로 보면, 가계부채의 총량과 보유 가구의 규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집단은 상위 61% 이상 집단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부채 보유 가구나 부채 규모는 소득 지위가 높아질수록 일정 시점까지 계속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아래 표는 프

랑스에서 소득계층별로 금융서비스, 특히 대출에 대한 접근도가 다르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표 3-13〉 가처분소득 100분위와 부채 사유에 따른 부채가구 비율(2015년)

(단위: %)

	전체	개인 부채 (2개 이상 중복 가능)						사업 부채
		합계	거주 주택 구매	기타 건물 구매	건물 공사	차량 구매	기타	
전체	45.7	45.0	20.6	6.2	6.6	16.3	13.8	2.2
10분위 미만	19.0	18.0	5.3	1.9	1.6	4.0	5.1	
11~20분위	20.4	19.7	3.5		2.7	5.0	8.6	
21~30분위	31.3	31.3	9.8	1.7	3.4	9.7	10.1	
31~40분위	35.8	34.7	12.1	2.3	3.9	11.0	12.4	
41~50분위	44.3	43.5	14.7	3.6	4.6	13.8	17.8	1.9
51~60분위	49.2	49.2	20.8	4.4	6.6	19.2	13.9	
61~70분위	52.9	52.5	25.7	6.2	7.3	22.5	11.1	2.1
71~80분위	66.1	65.5	35.5	8.9	11.3	28.0	14.5	2.2
81~90분위	68.6	67.5	41.1	9.3	11.4	26.9	14.4	2.6
90~94분위	70.3	69.9	39.2	19.1	13.7	27.3	9.5	4.1
95~99분위	68.1	66.7	37.1	26.6	13.6	19.4	10.3	6.1
99분위 이상	66.5	65.7	26.6	32.5	9.3	16.0	7.0	7.1

주: 1) 응답이 20케이스 미만인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결측 처리.

2) 응답자는 가구 내 30세 이상의 가구원.

자료: Insee, Enquête Patrimoine 2014-15(2017. 10. 5. 인출).

각 개인이 부채를 지는 사유를 그가 속한 가구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장 부채 보유자가 많은 가구는 유자녀 부부가구로 해당 집단의 74.6%가 부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며, 이들은 주택 매매를 위한 담보대출의 비율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부채 보유 가구의 비중 자체도 낮을 뿐 아니라, 부채 사유에서도 주택 구매를 위한 담보대출을 가진 비중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단독가구 중 노인계층

은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담보대출을 받을 자격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판단되며, 청년층의 경우에는 주택을 매입할 소득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한부모가구와 무자녀부부가구의 부채 보유 비율은 각각 46.4%와 42.5%로 중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택담보대출 또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3-14〉 가구 유형 및 부채 사유에 따른 부채가구 비율(2015년)

(단위: %)

	전체	개인 부채 (2개 이상 중복 가능)						사업 부채
		합계	거주 주택 구매	기타 건물 구매	건물 공사	차량 구매	기타	
전체	45.7	45.0	20.6	6.2	6.6	16.3	13.8	2.2
단독가구	25.7	25.2	9.0	2.7	3.4	6.8	9.0	0.8
한부모가구	46.4	45.5	17.9	4.7	3.3	11.4	21.7	1.8
무자녀부부가구	42.5	42.0	13.2	6.5	7.6	16.9	11.4	1.7
유자녀부부가구	74.6	73.3	44.7	11.3	10.6	29.1	18.6	4.6
기타	44.7	44.6	9.2	4.9	8.8	20.0	9.7	

주: 1) 응답이 20케이스 미만인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결측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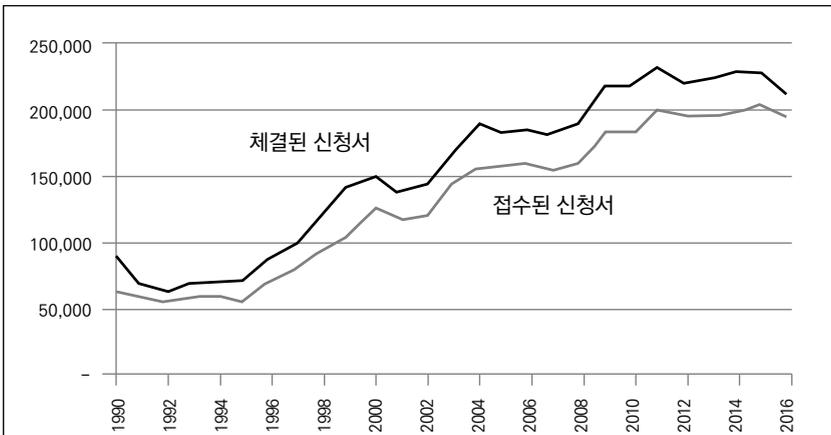
2) 응답자는 가구 내 30세 이상의 가구원.

자료: Insee, Enquête Patrimoine 2014-15.

과중채무와 관련해서 프랑스중앙은행(Banque de France)은 정기적으로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말부터 2016년 말까지 과중채무로 인한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131만 8772건으로, 연평균 26만 3750건이 제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신청서 중 접수가 승인된 신청서는 약 88.9%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기간 중 과중채무의 발생 사유를 보면, 소비로 인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감소한 반면, 부동산부채로 인한 부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6년 현재 프랑스의 전체 가계부채에서 금

용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76.3%에 이르며, 부채를 상환하기 힘든 과중채무자로 지원을 신청한 건수는 19만 4000건이고, 같은 해 과중채무를 청산한 경우가 21만 건이며, 과중채무로 부채를 상환하는 과정에 있는 가구가 82만 7000가구이다(Banque de France, 2017a). 이는 과중채무로 지원을 신청하였거나, 신청 이후 회생절차에 있거나, 회생절차를 마친 개인과 가구의 규모라는 점에서, 실제 소득과 자산 대비 부채 규모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과중채무자 및 과중채무가구에 비해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3-11] 과중채무위원회에 제출된 지원신청서와 접수된 신청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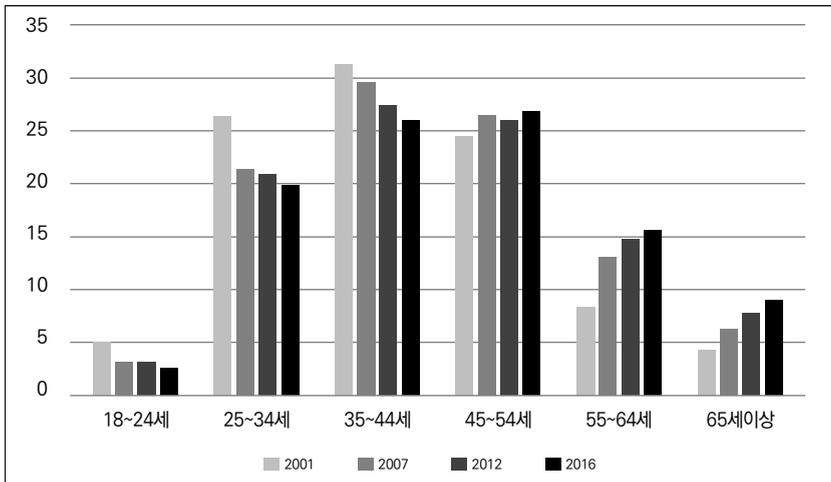


자료: Banque de France. (2017a). Enquête typologique 2017, donnés 2016.

위의 프랑스중앙은행 자료는 과중채무가 발생하는 원인과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 원인을 지적하고 있다. 1) 실직, 2) 저소득(취약한 일자리나 비경제활동으로 인한 예산 제약), 3) 일상화된 신용 이용(큰 고민 없이 부채를 누적하는 행위)이다. 주로 고용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소득 감소와 개인의 소비행태가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과중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 단신가구(이혼, 미혼, 또는 사별에 의한)가 전체 과중채무자의 66.1%를 차지한다. 2) 45~54세 연령집단과 65세 이상 집단이 각각 26.8%와 9.1%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과중채무자의 취업상태와 관련해서는 임금노동자 33.9%, 노동자 23.6%, 실직자 27.4%, 전직 비경제활동인구 10.7%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과중채무자의 절반 이상이 실업자이거나 경제활동이 어려운 장애인, 만성질환자, 양육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Banque de France, 2017a).

[그림 3-12] 프랑스 과중채무자의 연령 분포(2016년 기준)



자료: Banque de France. (2017a). Enquête typologique 2017, donnés 2016.

그리고 2016년 현재 과중채무자의 평균 부채액은 4만 2334유로이다. 그리고 과중채무 지원신청서별 평균 부채 수는 8.8개이며, 그중 금융부채가 4.7개이고, 기타 각종 공과금 관련 부채가 4개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부채 평균금액을 보면, 금융부채가 약 3만 6339유로로 대부분을 차지

하고, 나머지 6158유로가 공과금 체납 관련 부채이다.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과중채무로 지원을 신청한 서류 중 80%는 소비와 관련된 부채이며, 전체 신청서류 중 82%는 공과금 체납 등을 포함하고 있다. 프랑스 전체 가계부채에서 소비와 관련된 부채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매우 큰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과중채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Banque de France, 2017a).

2. 프랑스의 가계부채 대책과 저소득층 지원

프랑스의 가계부채 대책은 정부와 프랑스중앙은행의 엄격한 통제에 따라 이루어져 왔다. 대다수 은행은 가계의 부채율(Le taux d'endettement), 즉 부채 상환액이 월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추가 대출을 허용하지 않아 왔다. 그것은 월 소득에서 30% 이상을 이자로 지불하는 경우,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물론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중산층 이하의 시민들에게 이러한 규정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더불어 법정이자율(taux d'intérêt légal)과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그것은 프랑스중앙은행이 분기별로 발표하는 개인채권자 및 기타 채권자 대상 이자율을 의미하는데, 2017년 2/4분기 법정이자율은 개인채권자의 경우에는 3.94%이며, 기타 채권자는 0.90%이다. 그리고 연체에 적용되는 추가 이자율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규정하고, 그 이상의 이자를 고리로 간주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좌파와 우파로의 정권 교체가 빈번했고, 그때마다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와 민영화 계획이 추진되었지만, 법정이자율은 꾸준히 하락해 왔다. 이런 이유에서 금융시장에서 신용공급자들의 과다경쟁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하였고, 그것이

초래한 사회적 파장 또한 적었다고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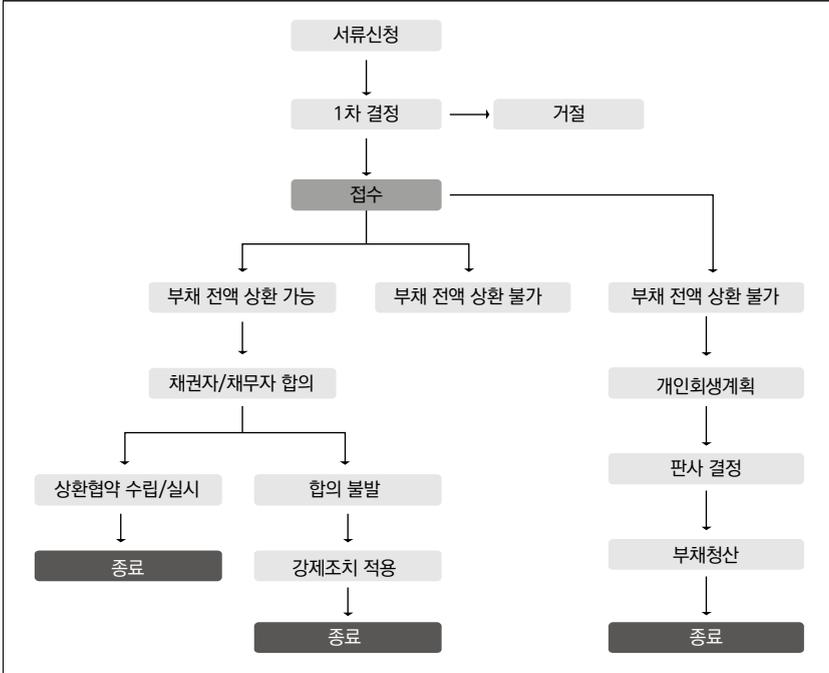
그럼에도 1980년대 후반부터 프랑스 사회가 직면한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은 가계부채 문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되자 정부 차원에서 각종 대책이 강구되기 시작하였다. 1989년 12월 31일 제정된 법률(la loi Neiertz = la Loi n°89-1010)에서 시작점을 찾을 수 있다. 이 법률을 계기로 과중채무자를 지원하는 법적 절차가 시작되게 된다. 하지만 이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과중채무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1995년의 일이다. 그리고 상환 계획을 수립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부채에 대한 부채탕감방안이 도입된 것은 2003년의 일이다. 사실상 가계부채 대책이 보다 본격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한 것은 2008년 이후라고 말할 수 있다. 참고로 2008년과 2013년 채무 조정을 요청하는 신청이 약 100만 건까지 증가한 것을 계기로 적극적인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프랑스 가계부채 대책, 특히 과중채무자와 관련한 몇 가지 시의성 있는 대책은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차주의 부채 규모와 상환능력에 대한 체계적 평가를 전면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중채무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조건을 부과하게 된다. 둘째, 프랑스인 전체의 신용정보를 토대로 한 포지티브 리스트를 작성하여 각종 대출 업무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각 차주의 대출 정보가 분산되어 대출 심사에 활용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셋째, 금융기관(특히 은행)의 현금인출기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조치이다. 그것은 과중채무자가 현금인출기를 통해 추가 대출을 받아 부채가 급증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넷째, 대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2016년 부동산 대출과 관련된 지침(Ordonnance 2016-351 du 25 mars 2016)을 통해 대폭 강화되었다.

프랑스에서 과중채무(surendettement)란 법률¹²⁾에 의해 개인 및 가계채무를 상환하기 힘들다고 인정하는 상태를 지칭하며, 그 판정과 지원을 담당하기 위해 과중채무위원회(Commission de Surendettement)를 각 도(Département)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중앙본부는 프랑스중앙은행(Banque de France)이다. 이 위원회는 신청자의 채권자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데, 이를 위해 신청자는 1) 선의를 가졌음이 확인되어야 하고, 2) 비직업적 채무, 즉 사적 채무에 대해, 3) 상환이 불가능할 정도로 과중한 채무를 지고 있어야 한다. 비직업적 채무에 국한한다는 것은 자영업자의 부채는 상업재판소나 상급법원에서 의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적인 부채라도 자의적으로 과도한 부채를 졌다고 판단된다면 신청서는 반려된다. 그리고 이 신청을 하는 순간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참고로 과중채무위원회는 신청자의 부채를 대신 상환하거나 부채를 상환하도록 돈을 빌려주는 기능은 하지 않는다. 이 위원회는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주재하며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은 정부 재정을 대표하는 1인, 대출기관과 소비자를 대표하는 2인, 사회적경제 또는 가족경제 분야 전문가 1인, 법률가 그리고 프랑스중앙은행의 지역 지부 대표(간사)로 구성된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중앙은행은 각 신청자의 과중채무 상태를 진단하고 채권자와 협상을 하고, 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과중채무위원회의 지원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다.

12) 프랑스의 소비법(code de la consommation) 조항 L의 330-1항은 채무 조정에 적용되는 과중채무(surendettement)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과중채무란 각 개인(personne physique)이 부채 상환의 선의를 갖고 있음에도 비사업적인 부채의 전체를 상환하는 것이 명시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힘들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을 지칭한다”.

[그림 3-13] 프랑스의 과중채무 지원 절차



자료: Banque de France. (2016b). Le Surendettement : Vos droits, vos obligations, Les solutions possibles, La vie de votre dossier. p. 11.

과중채무위원회의 과중채무자 및 과중채무가구에 대한 지원 절차와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Banque de France, 2015, pp. 1-10).

〈신청에 앞선 자구노력: 선의의 입증〉 스스로 채무가 과중하여 상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면, 과중채무위원회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신청에 앞서 성실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는 신청 접수와 관련해서 선의를 가졌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먼저 가계재정을 흑자로 만들기 위해, 즉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부채를 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청을 위한 상담〉 자구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채 상황이 힘들다고

판단되면, 사회부조를 담당하는 다음 기관들(가족수당사무소나 주거급여 사무소 등)에 접촉하여 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1) 사회지원 지역센터(Centre Communal d'Action Sociale: CCAS), 2) 시도의 사회서비스센터, 3) 가족지원단체나 소비자보호단체 등이다. 이 조직들은 신청자가 처한 상황을 법률이나 복지급여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과중채무 신청서를 제출하게 지원한다. 상담 과정에서 신청자의 채무상태가 일시적이거나 제한적이라고 판단되면, 은행과 부채 상황과 관련된 상담을 받게 하고, 채무상태가 일시적이지만 심각한 상황이라면, 주소지의 법원에 부채 상환의 연기를 요청하게 한다.

〈신청 접수와 확인〉 과중채무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통상적으로 48시간 내에 우편으로 접수 확인증을 받게 된다. 이 시점에 채권자나 거래은행은 신청서 제출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다. 신청서류는 개인부채상환사고기록국(Fichier national des incidents de remboursement des credits)에 등록된 이후, 채권자와 은행들이 이를 참조할 수 있게 된다. 신청서를 제출했다라도 부채와 각종 공과금 그리고 월세 등은 계속 납부해야 한다. 반면에 신청자에게 내려진 추심을 정지하도록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위원회는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판사에게 재산이나 월급 등에 대한 압류를 정지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된다. 이 기간 중에 주의할 점은 더 이상의 부채를 저서는 안 되며,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신청 승인 여부 판정〉 과중채무위원회는 신청서를 토대로 재무상황과 가족상황 그리고 직업상황을 검토하고,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후, 신청자가 매달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을 산출하여 상환능력 정도를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평가 결과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을 승인하거나 거절하게 된다.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당연히 거절된다. 그리고 신청서가

승인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몇 가지 해결책이 제시되게 된다: 만일 신청자의 상황이 가능하다면, 1) 신청자와 채권자 간 협의된 상환계획을 마련하거나, 2) 신청자와 채권자에게 강제되는 권고 또는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하지만 신청자의 재정상태가 부채의 일부조차 해결하기 힘든 경우라면, 개인회생절차(une procedure de retablissement personnel: PRP)를 제안하게 된다. 이 해결책 중 하나가 결정되면, 신청자와 채권자 그리고 해당 은행에 통보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신청자와 채권자 그리고 해당 은행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의신청은 판사에게 접수되고, 판사는 이를 재평가해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 판결은 다시 과중채무위원회에 통보된다.

〈효력 발생〉 이 과정이 모두 끝나면, 비로소 과중채무와 관련된 결정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 효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 각종 압류는 향후 2년간 정지된다. 만일 부양채무가 아니라면, 압류 중인 채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2) 집에서 퇴거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면, 위원회에 퇴거 중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판사의 승인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3) 채권자나 해당 은행은 급여가 지급되는 통장이나 부동산담보대출 보험금이 지급되는 계좌에 대해 폐쇄하거나 변경할 수 없게 된다. 4) 신청자는 은행계좌를 유지할 권리를 가지며, 각자의 상황에 맞는 지불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5) 계좌로부터 자동인출을 거부하는 경우, 어떠한 비용도 지급될 수 없게 된다. 다만 압류 정지 등에 소요된 비용이나 은행이 위원회에 지불하는 비용은 지급될 수 있지만, 감액 신청되게 된다. 하지만 모든 부채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1) 은행 부채: 부동산 관련 부채, 소비성 부채 중 확인된 부채, 2) 공과금 미납분, 즉 집세 채납분, 전기수도세 및 통신료, 세금 채납분 등, 3) 기업에 대한 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 등이다. 반면에 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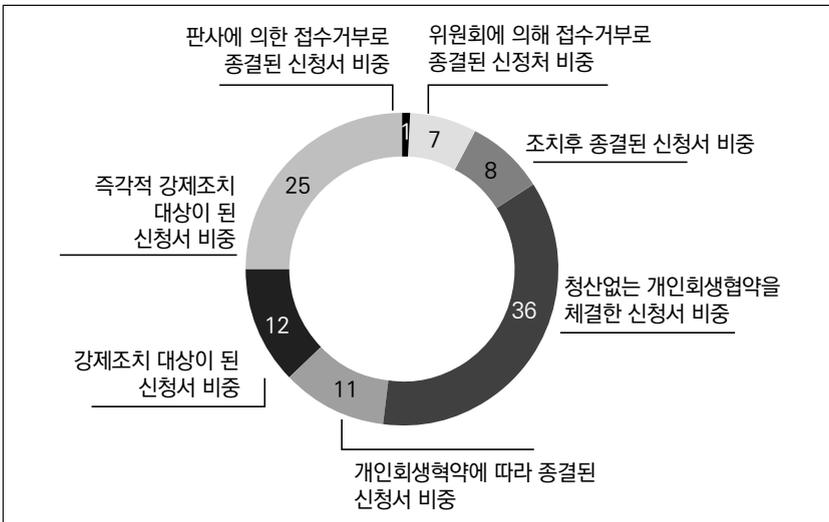
과 같은 부채는 해당되지 않는다. 1) 부양비, 2) 유죄 판결로 부과된 벌금, 3) 피해자에 대한 변상금, 4) 담보대출, 5) 사회보장 부당청구금 등이다.

〈보호에 따른 의무〉 이러한 보호에 따른 의무조항이 있다. 1) 위 결정이 적용되는 2년간, 더 이상의 부채를 저서는 안 되며, 신용카드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 단, 판사에게 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2) 판사의 승인 없이는 재산의 일부라도 팔거나 양도할 수 없다. 3) 부동산이나 소비와 관련해서 새로 발견된 부채를 상환해서는 안 된다. 4) 결정 이전 날짜의 연체된 공과금을 납부해서는 안 된다. 대신에 다음과 같은 상환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1) 결정 이후의 임대료와 공과금을 납부해야 한다. 2) 부양채무나 배상금은 계속 지급해야 한다. 3) 가계재정을 흑자상태로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주거수당이나 가족주거수당 지급이 중지된 상태라면, 지급이 재개되게 된다. 그리고 각종 사회수당은 신청하면 다시 지급되게 된다.

〈부채상환협약과 그 종료〉 이 단계를 거치고 나면, 신청자와 채권자 간에 부채상환협약, 즉 회생계획(Le plan conventionnel de redressement)이 체결되게 된다. 그리고 위원회는 이 계획과 관련해서 채권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의하게 된다. 1) 신청자의 부채 총액을 파악하고, 2) 상환해야 할 부채 총액을 줄이고, 3) 이자율을 낮추고, 4) 예외적으로 자가 소유자인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부채를 동결하게 된다. 반대로 신청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요구가 제시된다. 1) 재무관리 노력, 2) 구직활동, 3) 자동차 처분, 4) 각종 예금의 해지 등이 그것이다. 이 계획에 대해 신청자와 채권자가 합의에 이르면, 위원회가 이를 인정하고, 위원장이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갖게 된다. 이 결정은 개인부채상환사고기록(Fichier des incidents de remboursement des credits aux particuliers: FICP)에 최대 7년간 등록되며, 아무런 사고 없이 조건이 이행되는 경우에는 5년 내에 기록이 삭제된다.

〈접수 거부와 개인회생절차〉 하지만 신청자의 채무상태가 상환계획에 대한 합의에 이를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procedure de retablissement personnel: PRP)를 제시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주어진다: 1) 법적 청산절차를 통한 개인회생이다.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압류할 수 있거나 매매 가능한 재산은 모두 청산된다. 청산절차를 통해 마련된 금액이 부채를 모두 상환하지 못하면, 잔여부채는 탕감된다. 2) 법적 청산절차 없는 개인회생이다. 이는 신청자가 아무런 재산도 없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 경우에는 위원회가 판사에게 신청자의 부채를 탕감해 줄 것을 요청하고, 판사가 이를 승인하면 모든 부채가 탕감된다. 이 결정에 대해 신청자와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판사는 이를 기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결정이 내려지면, 신청자는 5년간 FICP에 등록되게 된다. 앞서 언급한 일부 부채는 청산되지 않는다.

[그림 3-14] 2016년 과중채무위원회의 신청서 접수 및 적용상황별 구성 분포



자료: Banque de France. (2017b). Le Surendettement, L'Eco en Bref, mai-juin. p. 2.

3. 프랑스 사례의 시사점

프랑스 가계부채 및 과중채무 실태, 정부대책의 발전 과정을 보면, 다음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금융산업, 특히 소비자금융에서 규제 완화나 신용 공급을 위한 대출기관의 경쟁을 엄격하게 통제함으로써 가계부채가 증가할 소지를 줄여 왔다는 점이다. 이는 프랑스 가계부채 대책이 영국의 그것과 다른 성격을 띠는 이유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과중채무를 규정하는 기준에 채무자의 선의를 강조하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둘째, 빈곤층에게 발생하는 소비를 위한 부채 증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회보장정책의 역할에 주목해 왔다는 점이다. 각종 과중채무 상담과 지원 신청과 관련해서 지역 사회보장 전달체계 조직들을 창구로 설정하였다는 것이 이를 말해 준다. 물론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각종 복지급여가 빈곤층의 소비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환능력이 없는 빈곤층에게 부채를 통해 문제 해결을 하도록 용인함으로써 나타날 충격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했음을 말해 준다. 셋째, 과중채무자 지원과 복지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데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중채무자로 승인되면, 가족수당이나 주거급여 등 필수재적 소비 지출을 위해 필요한 복지급여를 수급 또는 재수급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과중채무자들이 신용 회복이나 개인회생 단계에서 경험하게 될 소득 감소의 충격을 완화하는 데 주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프랑스 가계부채 대책에서 시민단체들의 활동 또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그 양상이 과중채무자를 위한 금융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은 않다는 점이다. 그것은 빈곤층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 금융교육 이전에 이들의 일자리와 복지급여 등을 어떻게 보장하는가의 문제가 더 큰 관점이라는 점을 말해 준다. 달리 표현

하면, 정부 지원을 매개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크지 않다는 점을 말해 준다. 이는 프랑스중앙은행 차원에서 과중채무자 대상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가계 부채나 금융 소외와 관련된 시민단체들은 금융교육에 대한 강조가 갖는 국가와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 이후에 강조할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제4절 일본의 가계부채 실태 및 지원정책

2016년 현재 일본에서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OECD 국가들 중 상대적으로 중간 수준에 위치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1990년대부터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일본은 공공부채 문제와 달리 가계부채 문제는 그리 심각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새로운 가계부채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다만 부채 총액은 크지 않지만 많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다중채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본 사회가 과거에도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일본의 가계부채에서 다중채무와 과중채무 문제는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켰다. 특히 일본의 고유한 문화와 맞물려 다중채무 문제는 가족 해체나 자살 등의 사건을 증가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 빈곤 문제가 심화되어 왔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橘木俊詔·浦川邦夫, 2007, pp. 7-8; 塩津ゆりか, 2010, pp. 14-15).

그에 따라 일본 정부는 대부업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였고, 다중채

무자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왔다. 실제로 일본 후생노동성에 설치된 자살대책기구나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에서 다중채무자 문제가 중요한 업무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술적으로도 다중채무를 가진 위기집단에 대한 연구 또한 상당 수준 축적되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적 경험은 한국 사회에서 가계부채 문제나 대부업 호황으로 인해 야기되는 다양한 사회적 충격을 해결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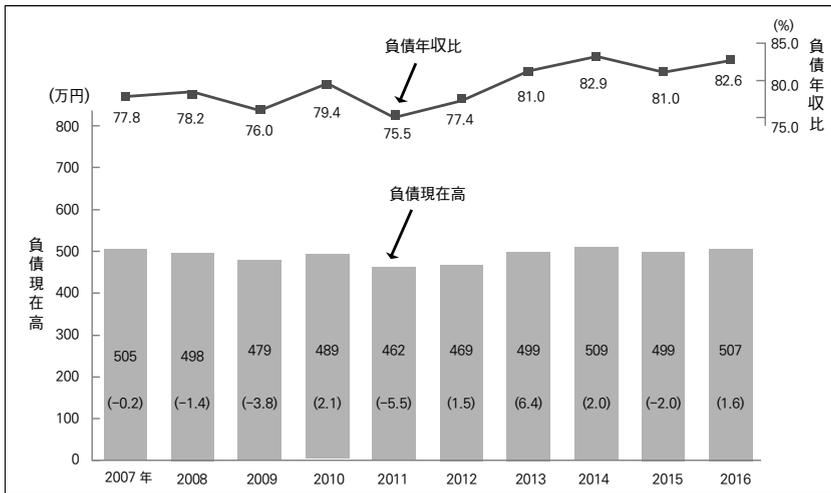
1. 일본 가계부채의 실태

일본 가계부채 문제의 일반적 특징은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2000년대 이후 전체 가계부채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항상 일정 수준을 유지해 왔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 가계부채가 2000년대 초반부터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한 것과는 크게 다른 부채 구조임을 말해 준다. 둘째, 가계자산의 구성을 보더라도, 전체 가계자산에서 현금이나 예금, 보험과 연금준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 주식시장 붕괴 등 금융시장의 변동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점이다. 셋째, 소득계층별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저소득층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보면, 평균적으로 자산이 부채보다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른 국가에서 저소득층의 자산이 거의 없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과 다르다는 점을 말해 준다. 이 모든 요인은 금리 인상이나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인한 가계부채의 악성화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말해 준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1990년대 이후 일본의 가계부채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일본의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에서 차

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어지는 표를 보면, 이러한 가계부채 비중의 증가세가 부채금액 자체의 증가보다는 가구소득 감소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일본의 평균 가계부채액은 505만 엔에서 507만 엔으로 약 2만 엔가량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기 힘들다. 반면에 같은 기간 평균 가처분소득은 649만 엔에서 614만 엔으로 감소하였다. 이것이 아래 그림에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게 된 이유인 셈이다.

[그림 3-15] 일본 가계의 부채 규모 및 연소득 대비 부채 비율 추이



주: 위 결과는 2인 이상 세대의 부채, 막대의 괄호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総務省統計局. (2016). 家計調査報告(貯蓄/負債編): 平成28年(2016年)平均速報結果の概要.

아래 표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가처분소득의 감소에 따른 가계부채 비중의 증가세만이 아니다. 이 표는 전체적으로 부채 보유 세대는 감소하고 있지만, 부채를 가진 세대의 평균 부채금액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2007~2016년 가계부채 중앙값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는 같은 기간 일본의 소득분배구조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득 여력이 있는 집단의 가계부채 증가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표 3-15〉 일본 가계의 부채와 소득 추이

(단위: 만 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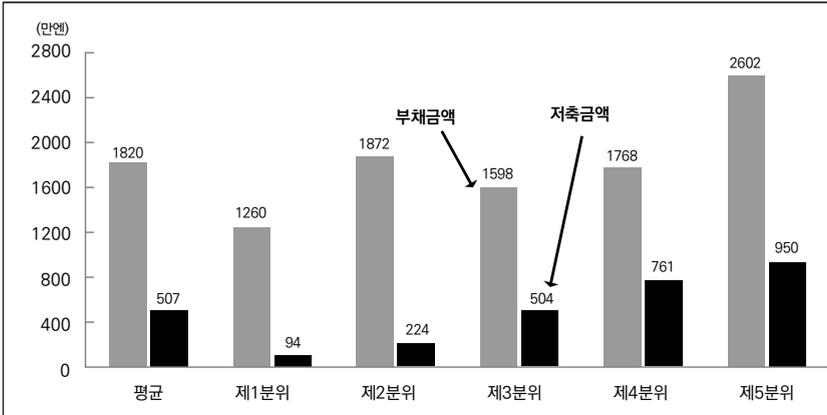
	부채액	연소득	전년 대비 증감률		연소득 대비 부채비율	부채 보유 세대 비율	부채 보유 세대 부채액	부채 보유 세대의 중앙값
			부채	연소득				
2007	505	649	-0.2	0.6	77.8	40.6	1242	892
2008	498	637	-1.4	-1.8	78.2	41.1	1211	830
2009	479	630	-3.8	-1.1	76.0	40.5	1184	860
2010	489	616	2.1	-2.2	79.4	40.0	1223	859
2011	462	612	-5.5	-0.6	75.5	38.2	1207	888
2012	469	606	1.5	-1.0	77.4	38.9	1208	862
2013	499	616	6.4	1.7	81.0	38.7	1291	981
2014	509	614	2.0	-0.3	82.9	37.8	1349	1019
2015	499	616	-2.0	0.3	81.0	38.1	1310	976
2016	507	614	1.6	-0.3	82.6	37.3	1357	1006

자료: 総務省統計局. (2016). 家計調査報告(貯蓄/負債編) : 平成28年(2016年)平均速報結果の概要.

아래 그림은 일본의 가계부채 문제와 빈곤 문제가 갖는 관련성을 잘 보여 준다. 전체 소득 5분위 집단 중 가장 소득이 낮은 하위 1분위 계층의 가계부채는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소득능력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부채 부담은 매우 큰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소득 하위 2분위 계층의 부채금액이 3분위 소득계층에 비해서도 크다는 점이다. 이는 전체 소득피라미드에서 하위계층에게서 부채가 크며, 부채 상황에 따른 부담 또한 크다는 점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이들의 저축금액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출 여력이 적어 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저축이 힘

든 상황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림 3-16] 일본의 소득5분위별 가계저축과 부채 비교(2016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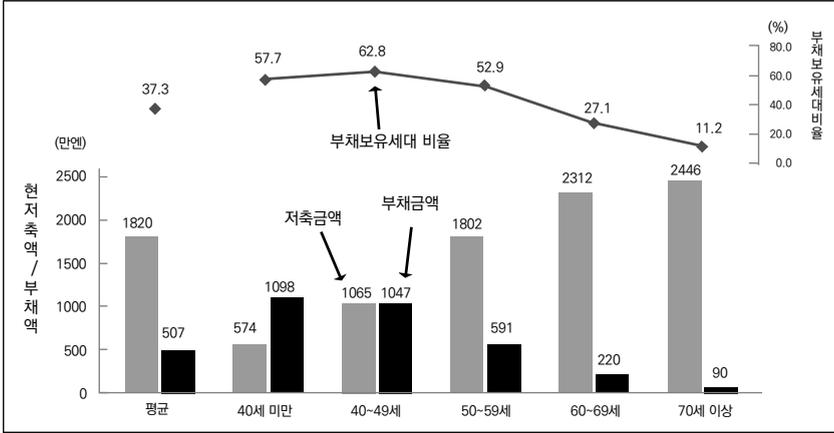


주: 위 결과는 2인 이상 세대의 부채.

자료: 総務省統計局. (2016). 家計調査報告(貯蓄/負債編): 平成28年(2016年)平均速報結果の概要.

그렇다면 일본의 가계부채는 어떠한 연령층에서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부채금액은 40세 미만의 계층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며, 40~49세 계층이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50대 계층부터는 저축금액이 증가하고 부채금액이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40세 미만의 연령층은 소득은 낮고 지출이 큰 집단이라는 점에서 생애주기가설에 따르면, 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60세 또는 70세 이상의 노인층에서는 다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저축이 줄고 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일본의 노인계층은 가장 안정적으로 연금을 공급하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미 일정 수준의 자산을 형성한 집단이라는 점에서 가계부채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림 3-17] 일본 가계저축과 부채의 세대주 연령대별 구성(2016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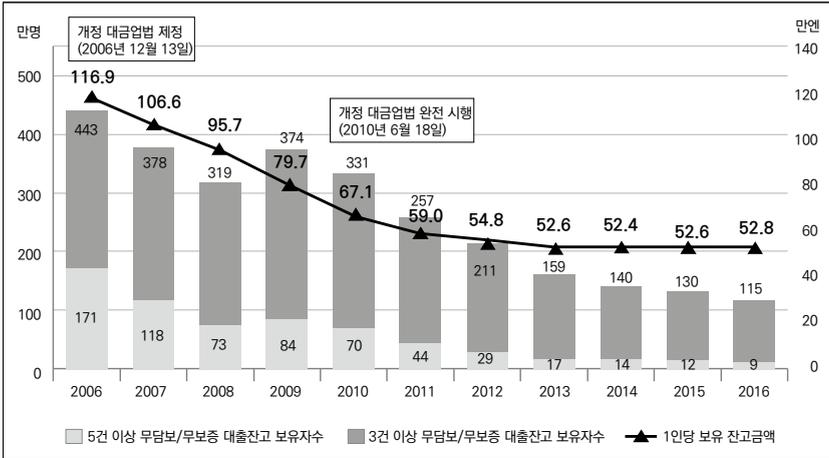
주: 위 결과는 2인 이상 세대의 부채.

자료: 総務省統計局. (2016). 家計調査報告(貯蓄/負債編) : 平成28年(2016年)平均速報結果の概要.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 과중채무 문제에 대해서는 다중채무자와 관련된 실태를 기술하는 것으로 같음하겠다. 그 이유는 일본에서는 과중채무 문제와 관련해서 다중채무자 문제에 주목하고 있으며, 관련 통계 또한 이를 중심으로 발표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본 사회에서 1990년대 가계부채가 사회 전체에 미친 충격 중 자살 문제는 일본 언론을 통해 이미 많이 보도되었다. 그에 따라 일본 내각부의 자살대책추진실은 일본 신용정보기구의 정보를 토대로 1인당 대부업 이용자 및 다중채무 이용자 규모 및 1인당 잔고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아래 그림은 2006년 대부업법 개정 이후의 다중채무자 규모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이 표에 따르면, 적어도 일본에서 다중채무로 인한 과중채무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06년에서 2016년 사이, 5건 이상 무담보/무보증의 다중채무를 보유한 사람은 171만 명에서 9만 명으로 감소하였으며, 3건 이상 다중채무를 보유한 사람은 443만 명에서 115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같은 기간 평균 대출 잔액 또한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18] 일본의 대부업법 개정 이후 다중채무 실태 변화



자료: 家計相談支援・生活福祉資金のあり方について. 社会保障審議会生活困窮者自立支援及び生活保護部会(第4回), 平成29年7月11日(資料4).

그리고 일본 정부는 다중채무로 자살한 사람의 규모 또한 매년 발표하고 있다. 아래 표를 보면, 전체 자살한 사람의 규모는 2007년 연간 3만 3000명에서 2014년 2만 5000명으로 약 2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다중채무 등의 부채 사유로 자살한 사람의 수는 2007년 1973명에서 2014년 677명으로 6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다중채무가 사회에 주는 자살 등의 충격을 완화하는 데 소정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을 말해 준다.

〈표 3-16〉 일본에서 다중채무가 원인이 되어 자살한 사람의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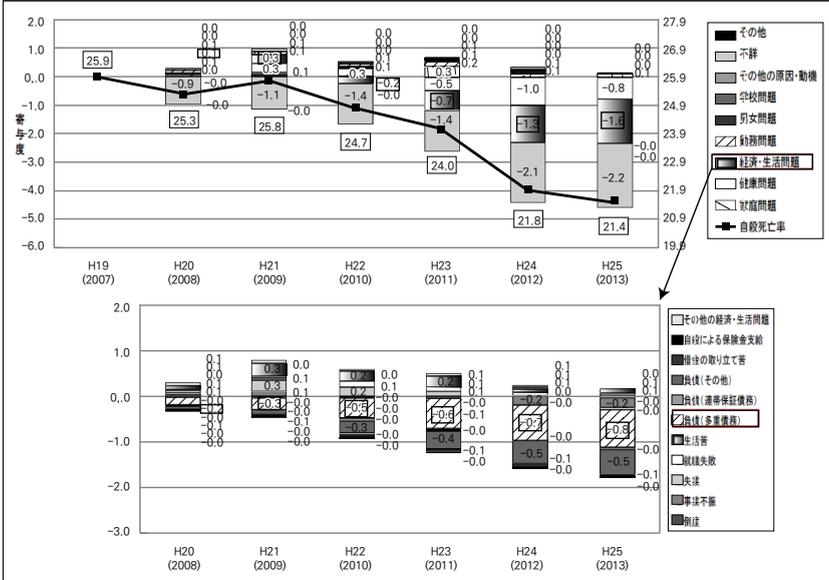
(단위: 인)

	전체 자살자 수	다중채무 관련 자살자 수
2007	33,093	1,973
2008	32,249	1,733
2009	32,845	1,630
2010	31,690	1,306
2011	30,651	998
2012	27,858	839
2013	27,283	688
2014	25,427	677
(19年比)	(▲23.2%)	(▲65.7%)

자료: 金融庁/消費者庁/内閣府(自殺対策推進室). (2016). 多重債務問題をめぐる現状について.

구체적으로 자살 동기별로 기여도를 보면, 대부업법이 개정된 시점부터 다중채무로 인한 자살률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래 그림 중 위의 그림이 전체 자살률의 동기별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면, 아래 그림은 경제생활 관련 원인을 중심으로 그 영향을 살펴본 것이다. 그 중에서 부채로 인한 자살이 전년 대비 빠르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중에서도 다중채무로 인한 자살의 감소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9] 일본의 자살을 변화와 자살의 원인·동기별 기여도 추이



자료: 警察庁自殺統計原票データ、総務省「国勢調査」及び総務省「人口推計」; 金融庁/消費者庁/内閣府(自殺対策推進室)(2016), 多重債務問題をめぐる現状について에서 재인용.

2. 일본의 가계부채 대책과 저소득층 지원정책

일본의 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1980년대 <잃어버린 20년>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말한다. 심지어 국제기구에서 일본의 당시 사례가 가계부채의 부실을 방지하는 경우, 그것이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상황이다. 사실 일본은 1980년대 경제부양을 위해 저금리정책을 고수하여 부동산 관련 대출의 급격한 증가를 방조하였다. 그리고 뒤늦게 1990년대 부동산 관련 대출을 규제하면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는 부동산담보대출과 관련된 부실채권으로 금융기관이 부실화되고, 가계는 부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파산에 이르게 되고, 가처분소득의 감소로 내수가 침체되는 양상이 발생하였음을

의미한다. 1970~1990년대 일본에서는 대부업체에서 고리로 돈을 빌려 쓴 시민들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과도한 추심에 시달려 일가족 자살이나 야반도주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부채를 다른 대출로 갚는 일명 돌려막기 또한 성행하였다. 이른바 부채지옥의 문제가 심각했던 것이다(이종인, 2010, pp. 61-63).

이처럼 다양한 경제사회 문제를 경험한 일본 정부는 2006년 최고이자율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자제한법 개정과 강제추심을 금지하고, 불법 대부업체¹³⁾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를 담은 법률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른바 신대부업법이었다. 이 조치는 일본 가계부채 관련 대책의 역사에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이는 2003년 대부업법 개정에서 언급된 다중채무와 관련한 대책을 내실화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2009년 6월에는 과잉대출 규제와 대부업 등록 조건을 강화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연 수입의 3분의 1을 넘는 돈을 대출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대부업체의 자본금은 5000만 엔 이상으로 제한하였으며, 자격시험도 의무화하였다. 이 조치를 계기로 일본의 대부업체 수는 크게 감소하였다. 더불어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와 출자법상 최고금리 사이에 존재하던 일명 <그레이 존> 금리 또한 폐지되었다. 더불어 다중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발표되었다. 그것은 1) 상담창구 확대, 2) 안전망 대출,¹⁴⁾ 3) 불법 고리 박멸, 4) 소비자 교육을 골자로 하는 것이었다(金融庁, 2007, pp. 2-5; 일본 대금업법안(세계법제

13) 불법금융(ヤミ金)은 사채업, 불법 고리대금업 등 국가(재무국)와 도도부현에 대부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나 그 업무를 지칭하며, 광의로는 합법적으로 대부업체 등록을 하고 있더라도 출자법을 위반하는 고금리를 받는 대부업자나 그 업무를 포함하고 있다.

14) 개인을 위한 <안전망 대출>이란 1) 가계재건대출(loan)의 확대, 2) 가계대출과 상담서비스의 결합, 3)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한 생활복지자금 대출사업의 개선, 즉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금융상담서비스와 대출사업의 연계, 대출기간 단축, 서류 간소화, 다른 관련기관으로의 연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것이다.

정보센터 번역본, 2009).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빈곤층의 가계부채 문제는 여전히 큰 쟁점이 되고 있다. 논의의 핵심은 일본 사회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상당 부분 빈곤에서 비롯되며,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중채무 문제를 예방하기 힘들다는 것이다(宮坂順子, 2004, p. 10). 이는 가계부채의 발생 원인에 대한 각종 조사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실제로 저소득층 가계부채의 발생 원인이 생계비 조달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 이를 말해 준다. 아래 표는 개인파산 사유를 연도별로 제시한 것이다. 이를 보면, 2011년 시점에서 생활고 때문이라고 답한 사람이 60.29%로 1997년의 45%에 비해 약 1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실직이나 전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 때문이라고 답한 사람이 19.77%로 1997년의 10%에 비해 두 배가량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직장 변동은 없었지만 임금이 감소하여 부채를 지게 되었다는 응답 또한 6%에서 16.13%로 약 10%포인트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본에서 다중채무는 소득 감소에서 기인하였으며, 그것은 주로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표 3-17〉 개인파산 사유(다중채무에 빠진 원인)

(단위: %)

부채원인	조사 연도					
	2011	2008	2005	2002	2000	1997
생활고/저소득	60.29	64	62	61	51	45
의료비	20.26	21	23	20	26	23
실업/전직	19.77	15	18	14	13	10
임금감소	16.13	11	12	8	8	6
사업자금	23.66	19	19	25	25	26
부채상환(보증제외)	24.47	28	32	29	31	29
보증채무	18.96	25	25	25	27	26
제3자 채무변제	7.37					
명의대여	3.32	3	4	5	4	5
생활용품구매	11.43	9	8	7	8	10
교육비	7.78	7	8	5	6	4
관혼상제	2.43	1	2	2	2	4
주택구입	12.24	10	11	9	7	5
도박	4.94	4	3	2	4	2
낭비/유혹비	9.56	7	7	7	8	7
주식/부동산투자	1.46	1	1	1	1	2
기타	14.59	16	17	16	11	13

자료: 金融庁/消費者庁/内閣府(自殺対策推進室). (2016). p. 8.

위에 언급한 개인파산을 초래한 다중채무의 원인은 일본의 가계부채 문제가 주로 근로빈곤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이러한 이유에서 기존의 가계부채 대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기도 하였다. 이는 다음 세 가지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저소득층의 대출을 장려하기보다 이들의 취업을 촉진하고, 2) 필수적 지출을 보전하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3) 그래도 필요한 최소한의 소액대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무이자 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野村總合研究所, 2015). 이러한 이유에서 일본 정부는 다중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다음 두 가지 대책을 추진하여 왔다. 1) 다중채무와

자살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사실 일본 사회에서는 과중한 채무에 시달리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자살 등의 극단적 선택을 해 왔다. 그리고 이 점은 각종 정부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일본 내각부는 자살대책추진실(自殺對策推進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자살 대책의 하나로 다중채무 문제를 다루고 있다. 둘째, 2013년 제정된 생활곤궁자자립지원법을 통해 주로 근로빈곤층 중 다중채무자를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주거급여의 지급, 취업 지원, 그리고 무이자 복지자금 대출을 연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중에서도 근로빈곤층의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생활곤궁자자립지원법의 도입에 대해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전후 수십 년간 생활보호제도를 개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 빈곤 문제의 성격이 변화하고, 근로빈곤층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2003년 일본 정부는 생활곤궁자자립지원법을 제정하여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 제도는 생활보호제도와 달리 현금급여 중심의 제도가 아니라, 근로빈곤층 대상 취업 지원 그리고 취업을 위한 가구 여건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제도이다. 그리고 이 사업 중 일부는 생활복지자금의 대출과 관련해서 다양한 금융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생활곤궁자자립지원법의 가계상담지원사업 중 다중채무자 관련 대책과 생활복지자금대부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 대부제도는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존의 대부제도, 즉 연금담보대부제도를 대체하였다는 점이다. 그 이전까지 일본 정부는 다중채무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나 정부가 지원하는 무이자대출을

확대하는 조치보다, 각 개인의 자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강조하는 조치를 취해 왔다. 예를 들면, 연금담보대부제도를 지칭한다. 하지만 이 제도는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정 금액이 축적된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근로연령대의 빈곤층이나 여성 그리고 청년 등에게는 적절한 지원제도가 되기 힘든 것이었다. 결국 2013년 3월 후생노동성은 생활복지자금대부를 확대하고 연금담보대부사업을 폐지하는 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는 근로빈곤층 등 새로운 유형의 빈곤층이 증가하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으며, 생활공공자립지원법 제정과 같은 시점이다. 생활공공자립지원법은 근로빈곤층을 위해 취업 지원 및 주거 지원 등 복지 지원 외에도 세금 체납이나 다중채무에 노출된 빈곤층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제도와 더불어, 과중한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근로빈곤층이 본격적으로 정책지원의 대상으로 포함되게 되었다. 아래 표는 기존의 연금담보대부제도와 그것을 대체한 생활복지자금대부제도의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150 근로빈곤층의 부채에 대한 질적연구 - 부채발생과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표 3-18〉 일본 연금담보대부제도와 생활복지자금대부제도의 비교

	연금담보대부제도	생활복지자금대부제도
법적근거	독립행정법인 복지의료기구법 (평성14년 법률 제166호)	생활복지자금대부제도요강 (평성21년 7월 28일 후생노동사무차관통지)
제도취지	후생연금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 수급권자에 대해, 그의 수급권을 담보로 하는 소액자금 대출을 시행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에 대해, 자금을 대부하고, 필요한 지원을 행하며, 경제적 자립 등을 도모하고, 안정된 생활을 지원
실시주체	독립행정법인복지의료기구	도도부현사회복지협의회 (시구정촌사회복지협의회)
접수창구	수탁금융기관(약 2만 개 점포)	시구정촌사회복지협의회(약 1800개)
대부 대상자	국민연금 및 후생연금보험 수급자	저소득층, 장애인세대, 고령세대
대부 한도액	다음 항목 중 최저금액, 연금액의 0.8배 이내, 또는 각 연금지급기한 반환액의 15배 이내, 또는 200만 엔(생활필수품은 80만 엔)	복지자금의 경우, (1) 복지비: 10만~580만 엔 이내 (자금목적에 따라 다름) (2) 긴급소자금: 10만 엔 이내
상환방법	원칙, 정액상환액의 15배는약 2년 6개월 이내	복지자금의 경우 (1) 복지비 20년 이내 (자금목적에 따라 다름) (2) 긴급소자금: 12개월 이내
상환기간	원리균등상환	원칙, 원리균등상환
이자율	1.9%	원칙, 무이자 (보증인이 없으면 1.5%)
이용건수	9만 1221건	2만 9782건
연간 대부액	194억 5000만 엔	152억 3000만 엔

자료: 家計相談支援・生活福祉資金のあり方について. 社会保障審議会 生活困窮者自立支援及び生活保護部会(第4回), 平成29年7月11日(資料4).

이처럼 자신의 노후자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정부가 재원을 부담하는 대출사업으로 개편한 이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연금담보대부사업을 통한 대출 사유 중 상당 규모가 생활필수품을

구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사업을 정비하였음을 의미한다.

3. 일본 사례의 시사점

일본의 가계부채 대책, 특히 저소득층 과중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대책은 우리나라의 관련 대책에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첫째, 일본 사회에서 고질적인 가계부채 문제였던 대부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통해 매우 큰 정책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당시 대부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빈곤층 등 취약계층의 대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비판, 그리고 그로 인해 이들이 향후 더 높은 이자로 부채를 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음에도,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이다. 둘째, 일본의 가계부채 대책은 근로빈곤층에 주목하여 고용과 복지 그리고 금융정책을 적절히 연계하는 방식으로 발전했다는 점이다. 그것은 근로빈곤층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에서 소득 감소에 따른 결핍을 해소할 복지대책, 패자부활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 취업지원대책, 그리고 이들이 다시 다중채무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금융교육을 결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셋째, 일본의 가계부채 대책에서 변호사와 시민단체의 적극적 역할이 있었다는 점이다. 사실 일본 정부는 불법 대부업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최고금리 제한이나 대부업에 대한 규제가 또 다른 충격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을 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로 하여금 강력한 신대금업법을 제정하게 만든 추동력은 변호사와 시민단체 그리고 채무자들의 연합이었다. 넷째, 근로빈곤층의 가계부채, 특히 다중채무 문제가 자살 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대처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가계부채로 인한 심리적 물질적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하는 것은 문화적인 요인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가계부채와 자살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과도한 부채를 가진 채무자라도 인간답게 살면서 부채를 상환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다.

제 4 장

저소득층 가계부채 실태 진단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소득계층별 가계부채의 규모와 추이

제3절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보유 형태

제4절 저소득층 가계부채의 부담 실태

제5절 소득분위별 가계부채 결정 요인

제6절 소결

4

저소득층 가계부채 실태 진단 <<

제1절 들어가며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뇌관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 3월 말 현재 가계부채 잔액은 1359조 7000억 원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금액이다.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와 함께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3.3%에 달하여 가계의 채무 상황 부담이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자산 대비 부채의 규모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부채의 70%가량이 신용도가 높은 고소득 계층에 집중되어 있는 등 가계부채 전반에 걸쳐 건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다만 정책 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약한 구조를 가진 주택담보대출과 상환능력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부채 부담이 가계부채 부실화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혼란을 촉발시킬 수 있는 취약한 고리라는 점에 대하여 대체적인 합의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의 충격을 벗어난 2000년 이후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저소득층의 부채 부담도 빠르게 증가하여 왔다. 최근 들어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조치가 전방위적으로 취해지면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부담은 이미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가계부채 중 저소득층이 보유한 부채의 규모가 크지 않아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부

실화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사태로 비화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경우 자산을 매개로 하지 않는 신용대출의 비중이 매우 높아서 외부 충격에 특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바로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특별한 정책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저소득 계층의 과중한 부채 부담과 그로 인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이 수립되고 실행될 필요가 있다. 부채 조달 및 관리는 물론 부실채무 정리 등 여러 측면에서 저소득층의 요구와 특징에 부합하는 정책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과잉부채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반 사회경제적 문제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제2절 소득계층별 가계부채의 규모와 추이

본 절에서는 통계청이 주관하여 매년 실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저소득층의 부채 부담 추이 및 현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해당 조사는 가구별 소득, 자산, 부채, 지출 등 가구의 재무구조를 미시적 수준에서 파악하기 위한 통계조사로서 2012년부터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통계청은 가계의 자산 및 부채 보유 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2001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가계자산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고령화의 진전과 가계부채 급증 등의 영향으로 가계 부문의 은퇴 후 소득의 적정성과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하면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미시자료 확보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2010년부터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종래의 『가계자산조사』를 확대 개편하여 『가

『계금융조사』를 실시하였다. 2012년부터는 노동시장 지위, 은퇴 후 대비, 보육 등에 대한 설문을 위한 표본을 추가하고 조사 방식을 종래 횡단면 추출 조사에서 패널 조사로 전환한 『가계금융복지조사』가 매년 실시되고 있다.

1. 가계의 자산·부채·소득 추이

〈표 4-1〉에는 2012년부터 2016년 기간 동안 가계의 총자산 보유 추이가 나타나 있다. 가계의 평균 자산 보유 규모는 2012년 3억 2324만 원이었으나 2016년에는 12.0% 증가한 3억 6187만 원을 기록하였다. 동기간 동안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자산 증가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득 1분위 가계의 평균 자산 보유는 2012년 9840만 원에서 2016년 1억 2036만 원으로 22.3% 증가한 반면 소득 5분위 가계의 경우 2012년 7억 6545만 원에서 2016년 8억 911만 원으로 5.7%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 결과 소득분위별 자산 보유 규모의 차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소득 5분위 평균 자산 보유액 대비 소득 1분위 평균 자산 보유액의 비율은 2012년 12.9%에서 2015년 14.9%로 증가하였다.

저소득층의 자산 보유액이 고소득층의 자산 보유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였다는 점은 각 소득분위별 자산 보유액의 증감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4-1〉 소득분위별 총자산 보유액 추이: 2012~2016년

(단위: 만 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평 간 가 산	전체	32,324	32,688	33,539	34,685	36,187
	1분위	9,840	10,034	10,951	11,908	12,036
	2분위	16,894	18,056	19,122	19,561	19,981
	3분위	23,556	24,422	25,294	26,944	28,100
	4분위	34,775	35,758	36,735	37,927	39,905
	5분위	76,545	75,153	75,573	77,073	80,911
보 유 액	전체	17,170	18,265	19,506	20,443	21,986
	1분위	4,200	4,362	4,905	5,050	5,080
	2분위	9,650	10,263	11,265	11,734	12,255
	3분위	14,958	15,935	17,054	18,456	20,260
	4분위	25,150	26,186	27,597	28,395	30,950
	5분위	49,080	50,140	51,631	52,760	55,310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원자료.

〈표 4-2〉 소득분위별 평균 부채 보유액 추이: 2012~2016년

(단위: 만 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평 간 부 채	전체	5,450	5,858	6,051	6,256	6,655
	1분위	1,000	1,261	1,275	1,292	1,286
	2분위	2,864	3,430	3,365	3,444	3,281
	3분위	3,884	4,237	4,589	4,762	5,330
	4분위	5,775	6,679	7,021	7,416	7,656
	5분위	13,723	13,679	14,000	14,365	15,7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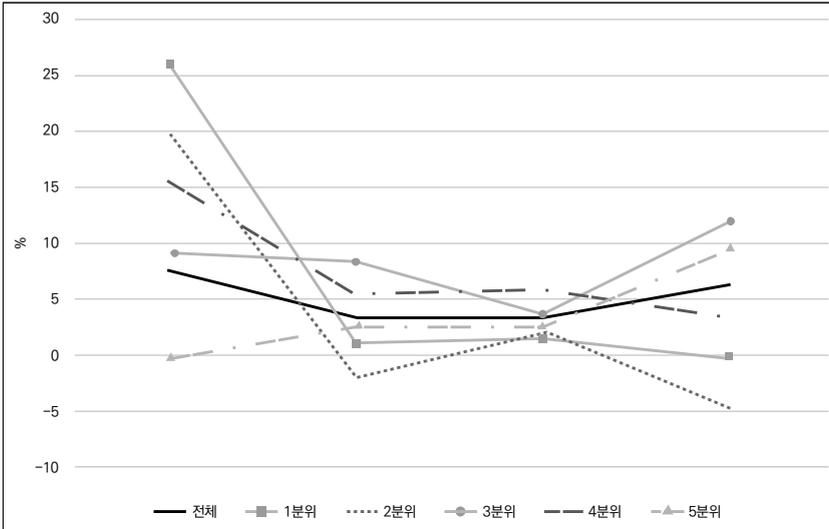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원자료.

〈표 4-2〉로부터 먼저 부채 증가 속도가 자산 증가 속도에 비하여 모든 소득분위에 걸쳐 상대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빠른 증가세를 보이던 자산 보유와 달리 부채 보유의

경우에는 다소 불규칙한 모습을 보인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소득 3분위와 4분위 가계의 평균 보유액이 각각 37.2%와 32.6% 증가한 반면 2분위와 5분위의 경우 14.6%와 14.5%에 그쳤다. 한편 소득 1분위에 속하는 저소득층 가계의 평균 부채 보유액은 같은 기간 동안 28.6%로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2014년과 2015년에 부채 증가 속도가 5% 내외로 크게 하락하였는데 이는 가계부채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제어하기 위한 각종 정책이 시행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부동산시장이 위축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¹⁵⁾ 2016년 들어 부동산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가계가 보유한 부채의 증가 속도도 종전의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으나 소득 1분위와 소득 2분위의 경우에는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으며 2016년에는 평균 부채 보유액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가 취해지면서 금융회사의 대출심사가 강화되면서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신용 위험이 높은 저소득층 가계에 대한 신용 공급에 집중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15) 최근의 가계부채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는 박창균(2016)을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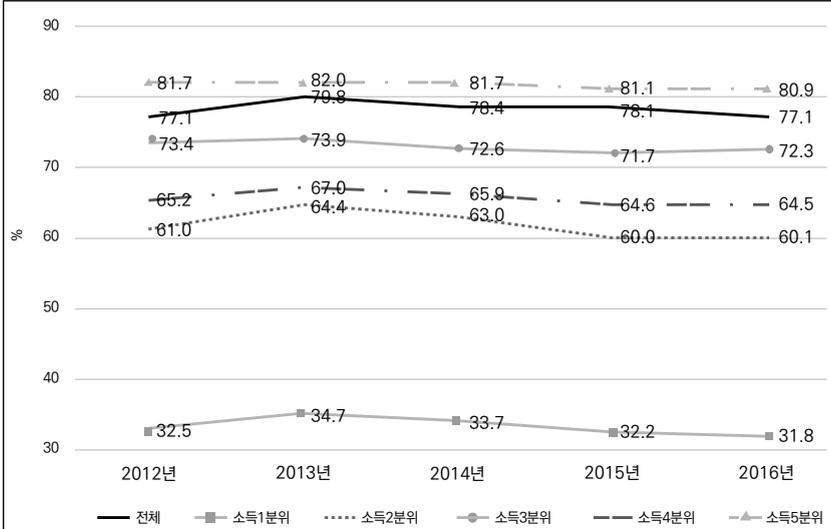
[그림 4-1] 소득분위별 평균 부채 보유액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원자료.

전체 가구 중 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비율은 2013년 67.0%, 2014년 65.9%, 2016년 64.5% 등으로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정부의 가계대출 증가 억제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3년 이후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채 보유 가구의 비율 감소는 평균 부채 보유 금액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소득 1분위의 부채 보유 확률은 2013년 34.7%에서 2016년 31.8%로 2.9%포인트 감소하였으나 소득 5분위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부채 보유 확률이 1.1%포인트 감소하는 데 그쳤다. 부채 보유 확률을 통해서 보더라도 2014년 이후 진행된 신용 축소의 충격이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더욱 크게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2] 소득분위별 부채 보유 확률 추이: 2012~2016년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원자료.

2. 가계의 소득계층별 자산과 부채와 그 추이

〈표 4-3〉은 부채 보유 가구의 평균 부채 보유액 추이를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부채 보유 확률이 1보다 작으므로 〈표 4-3〉의 평균 부채 보유액은 〈표 4-2〉의 평균 부채 보유액보다 높게 나타난다. 2012년부터 2016년의 기간 동안 부채 보유 가구의 평균 부채 보유액은 소득 3분위와 소득 4분위에서 각각 39.3%와 32.6%로 가장 빠르게 진전되었는데 소득 1분위의 평균 부채 보유액도 31.7%로 유사한 증가 속도를 보였다. 그에 비하여 부채를 보유한 소득 5분위 가구의 평균 부채 보유액은 같은 기간 동안 15.6%에 그쳐 고소득층의 부채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표 4-3〉 소득분위별 부채 보유 가구 부채 보유액 추이: 2012~2016년

(단위: 만 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평균값	전체	8,365	8,748	9,186	9,679	10,324
	1분위	3,076	3,636	3,784	4,006	4,050
	2분위	4,696	5,327	5,346	5,738	5,456
	3분위	5,289	5,733	6,322	6,641	7,371
	4분위	7,486	8,368	8,958	9,493	9,925
	5분위	16,804	16,679	17,131	17,718	19,422
증양값	전체	3,240	3,646	4,007	4,500	5,000
	1분위	1,015	1,300	1,500	1,520	1,500
	2분위	2,000	2,000	2,350	2,500	2,500
	3분위	2,500	3,000	3,232	3,520	4,000
	4분위	4,000	4,240	5,000	5,486	6,350
	5분위	8,380	8,750	9,280	10,000	10,000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원자료.

가계의 평균 순자산 보유 규모는 2012년 2억 6875만 원에서 2016년 2억 9533만 원으로 9.9% 증가하였다. 한편 소득분위별로는 표본 기간 동안 소득 1분위의 자산 증가율은 21.6%인 데 비해 소득 3분위 15.8%, 소득 5분위 3.8% 등으로 소득분위가 낮은 저소득층일수록 순자산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분위별 순자산 증양값의 경우 표본 기간 동안 소득 3분위와 소득 4분위의 증가율이 각각 27.7%와 21.2%로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 1분위의 경우에도 20.5%로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를 보였다.

〈표 4-4〉 소득분위별 순자산 보유액 추이: 2012~2016년

(단위: 만 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평균값	전체	26,875	26,831	27,488	28,429	29,533
	1분위	8,840	8,774	9,676	10,616	10,750
	2분위	14,030	14,626	15,757	16,118	16,700
	3분위	19,671	20,185	20,705	22,182	22,770
	4분위	29,000	29,079	29,713	30,511	32,249
	5분위	62,822	61,474	61,573	62,708	65,192
중앙값	전체	14,091	14,696	15,572	16,484	17,563
	1분위	3,815	3,913	4,070	10,750	4,596
	2분위	8,060	8,184	8,844	16,700	9,668
	3분위	12,140	12,589	13,313	22,770	15,503
	4분위	20,184	21,406	21,840	32,249	24,561
	5분위	40,083	40,554	42,095	65,192	44,420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원자료.

2012년부터 2016년의 기간 동안 표본 가구 전체의 평균 가처분소득은 15.7% 증가하였는데 이는 평균 자산 증가율 12.0%에 비해서는 다소 높지만 평균 부채 증가율 22.1%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표본 기간 동안 소득 1분위 가구의 평균 가처분소득은 16.3% 증가하였는데 이는 소득 2분위 가구의 20.9%, 소득 3분위 가구의 19.2% 등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지만 소득 5분위 가구의 12.1%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소득 5분위 가구의 평균 가처분소득을 소득 1분위 가구의 평균 가처분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은 2013년 11.7배, 2015년 11.5배, 2016년 11.3배 등으로 소폭이나마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처분소득 중앙값의 경우에도 소득분위별 추세는 평균값과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표 4-5〉 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 추이: 2012~2016년

(단위: 만 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평균 가정	전체	3,476	3,651	3,819	3,927	4,022
	1분위	683	713	721	765	794
	2분위	1,705	1,814	1,951	1,999	2,061
	3분위	2,805	2,975	3,160	3,262	3,344
	4분위	4,173	4,406	4,630	4,778	4,925
	5분위	8,014	8,343	8,632	8,826	8,987
저소득 가정	전체	2,776	2,946	3,138	3,231	3,316
	1분위	673	703	705	737	763
	2분위	1,715	1,835	1,967	2,015	2,074
	3분위	2,822	2,998	3,189	3,276	3,346
	4분위	4,181	4,428	4,632	4,773	4,903
	5분위	6,850	7,117	7,410	7,707	7,871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원자료.

제3절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보유 형태

1. 저소득층 가계부채의 구성

2016년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가계가 보유한 부채의 70.4%는 금융부채이며 29.6%는 임대보증금 부채로 구성되어 있어 부동산 관련 부채가 전체 가계부채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¹⁶⁾ 전체 부채 중 금융부채의 비중은 소득 1분위를 제외한 모든 소득분위에서

16)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전체적인 규모 파악에 상당한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임대보증금 부채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성립되는 채무이므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집계하는 가계부채 규모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가계부문의 총부채 규모는 공식적인 통계에 약 3분의 1가량을 더한 것이 보다 정확한 추정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70% 내외를 기록하고 있는데 다만 소득 1분위의 경우 금융부채의 비중이 61.1%에 불과하여 저소득층의 임대보증금 부채가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소득 1분위 가구의 금융부채 규모가 작아서이지 저소득층의 부동산 보유가 다른 계층에 비하여 많기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소득 1분위 가구 중 임대보증금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7.6%에 불과하여 전체 평균 16.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소득 5분위의 금융부채 규모는 소득 1분위의 13.9배에 달하지만 임대보증금 부채의 경우 9.6배에 지나지 않아 금융부채 규모의 차이가 임대보증금 부채 규모 차이에 비하여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012년에 비하여 2016년의 전체 부채 중 금융부채 비율이 다소 상승하였는데 이러한 변화는 소득 1분위를 제외한 전 소득계층에서 관찰되는 현상이다. 동 기간 동안 가계가 보유한 평균 금융부채는 27.2% 증가한 반면, 임대보증금 부채는 11.4% 증가하는 데 그쳐 금융부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소득 1분위에 속하는 가구의 경우 금융부채 증가율은 27.6%를 기록하였으나 임대보증금 부채 증가율이 30.2%를 차지하여 임대보증금 부채가 더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1분위에 속하는 저소득층에 부채 조달을 통하여 부동산 자산을 취득한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였음을 시사한다.

한편 동 기간 중 소득 3분위와 소득 4분위의 금융부채 증가율이 각각 45.4%와 37.5%를 기록하였는데 중간 소득 계층의 금융부채 조달 활동이 활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6〉 소득분위별 부채 구성

(단위: 만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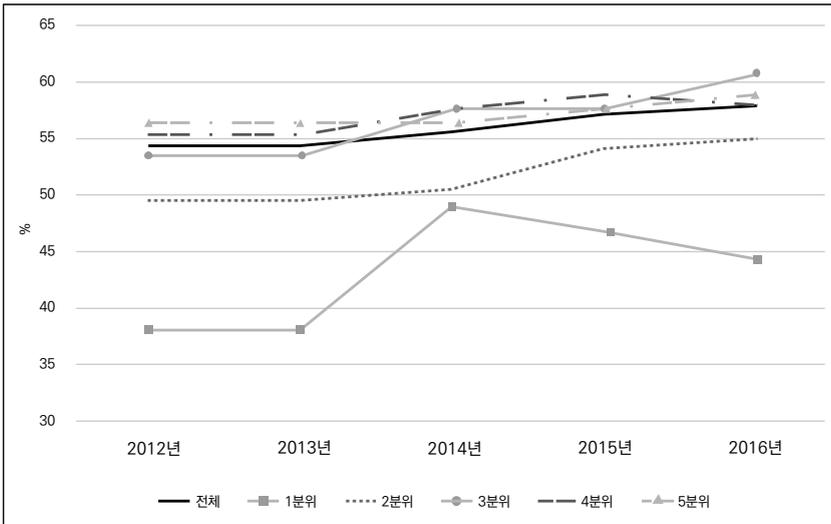
		2012년		2016년	
		평균	보유 비율	평균	보유 비율
전체	금융부채	3,684	58.9	4,686	57.7
	임대보증금	1,766	17.0	1,968	16.5
	금융부채 비율	67.6	-	70.4	-
소득 1분위	금융부채	616	26.1	786	26
	임대보증금	384	8.5	500	7.6
	금융부채 비율	61.6	-	61.1	-
소득 2분위	금융부채	1,935	55.4	2,295	53.8
	임대보증금	929	11.9	985	11.4
	금융부채 비율	67.6	-	70.0	-
소득 3분위	금융부채	2,727	68.6	3,966	67.1
	임대보증금	1,158	13.7	1,364	13.3
	금융부채 비율	70.2	-	74.4	-
소득 4분위	금융부채	3,985	71.5	5,482	70.2
	임대보증금	1,790	19.7	2,174	19.0
	금융부채 비율	69.0	-	71.6	-
소득 5분위	금융부채	9,157	72.9	10,902	71.5
	임대보증금	4,566	31.3	4,818	30.9
	금융부채 비율	66.7	-	69.4	-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원자료.

[그림 4-3]에는 금융부채 중 담보부채의 비율 추이가 소득분위별로 제시되어 있는데 담보대출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뚜렷이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가계부채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위험관리가 강화된 결과로 해석된다. 금융부채 중 담보대출의 비중 증가는 소득 1분위와 소득 2분위의 저소득 계층에서 더욱 뚜렷하게 관찰되는데 이는 위험관리 강화의 여파가 이들에게 집중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들 저소득 계층이 담보로 제공할 만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 특히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고소득 계층에 비하여 많지 않다는 점

을 감안한다면 금융회사의 강화된 위험관리로 인하여 특히 2014년 이후 저소득층이 부채 조달에 더욱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3] 소득분위별 금융부채 중 담보대출 비중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원자료.

금융회사의 담보 요구 강화 현상은 각종 형태의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비율을 도시한 <표 4-7>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2년의 경우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12.5%가 담보대출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46.2%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 비율은 2016년 각각 25.5%와 38.6%로 변화하여 담보에 의지한 부채 조달의 비중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7〉 소득분위별·부채유형별 금융부채 보유 가구 비율

(단위: %)

연도	소득분위	담보대출	신용대출	담보+신용
2012년	전체	12.5	46.2	41.3
	1분위	34.3	61.5	4.2
	2분위	14.1	52.8	33.1
	3분위	3.8	47.8	48.4
	4분위	9.0	41.0	50.0
	5분위	13.7	38.6	47.7
2016년	전체	25.5	38.6	35.9
	1분위	41.5	54.2	4.3
	2분위	25.4	45.7	28.9
	3분위	20.2	35.9	43.9
	4분위	20.7	35.5	43.8
	5분위	28.5	32.6	38.9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원자료.

신용대출 축소의 부담은 저소득층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2016년 소득 1분위에 속하는 금융부채 보유 가구 중 신용대출만을 보유한 가구의 비중이 54.2%에 달하였는데 이는 2012년의 61.5%에 비하여 크게 줄어든 것이다. 신용대출의 비중 축소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가계를 대상으로 발생한 현상이다. 그러나 표본 기간 동안 저소득 계층에 더 크게 발생하였고 담보 가치가 있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저소득층이 신용대출을 담보대출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2014년 이후 저소득층의 부채 조달이 더욱 어려워졌음을 의미한다.

2. 저소득층 가계부채의 조달 경로

〈표 4-8〉과 〈표 4-9〉는 각각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보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자금을 공급한 금융회사별 비중이 나타나 있다. 담보대출의 경

우 은행으로부터 부채를 조달한 경우가 2012년 79.2%, 2016년 77.8%로 지배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신탁 등 상호금융기관이 10%를 조금 넘는 비중을 차지하였다. 소득분위가 상승할수록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조달하는 비율이 다소 상승하고 있으나 소득 1분위와 소득 5분위를 제외한다면 그 차이가 크지는 않다. 한편 2012년에 비하여 2016년에 은행이 제공하는 담보대출 비중이 소득수준을 막론하고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소득 5분위 계층의 경우 은행의 비중이 감소하고 상호금융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이들 고소득 계층이 부동산가격 상승기에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대출을 확대하면서 은행보다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상호금융권에 의존하였던 점이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4-8〉 담보대출 보유 가구의 소득분위별 부채 조달원별 비중

(단위: %)

연도	조달원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12년	은행	79.2	62.4	70.5	72.3	75.9	84.7
	저축은행	1.5	1.4	2.1	1.3	2.1	1.2
	상호금융	12.8	21.0	18.0	16.4	15.1	9.7
	보험회사	3.4	5.4	5.1	6.0	4.3	1.9
	기타	3.1	9.8	4.3	4.0	2.6	2.5
2016년	은행	77.8	67.6	75.0	73.9	78.3	80.1
	저축은행	1.4	1.0	2.5	2.7	1.6	0.7
	상호금융	13.5	17.4	13.1	16.5	11.7	13.2
	보험회사	4.0	4.6	6.4	3.4	5.4	3.0
	기타	3.3	9.4	2.9	3.6	3.0	3.0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원자료.

〈표 4-9〉에 의하면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은행과 상호금융기관에 의존하는 경우가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6년 은행과 상호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 신용대출의 비중이 각각 57.8%와 13.4%로 신용대출의 2/3가량이 이들 두 기관이 공급한 것이다. 다만 가계의 신용대출에서 이들 두 기관의 점유율은 2012년에 비하여 다소 하락한 것이라는 점은 지적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대부업체, 지인이나 친척 등으로 신용대출 조달원이 다양화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소득 1분위의 신용대출 조달원 변화는 주목할 만한데 이들 저소득층의 자금원으로서 은행의 비중은 2012년 42.2%에서 2016년 21.8%로 절반 남짓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그에 비하여 같은 기간 동안 상호금융기관의 비중은 9.6%에서 21.8%로 크게 상승하였다. 한편 소득 1분위에 속하는 가구의 경우 신용대출의 절반가량을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대부업체, 지인이나 친척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다른 계층에 비하여 매우 높아 부채 부담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소득 5분위에 속하는 가구의 경우 2014년 이후 가계대출에 대한 건전성 관리가 강화되면서 신용대출 재원으로서 은행에 대한 의존을 낮추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신용 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경우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에 보다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소득 5분위 가구의 은행 의존도가 완화되고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기관 의존도가 강화되었다는 점은 상당히 특이한 현상이다.

〈표 4-9〉 신용대출 가구의 소득분위별 부채 조달원별 비중

(단위: %)

연도	조달원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12년	은행	61.4	42.2	48.9	48.5	64.0	72.2
	저축은행	2.4	2.5	1.4	1.9	2.2	3.2
	상호금융	14.1	9.6	13.0	24.9	14.8	9.9
	보험회사	0.9	1.4	1.0	1.1	0.8	0.9
	기타	21.2	44.3	35.6	23.6	18.3	13.9
2016년	은행	57.8	26.6	43.4	49.2	63.1	65.4
	저축은행	2.3	1.0	3.0	2.5	1.6	2.5
	상호금융	13.4	21.8	13.4	11.6	12.4	13.6
	보험회사	1.6	3.4	2.8	1.9	1.3	1.1
	기타	25.0	47.2	37.5	34.9	21.7	17.4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원자료.

3. 저소득층 가계부채의 용도와 상환방법

부채의 규모뿐 아니라 상환방법도 차입자의 부채 부담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 이후 이자만을 상환하다 만기가 도달하면 원금을 상환하거나 차환을 통하여 만기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가계대출 상품이 운영되어 왔는데 이는 차입자인 가계의 입장에서 상당히 위험한 계약 구조이다. 특히 자금 규모가 커서 장기간에 걸쳐서 차입을 할 수밖에 없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이와 같은 만기 일시상환 방식 대출은 채권자인 금융회사가 차환을 거부하는 경우 보유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서는 상환 요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외국에서는 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¹⁷⁾ 한편 일시상환은 만기가 도달할 때까지 이자만

17) 만기 일시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박창균(2010)을 참고.

을 상환하므로 원금 상환 부담이 없어 만기 도래 시점까지 부채 상환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분할상환에 비하여 유리하다. 경제성장과 함께 주택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여 왔고 채무자가 만기 시점까지 담보 주택을 보유하기보다 주택가격 상승을 통한 자본이득(capital gain)을 추구하는 전략을 취하는 경우 만기 일시상환 방식을 선호한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심각한 위험 요인이 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이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형성되었다.

주택담보대출의 잠재적 위험에 주목한 정책 당국은 2000년대 후반부터 만기 일시상환 방식에서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 형태를 전환하기 위하여 강력한 정책 조치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가 <표 4-10>에 나타나 있다. 2012년 42.6%를 기록하였던 만기 일시상환 대출의 비중이 2016년 32.2%로 하락한 반면 분할상환 방식 대출의 비중은 28.5%에서 61.7%로 크게 상승하였다. 다만 소득 1분위의 분할상환 방식 담보대출의 비중 증가는 다른 소득 계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분할상환 방식이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에는 매우 큰 부담이 된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담보대출과는 달리 신용대출의 경우 만기 일시상환 방식 대출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는데 이는 분할상환 방식 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득 1분위의 경우 분할상환 방식의 신용대출 비중이 2012년 28.7%에서 2016년 18.9%로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분할상환 방식이 특히 저소득층에는 부담스러운 상환 방식임을 반영하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표 4-10〉 소득분위별 담보대출 상환 방법 비중

(단위: %)

	상환방법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12년	만기일시	42.6	37.3	42.3	44.8	41.0	42.9
	분할상환	48.5	44.4	49.3	44.5	51.5	48.5
	기타방식	8.9	18.3	8.4	10.7	7.6	8.6
2016년	만기일시	32.2	31.8	27.2	30.2	26.4	36.7
	분할상환	61.7	55.4	67.9	63.3	69.0	56.8
	기타방식	6.1	12.7	4.9	6.5	4.6	6.5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저자 계산.

〈표 4-11〉 소득분위별 신용대출 상환 방법 비중

(단위: %)

	상환방법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12년	만기일시	29.6	23.6	24.3	24.3	29.1	34.9
	분할상환	19.9	28.7	28.1	17.2	21.0	16.4
	기타방식	50.5	47.7	47.6	58.5	49.9	48.8
2016년	만기일시	29.3	21.3	26.4	31.5	27.8	31.0
	분할상환	25.7	18.9	29.3	29.5	28.5	22.6
	기타방식	45.0	59.7	44.3	39.0	43.7	46.4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원자료.

〈표 4-12〉와 〈표 4-13〉에는 각각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소득분위별 대출 용도 분포가 나타나 있다. 담보대출의 용도로는 거주주택 취득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거주주택 이외의 부동산 취득이 그 다음을 잇고 있다. 부동산의 담보 가치가 금융회사에 의하여 비교적 쉽게 받아들여진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표 4-12〉 소득분위별 담보대출의 용도 비중

(단위: %)

	대출용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12년	거주주택 취득	40.5	37.2	36.9	47.2	51.4	35.1
	주택외 부동산 취득	19.0	8.5	11.0	13.0	16.9	23.4
	보증금	4.6	6.4	6.8	7.0	5.7	3.0
	부채상환	1.9	6.9	3.6	1.9	1.9	1.4
	사업자금	26.3	13.8	28.4	20.5	16.4	32.1
	생활비	3.0	18.7	7.1	3.9	2.9	1.3
	기타	4.7	8.4	6.1	6.5	4.7	3.7
2016년	거주주택 취득	45.3	39.8	44.7	53.2	53.8	39.0
	주택외 부동산 취득	20.0	9.7	16.3	9.3	15.7	27.3
	보증금	6.2	12.8	9.8	9.1	7.5	3.4
	부채상환	2.2	2.1	3.2	2.9	2.4	1.8
	사업자금	19.7	14.8	13.0	14.6	15.4	25.1
	생활비	3.3	11.7	7.6	6.0	2.1	1.5
	기타	3.2	9.1	5.4	4.9	3.1	1.9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원자료.

〈표 4-13〉 소득분위별 신용대출의 용도 비중

(단위: %)

	대출용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12년	거주주택 취득	8.7	3.5	7.3	7.7	11.3	9.0
	주택외 부동산 취득	4.7	4.1	0.7	2.9	4.9	6.7
	보증금	12.0	7.9	13.1	14.2	12.5	10.9
	부채상환	4.9	6.7	8.1	4.3	4.5	4.0
	사업자금	34.7	30.1	37.0	30.8	30.0	38.8
	생활비	19.9	22.3	20.0	26.0	20.4	16.6
	기타	15.3	25.3	13.8	14.2	16.4	14.1
2016년	거주주택	12.5	4.4	8.0	8.4	18.4	12.6
	주택 외 부동산	11.6	5.4	6.4	6.3	9.5	16.7
	보증금	8.4	10.7	11.7	8.1	8.7	7.3
	부채상환	4.5	3.4	8.2	4.0	3.8	4.3
	사업자금	29.1	35.4	22.0	30.3	27.8	30.5
	생활비	20.5	25.5	30.6	25.7	19.3	16.3
	기타	13.4	15.2	13.0	17.2	12.6	12.3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원자료.

다음으로 담보대출의 용도로 중요한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사업자금 조달인데 이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보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관행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소득 1분위 가구의 경우 생활비 조달을 위하여 담보대출을 활용한 비율이 다른 소득분위에 비하여 특히 높게 나타나는데 낮은 소득으로 인하여 상환능력을 증명하기 힘든 저소득층 중 담보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보유한 일부가 생활비 조달을 위하여 담보대출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신용대출의 경우 사업자금과 생활비가 가장 중요한 용도를 차지하는데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2012년에 비하여 2016년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담보대출의 비중이 늘어나며 이러한 현상이 소득이 높을수록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앞서서도 누차 지적한 바와 같이 2014년 이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담보대출 요건이 강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제4절 저소득층 가계부채의 부담 실태

가계의 부채 부담은 소득 대비 부채 또는 가처분소득 중 원리금 상환 비중 등 정량적인 지표를 활용한 객관적인 평가와 부채를 지고 있는 가구가 직접 표현하는 부담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종합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1. 저소득층 부채 부담에 대한 객관적 평가

먼저 가계부채 부담의 객관적 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보유 자산 처분 없이 현

재 또는 미래 가계가 획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 흐름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가장 널리 활용되는 지표이다. <표 4-1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동 지표는 2012년 156.8%에서 2016년 165.4%로 다소 악화되었다. 부채를 보유한 가구만으로 관심 범위를 축소하는 경우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의 악화 현상은 2012년 210.0%에서 2016년 222.7%로 더욱 뚜렷하게 관찰된다. 한편 동 비율은 소득이 가장 낮은 소득 1분위와 가장 높은 소득 5분위에서 다른 소득 분위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가처분소득이 낮은 것이 주원인이고 고소득층의 경우 부채 확대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을 자산 취득에 사용하였을 확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에 대한 해석을 다소 달리할 필요가 있다. 즉 고소득층의 경우 소득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만으로 부채 상환에 곤란을 겪는 경우 보유 자산 유동화를 통하여 대처할 여지가 비교적 넓게 존재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그러한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동 지표의 악화가 부채 부담에 더욱 큰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소득 1분위 부채 보유 가구의 경우 2016년 현재 가처분소득의 482.7%에 달하는 규모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의 430.0%에 비하여 크게 상승한 것으로 가처분소득의 50%를 10년 이상 원리금 상환에 투입하여야 완전한 변제가 가능할 정도로 부담스러운 수준이다.¹⁸⁾ 소득 2분위 부채 보유 가구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소폭이지만 오히려 감소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에 대한 위험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부채 부담이 크게 상승하였다는 점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현상이다.

18) 이러한 추정치의 정확도는 이자율에 대한 가정에 따라 달라질 것임은 물론이며 본문의 추정치는 개략적인 것에 불과하다.

〈표 4-14〉 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 추이

(단위: %)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체 가구	전체	156.8	160.5	158.4	159.3	165.4
	소득 1분위	146.5	176.9	176.8	168.8	162.0
	소득 2분위	168.0	189.1	172.5	172.3	159.2
	소득 3분위	138.5	142.4	145.2	146.0	159.4
	소득 4분위	138.4	151.6	151.6	155.2	155.5
	소득 5분위	171.2	164.0	162.2	162.7	174.9
부채 보유 가구	전체	210.1	212.2	211.2	214.6	222.7
	소득 1분위	430.0	496.2	512.8	500.5	482.7
	소득 2분위	282.9	303.9	279.8	295.3	270.5
	소득 3분위	192.0	197.0	203.6	207.7	224.2
	소득 4분위	182.4	192.5	196.4	201.6	203.6
	소득 5분위	210.1	201.2	198.8	200.0	214.8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원자료.

〈표 4-15〉 소득분위별 자산 대비 부채 비율 추이

(단위: %)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체 가구	전체	16.9	17.9	18.0	18.0	18.4
	소득 1분위	10.2	12.6	11.6	10.8	10.7
	소득 2분위	17.0	19.0	17.6	17.6	16.4
	소득 3분위	16.5	17.3	18.1	17.7	19.0
	소득 4분위	16.6	18.7	19.1	19.6	19.2
	소득 5분위	17.9	18.2	18.5	18.6	19.4
부채 보유 가구	전체	21.2	22.2	22.6	22.6	23.2
	소득 1분위	21.6	24.3	23.1	22.1	22.4
	소득 2분위	24.8	25.8	24.5	24.7	23.6
	소득 3분위	21.0	22.2	23.6	22.9	24.3
	소득 4분위	20.7	22.5	22.9	23.7	23.7
	소득 5분위	20.8	21.2	21.8	21.7	22.6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원자료.

소득 대비 높은 수준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부채 상환 부담이 큰 가구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규모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필요한 경우 해당 자산을 처분하여 부채 상환 의무에 대응할 수 있으므로 자산 대비 부채 비율도 가계의 부채 부담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의 하나로 활용된다. <표 4-15>에 의하면 자산 대비 부채 지표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와 마찬가지로 지난 5년의 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악화되었을 뿐 아니라 가처분소득 대비 지표에 비하여 빠르게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소득 1분위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 증가 속도가 소득 3분위 이상의 고소득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느리게 나타난 점은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한 현상이다.

자산에는 금융자산은 물론 거주 부동산이나 내구재 등 실물자산이 포함된다. 그러나 실물자산의 경우 시장 가격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부채 상환을 위하여 실물자산을 처분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또한 부채의 경우에도 부동산과 관련된 임대보증금 부채가 포함되어 있는데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금융부채와 상이한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의 지불능력(solvency)에 대한 단기적인 지표로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표 4-16>에 의하면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012년부터 2016년의 기간 동안 자산 대비 부채 비율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증가 속도 또한 빠른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소득 1분위와 소득 2분위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동 기간 동안 증가 속도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10%가 넘는 여타 고소득 계층과 뚜렷이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 2014년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의 효과로 인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 공급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위축된 사실이 반영된 결

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가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상대적 크기로 가능한 부채 부담의 측면에서 저소득층의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다소 도움이 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부여할 수 있다.

〈표 4-16〉 소득분위별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 추이

(단위: %)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체 가구	전체	45.3	45.0	45.7	46.9	49.9
	소득 1분위	31.1	34.8	36.3	31.3	30.4
	소득 2분위	49.0	52.1	46.7	47.2	45.1
	소득 3분위	44.4	44.7	47.4	46.6	53.8
	소득 4분위	44.5	46.9	46.7	50.5	50.0
	소득 5분위	46.5	43.8	45.4	47.2	51.9
부채 보유 가구	전체	62.2	61.2	64.1	65.6	70.6
	소득 1분위	80.6	85.0	91.4	81.4	82.5
	소득 2분위	84.5	82.2	77.9	81.3	76.4
	소득 3분위	62.8	62.4	68.9	68.4	79.5
	소득 4분위	61.2	62.2	62.3	68.1	68.8
	소득 5분위	58.4	55.3	59.5	59.8	67.0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원자료.

가계의 부채 상환 부담을 측정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지표는 부채상환 비율(debt service ratio)이다. 부채상환비율은 원금과 이자를 막론하고 부채 상환 의무에 응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투입되는 총금액을 같은 기간 동안의 가처분소득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부채상환비율은 부채를 지고 있는 가계가 상시적으로 직면하는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표 4-17〉 소득분위별 부채상환비율 추이

(단위: %)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체 가구	전체	17.2	19.1	21.7	24.0	26.6
	소득 1분위	16.0	16.6	24.2	24.3	19.7
	소득 2분위	16.4	21.2	24.2	26.0	26.9
	소득 3분위	18.8	19.7	24.5	24.5	26.4
	소득 4분위	16.7	19.6	21.2	25.5	28.7
	소득 5분위	17.1	18.3	20.3	22.5	26.1
부채 보유 가구	전체	22.3	24.5	27.3	29.7	33.4
	소득 1분위	45.3	42.2	61.8	52.4	41.6
	소득 2분위	26.1	33.3	36.6	39.3	40.9
	소득 3분위	25.4	26.0	31.8	32.0	34.5
	소득 4분위	21.4	23.9	25.4	31.0	35.4
	소득 5분위	20.6	22.5	24.0	26.0	30.5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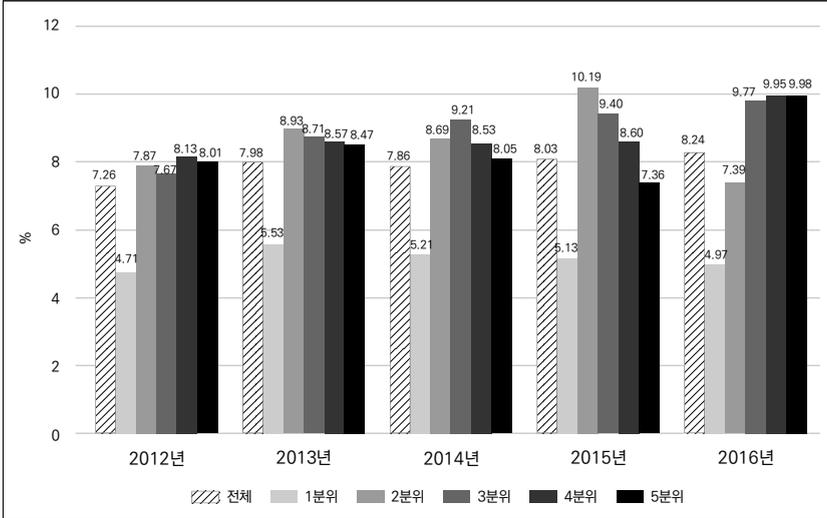
〈표 4-17〉에 의하면 먼저 부채상환비율이 2012년부터 2016년의 기간 동안 50%가량 상승하여 가계의 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채상환비율은 소득이 높을수록 더욱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동 기간 동안 저소득층의 부채 증가에 일정한 제동이 걸린 반면 신용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고소득층에 신용 공급이 집중된 결과 발생한 현상으로 보인다. 더하여 가계의 상환 부담이 전반적으로 높은 가운데 소득 1분위와 소득 2분위의 상환 부담은 이미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될 정도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비록 최근 들어 다소 주춤하고 있으나 이들 저소득 계층 중 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부채상환비율은 40%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적정 부채상환비율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나 미국의 경우 동 비율이 50%가 넘는 경우 매우 위험한 서브프라임(sub-prime) 대출로 간주되고 30%를 넘어서는 경우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추가적인 신

용 제공을 거절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보면 소득 1분위와 소득 2분위에 속하는 부채 보유 가구 중 상당수가 이미 한계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소득 3분위 이상의 고소득 계층의 경우에도 상당수에 대하여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은행(2016)은 금융자산보다 금융부채가 크고 부채상환비율이 40%가 넘는 가구를 한계가구로 정의하고 있는데 다소 임의적이지만 과도한 부채 부담으로 부실의 위험이 매우 큰 가구를 정량적 기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을 따르면 가계금융복지조사 표본에 포함된 전체 가구 중 한계가구의 비중은 2012년 7.26%, 2013년 7.86%, 2016년 8.24%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부실 위험에 처한 가구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소득분위별로 한계가구의 비중은 별다른 특징적 현상을 나타내지 않는다. 소득 1분위의 한계가구 비율이 소득분위에 비하여 일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부채를 보유한 소득 1분위 가구의 비중 자체가 다른 소득분위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며 저소득층의 부채 부담이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림 4-5]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부채 보유 가구만을 관심 대상으로 좁혀 본다면 소득 1분위 가구 중 한계가구의 비중이 다른 소득분위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준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부채 보유 가구의 부채 부담이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스러운 수준까지 진전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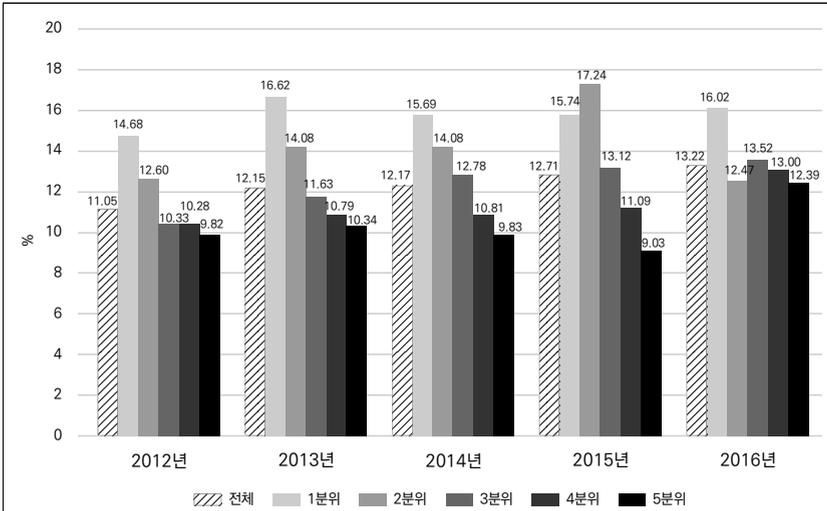
182 근로빈곤층의 부채에 대한 질적연구 - 부채발생과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그림 4-4] 소득분위별 한계가구 비율 추이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원자료.

[그림 4-5] 부채 보유 가구 중 소득분위별 한계가구 비율 추이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원자료.

2. 저소득층 부채 부담에 대한 주관적 평가

지난 1년간 연체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의외로 상당히 많은 가구가 연체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여 가계의 부채 상황 부담이 이미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진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전체 부채 보유 가구의 12.66%가 연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2의 18.09%에 비하여 다소 낮아진 것이다.

부채 부담에 대한 가계의 주관적인 평가는 <표 4-18>에 정리되어 있는데 최근 꾸준히 악화되고 있는 정량적인 지표와 달리 주관적인 지표는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먼저 부채 상황이 매우 부담된다고 답한 채무 가구가 2016년 19.81%로 나타났는데 2012년의 25.63%에 비하여 크게 줄어든 것이다. 현재의 부채가 너무 과다하여 사실상 상황이 불가능하다고 답한 채무 가구의 비율도 2012년 7.05%에서 2016년 6.23%로 줄어들었다. 한편 소득 1분위에 속하는 저소득층 부채 보유 가구 중 35.71%가 현재 부채 수준이 매우 부담된다고 답하였으며 19.63%는 상황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하여 저소득층이 인식하고 있는 부채 부담이 상당한 수준임을 시사한다.

<표 4-18> 소득분위별 주관적 부채 부담 지표 추이

(단위: %)

	매우 부담		소비 감소		부채 상황 불가	
	2012년	2016년	2012년	2016년	2012년	2016년
전체	25.63	19.81	79.50	73.60	7.05	6.23
소득 1분위	45.99	35.71	80.39	73.92	23.72	19.63
소득 2분위	34.03	27.09	82.03	73.84	10.77	8.86
소득 3분위	28.04	19.60	82.79	75.91	6.03	5.44
소득 4분위	20.10	17.19	78.00	74.84	3.53	3.51
소득 5분위	14.89	9.55	74.20	68.77	2.39	1.48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원자료.

제5절 소득분위별 가계부채 결정 요인

가계의 부채 보유 여부나 보유 규모의 결정 요인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다.¹⁹⁾ 다양한 연구 결과가 보고되어 있으나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가구주의 연령, 교육, 소득, 부동산 보유 여부 등이 가계의 부채 보유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확인된 가계부채 결정 요인들이 소득분위별로 차별적인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부담을 미시적인 수준에서 확인한다.

먼저 가계부채 보유 결정 요인을 점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증모형을 설정하였다.

$$y_{ij}^* = x_{ij}'\beta_j + \epsilon_{ij}$$

위에서 x_{ij} 는 가계의 부채 보유 여부에 영향을 주는 설명변수 벡터, β 는 추정 대상 파라미터 벡터, y_{ij}^* 는 가계부채 보유 여부를 나타내는 기저변수(latent variable)이며, i 는 가구를 나타내고 j 는 소득분위를 가리킨다. 한편, y_{ij}^* 는 관측 불가능하며 다만 그 값이 양인지 음인지 여부만이 관측될 뿐이다. ϵ_{ij} 가 평균 0, 분산 σ_j^2 인 정규분포(normal distribution)를 따르는 확률변수라고 가정하면 프로빗 모형이 성립한다.

설명변수로는 가구주 연령, 학력, 결혼 여부, 가구원 수, 종사상 지위, 거주 지역, 부동산 자산 보유액, 자가 거주 여부 등을 포함한다. 가구주 연령은 소득 또는 저축의 생애주기시설을 반영한 것이며 학력 등 사회경

19) Jappelli, Guiso, & Haliassos(2002), 김우영, 김현정(2009) 등을 참고.

제적 변수는 가구주의 소득과 소비 패턴을 반영하는 변수이고, 부동산 관련 변수는 담보능력을 통제하기 위하여 포함한 변수이다. 소득수준에 따른 부채 결정 요인의 차이를 점검하기 위하여 소득을 별도의 설명변수로 포함하지 않고 소득 1분위와 소득 5분위의 가구를 별도로 분리하여 추정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4-19>에 보고되어 있다.

추정 결과에서 가장 뚜렷하게 관찰되는 현상은 소득 1분위의 부채 보유 여부에 대하여 연령 구조가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반면 소득 5분위의 경우 40대를 정점으로 부채 보유 확률이 점차 낮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저소득층의 경우 신용 제약으로 말미암아 소비의 시점 간 재배치를 통한 소비 평탄화를 달성하는 것이 어려워 생애주기가설이 예측하는 바와 같은 저축 또는 부채와 연령 간의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반면 고소득층에서는 생애주기가설에 부합하는 관계가 관측된다. 다음으로 저소득층의 경우 학력이 부채 보유 여부 결정에 상당한 설명력을 가지는 반면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그림 4-3]에 의하면 소득 1분위에 속하는 가구의 담보대출 비중이 다른 소득분위 소속 가구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다.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로 제공되는 자산이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신호(signal)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신용대출의 경우 차주의 미래 소득 창출 능력과 관련되는 특징이 상환능력에 대한 신호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데 학력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득 5분위 가구 중 자영업 종사자의 부채 보유 확률이 임금근로자 등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높은 소득 변동성에 대응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수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초래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부동산 자산과 부채 보유 확률 간 강력한 양의 상관관계는 예측과 일치한다.

〈표 4-19〉 가계의 부채 보유 결정 요인: 소득분위별 분석

변수		소득 1분위	소득 5분위
성별 (남성=1)		-0.0348 (0.0633)	0.1427 (0.1131)
가구주 연령 (20대=0)	30대	0.1529 (0.2409)	0.4782* (0.2817)
	40대	0.1221 (0.2275)	0.5862** (0.2818)
	50대	-0.1094 (0.2273)	0.3968 (0.2825)
	60대 이상	-0.2208 (0.2321)	0.3194 (0.2912)
가구주 학력 (초졸=0)	중졸	0.2038*** (0.0686)	-0.0222 (0.1966)
	고졸	0.2245*** (0.0692)	0.2327 (0.1716)
	대졸	0.2800*** (0.1002)	0.2633 (0.1730)
혼인 상태 (미혼=0)	결혼	0.2114* (0.1311)	0.3830** (0.1789)
	이혼·사별	0.4010*** (0.1107)	0.5861*** (0.2136)
가구원 수		0.2647*** (0.0443)	0.0704*** (0.0270)
종사상 지위 (기타=0)	임금노동자	0.0494 (0.0698)	0.1819 (0.1204)
	자영업자	0.0540 (0.0841)	0.4256*** (0.1254)
수도권 거주 여부 (비수도권=0)		0.1722*** (0.0575)	0.1478*** (0.0548)
부동산자산		0.0118*** (0.0019)	0.0033*** (0.0006)
금융자산		-0.0133** (0.0053)	-0.0067*** (0.0009)
상수항		-1.2794 (0.2258)	-1.1542*** (0.3872)
관측치 수		3,656	3,648
Psuedo R2		0.1135	0.0883

주: 1) 2016년 표본을 활용하여 추정.
 2)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은 천만 단위 자연대수 값.
 3) *,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4) 괄호 안은 추정치의 표준오차.

다음으로 가계의 가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증모형을 설정하였다.

$$z_{ij}^* = x_{ij}'\beta_j + \epsilon_{ij}$$

위에서 z_{ij}^* 는 소득분위 j 에 속하는 가구 i 의 가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가리키고 나머지 변수는 <표 4-19>의 분석에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 z_{ij}^* 는 양의 값을 가질 때만 관측 가능하고 그 이외의 경우 0으로 관측되는 절단된 변수(truncated variable)이다. 위의 식을 토빗(Tobit) 방식으로 추정한 결과는 <표 4-20>에 보고되어 있다.

추정 결과는 부채 보유 여부와 관련되는 변수에 대한 것과 유사하다. 먼저 소득 1분위의 경우 가치분소득 대비 부채 보유액과 연령 간에 일정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담보 부족으로 인하여 정보 비대칭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저소득층의 경우 소비 평탄화를 위하여 저축과 부채를 활용할 수 없을 것인데 이로 인하여 저소득층의 부채 부담과 연령 간에 일정한 관계를 찾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소득 5분위 계층의 경우 가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40대를 정점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생애주기가설과 부합하는 결과이다. 한편, 소득 1분위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거주지가 수도권인 경우, 부동산자산 보유액이 클수록, 금융자산 보유액이 작을수록,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가치분소득 대비 부채 보유액이 많은 경향을 보인다. 소득 5분위의 경우 이들 변수에 더하여 자영업자일수록 동 비율이 높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고소득 자영업자가 부채를 활용하여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사료된다.

〈표 4-20〉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결정 요인: 소득분위별 분석

변수		소득 1분위	소득 5분위
성별 (남성=1)		-46.6609 (126.4007)	24.6490 (17.3579)
가구주 연령 (20대=0)	30대	675.3689 (482.3745)	103.7439** (52.5608)
	40대	414.5595 (458.9245)	114.7518** (52.4287)
	50대	278.9383 (458.7907)	80.3908 (52.5179)
	60대 이상	188.3899 (467.9323)	60.1085 (53.4473)
가구주 학력 (초졸=0)	중졸	229.6415* (138.1394)	-33.2403 (30.3133)
	고졸	226.4210* (137.5370)	-14.9369 (26.2561)
	대졸	647.0460*** (193.6387)	-2.5993 (26.3903)
혼인 상태 (미혼=0)	결혼	-309.1280 (253.5499)	44.0478 (30.4648)
	이혼·사별	265.116 (216.1240)	56.6153* (34.6263)
가구원 수		594.0547*** (83.3221)	9.3356** (3.8669)
종사상 지위 (기타=0)	임금노동자	196.0102 (137.8658)	3.5726 (18.5008)
	자영업자	-20.6039 (165.7639)	56.4676*** (18.9390)
수도권 거주 여부 (비수도권=0)		343.6439*** (112.2262)	55.8644*** (7.7938)
부동산자산		0.0467*** (0.0031)	0.0010*** (0.00004)
금융자산		-0.0447*** (0.0112)	-0.0014*** (0.0001)
상수항		-3137.6100*** (462.8016)	-186.7930*** (67.6099)
관측치 수		3630	3653
Psuedo R2		0.0319	0.0255

주: 1) 2016년 표본을 활용하여 추정.
 2)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은 천만 단위 자연대수 값.
 3) *,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4) 괄호 안은 추정치의 표준오차.

제6절 소결

본 연구에서는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저소득층 가계부채의 현황과 최근 추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이들의 부채 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검토하였다.

최근 들어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강력한 규제조치가 취해지면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부담은 이미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소득 또는 자산 대비 부채 규모,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 등 부채 부담을 측정하는 각종 지표를 점검한 결과 저소득층의 부채 부담은 고소득층에 비하여 월등히 높을 뿐 아니라 변동금리 신용대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구조 측면에서도 취약성을 노출하고 있다. 저소득층 부채의 부실화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상태로 전이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으나 이들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처지를 감안할 때 사회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다.

저소득층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서민금융시장의 기능 정상화와 신용상담제도 활성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호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서민금융시장 활성화를 통하여 저소득층의 금융상품, 특히 신용대출상품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부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호금융기관은 직원리상 주식회사 형태의 금융기관에 비하여 낮은 금리로 더 많은 양의 신용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크게 위축된 상호금융기관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경우 은행으로부터 배제된 저소득층이 대부업 대출이나 고금리 소액 신용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저소득·저신용 계층 지원이라는 명분에 경도되어 시

장원리와 상충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더하여 상호금융기본법의 제정을 통하여 상호금융기관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이들의 기능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신용상담은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융교육, 금융상담, 부채관리(debt management)에 대한 조언 등을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이다. 부채관리는 연체상태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으로 상환을 하고 있더라도 채무상환 애로에 직면한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권자와 협상을 통하여 채무재조정 계획을 설계하고 실행을 지원하는 것으로 신용상담기관의 핵심 업무이다. 또한 금융교육과 금융상담을 통하여 금융 소비자가 과잉 채무 상태에 처하지 않도록 정보와 조언을 제공한다. 우리나라에도 신용회복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용상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부채관리에 한정된 업무 범위, 채권자의 의사가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지배구조 등으로 인하여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채무자 이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의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신용상담업을 금융업무의 하나로 인정하여 공식적인 규율체제로 포섭하되 민간이 중심이 되는 신용상담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 5 장

근로빈곤층 가계부채의 특성과 결정 요인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근로빈곤층의 규모와 특징

제3절 근로빈곤층의 가구 특성과 취업 특성

제4절 근로빈곤층의 소득과 소비 그리고 부채

제5절 가계부채에 대한 소득계층별 태도

제6절 가계부채가 근로빈곤에 미치는 영향

제7절 근로빈곤층 가계부채 결정 요인

제8절 소결

5

근로빈곤층 가계부채의 << 특성과 결정 요인

제1절 들어가며

이 장에서는 근로빈곤층 가계부채 문제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것은 이들이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소득이 낮은 빈곤층이면서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일상생활에서 부채 발생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근로빈곤층의 최근 추이를 보여 주고, 왜 이들의 근로소득이 이토록 낮은지 그 원인을 살펴보고, 그럼에도 이들이 학생자녀 등 피부양자가 적지 않다는 점을 보여 주고자 한다. 그것은 낮은 가처분소득으로 가족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를 지출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발생하고 증가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물론 가계부채 문제는 빈곤층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가계부채 문제는 중산층 또한 그러한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말해 주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소득계층별로 가계부채가 이들의 소득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물론 주택 마련을 위한 담보대출은 자산 형성을 위한 저축과 절약이라는 맥락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가계부채에 따른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중하층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빈곤선 이하로 떨어지는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부채 상황을 위한 지출이 빈곤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이 문제에 접근할 것이다.

끝으로 이 장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제반 이론과 뒤에 이어질 근로빈곤층의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질적 분석을 연결하는 가교로서의 의미 또

한 갖고 있다. 그것은 근로빈곤가구의 소득과 부채 문제의 특징을 살펴보고, 가계부채에 대한 근로빈곤층의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그것이 답할 수 있는 문제와 답하기 힘든 문제를 포착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특히 정량적 분석을 통해 의문점으로 제기되었던 몇 가지 질문에 대해 답하는 형식을 취할 것이다.

제2절 근로빈곤층의 규모와 특징

근로빈곤층에 대한 정의는 앞의 제2장에서 언급한 다양한 개념 중 상대적으로 적용하기 용이한 개념을 선택하였다. 그것은 연중 취업기간을 전제로 하는 근로빈곤층 개념이 아니라, <근로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개념>, 즉 근로연령빈곤층 개념과 <취업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개념>, 즉 취업빈곤층 개념이다. 근로연령은 가구주의 경우에는 20~64세의 인구집단으로 규정할 것이다. 이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가구주 연령의 범주가 20세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²⁰⁾ 하지만 가구원에 대해서는 15~64세 기준을 적용할 것이다. 그리고 가구주 및 가구원의 취업상태를 전제로 취업자 중 빈곤층을 <취업빈곤층>으로 판별하였다. 참고로 취업빈곤층 개념은 근로빈곤층 비율의 장기적 추세를 보여주는 데 사용할 것이다. 빈곤선은 각 소득(여기서는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소득계층은 균등화된 각 소득 중위값의 50% 미만을 빈곤층으로, 50~100%를 중하층으로, 100~150%를 중상층으로, 150% 이상을 상위층으로 규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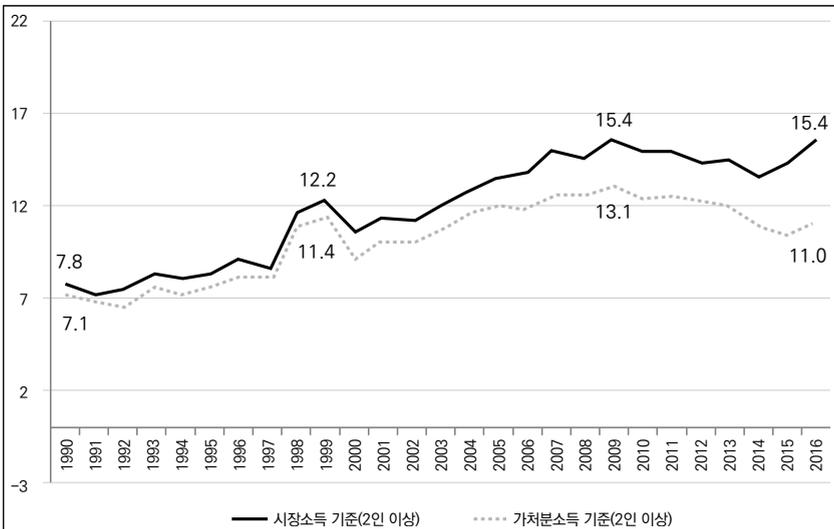
20) 이 분석에서 활용할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데이터에서 가구주 연령이 최소 21세 이상으로 통제되어 있어, 가구주 연령을 20~64세인 집단으로 정의하였다.

1. 한국 사회의 빈곤층 규모와 추이

최근 우리 사회의 빈곤율 추이는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최근 수년간의 빈곤율 변화에 주목하는 경우, 지나치게 미시적 변화로 빈곤율의 등락을 말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장기간에 걸쳐 한국의 빈곤율이 얼마나 큰 폭으로 증가해 왔으며, 최근 수년간의 변화는 장기간의 추이와 비교해서 어떠한지 확인할 것이다.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의 빈곤율을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현재의 빈곤율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아래 그림은 2016년 중위소득 50% 기준 빈곤율이 1990년에 비해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약 두 배,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약 1.5배 증가하였음을 보여 준다.

[그림 5-1] 1990년 이후 소득유형별 빈곤율 추이(2인 가구 이상)



주: 이 그림의 수치는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 대상 빈곤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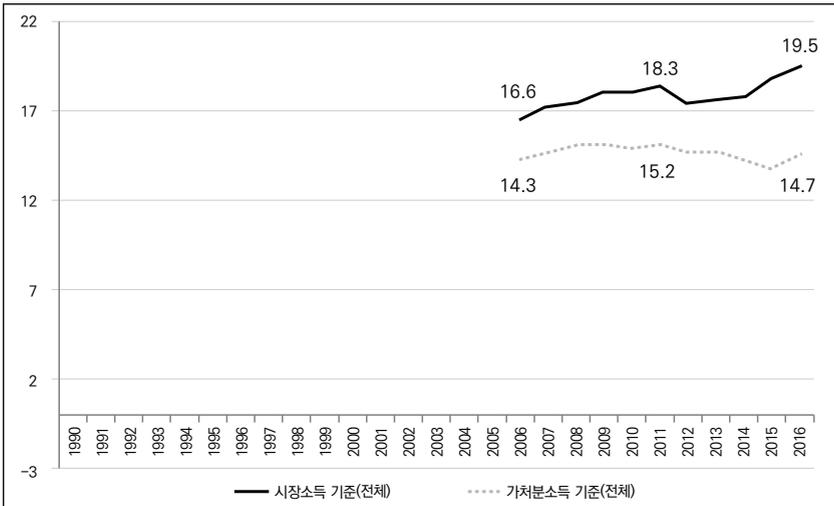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원자료.

위의 빈곤율 장기추이를 보면, 크게 두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외환위기 직후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최근 수년간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빈곤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과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의 격차가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의 감소에 따라 점차 확대되어 왔다는 점이다. 그것은 시장소득에서 발생한 빈곤율을 개별 가구의 사적 이전 및 복지제도의 공적 이전을 통해 감소시키는 정도가 커졌음을 의미한다. 빈곤 충격을 완화시키는 정부의 노력이 일정 수준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 준다. 시장에서 빈곤 발생을 최소화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는 현실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부와 사회의 노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빈곤율이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수치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빈곤 위험이 큰 1인 가구나 미취업가구 그리고 농어가구가 제외된 수치인 것이다. 이는 위의 빈곤율이 전체 인구와 가구를 포괄하는 실제 빈곤율에 비해 과소 추정되었음을 시사한다. 1인 가구가 포함된 전체 가구의 빈곤율은 위에 언급된 수치보다 높다는 점을 말해 준다. 이는 아래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그림에 따르면, 중위소득 50%를 빈곤선으로 적용하여 추정한 2016년 전체 빈곤율이 19.5%로,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 빈곤율 15.4%에 비해 약 4.1%포인트 높게 나타난 점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2009~2015년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 감소세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의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2009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다 최근 1~2년간 소폭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가구에서는 감소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으며, 최근 1~2년

의 증가세는 과거의 빈곤율 기록을 경신하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빈곤 문제가 더욱 심화되어 왔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은 최근 소득재분배를 통해 그 충격을 크게 완화시키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림 5-2] 1990년 이후 소득유형별 빈곤율 추이(전체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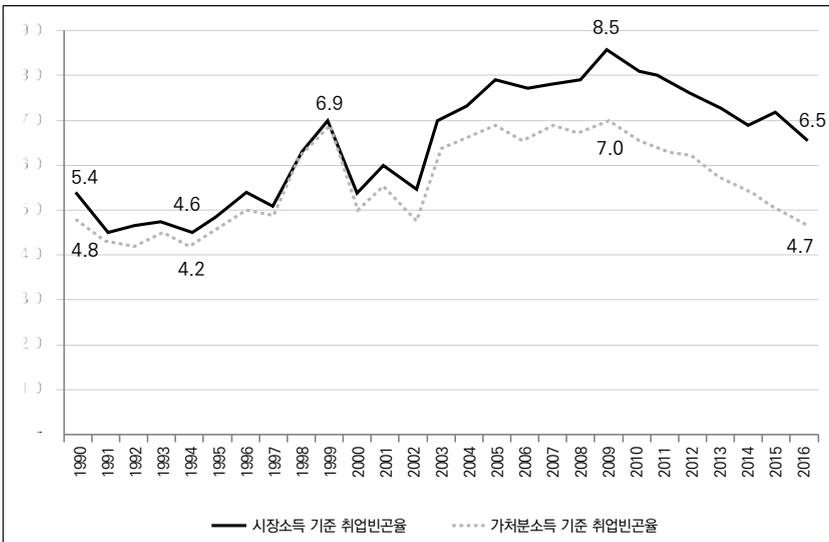
주: 이 그림의 수치는 전체 가구 대상 빈곤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원자료.

2. 한국 사회의 근로빈곤층 규모와 추이

그렇다면 근로빈곤층 규모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그것은 전체 빈곤율과 상이한 추세를 보이는데,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의 취업자를 대상으로 시장소득 기준 취업빈곤율을 보면, 1990년 대비 2016년의 취업 빈곤율은 5.4%에서 6.5%로 약 0.9%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같은 기간 4.8%에서 4.7%로 오

히려 취업빈곤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03년 신용대란을 기점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2009년 리먼 쇼크의 충격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취업자들의 빈곤 문제가 크게 개선되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이 수치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는 최근 근로빈곤층에서 1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실제 빈곤 위험이 심각한 미취업자 및 취업애로계층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5-3] 1990년 이후 소득유형별 취업빈곤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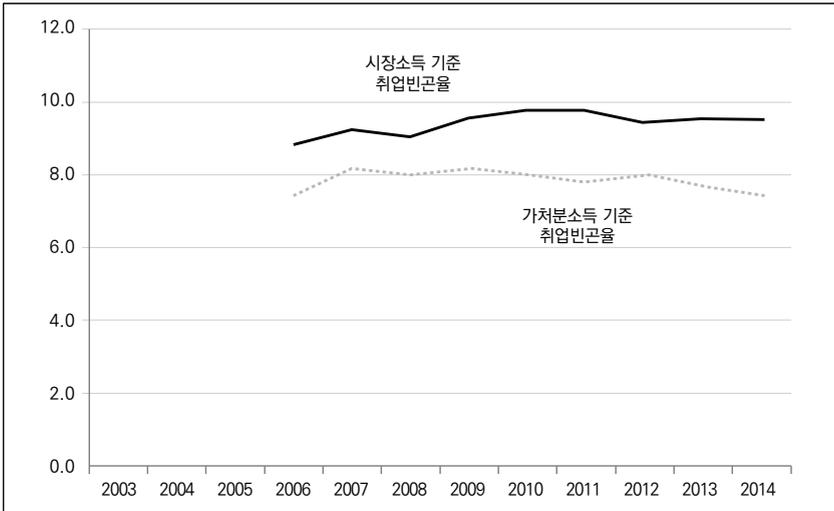


주: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 대상 추정치.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원자료.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 취업빈곤율 추이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은 1인 가구를 포함한 취업빈곤율 추이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 아래 그림은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취업빈곤율 추이를 보여 준다. 먼저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기준 전체 가구 취업빈곤율은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

대상 취업빈곤율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의 취업빈곤율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이는 전체 빈곤율에서 나타났던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의 감소세와 대비되는 대목이다.

[그림 5-4] 2006년 이후 소득별 취업빈곤율 추이



주: 1인 이상 전체 가구 대상 추정치.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원자료.

3. 한국 사회의 근로빈곤층 추정 규모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에 따른 근로빈곤층 추정 규모를 보면, 아래 표와 같다. 2015년 기준 빈곤가구율은 22.6%, 빈곤율은 16.3%로 추정된다. 그리고 중하층과 중상층에 속한 집단의 인구비율은 각각 32.8%와 25.3%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적으로 중하층에 40%의 인구가 분포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2015년 현재 근로빈곤가구율은 13.2%이며, 근로빈곤층 비율은 11.0%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빈곤가구율이나 빈곤율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임을 말해 준다. 하지만 이 수치가 일하고 있거나 일할 능

력이 있는 사람이 존재하는 가구의 빈곤율이라는 점에서 결코 낮은 수치는 아니다.

〈표 5-1〉 소득계층별/가구유형별 가구 비율 및 가구원 비율(2015년 기준)

(단위: %)

	전체 가구		근로연령가구주 가구	
	가구의 %	가구원의 %	가구의 %	가구원의 %
빈곤층	22.6	16.3	13.2	11.0
중하층	32.6	33.8	34.4	34.5
중상층	22.6	25.3	26.0	27.3
상위층	22.2	24.7	26.4	27.2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주: 1) 소득계층은 균등화된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 이하 (빈곤층) 51~100% (중하층), 101~150% (중상층), 151% 이상 (상위층)으로 구분.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6(2015년 기준 자료), 가구와 가구원 데이터를 머지.

제3절 근로빈곤층의 가구 특성과 취업 특성

근로연령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첫째, 각 개인의 성장과정에서 좋은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는 교육기회나 가정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만성적인 기회 불평등과 관련이 있다. 둘째, 근로연령층의 현재 일자리와 관련이 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집단을 중심으로 근로빈곤층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로 상용직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가구의 빈곤 위험은 크게 낮아지게 된다. 셋째, 가족 형성과 관련해서 가구 내 취업자 수와 그들의 일자리 질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2인 이상 취업자가 존재하는 가구의 빈곤 위험이 낮다는 점이 이를 말해 준다.

1. 근로빈곤층의 취업 특성

근로빈곤층은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을 의미하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근로빈곤가구에 속한 가구주 및 가구원의 취업상태 및 일자리의 질에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근로빈곤층의 특성을 1) 평균 가구원 수, 2) 평균 근로연령인구 수, 3) 평균 취업자 수, 4) 종사상 지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는 각 소득계층별로 가구원을 부양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 보유 정도>(work richness)와 <일자리의 질>(job quality)을 비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일차적으로 근로빈곤 문제는 근로빈곤층, 특히 가구주의 취업 여부 및 일자리의 질에 의해 결정된다. 이와 관련해, 근로빈곤층 가구주의 특성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여성가구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근로빈곤가구 가구주는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여성가구주 비율이 약 43.7%로 전체 평균 18.6%에 비해 약 25%포인트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고령층 비중이 높다. 가구주의 연령 분포를 보면, 31~54세의 핵심근로연령층의 비중이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10%가량 낮은 58.1%를 차지하고, 55~64세의 고령층인구비율이 전체 평균에 비해 10%포인트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 3)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낮다. 교육 수준을 보면, 중졸 이하 학력자나 무학력자 비중이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매우 높고, 대학 이상 학력자 비중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4) 배우자가 없는 가구 비중이 높다. 혼인상태는 이혼하였거나 사별한 가구주의 비율이 각각 11.8%와 27.8%로 전체 평균 5.0% 및 10.7%에 비해 매우 높다. 이는 근로빈곤가구 가구주 중 한부모가구나 단독가구의 비중이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202 근로빈곤층의 부채에 대한 질적연구 - 부채발생과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표 5-2〉 근로빈곤가구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가처분소득 기준)

(단위: %)

가구주 특성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계층				전체
		근로빈곤 가구	중하층 가구	중상층 가구	상위층 가구	
성별	남성	56.3	79.8	88.0	89.5	81.4
	여성	43.7	20.2	12.0	10.5	18.6
연령분포	21~30세	3.0	4.7	3.8	2.8	3.7
	31~54세	58.1	69.1	72.0	67.0	67.8
	55~64세	38.9	26.2	24.3	30.2	28.5
교육수준	초등 졸업 이하	17.2	6.7	3.7	2.3	6.1
	중학교 졸업	15.3	8.7	6.8	5.0	8.1
	고등학교 졸업	43.2	47.0	37.9	28.7	39.2
	대학 졸업 이상	24.4	37.5	51.7	64.0	46.6
혼인상태	미혼	15.7	10.3	9.8	9.7	10.7
	배우자	44.8	71.2	80.7	84.1	73.6
	이혼	11.8	5.5	3.3	2.5	5.0
	사별	27.8	13.0	6.2	3.7	10.7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이 표는 근로연령가구로 통제된 분석 결과임.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6년 자료(2015년 기준).

근로빈곤층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를 보면, 가구주의 취업 여부 외에도 일자리의 질이 근로빈곤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먼저 근로빈곤층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를 보면, 상용직 근로자 비중이 21.1%로 중하층의 51.5%와 중상층의 62.4%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근로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원인이 주소득자의 일자리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말해 준다. 근로빈곤층의 종사상 지위에서 임시직과 일용직의 비중이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높다는 점 또한 이를 확인시켜 준다. 이어 가구주의 취업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근로빈곤가구 가구주 중 미취업자 비중은 33.7%로 중하층의 7.6%나 중상층의 4.7%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5-3〉 근로빈곤가구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가처분소득 기준)

(단위: %)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계층				전체
		근로빈곤 가구	중하층 가구	중상층 가구	상위층 가구	
가구주 종사상 지위	상용직	21.1	51.5	62.4	65.4	54.0
	임시일용직	22.1	17.6	7.6	3.6	11.8
	고용주	3.2	4.0	7.0	10.4	6.4
	자영업자	18.7	18.0	17.2	16.1	17.4
	무급종사자	0.1		0.1	0.1	0.1
	기타종사자	1.1	1.3	1.0	1.2	1.2
	무직/비경활	33.7	7.6	4.7	3.2	9.1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이 표는 근로연령가구로 통제된 분석 결과임.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6년 자료(2015년 기준).

2. 근로빈곤층의 가구 특성과 소득 잠재력

근로빈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가구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가구 내 취업자 수가 적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취업가구원의 일자리 질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 두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근로빈곤가구는 취업자가 없거나 적다는 특성을 보인다. 빈곤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2.0명으로 전체 평균 2.9명보다 낮다. 그리고 소득계층이 높아질수록 평균 가구원 수 또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전체 가구원 중 근로연령인구를 보면, 빈곤층은 0.9명으로 중하층의 1.9명, 중상층의 2.2명보다 크게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소득계층별 평균 취업자수를 보면, 빈곤가구 취업자는 평균 0.6명으로 중하층의 1.4명, 중상층의 1.7명, 상위층의 1.9명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빈곤층에서 노인인구가 과잉 대표된 데 따른 영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빈곤층을 근로연령가구주 가구로 통제해도 근로연령인구 수는

증가하지만 정작 취업인구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근로연령가구주 가구 내 근로연령인구는 빈곤가구의 경우 평균 1.8명으로 중하층의 2.2명과 중상층의 2.3명에 비해 낮다. 이는 전체 가구 중 빈곤가구의 근로연령인구가 평균 0.9명인 것에 비하면 크게 높아진 것이다. 하지만 정작 평균 취업자 수는 빈곤가구의 경우 평균 0.9명으로 중하층의 1.4명과 중상층의 1.7명에 비해 여전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근로빈곤 문제가 가구 내 취업자 수가 적은 것에도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말해 준다.

〈표 5-4〉 근로빈곤가구의 가구원 및 취업자 특성(2015년 기준)

(단위: 명)

	전체 가구			근로연령가구주 가구		
	평균 가구원 수	평균 근로연령층 수	평균 취업자 수	평균 가구원 수	평균 근로연령층 수	평균 취업자 수
빈곤층	2.0	0.9	0.6	2.6	1.8	0.9
중하층	3.0	1.9	1.4	3.2	2.2	1.4
중상층	3.2	2.2	1.7	3.3	2.3	1.7
상위층	3.2	2.4	1.9	3.3	2.5	1.9
전체	2.9	1.8	1.4	3.2	2.2	1.6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6년 자료(2015년 기준), 가구와 가구원 데이터를 머지.

이어 근로빈곤 문제는 단순히 취업자가 적기 때문만도 아니다. 그것은 취업가구원의 일자리 질과 무관하지 않다. 이는 다수의 취업자가 존재해도 소득이 낮거나 고용이 불안하면, 낮은 소득 단절로 빈곤 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가구 내 취업자를 상용직/고용주(양질의 취업자)와 기타 취업자(취약한 취업자)로 구분하고, 그 구성 분포를 다른 소득계층과 비교할 것이다.

그 결과를 보면, 근로빈곤가구는 취업자가 전혀 없는 미취업가구가 23.6%를 차지하며,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기타 취업자만으로 구성된 가구가 4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상용직이나 고용주

가 1인 있는 가구가 22.7%를 차지하고 있다. 모든 근로빈곤가구의 소득 역량이 낮은 것은 아니지만, 전체 가구의 65.5%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매우 낮거나 불안정한 특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노인가구나 다른 소득계층 가구의 취업자 구성과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이다.

〈표 5-5〉 근로빈곤가구의 취업자 구성(2015년 기준)

(단위: %)

취업자 구성		소득계층 구분				전체
		빈곤층	중하층	중상층	상위층	
근로 연령 가구 주 가구	취업자 없음	23.6	3.4	1.5	1.0	5.5
	기타 취업자 1인 이상	41.9	29.3	16.8	10.6	23.6
	상용직 1인	22.7	38.1	33.2	25.7	31.5
	상용직 1+기타 1 이상	8.3	16.8	20.2	17.6	16.5
	상용직 2인	2.7	9.7	20.7	31.3	16.6
	상용직 2+기타 1 이상	0.4	1.9	4.6	6.1	3.4
	상용직 3인 이상	0.4	0.7	3.0	7.8	3.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노인 가구 주 가구	취업자 없음	70.2	34.4	27.1	12.9	52.9
	기타 취업자 1인 이상	27.4	42.8	31.5	21.8	31.4
	상용직 1인	1.7	13.3	16.5	20.4	7.4
	상용직 1+기타 1 이상	0.5	7.4	16.0	18.3	5.0
	상용직 2인	0.1	1.4	4.6	16.8	2.0
	상용직 2+기타 1 이상	0.1	0.5	3.9	3.5	0.8
	상용직 3인 이상		0.1	0.4	6.2	0.5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가구	취업자 없음	47.5	8.7	4.1	1.8	15.9
	기타 취업자 1인 이상	34.5	31.6	18.2	11.4	25.3
	상용직 1인	12.0	33.9	31.5	25.3	26.2
	상용직 1+기타 1 이상	4.3	15.2	19.8	17.7	14.0
	상용직 2인	1.4	8.3	19.1	30.2	13.4
	상용직 2+기타 1 이상	0.2	1.6	4.6	5.9	2.8
	상용직 3인 이상	0.2	0.6	2.8	7.7	2.4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위의 표현에서 가구 내 취업자를 유형화한 것으로 주취업자는 상용직과 고용주를 지칭하며, 기타 취업자는 임시, 일용직, 자영업자, 무급종사자를 지칭함.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6년 자료(2015년 기준), 가구와 가구원 데이터를 머지.

위의 표에서 각 가구의 가구원 취업상태를 크게 상용직과 고용주를 지칭하는 양질의 취업자와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를 지칭하는 기타 취업자로 구분하고, 이를 가구 단위로 조합하는 방식으로 유형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것은 상용직과 고용주의 근로소득이 다른 취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제4절 근로빈곤층의 소득과 소비 그리고 부채

오늘날 가계부채는 대다수 가구에 소비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돕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근로빈곤층에게 가계부채는 안정적인 소비생활보다는 최소한의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의미를 갖기도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부채가 필수재적 성격을 갖는 생계비와 주거비 그리고 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소득과 자산 그리고 부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1. 근로빈곤가구의 구성과 그에 따른 소비 특성

가계부채는 다양한 용도로 발생하게 되는데, 큰 규모의 부채는 주로 사업 및 투자 실패 등의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그렇다면 근로빈곤층에게서 가계부채가 발생하는 다른 특징적인 요인은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생계비, 2) 주거비, 3) 교육비가 그것이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의해 큰 영향을 받게 되며, 주거비는 자산 규모와 주거 점유 상태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그리고 교육비는 가구원 중 재학 중인 자녀의 수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먼저 근로빈곤가구의 가구원 분포를 보면, 1인 가구 비중이 26.5%로

중하층의 12.7%나 중상층의 9.1%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근로빈곤가구에도 2인 이상 가구가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2인 이상 가구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계비 지출 요인이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어 가구원 수 분포를 보완하는 지표로 가구 형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아래 표는 근로빈곤가구 중 한부모가구가 20.7%로 다른 소득계층의 2~3배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한부모 가구의 경우, 일-가정 양립에 각별한 어려움을 겪는 집단이고, 상대적으로 소득과 자산 그리고 자녀를 돌볼 시간 제약이 많은 집단이라는 것이다.

끝으로 근로빈곤가구의 주거 점유 형태를 보면, 월세가구가 31.8%로 중하층의 20.1%나 중상층의 10.3%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자가 비율과 전세 비율이 각각 40.9%, 19.1%로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다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근로빈곤가구 중 월세가구의 경우, 주거비 지출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말해 준다. 그리고 이것이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야 할 점이다.

〈표 5-6〉 근로빈곤가구의 기본적 특성(가처분소득 기준)

(단위: %)

가구 특성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계층				전체
		근로빈곤 가구	중하층 가구	중상층 가구	상위층 가구	
가구원 수	1인	26.5	12.7	9.1	9.2	12.7
	2인	23.9	18.0	15.4	17.2	17.9
	3인	20.4	22.4	24.0	24.6	23.1
	4인	19.6	34.5	39.7	38.6	35.0
	5인	7.1	9.4	10.2	8.3	9.0
	6인 이상	2.4	3.0	1.6	2.0	2.3
	평균 가구원 수	2.6	3.2	3.3	3.3	3.2
가구형태	단신가구	26.5	12.7	9.1	9.2	12.7
	한부모가구	20.7	11.2	6.1	4.4	9.7
	부부가구	10.7	10.1	10.9	13.8	11.3
	부부+자녀1	10.1	18.3	20.8	23.3	18.9
	부부+자녀2	21.6	34.4	39.5	39.9	35.0
	부부+자녀3+	6.8	8.0	8.6	6.1	7.5
	기타 가구	3.6	5.3	5	3.3	4.9
입주형태 통합별	자가	40.9	52.7	61.7	68.0	57.6
	전세	19.1	21.9	23.8	23.0	22.3
	월세	31.8	20.1	10.3	5.7	15.3
	기타	8.1	5.3	4.1	3.3	4.8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이 표는 근로연령가구로 통제된 분석 결과임.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6년 자료(2015년 기준).

근로빈곤가구는 노인빈곤가구에 비해 자녀를 양육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교육비 지출 수요가 크다. 아래 표는 근로빈곤가구가 다른 소득계층과 유사한 수준으로 학생자녀를 양육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근로빈곤층이 낮은 소득능력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지출 욕구를 갖고 있다는 점을 말해 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다른 지출을 줄이거나 부채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 쉽다. 하지만 이미 최소한의 지출을 하는 경

우가 많은 빈곤가구에서 교육비 또한 절감 대상에서 제외하기 쉽지 않다. 이는 실제 많은 근로빈곤층에게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다.

〈표 5-7〉 근로빈곤가구의 학생 분포(가처분소득 기준)

(단위: %)

		소득계층				전체
		빈곤층	중하층	중상층	상위층	
미취학 아동	없음	88.0	79.1	82.4	87.5	83.3
	1인	7.4	14.0	12.6	10.0	11.6
	2인 이상	4.7	7.0	5.0	2.5	5.0
초등학생	없음	83.5	79.2	79.6	85.4	81.5
	1인	11.9	14.8	14.1	10.8	13.2
	2인 이상	4.6	6.0	6.4	3.8	5.4
중학생	없음	88.9	88.7	88.3	90.8	89.1
	1인	10.0	10.5	10.6	8.5	9.9
	2인 이상	1.1	0.8	1.1	0.8	0.9
고등학생	없음	85.5	87.3	86.4	87.0	86.7
	1인	12.7	11.5	12.0	11.5	11.8
	2인 이상	1.9	1.3	1.7	1.6	1.5
전문대생	없음	95.3	95.2	95.3	96.6	95.6
	1인	4.4	4.5	4.3	3.1	4.1
	2인 이상	.3	.3	.3	.3	.3
대학생	없음	88.5	86.5	85.5	81.5	85.4
	1인	9.4	10.9	11.8	13.8	11.6
	2인 이상	2.1	2.6	2.7	4.7	3.1
학생 전체	없음	51.0	39.5	40.7	45.8	43.1
	1인	19.3	24.4	23.0	24.3	23.2
	2인	22.9	29.5	30.1	26.0	27.8
	3인 이상	6.8	6.6	6.3	3.8	5.9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이 표는 근로연령가구로 통제된 분석 결과임.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6년 자료(2015년 기준).

2. 근로빈곤층의 소득과 자산

근로빈곤층은 가구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집단이라는 점에서 다른 소득 계층에 비해 소득이 낮게 나타나게 된다. 아래 표에서 근로빈곤가구의 평균 경상소득은 1525만 원으로 중하층의 3468만 원이나 중상층의 5711만 원, 그리고 상위층의 1억 397만 원에 비해 매우 낮다. 그리고 가처분소득은 경상소득에서 각종 조세와 사회보장세를 제외함에 따라 더욱 낮아지고 있다. 물론 근로빈곤층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낮다는 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특이점은 근로빈곤가구에 대한 공적이전소득이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서는 다소 높지만, 빈곤 위험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참고로 근로빈곤가구가 받는 연간 공적이전소득은 214만 원으로 소득상위가구의 159만 원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 이는 공적이전소득의 빈곤 감소 효과가 큰 외국의 사회보장제도와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 근로빈곤층은 서구 근로빈곤층에 비해 다소 높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자가 보유 비율 및 전세보증금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근로빈곤층은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규모는 낮지만 소득 수준에 비해 큰 부채 규모와 이자 부담을 안고 있다. 아래 표를 보면, 근로빈곤층 부채 총액은 전체 소득계층 평균 부채의 74.9%에 이르고, 연간 이자 지급 및 원리금 상환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가처분소득 대비 114.2%로 중하층의 43.0%나 중상층의 38.8%에 비해 약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8〉 근로빈곤가구의 소득계층별 소득, 자산 및 부채

(단위: 만 원)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계층				전체
	근로빈곤 가구	중하층 가구	중상층 가구	상위층 가구	
경상소득	1,525	3,468	5,711	10,397	5,667
근로소득	753	2,536	4,245	7,021	3,955
-사업소득	424	727	1,178	2,652	1,326
-재산소득	58	54	122	541	205
이전소득	289	150	165	183	181
-공적이전소득	214	122	134	159	147
-사적이전소득	76	29	31	24	34
가처분소득	1,100	2,831	4,683	8,548	4,628
(평균 대비 %)	(23.8)	(61.2)	(101.2)	(184.7)	(100.0)
자산총액	18,952	23,105	36,289	68,902	38,373
금융자산	4,740	6,273	10,754	19,327	10,761
실물자산	14,212	16,832	25,535	49,576	27,612
부채 총액	5,647	5,093	7,275	11,792	7,544
(평균 대비 %)	(74.9)	(67.5)	(96.4)	(156.3)	(100.0)
금융부채	4,458	3,966	5,486	7,787	5,456
-담보대출	3,569	3,164	4,434	6,483	4,443
-신용대출	710	643	862	1,161	848
-신용카드관련대출	136	64	69	32	66
-외상/할부미상환액	39	94	118	110	97
-갯돈 탄 후 불입금액	3	1	3	1	2
임대보증금	1,189	1,127	1,789	4,005	2,087
순자산액	13,305	18,013	29,014	57,111	30,829
(평균 대비 %)	(43.2)	(58.4)	(94.1)	(185.3)	(100.0)

주: 이 표는 근로연령가구로 통제된 분석 결과임.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6년 자료(2015년 기준).

3. 근로빈곤층의 소비와 부채

근로빈곤층은 노인빈곤층과 달리 자녀를 부양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소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특징을 갖는다. 아래 표는 소득계층 및 가구원 수별로 소비 지출 및 이자 지출의 부담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소득계층별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지출 및 소비 지출 비중을 보면, 1인 가구의 경우 근로빈곤층은 각각 139.6%와 115.7%로 중하층의 97.7% 및 75.0%에 비해 매우 높으며, 사실상 가계적자 상태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가계 지출에서 소비 지출과 이자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2.8%와 5.4%로, 중하층의 76.7%와 3.7%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가구원 수 증가에 따라 가계 지출 및 소비 지출이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각 소득계층별로 가처분소득의 증가는 그 차이가 크다. 특히 근로빈곤층은 가구원이 증가하는 만큼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지출 및 소비 지출 비중은 근로빈곤층과 다른 소득계층에서 상반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근로빈곤층은 가구 규모가 커질수록 가계수지의 적자 규모가 커지는 반면, 다른 소득계층은 가구 규모가 커질수록 적자 규모가 작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 지출 부담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근로빈곤층의 경우, 가구원 수가 늘어나더라도 취업자 수의 증가가 수반되지 않아, 가계 지출 및 소비 지출 증가로 인해 부채를 지게 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말해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뒤에 근로빈곤층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질적 해석을 통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표 5-9〉 근로빈곤가구의 소득과 소비

가구 원수	소득 계층	소득과 지출 (만 원)			지출 특성(%)			
		가처분소 득 (A)	가계 지출 (B)	소비 지출 (C)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지출 대비	
					지출 비중	소비 지출 비중	소비 지출 비중	이자 지출 비중
1	빈곤층	616	860	713	139.6	115.7	82.8	5.4
	중하층	1,621	1,584	1,216	97.7	75.0	76.7	3.7
	중상층	2,658	2,066	1,601	77.7	60.2	77.5	3.5
	상위층	4,657	3,148	2,069	67.6	44.4	65.7	4.0
	전 체	2,150	1,795	1,330	83.5	61.9	74.1	3.9
2	빈곤층	1,004	1,291	1,075	128.6	107.1	83.3	4.3
	중하층	2,226	1,991	1,571	89.5	70.6	78.9	5.9
	중상층	3,777	2,626	1,950	69.5	51.6	74.2	4.9
	상위층	7,131	3,983	2,540	55.8	35.6	63.8	6.1
	전 체	3,472	2,458	1,783	70.8	51.4	72.6	5.6
3	빈곤층	1,252	1,898	1,572	151.6	125.6	82.8	5.5
	중하층	2,829	2,568	2,014	90.8	71.2	78.4	5.3
	중상층	4,557	3,554	2,614	78.0	57.4	73.6	4.8
	상위층	8,500	5,369	3,586	63.2	42.2	66.8	4.8
	전 체	4,692	3,534	2,562	75.3	54.6	72.5	5.0
4	빈곤층	1,507	2,743	2,076	182.0	137.8	75.7	10.9
	중하층	3,338	3,335	2,583	99.9	77.4	77.5	5.8
	중상층	5,299	4,634	3,427	87.4	64.7	74.0	5.1
	상위층	9,387	6,640	4,460	70.7	47.5	67.2	5.2
	전 체	5,478	4,605	3,323	84.1	60.7	72.2	5.6

주: 이 표는 근로연령가구로 통제된 분석 결과임.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6년 자료(2015년 기준).

4. 근로빈곤층의 부채 및 부채 상환 부담

근로빈곤층은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아래 표는 근로빈곤가구 중 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비율이 58.7%로 중하층의 70.7%와 중상층의 74.6%, 상위층의 75.1%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말해 주고 있다. 이는 여전히 많은 근로빈곤층이 불안정한 고용상태와 낮은 담보능력 등으로 인해 대출을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말해 준다. 이들이 일반금융기관을 이용하기 힘들며, 서민금융기관 또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 공급에 소극적인 상황을 말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부채를 보유한 근로빈곤가구의 부채 부담 및 부채 상환 부담은 이들의 가처분소득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담은 근로빈곤가구의 낮고 불안정한 소득으로 인해 감당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로빈곤층의 이자 및 상환액이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4.2%로 중하층의 43.0%와 중상층의 38.8%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5-10〉 근로빈곤가구의 부채와 상환 부담(가처분소득 기준)

(단위: %)

가구 특성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계층				전체
		근로빈곤 가구	중하층 가구	중상층 가구	상위층 가구	
부채 보유 여부	보유	58.7	70.7	74.6	75.1	71.3
	미보유	41.3	29.3	25.4	24.9	28.7
연간지급이자/상환액		1,256	1,217	1,815	2,508	1,750
(가처분소득 대비 %)		(114.2)	(43.0)	(38.8)	(29.3)	(37.8)
연간지급이자		307	222	270	384	291
연간상환액		949	995	1,546	2,124	1,46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6년 자료(2015년 기준).

하지만 가처분소득 대비 이자 및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은 가처분소득의 크기를 고려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가처분소득이 음의 값을 갖거나 매우 낮아 부채 부담 정도를 과도하게 높이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개별 가구의 가처분소득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부채 상환액에 대해서도 그 부담 정도가 다르게 표현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물론 부채 부담이란 개별 가구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는 주관적 측면이 있다. 그것은 주로 낮은 가처분소득으로 인해 느껴지는 부담의 정도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근로빈곤가구의 부채 상환 부담이 평균 가처분소득 대비 비중으로 환산함에 따라 감소하는 정도는 한편으로는 근로빈곤가구의 부채 상환 부담이 가처분소득이 증가되면 크게 완화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에서 근로빈곤층이 생활에서 느끼게 되는 부채 상황에 따른 무게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가처분소득의 극단치를 제거하고, 근로연령가구의 취업자 구성 형태별로 <해당 가구의 가처분소득> 및 <평균 가처분소득> 대비 해당 가구의 부채 상환액 비율을 산출하였다. 전자를 <실제 부채 상환 부담>, 후자를 <추정된 부채 상환 부담>이라고 구분하고자 한다.

아래 표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 <실제 부채 상환 부담>과 <추정된 부채 상환 부담>, 그리고 <그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분석 결과를 보면,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상환액 비율은 전체 근로빈곤가구의 79.8%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취업자가 없는 가구의 경우에도 그 비율은 53.8%로 다른 소득계층의 평균값인 19.8~30.2%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높은 부채 상환 부담은 정상적인 소비생활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점을 말해 준다. 특히 가구 내 상용직 취업자 1인과 기타 취업자 1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의 부채 상환액은 가처분소득 대비 138.6%로 가계 수지 적자상태로 나타나고 있다.

위의 수치를 <평균 가처분소득 대비> 이자 상환액으로 재산출한 추정된 부채 상환 부담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먼저 근

로빈곤가구의 평균 부채 상환 부담은 28.1%로 낮아지게 된다. 그 차이는 무려 51.7%에 이른다. 이는 낮은 소득으로 인해 부채 상환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지는 부분, 즉 <소득 요인에 의한 부채 부담 증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차이는 취업자가 없는 가구에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가처분소득이 낮아 부채 상환 부담이 53.8%로 나타났지만, 평균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로 조정하면 12.7%로 낮아지게 된다. 결국 그 차이 41.1%는 해당 근로빈곤층 가구가 느끼는 추가적 무게감이 될 것이다.

물론 근로빈곤층이라 하더라도 가구에 따라 부채 상환 부담은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일부 집단은 <추정된 부채 상환 부담> 또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은 조정 이전의 부채 상환 부담 자체가 높았던 집단이다. 근로빈곤가구 중 취업자가 상용직 1인인 가구, 상용직 2인인 가구 그리고 기타 취업자(비정규직 및 자영업자 1인 이상)만으로 구성된 가구이다. 이들은 가처분소득이 평균 수준으로 높아져도 부채 상환 부담은 40~50%로 다른 소득계층의 비율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들의 가계부채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반면에 소득 상위층은 부채액과 부채 상환액이 크지만, 가처분소득이 높아 그것이 큰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는 집단이다. 이들의 부채 상환액을 평균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추정된 부채 상환 부담>은 대다수 가구에서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수치 중 중상층의 취업자가 없는 가구는 케이스가 적어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표 5-11〉 근로빈곤가구의 부채와 추정된 부채상환 부담의 비교

(단위: 가처분소득 대비 %)

		실제 부채 부담	추정된 부채 부담	차이 (소득 요인)
빈곤층	취업자 없음	53.8	12.7	41.1
	비정규/자영취업자1이상	79.2	33.5	45.7
	상용직1인	84.0	25.3	58.7
	상용1+기타1이상	138.6	49.3	89.3
	상용직2인	95.6	37.5	58.1
	상용2+기타1이상	84.3	31.3	53.0
	합계	79.8	28.1	51.7
중하층	취업자 없음	21.7	34.2	-12.5
	비정규/자영취업자1이상	25.4	23.9	1.4
	상용직1인	31.9	22.2	9.8
	상용1+기타1이상	32.0	25.3	6.7
	상용직2인	36.4	23.4	13.0
	상용2+기타1이상	40.9	32.9	8.0
	합계	30.2	23.9	6.3
중상층	취업자 없음	39.1	108.9	-69.8
	비정규/자영취업자1이상	25.4	37.8	-12.3
	상용직1인	22.2	23.2	-1.0
	상용1+기타1이상	22.1	27.8	-5.7
	상용직2인	25.7	25.4	0.3
	상용2+기타1이상	21.2	24.6	-3.5
	합계	23.8	28.4	-4.7
상위층	취업자 없음	15.5	47.7	-32.2
	비정규/자영취업자1이상	21.3	58.2	-36.9
	상용직1인	18.3	30.9	-12.6
	상용1+기타1이상	24.4	48.6	-24.2
	상용직2인	18.9	31.9	-13.1
	상용2+기타1이상	18.8	31.1	-12.3
	합계	19.8	37.5	-17.8

		실부채부담	추정부채부담	차이
합 계	취업자 없음	44.0	25.6	18.4
	비정규/자영취업자1이상	39.7	32.7	7.0
	상용직1인	32.4	24.5	7.9
	상용1+기타1이상	35.3	34.0	1.3
	상용직2인	26.5	28.3	-1.8
	상용2+기타1이상	25.3	29.2	-3.9
	합계	33.7	29.0	4.7

주: 1) 실부채부담 = 부채상환액(이자+원리금) / 가치분소득

2) 추정부채부담 = 부채상환액(이자+원리금) / 해당 취업구성집단의 평균 가치분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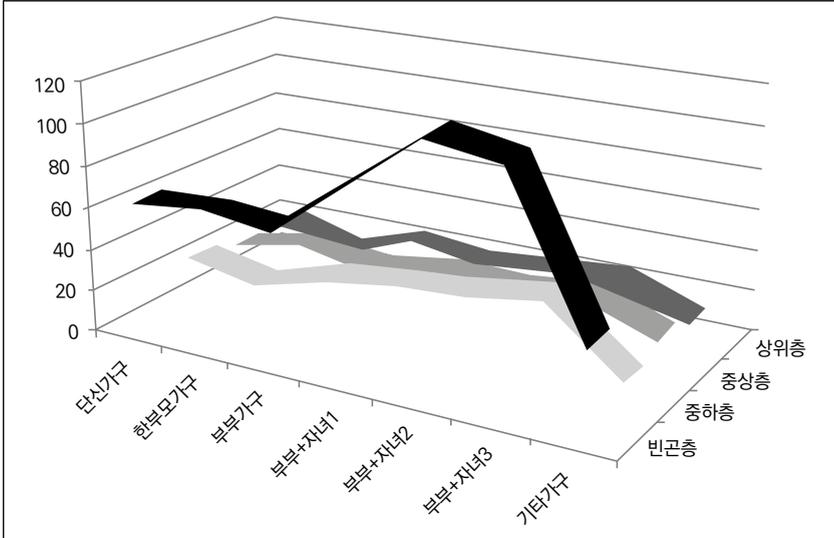
3) 차이 = 실부채부담 - 추정부채부담

4) 이 표는 근로연령가구주 가구로 통계된 분석 결과임.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6년 자료(2015년 기준).

가계부채는 해당 가구의 소득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지만, 지속적인 소비 지출 욕구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 욕구는 가족의 구성, 특히 아동 유무와 수에 의해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 그것은 성장기 자녀, 특히 학령기 아동이 있는 경우, 가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와 주거비 그리고 교육비 지출이 증가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아래 그림은 소득계층과 가구유형별 부채 상환 부담 정도를 보여 주고 있다. 그에 따르면, 빈곤층이면서 아동 수가 증가할수록 부채 상환 부담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빈곤가구이자 부부가구이면서 아동이 1~3인 이상인 가구를 중심으로 부채 상환 부담 정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기타 소득계층에게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동 유무에 따라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5-5] 소득계층별 가구유형별 부채 상환 부담



제5절 가계부채에 대한 소득계층별 태도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해당 가구원의 인식(태도)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금융부문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근로빈곤층의 가계부채에 관한 태도가 다른 소득계층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²¹⁾

21)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는 금융부문과 복지부문에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빈곤율 및 근로빈곤율을 산출하기 위해 두 데이터를 통합한 데이터를 사용할 것이다. 하지만 두 데이터가 담고 있는 가구 문항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가계부채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문항은 주로 금융부문 조사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부채 관련 항목을 분석하는 경우에는 주로 금융부문 가구 데이터 및 가구-개인 통합 데이터를 사용할 것이다.

1. 근로빈곤층의 가계부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전체 소득계층 중 가계부채를 갖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64.9%, 빈곤가구는 43.0%로 나타난다. 빈곤가구 중 근로빈곤가구의 부채 보유 비율은 55.5%, 노인빈곤가구는 30.4%이다. 이는 중하층과 상위층의 부채 보유 비율 70.0~78.9%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표 5-12〉 소득계층별 부채 보유 여부

(단위: 응답자(가구)의 %)

	빈곤가구			중하층 가구	중상층 가구	상위층 가구	전체
	소계	근로빈곤 가구	노인 가구				
있다	43.0	55.5	30.4	70.0	75.8	78.9	64.9
없다	57.0	44.5	69.6	30.0	24.2	21.1	35.1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6년 <금융부문> 자료(2015년 기준).

2015년 현재의 가계부채 규모를 1년 전과 비교하면, 전체 가구의 38.5%가 감소했다고 답한 반면, 29.1%가 변화가 없고, 32.4%가 증가했다고 답하고 있다. 이를 소득계층별로 보면, 빈곤가구의 35.7%가 증가했다고 답했으며, 근로빈곤가구는 38.9%가 증가했다고 답하고 있다. 이는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근로빈곤층의 가계부채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표 5-13〉 소득계층별 부채 규모 변화(1년 전 대비)

(단위: 응답자(가구)의 %)

	빈곤가구			중하층 가구	중상층 가구	상위층 가구	전체
	소계	근로빈곤 가구	노인 가구				
감소했다	27.6	27.0	29.0	37.4	43.1	44.2	38.5
변화 없다	36.7	34.1	43.3	28.8	25.3	27.2	29.1
증가했다	35.7	38.9	27.7	33.8	31.7	28.6	32.4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6년 <금융부문> 자료(2015년 기준).

가계부채의 향후 전망과 관련해서 전체 가구의 58.2%가 현재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31.6%가 감소할 것이고, 10.3%만이 증가할 것이라고 답하고 있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근로빈곤가구의 65.8%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하였고, 20.9%와 13.3%가 각각 감소 또는 증가할 것이라고 답하였다. 근로빈곤층이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부채가 증가할 것이라는 답변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빈곤가구 중 노인가구주 가구는 부채금액이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이 87.1%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5-14〉 소득계층별 부채 규모 변화 예상(1년 후)

(단위: 응답자(가구)의 %)

	빈곤가구			중하층 가구	중상층 가구	상위층 가구	전체
	소계	근로빈곤 가구	노인 가구				
감소할 것	14.9	20.9	8.7	32.9	42.4	43.4	31.6
변화 없을 것	76.4	65.8	87.1	54.9	46.1	48.2	58.2
증가할 것	8.7	13.3	4.2	12.2	11.5	8.4	10.3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6년 <금융부문> 자료(2015년 기준).

2. 근로빈곤층 가계부채의 증가 원인

근로빈곤층의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경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전체 가구가 답하는 부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생활비 마련이 20.8%, 거주주택 마련이 19.5%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주거와 관련된 부채를 모두 합하면, 28.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참고로 거주주택 외 부동산 마련을 위한 부채를 제외한 수치이다. 부채 증가 원인은 가구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주거비 관련 부채 비중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그 차이가 거주주택 외 부동산 마련을 위한 부채 규모 증가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소득 계층별로 보면, 빈곤가구는 부채 증가의 원인을 생활비 마련 36.9%, 교육비 마련 12.2%, 의료비 마련 12.0% 순으로 답하고 있다. 주거와 관련된 부채를 더하면, 18.9%로 나타난다. 이는 부채 증가의 원인과 관련한 순서가 생활비 → 주거비 → 교육비 → 의료비 순으로 바뀐다는 것을 말해 준다. 빈곤가구 중 근로빈곤가구와 노인빈곤가구의 부채 증가 원인에도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로빈곤가구의 부채 증가 원인이 생활비 → 주거비 → 교육비 순이라면, 노인빈곤가구는 생활비 → 의료비 → 주거비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밖에 근로빈곤층 부채 증가 원인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점은 이들에게서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부채 비율이 9.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빈곤층 중 상당수가 자영업에 종사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소득계층에 따라 부채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이 다르다는 점을 말해 준다. 특히 빈곤가구일수록 생활비와 주거비 마련에 따른 부채 발생 비율이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5-15〉 소득계층별 부채 증가 원인

(단위: 응답자(가구)의 %)

	빈곤가구			중하층 가구	중상층 가구	상위층 가구	전체
	소계	근로 빈곤 가구	노인 가구				
거주주택 마련	8.7	9.1	7.3	17.2	28.5	28.7	19.5
거주주택 외	.7	1.0		5.0	12.7	14.9	7.3
전/월세 보증금	9.8	9.8	9.7	9.8	7.6	8.1	9.0
증권투자자금					.5		.1
부채 상환	8.0	7.3	10.2	7.6	5.0	3.0	6.4
사업자금 마련	8.3	9.1	5.6	9.3	6.6	8.6	8.3
결혼자금 마련	1.4	1.8		4.0	8.0	7.8	4.9
의료비 마련	12.0	6.7	29.2	3.1	.9	.7	4.4
교육비 마련	12.2	15.2	2.6	18.3	18.6	17.5	16.7
생활비 마련	36.9	38.2	32.7	22.3	11.1	6.1	20.8
기 타	2.0	1.8	2.6	3.4	.5	4.6	2.6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6년 <금융부문> 자료(2015년 기준).

가계부채 중 원리금 상환 연체비율을 보면, 전체 가구의 12.9%가 연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빈곤가구의 21.2%가 원리금을 연체하고, 그중에서도 근로빈곤가구의 24.2%, 노인빈곤가구의 13.9%가 원리금을 연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소득계층을 보면, 중하층의 15.1%와 중상층의 10.2% 그리고 상위층의 5.7%가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16〉 소득계층별 원리금 연체 여부

(단위: 응답자(가구)의 %)

	빈곤가구			중하층 가구	중상층 가구	상위층 가구	전체
	소계	근로빈곤 가구	노인 가구				
연체 있다	21.2	24.2	13.9	15.1	10.2	5.7	12.9
연체 없다	78.8	75.8	86.1	84.9	89.8	94.3	87.1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6년 <금융부문> 자료(2015년 기준).

소득계층별로 원리금 상환의 연체가 발생하는 이유를 보면, 전체 가구의 26.1%가 자금 융통 차질을, 25.5%가 소득 감소를, 20.0%가 납부기일 착오를 이유로 답하고 있다. 반면에 빈곤가구는 36.3%가 소득 감소, 26.0%가 이자 및 원금 상환 부담, 20.0%가 자금 융통 차질 때문이라고 답하고 있다. 근로빈곤가구 또한 빈곤가구 전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상환 연체 이유를 <소득 감소 38.1% → 이자 및 원금 상환 부담 23.6% → 자금 융통 차질 18.9%> 순으로 답하고 있는 것이다. 빈곤층은 소득 감소와 그에 따른 이자 부담이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는 가장 주된 이유인 것이다. 그에 반해, 다른 소득계층은 연체의 이유를 자금 융통 차질 → 납부기일 착오 → 소득 감소 순으로 답하고 있다. 빈곤층에서 소득 감소로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게 되는 상황은 이들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은 당연하다. 즉, 일시적 자금 융통이나 납부기일 착각 등과는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고 답하는 가구의 비율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근로빈곤가구 중 원리금 상환이 <매우 부담스럽다>고 답한 가구의 비율은 39.7%로 중하층의 21.3%나 중상층의 18.0%, 상위층의 8.8%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5-17〉 소득계층별 원리금 연체 이유

(단위: 응답자(가구)의 %)

	빈곤가구			중하층 가구	중상층 가구	상위층 가구	전체
	소계	근로빈곤 가구	노인 가구				
이자/원금 부담	26.0	23.6	36.5	16.2	11.5	10.2	17.8
자금 융통 차질	20.0	18.9	24.9	25.3	31.4	38.2	26.1
소득 감소	36.3	38.1	28.5	21.5	20.0	18.1	25.5
가계지출 증가	6.7	7.4	3.9	10.8	8.9	8.1	8.9
납부기일 착오	9.2	10.3	4.3	24.4	26.8	24.3	20.0
기 타	1.8	1.8	1.8	1.8	1.3	1.2	1.6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6년 <금융부문> 자료(2015년 기준).

〈표 5-18〉 소득계층별 원리금 상환에 따른 가계 부담 여부

(단위: 응답자(가구)의 %)

	빈곤가구			중하층 가구	중상층 가구	상위층 가구	전체
	소계	근로빈곤 가구	노인 가구				
부담이 없다	18.5	15.3	26.4	25.9	29.6	45.3	29.9
약간 부담	45.7	45.0	47.2	52.8	52.4	45.8	49.7
매우 부담	35.9	39.7	26.4	21.3	18.0	8.8	20.4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6년 <금융부문> 자료(2015년 기준).

3. 근로빈곤층 가계부채의 파급효과

근로빈곤층의 가계부채가 가구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 일차적으로 근로빈곤층의 가계부채는 해당 가구의 소비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래 표를 보면, 지출을 줄이고 있다는 응답의 비율은 소득상위층을 제외하면 큰 차이가 없다. 전체 가구의 74.5%가 부채 상환을 위해 가계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빈곤가구도 75.7%가

가계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답하고 있다. 그중 근로빈곤가구는 77.6%가 가계 지출을 줄인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처럼 거의 모든 가구가 부채 상환을 위해 가계 지출을 줄이고 있지만, 이미 낮은 소득으로 최소한의 소비생활을 하고 있는 빈곤가구에게는 추가적인 지출 절감이 용이하지 않다. 그리고 설사 지출을 줄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미치는 효과는 바람직하지 않다. 최소한의 소비생활을 위협함으로써 가족생활을 영위하는 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5-19〉 소득계층별 부채 상황에 따른 가계 지출 감소 여부

(단위: 응답자(가구)의 %)

	빈곤가구			중하층 가구	중상층 가구	상위층 가구	전체
	소계	근로 빈곤 가구	노인 가구				
줄이고 있음	75.7	77.6	70.2	76.0	75.6	68.7	74.5
줄이고 있지 않음	24.3	22.4	29.8	24.0	24.4	31.3	25.5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6년 <금융부문> 자료(2015년 기준).

그렇다면 부채 상환을 위해 어떤 지출을 줄이고 있는가. 전체 가구의 34.1%가 식품외식비를 줄이고, 29.4%가 레저/여가/문화비를 줄이고, 23.7%가 저축과 투자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빈곤가구는 48.9%가 식품외식비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초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지출을 줄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노인빈곤층에게서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약 60.7%가 식품외식비를 줄인다고 답하고 있다. 근로빈곤층은 45.1%가 식품외식비를 줄인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노인 빈곤층의 응답보다는 낮지만 아동을 부양하는 가구가 많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일수록 레저와 여가 그리고 투자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소득계층별로

가계부채가 소비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말해 준다.

〈표 5-20〉 소득계층별 부채 상환 부담으로 지출을 줄인 항목

(단위: 응답자(가구)의 %)

	빈곤가구			중하층 가구	중상층 가구	상위층 가구	전체
	소계	근로 빈곤 가구	노인 가구				
저축/금융투자	18.1	19.6	13.4	22.5	26.4	30.0	23.7
레저/여가/문화비	20.3	21.5	16.3	29.1	33.0	37.3	29.4
식품외식비	48.9	45.1	60.7	36.1	27.8	18.9	34.1
의류구입비	8.9	9.1	8.2	7.1	7.8	9.2	8.0
교육비 마련	1.8	2.4		3.2	2.5	2.4	2.6
교통통신비	.5	.7		.8	.1	.4	.5
내구재구입비	.8	1.1		1.0	1.9	1.7	1.3
기 타	.7	.5	1.3	.3	.5		.4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6년 <금융부문> 자료(2015년 기준).

끝으로 가계부채의 상환 가능성에 대한 소득계층별 답변을 보면, 소득 상위층의 79.7%가 대출기한 내에 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고 답한 반면, 빈곤층에서는 62.6%가 그렇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그 비율은 근로빈곤층에게서 60.3%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보다 주목해야 할 답변은 상환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의 비율이다. 빈곤가구의 14.9%는 현재의 부채를 상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답하였으며, 노인가구는 16.6%, 근로빈곤가구는 14.2%가 그렇게 답했다는 점이다. <부채 상환 가능성>에 대한 답변은 이들이 현재의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의 정도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표 5-21〉 소득계층별 부채 상환 가능성에 대한 전망

(단위: 응답자(가구)의 %)

	빈곤가구			중하층 가구	중상층 가구	상위층 가구	전체
	소계	근로 빈곤 가구	노인 가구				
대출기한 내에 갚을 수 있다	62.6	60.3	68.2	72.1	73.2	79.7	72.3
대출기한 뒤지만 갚을 수 있다	22.5	25.5	15.2	21.5	23.3	19.1	21.6
상환 불가능할 것이다	14.9	14.2	16.6	6.4	3.5	1.2	6.1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6년 <금융부문> 자료(2015년 기준).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잦은 연체 경험과 부채 상황에 따른 소비 지출의 제약, 특히 식생활비와 같은 필수재에 대한 지출 감소는 해당 가구에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것은 때로 가족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최악의 경우에는 가족 해체를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채무 당사자는 물론이고 가구 구성원의 심리적 태도와 취업상태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만 이러한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일반적 가계조사 데이터를 통해서만 파악하기 쉽지 않다. 특히 가계부채의 발생 원인과 원인가구원, 그 부담을 지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도 그 문제는 다르게 표출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은 정량적 분석을 통해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가계부채의 발생과 파급효과에 대한 질적 분석이 필요한 이유이다.

제6절 가계부채가 근로빈곤에 미치는 영향

가계부채와 이자 및 원금 상환 부담은 소득이 낮은 중하층가구의 소득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빈곤선이 최소한의 소비수준을 전제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부채 상환에 다른 가처분소득의 감소는 중하층가구의 빈곤 위험을 높이는 방향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가계부채가 빈곤율과 근로빈곤율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해 볼 것이다.

1. 분석방법에 대해

앞서 가처분소득에서 부채 상환액을 제외한 <조정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층 규모를 추정하고, 그것을 기존의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층 규모와 비교하는 방식은 빈곤층 규모를 추정하는 또 다른 방식이라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 분석방식은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 이 방식의 한계는 첫째,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매입을 위한 부채 상환액을 고려해야 하나 적용이 힘들다는 점이다. 거주주택 매입을 위한 부채 상환액은 사실상 임차가구의 월 임대료와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주주택 구입을 위해 얻은 부채는 매우 큰 금액으로 주거비 지출 성격 외에 투자의 성격 또한 갖는다. 이러한 이유에서 주거 구입을 위한 담보대출 상환비용을 제외하는 방식을 선택하기는 곤란하다. 둘째, 분석상의 어려움 또한 지적할 수 있다. 전체 부채 상환액에서 거주를 위한 대출 부분을 정확하게 추출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 데이터로는 생계 등 특정 소비 관련 부채의 상환액만을 분리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셋째,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주거 관련 부채 상환액이나 그에 준하는 이자 환산액을

가처분소득에서 제외하는 경우, 중위소득 자체가 낮아져 오히려 상대빈곤율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소비 관련 대출 → 임대 관련 대출 → 주택 매입을 위한 대출 순으로 이자 환산액을 가처분소득에서 제외할수록 더욱 심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일정한 소비를 전제로 하는 빈곤선 설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빈곤선을 가처분소득으로 고정하는 모델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앞서 언급한 제약을 고려하여 <조정된 가처분소득>을 산출하는 몇 가지 모델을 구성하였다. 아래 모든 모델은 가처분소득 또는 <조정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소득계층의 가구 비중 및 인구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빈곤층은 균등화된 가처분소득/조정된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 이하 소득계층, 중하층은 51~100%, 중상층은 101~150%, 상위층은 151% 이상을 지칭한다. 먼저 <Model 1>은 기존의 가처분소득을 그대로 적용한 기본 모델이다. 이어 <Model 2>는 프레스맨 & 스코트 III의 방식을 참조한 것이다(Pressman, Scot III, 2010, pp.9-12). 소비 관련 부채 잔액에 일정 이자율²²⁾을 적용해서 가상의 <이자 상환 추정액>을 산출하고, 이를 가처분소득에서 제외하여 <조정된 가처분소득>을 구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소비 관련 부채는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에 포함된 <의료비, 교육비, 생활비, 결혼자금, 기타 용도>의 대출 잔액으로 제한하였다. <Model 3>은 <Model 2>의 소비 관련 부채에 주거 관련 대출 중 투자 목적이 없을 것으로 간주되는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잔액을 추가한 것이다. <Model 4>는 가처분소득에서 실제 지출

22) 2015년 기준 데이터를 활용하는 만큼, 해당 연도의 소비 관련 부채의 중심을 이루는 카드할부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카드할부는 금융기관과 할부개월 수에 따라 이자율이 다르다. 따라서 3개월 카드할부 등에 적용되는 이자율로 연 5%를 적용하였음을 밝혀둔다.

된 이자 상환액을 제한 것이다. 이 모델은 이자 상환 추정액을 적용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Model 5〉는 가처분소득에서 실제 지출된 이자 상환액과 원금 상환액을 합한 금액을 제한 것이다. 이 분석은 소비 관련 부채나 전체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지출이 빈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추정한다는 의미가 있다.

2. 가계부채가 빈곤율에 미치는 영향

아래 표는 가처분소득과 조정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계층별 분포를 가구 단위와 개인 단위로 추정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빈곤가구율은 〈Model 1〉~〈Model 5〉까지 22.6%→23.0%→23.3%→24.8%→35.1%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빈곤율은 16.3%→16.7%→17.0%→18.6%→30.4%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소비 관련 부채 잔액에 대한 이자 추정액을 반영하는 것만으로는 부채가 빈곤율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말해 준다. 반면에 실제 지출된 이자액과 원금 상환액을 반영하면 빈곤율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22〉 가치분소득/조정된 가치분소득 기준 소득계층 분포

(단위: Row의 %)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가구 단위	빈곤층	22.6	23.0	23.3	24.8	35.1
	중하층	32.6	32.6	32.7	33.1	31.6
	중상층	22.6	22.4	22.3	21.7	17.9
	상위층	22.1	22.0	21.8	20.5	15.3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개인 단위	빈곤층	16.3	16.7	17.0	18.6	30.4
	중하층	33.7	33.7	33.8	34.5	32.8
	중상층	25.3	25.0	24.9	24.2	19.9
	상위층	24.7	24.5	24.3	22.7	16.9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소득계층은 가치분소득/조정된 가치분소득의 중위값을 기준으로 빈곤층=10~50, 중하층=51~100, 중상층=101~150, 상위층=150 이상으로 구분.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6년 자료(2015년 기준).

아래 표는 위의 표에 제시된 각 Model이 빈곤 진입 외에도 소득계층 간 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 주고 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주로 중하층의 가치분소득이 빈곤선 밑으로 떨어지는 비율이 높고, 원금 상환은 중상층과 상위층의 가치분소득을 빈곤선 밑으로 떨어뜨리는 정도로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가계부채 문제가 중하층의 빈곤 진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5-23〉 추정모델별 가계부채 상환에 따른 소득 지위의 변동

(단위: 전체의 %)

Model 1→Model 3		〈Model 3〉				
		빈곤층	중하층	중상층	상위층	전체
〈Model 1〉	빈곤층	16.3				16.3
	중하층	.7	33.0			33.7
	중상층		.7	24.5		25.3
	상위층			.4	24.3	24.7
	전 체	17.0	33.8	24.9	24.3	100.0
Model 1→Model 4		〈Model 4〉				
		빈곤층	중하층	중상층	상위층	전체
〈Model 1〉	빈곤층	16.3				16.3
	중하층	2.3	31.5			33.7
	중상층	.1	2.9	22.3		25.3
	상위층	.0	.1	1.9	22.7	24.7
	전 체	18.6	34.5	24.2	22.7	100.0
Model 1→Model 5		〈Model 5〉				
		빈곤층	중하층	중상층	상위층	전체
〈Model 1〉	빈곤층	16.3				16.3
	중하층	9.4	24.4			33.7
	중상층	3.0	7.0	15.3		25.3
	상위층	1.8	1.5	4.5	16.9	24.7
	전 체	30.4	32.8	19.9	16.9	100.0

주: 소득계층은 가처분소득/조정된 가처분소득의 중위값을 기준으로 빈곤층=10~50, 중하층=51~100, 중상층=101~150, 상위층=150 이상으로 구분.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6년 자료(2015년 기준).

3. 가계부채가 근로빈곤율에 미치는 영향

여기서는 위의 분석방법을 준용하여, 가계부채가 근로빈곤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근로빈곤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20~64세인 가구 중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로 규정하였다. 여기서 가구 단위 추정방식을 취하는 이유는 가계부채의 이자 및 원금 상환 부담이 가구의 빈곤 진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방식과 동일하게 근로연령가구의 생계 관련 부채에 일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 부담 금액을 추정하고 이를 가처분소득에서 제하여 <조정된 가처분소득>을 산출한 모델, 그리고 실제 이자 부담액과 원리금 상환 부담액을 가처분소득에서 제하여 <조정된 가처분소득>을 산출한 모델 등을 사용하였다.

규모 추정 결과를 보면,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추정한 근로빈곤가구 규모는 전체 가구의 13.2%이며, 근로빈곤층 규모는 전체 근로연령층의 11.0%로 나타나고 있다. 모델별로 보면, 소비성 부채에 일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 부담액을 가처분소득에서 제외한 <Model 2>와 <Model 3>의 근로빈곤율은 각각 11.4%와 11.7%로 나타난다. 이 두 모델에 따른 근로빈곤율 변화는 크지 않다. 반면 실제 이자 부담과 그것에 원리금 상환 부담액을 적용한 <Model 4>와 <Model 5>에 따른 근로빈곤율은 각각 13.5%와 26.4%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가계부채로 인해 빈곤율이 각각 2.5%포인트와 15.4%포인트 증가했음을 말해 준다. 전체 가계 부채를 상환하는 데 따른 지출 부담이 근로연령가구의 생활수준을 큰 폭으로 빈곤선 밑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것이다.

〈표 5-24〉 가계부채 관련 지출을 고려한 근로빈곤층 규모

(단위: %)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가구	빈곤층	13.2	13.6	13.9	15.5	27.6
	중하층	34.4	34.4	34.5	35.2	33.8
	중상층	26.0	25.8	25.7	25.0	20.6
	상위층	26.4	26.2	25.9	24.3	18.1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개인	빈곤층	11.0	11.4	11.7	13.5	26.4
	중하층	34.5	34.5	34.6	35.5	33.8
	중상층	27.3	27.0	26.9	26.1	21.3
	상위층	27.2	27.0	26.7	25.0	18.5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소득계층은 가처분소득/조정된 가처분소득의 중위값을 기준으로 빈곤층=10~50, 중하층=51~100, 중상층=101~150, 상위층=150 이상으로 구분

2) 조정된 가처분소득은 가처분소득에서 연간지급이자 및 상환액을 제외한 소득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6년 자료(2015년 기준)

가계부채가 소득계층 간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Model 3〉에 따르면, 중하층에서 근로빈곤층으로 진입하는 인구비율은 0.7%, 중상층에서 중하층으로 진입하는 인구비율은 0.8%로 나타나고 있다. 이어 〈Model 4〉에 따르면, 중하층에서 근로빈곤층으로 진입하는 인구비율은 2.4%, 중상층에서 중하층으로 진입하는 인구비율은 3.3%로 나타나고 있다. 끝으로 〈Model 5〉에 따르면, 중하층에서 근로빈곤층으로 진입하는 인구비율은 10.1%, 중상층에서 근로빈곤층으로 진입하는 인구비율은 3.3%, 상위층에서 근로빈곤층으로 진입하는 인구비율은 2.0%로 나타나며, 중상층에서 중하층으로 진입하는 인구비율 또한 7.7%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가계부채 문제가 근로연령층의 전 소득계층에서, 특히 중하층에서 빈곤 진입 위험을 높이고 있음을 말해 준다.

〈표 5-25〉 가계부채 관련 지출을 고려한 근로빈곤층 규모

(단위: 전체의 %)

Model 1→Model 3		〈Model 3〉				
		빈곤층	중하층	중상층	상위층	전체
〈Model 1〉	빈곤층	11.0				11.0
	중하층	0.7	33.8			34.5
	중상층		0.8	26.4		27.3
	상위층			0.5	26.7	27.2
	전체	11.7	34.6	26.9	26.7	100.0
Model 1→Model 4		〈Model 4〉				
		빈곤층	중하층	중상층	상위층	전체
〈Model 1〉	빈곤층	11.0				11.0
	중하층	2.4	32.1			34.5
	중상층	.1	3.3	23.9		27.3
	상위층	.0	.1	2.2	25.0	27.2
	전체	13.5	35.5	26.1	25.0	100.0
Model 1→Model 5		〈Model 5〉				
		빈곤층	중하층	중상층	상위층	전체
〈Model 1〉	빈곤층	11.0				11.0
	중하층	10.1	24.4			34.5
	중상층	3.3	7.7	16.3		27.3
	상위층	2.0	1.7	5.1	18.5	27.2
	전체	26.4	33.8	21.3	18.5	100.0

주: 소득계층은 가처분소득/조정된 가처분소득의 중위값을 기준으로 빈곤층=10~50, 중하층=51~100, 중상층=101~150, 상위층=150 이상으로 구분.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6년 자료(2015년 기준).

제7절 근로빈곤층 가계부채 결정 요인

근로빈곤층이 가계부채를 지게 되는 요인은 무엇인가. 앞서 기초분석을 통해 낮은 소득과 취약한 자산구조, 가구주 및 가구원의 불안정한 취업상태, 높은 전월세 거주비율 등이 그러한 요인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요인들은 가계부채 발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1. 분석방법에 대해

가계부채 결정 요인에 대한 분석은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프로빗 회귀분석, 그리고 토빗 회귀분석 등 다양한 분석방법을 선택하여 이루어져 왔다(김우영, 김현정, 2009; 백은영, 성영애, 2012; 장동호, 2012; 정운영, 정세은, 2013). 여기서는 부채 유무에 따른 결정 요인 분석과 관련해서는 프로빗 회귀분석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신용카드 대출과 관련한 요인에 대해서는 토빗 모형을 사용하였다.

프로빗 모형은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or)을 사용하게 되며, 이는 최우도함수를 극대화시키는 파라미터를 찾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래 분석에서는 가구주의 연령계층별, 가구의 소득계층별 가계부채 보유 확률을 추정하고 있다. 가계부채 보유 여부에 대한 잠재변수(Latent Variable) y_i^* 는 아래의 식으로 추정하게 된다.

$$y_i^* = \sum_{k=1}^k \beta_k x_{ik} + \epsilon_i, \quad \epsilon_i \sim N(0, \sigma^2) \quad \dots\dots\dots (1)$$

$$y_i = \begin{cases} 1 & \text{if } y_i^* > 0 \\ 0 & \text{if } y_i^* \leq 0 \end{cases} \quad \dots\dots\dots (2)$$

여기서 β_k 는 추정해야 할 모수값, ϵ_i 는 오차항, x_{ik} 는 설명변수이다. y_i^* 값은 관측되지 않고 그것이 0보다 큰지에 대해서만 관측된다. $y_i^* > 0$ 의 경우에는 y_i 가 1의 값을 갖게 된다. 그리고 오차항 ϵ_i 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한다.

2. 근로빈곤층 가계부채 결정 요인

여기서는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가계부채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으나, 그 분석 결과는 제4장의 결정 요인 분석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따라서 여기서는 근로연령층 가구주 가구에 국한하여 소득계층별로 가계부채 결정 요인을 살펴보았다. 아래 분석 결과는 근로연령층 가구의 소득계층별 가계부채 결정 요인 분석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근로빈곤층 가계부채 결정 요인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참고로 소득계층은 4개로 구분하였는데, 그것은 균등화된 가처분소득 중위값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근로빈곤층(Model 1)은 중위소득의 50% 이하, 중하층(Model 2)은 51~100%, 중상층(Model 3)은 101~150%, 상위층(Model 4)은 151% 이상이다.

가계부채 결정 요인 분석을 위해 가계부채 여부를 종속변수로 투입하였으며, 설명변수는 크게 세 범주로 구분하여 투입하였다. 1) 자산 규모, 2) 가구주 특성, 3) 가구 특성이 그것이다. 가구의 순자산분위(5분위)가 부채 유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가구주의 성과 연령, 교육 수준과 혼인상태 그리고 종사상 지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소비 단위를 이루는 가구원 수와 학생 수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가계부채 결정 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가구주 특성이 가계부채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모든 모형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은 중하층 근로연령가구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34세 이하 가구보다 나이가 많은 가구일수록 가계부채가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 수준 또한 중하층가구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학력이 높아질수록 가계부채 발생 확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가구주의 혼인상태는 거의 모든 유형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미혼가구에 비해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부채 발생 확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며, 근로빈곤층과 중하층가구는 미혼가구에 비해 이혼가구의 부채 발생 확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는 근로빈곤층의 경우, 상용직에 비해 임시일용직과 미취업자인 경우 가계부채 발생 확률이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가구주 일자리의 질과 가구주의 신용등급 그리고 서민금융시장 접근성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어 가구 특성이 가계부채 발생 확률이 미치는 영향을 보면, 소비 규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구원 수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유의하며,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부채 발생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학생 수가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밖에도 총자산의 지위(자산 5분위)가 미치는 영향을 보면, 근로빈곤층은 자산총액이 증가할수록 부채 발생 확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 소득계층에서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는데, 이는 자산 증가가 부동산담보대출 등으로 인한 부채 증가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5-26〉 근로연령가구의 소득계층별 가계부채 결정 요인 분석 결과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가구주 특성	성별	-0.0735 (0.0728)	-0.0019 (0.0600)	0.0004 (0.0803)	0.0261 (0.0900)	
	연령 (34세 이하)	35~54세	0.0916 (0.1251)	-0.1461** (0.0672)	0.1224 (0.0776)	0.1234 (0.0849)
		55~64세	-0.1279 (0.1395)	-0.3867*** (0.0834)	-0.0685 (0.0996)	0.0265 (0.0999)
	교육 수준 (중졸)	고졸	0.1003 (0.0762)	0.2916*** (0.0600)	0.0672 (0.0852)	0.1064 (0.1009)
		대졸 이상	0.1328 (0.0960)	0.1783*** (0.0683)	-0.0245 (0.0912)	0.0477 (0.1031)
	혼인 관계 (미혼)	유배우	0.4154*** (0.1177)	0.5893*** (0.0823)	0.2663*** (0.0964)	0.2347** (0.1046)
		사별	0.1746 (0.1346)	0.5959*** (0.1145)	0.2868* (0.1528)	0.2127 (0.1802)
		이혼	0.4188*** (0.1075)	0.5587*** (0.0863)	0.1895 (0.1178)	0.2445* (0.1391)
	종사 지위 (상용)	임시일용	-0.2071** (0.0925)	-0.0766 (0.0590)	-0.0936 (0.0889)	0.0128 (0.1391)
		자영업자	-0.0091 (0.0960)	0.1167** (0.0535)	0.0939 (0.0607)	0.1587*** (0.0601)
미취업 등		-0.3509*** (0.0892)	-0.2317*** (0.0785)	-0.2301** (0.1111)	-0.2775** (0.1248)	
가구 특성	가구원 수		0.1104** (0.0462)	0.0861*** (0.0297)	0.1322*** (0.0348)	0.0867** (0.0339)
	학생 수		0.0689 (0.0557)	-0.0039 (0.0372)	-0.0507 (0.0435)	-0.0294 (0.04240)
	총자산 5분위 (1분위)	2분위	0.3483*** (0.0769)	0.2705*** (0.0556)	0.1977** (0.0880)	-0.0417 (0.1460)
		3분위	0.7909*** (0.0944)	0.4925*** (0.0615)	0.4689*** (0.0894)	0.1138 (0.1419)
		4분위	0.7482*** (0.1181)	0.6385*** (0.0700)	0.5075*** (0.0928)	0.3222** (0.1405)
5분위		1.1978*** (0.1486)	1.0304*** (0.0984)	0.7032*** (0.1029)	0.5181*** (0.1412)	
상수항		-0.5423*** (0.1699)	-0.6154*** (0.1074)	-0.5100*** (0.1435)	-0.3472* (0.1868)	
관측치		2,164	4,665	3,337	3,294	
-2LL		492.06	592.57	256.47	176.65	
Pseudo R2		0.1726	0.1032	0.0642	0.0465	

주: 1) 분석 대상은 가구주 연령이 20~64세인 근로연령층으로 통제.

2) 〈Model 1〉은 근로빈곤가구, 〈Model 2〉는 중하층, 〈Model 3〉은 중상층, 〈Model 4〉는 상위층 근로연령가구.

3) *,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4) 괄호 안은 추정치의 표준오차.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6년 원자료(2015년 기준).

위의 분석 결과는 근로빈곤층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가계부채 유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동산담보대출로 추정되며, 그것은 자녀를 부양하는 비율이 높은 유배우나 이혼가구, 가구원 수, 그리고 상용직과 자영업자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말해 준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방법으로는 근로빈곤층이 생계비 조달을 위해 가계부채를 지게 되는 문제를 설명하지 못한다. 특히 한부모가구나 실질적 여성가구주 가구를 중심으로 이러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참고로 가계부채 결정 요인과 관련해서 한부모가구 여부 등의 변수를 투입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3. 근로빈곤층 소비형 가계부채 결정 요인

근로빈곤층의 가계부채 금액은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가계부채의 구성별로 보면, 일부 부채는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이 바로 <신용카드 관련 대출>이다. 근로연령가구 전체의 평균 금액은 66만원으로 나타나지만, 근로빈곤층의 평균 금액은 136만 원으로 두 배를 넘어서고 있다(<표 5-8> 참조). 그리고 이 부채 금액은 상위소득계층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차주의 신용도와 관련이 있는 신용대출은 근로빈곤층이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신용카드 관련 대출이 근로빈곤층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부채는 일상생활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지출하는 소액대출이라는 점에서 소비형 가계부채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러한 소비형 가계부채에 호소하게 되는 가구가 어떤 특징을 가진 가구인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저소득층의 신용카드 대출에 대한 의존도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소득분위 3분위 이하 가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최하위 1분위 계층에서 의존도가 높고,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의존도가 낮은 특성을 보이며, 상용직 근로자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상위층에서도 신용카드 대출이 일정 규모 이상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고소득층이라도 유동성 문제로 단기적으로 신용카드 대출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장동호, 2012, pp. 245-248).

여기서는 분석 대상을 근로빈곤층으로 통제하여 근로빈곤층 중 어떠한 집단이 신용카드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신용카드 대출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서 언급했던 프로빗 분석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은 전체 응답가구 중 신용카드 대출이 없는 가구의 비율이 매우 높아, 추정 결과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²³⁾ 실제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2016년 데이터에서 전체 1만 8273가구 중 신용카드 대출이 있는 가구는 932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여기서는 토빗 회귀분석(tobit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분석 과정에서 신용카드 대출이 없는 가구에 대한 최소 규모로의 좌측절단을 하였다. 신용카드 대출이 없는 가구를 모두 제외하는 경우, 또 다른 왜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 분석 결과는 근로연령가구 중 빈곤층과 중하층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것이다. 먼저 근로빈곤층의 신용카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자산이 많을수록 신용카드 대출액

23) 신용카드 채무와 같이 전체 가구 중 일부 가구만이 부채를 갖는 경우에는 토빗 회귀분석(tobit regression)이 적합할 수 있다. 토빗 모형은 종속변수의 관측치에 0이 많은 경우에 적용된다(장동호, 2012, p. 237).

이 작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가구주 특성을 보면, 성별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연령대를 보면, 34세 이하 집단에 비해 35~54세 집단, 즉 핵심근로연령층에서 신용카드 대출액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55세 이상 계층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교육 수준을 보면, 중졸 이하 학력자에 비해 고졸 및 대졸자의 신용카드 대출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와 신용카드 대출의 관계를 보면, 미취업자일수록 상용직 근로자에 비해 대출금액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종사상 지위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끝으로 가구 특성을 보면, 주거 점유 형태가 신용카드 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가에 비해 전세 및 월세 거주자일수록 신용카드 대출금액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가구 내 학생 수가 증가할수록 대출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근로빈곤가구의 경우, 30~50대 가구주 가구에서, 학생자녀 수가 많을수록, 자가보다는 전월세에 거주하는 가구일수록 신용카드 대출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이는 근로빈곤층의 경우, 자녀 양육과 주거 유지를 위한 지출에 신용카드 대출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중하층 근로연령가구주 가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몇 가지 특징적인 차이가 확인되고 있다. 먼저 가구주의 성별이 낮은 수준이지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남성에 비해 여성이, 미혼보다는 유배우가구일수록, 상용직보다는 자영업자일수록 신용카드 대출금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대적으로 가처분소득이 높은 중하층의 가구에서 자영업자의 운용자금 조달 등에 신용카드 대출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표 5-27〉 신용카드 대출 결정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Model 1〉		〈Model 2〉	
		Coef.	Std.Err.	Coef.	Std.Err.
총자산 5분위		-236.72**	110.48	-267.05***	55.80
가구주 특성	성별(남성)	183.29	249.82	-249.66*	147.16
	연령(34세 이하)				
	35~54세	1,329.71***	498.74	494.34***	180.96
	55~64세	891.54	547.52	239.27	217.48
	65세 이상	-504.73	582.36	-348.96	260.17
	교육(중졸 이하)				
	고졸	918.51***	255.49	321.40**	144.29
	대졸 이상	852.74***	317.25	237.03	165.89
	혼인(미혼)				
	유배우	721.91	446.11	477.74**	219.55
	사별	-212.11	495.82	188.41	288.04
	이혼	339.59	417.93	201.87	230.95
종사지위(상용)					
임시일용직	240.16	295.88	215.30	139.21	
자영업자	207.10	291.75	379.78***	121.82	
미취업자	-845.66***	303.68	130.71	177.70	
가구 특성	가구원 수	-2.36	159.62	189.63***	66.52
	점유형태(자가)				
	전세	633.40**	291.94	42.20	139.65
	월세	1,057.38***	299.54	496.89***	149.97
	기타	610.22	374.48	85.60	226.74
학생 수	355.27*	183.67	-75.56	82.37	
상수항	-6,151.41***	754.18	-3,571.40***	347.43	
sigma	2,917.00	147.16	1,822.47	79.02	
관측치	5,030		5,863		
Log Likelihood	-3082.4413		-4333.2004		
Pseudo R2	0.0583		0.0212		

주: 1) 분석 대상은 가구주 연령이 20~64세인 근로연령층으로 통제.

2) 〈Model 1〉은 근로빈곤층, 〈Model 2〉는 중하층 근로연령가구주 가구.

3) *,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6년 원자료(2015년 기준).

이상의 분석 결과는 근로빈곤층이나 중하층은 저소득 또는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생계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신용카드 대출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을 말해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신용카드 대출이 실직이나 사업 부진 등의 사건과 맞물리는 경우, 부채 상환 연체와 채무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이 근로빈곤층 가계부채 문제가 안고 있는 위험성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중하층은 이러한 위험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을 배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제8절 소결

근로빈곤층의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 위의 분석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아래와 같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 사회의 근로빈곤층은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그 규모가 거의 변화가 없으며, 미취업자를 포함하는 경우 오히려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더욱이 조세와 복지급여를 통한 소득재분배가 근로빈곤율을 낮추는 효과는 여전히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20년간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이 취업 촉진을 통한 노동소득의 증가라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조세와 복지급여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도 크지 않았던 것이다. 취업지원정책의 내실성 또는 소득재분배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둘째, 우리 사회에서 근로빈곤 문제를 단순히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로 단순화시키기 어렵다는 점이다. 전체 근로빈곤층 중 취업자 비중이 미취업자보다 크다. 그리고 조사 시점에서는 미취업자이나 취업 경험이

있는 집단을 포함하면, 그 비중은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근로빈곤층 취업자 중 저임금/저소득과 고용불안에 노출된 집단이 약 62%에 이른다. 이는 근로빈곤층의 주된 특성이 낮은 근로소득에 기인하고 있지만, 그것은 다시 일자리의 불안정성과 관련이 있음을 말해 준다. 취업지원정책이 아닌 가계부채대책이나 복지정책 차원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셋째, 근로빈곤층은 낮은 소득능력과 상대적으로 높은 부양 부담을 그 특징으로 한다. 가구 내 평균 취업자 수는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크게 적지만, 부양해야 할 가구원 수는 크게 적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근로연령층 가구원도 증가하지만, 이들이 취업자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는 이들 가구원이 건강상태나 학업 또는 돌봄 등의 가구 여건으로 인해 취업하기 힘든 상황임을 말해 준다. 학생 수를 보면, 빈곤층과 중산층이 부양하는 학생 수는 거의 차이가 없다.

넷째, 근로빈곤층 문제는 여성가구주 비율이 43.7%로 중하층 및 중상층의 20.2%나 12.0%에 비해 매우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빈곤의 여성화라는 주장과도 맥을 같이한다. 그리고 여성 근로빈곤층 중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한 집단이 바로 한부모 여성가장이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일과 돌봄의 이중고를 감당해야 하고, 노동시장에서는 성별 임금격차의 문제에 시달리고, 가정에서는 자녀 양육의 부담을 함께 안고 있는 집단이다. 이들은 근로빈곤층 중 부채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집단이라는 점을 말해 준다.

다섯째, 근로빈곤층의 부채 및 부채 상황 부담은 가처분소득 대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물론 가처분소득이 전체 가구 평균 수준으로 높아지면, 크게 낮아질 수 있다. 그만큼 가처분소득이 낮아 부채 부담이 크게 느껴진다는 점을 말해 준다. 하지만 그것은 근로빈곤가가 처한 상황에 눈높이를 맞춰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낮은 근로소득 그리

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의 부재가 이들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낮은 부채 상환 부담액에 대해서도 부담스럽게 느낄 수밖에 없음을 말해 준다.

여섯째, 근로빈곤층 중 일부는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부채를 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사업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통상적인 수업수익률로는 높은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이들이 창업을 시도하는 이유는 경력 단절이나 고령으로 노동시장에서 적절한 일자리를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부담을 무릅쓰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다.

일곱째, 근로빈곤층의 부채 용도 중 생계비를 제외하면 주거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임차가구에게는 전체 부채금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전세보증금 대출은 원리금 상환을 미루고 이자만을 갚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실제로 많은 근로빈곤층은 원리금 상환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이자를 감당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시점이 되면, 그것이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빈곤층이 월세에서 전세로 그리고 자가로 이동할 수 있는 개연성이 크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여덟째, 근로빈곤가구는 부채를 상환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로빈곤층의 24.2%가 원리금을 연체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2~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그 원인은 소득 감소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다른 소득계층의 연체 원인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시적 자금 유통의 문제나 납부기일을 착각하는 것과는 그 부담의 정도가 다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적 부담이 해당 근로빈곤가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아홉째, 근로빈곤가구는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지출을 절감하는 선택

을 하게 된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응답자가 식품외식비를 줄인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다른 소득계층과 다른 대응방식이다. 중상층과 상위층은 레저/여가/문화비를 절감하고 저축/투자를 줄인다고 응답한 반면, 근로빈곤층은 식생활비를 줄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부채 발생 및 증가의 원인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많은 근로빈곤층이 생계비를 조달하기 위해 부채를 지게 된다. 그리고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다시 생계비를 줄이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근로빈곤층의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의문점을 해결해 주지만, 동시에 앞으로 규명해야 할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이 질문은 서베이데이터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할 수 있는 사항도 있지만, 상당수는 질적 접근방법을 통해 이해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새로운 질문을 제기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근로빈곤층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 개별 가구가 처한 상황의 복잡성을 설명하기 용이하지 않다. 성장 배경과 가족관계, 직업 이력과 건강상태, 자녀와의 관계 등은 근로빈곤층의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한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러한 선택은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갖는다. 하지만 제한된 데이터를 통해 이러한 특성을 보여주기 쉽지 않은 것이다. 근로빈곤층의 다양한 특성, 그리고 과중채무자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고려를 통해 어떻게 이 문제에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계부채가 근로빈곤층의 일과 삶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보

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소득능력을 넘어서는 부채 증가는 해당 가구의 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것은 필수 재적 소비뿐 아니라, 가족관계와 자녀의 성장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단순한 지출 감소 등으로 문제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부모와 자녀의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 또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근로빈곤층 중 여성가구주 비율이 높다는 점에 대해서도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그것이 이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다 실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 개별 가구의 상이한 대처방식과 그 이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부채가 발생하면 생활비를 줄이는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소비 지출과 관련한 항목별 비중 조정이 합리적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가계부채가 가족 간의 관계에서 갈등을 극대화하거나 서로 힘을 모아 해법을 모색하는 상이한 대응방식이 나타나는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인터뷰 과정에서 종종 발견되는 상이한 대응방식은 근로빈곤층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넷째, 대출기관의 추심 행위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 대출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추심이나 정보 수집은 저신용자의 부채가 갖는 위험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가족관계와 자녀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그러한 충격이 근로빈곤층의 사회생활과 가족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있지 않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질적 분석을 통해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다.

다섯째, 그 밖에도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 규명해야 할 많은 문제가

존재한다. 그중 하나가 청년층의 학자금 대출 문제이다, 아직 통계 데이터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이 문제는 근로빈곤층 가계부채에서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하나는 근로빈곤층의 신용카드 대출 등에 대한 선호의 이유이다. 이는 정량적 접근방식을 통해 확인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신용카드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왜 그것을 선택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제 6 장

근로빈곤층 가계부채의 발생 원인과 파급효과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연구방법과 조사의 개요

제3절 가계부채 발생 원인과 그에 대한 인식

제4절 가계부채 및 과중채무의 파급효과

제5절 과중채무와 채무불이행으로의 진입과 탈출

제6절 복지정책과 비영리지원기관의 역할

제7절 소결

6

근로빈곤층 가계부채의 발생 << 원인과 파급효과

제1절 들어가며

이 장은 앞서 제4장과 제5장에서 설명했던 저소득층 또는 근로빈곤층의 가계부채 문제가 남겨 준 질문에 답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그리고 그 질문은 근로빈곤층이 부채를 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들의 가계부채는 어떠한 맥락 속에서 생겨나게 되었는가. 만일 그러한 선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면, 어떠한 이유인가. 그리고 가계부채는 근로빈곤층 자신과 가구 구성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들은 가계부채에서 헤어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것은 어떠한 결과를 낳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물론 이 연구를 통해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문제가 갖는 다양한 특성을 드러내고, 그것이 경제사회구조 및 정부정책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장은 근로빈곤층 과중채무자 10명과의 인터뷰 기록을 주제에 따라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특정한 이론에 따른 절차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각각의 면접자가 자유롭게 설명한 표현들을 몇 가지 주제에 따라 그대로 옮겨 놓고자 하였다. 일부 구어체가 갖는 표현상의 문제를 수정하는 정도의 작업을 거쳤지만, 구술의 형식과 그것이 주는 의미를 살리고자 노력하였다. 질적 접근방법이 가진 강점은 개별(個別)이라는 개념이 함축되어 있다. 그 속에 특수한 것과 보편적인 것이 잘 스며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은 구어체가 갖는 매우 큰 장점이기도 하다.

제2절 연구방법과 조사의 개요

1. 연구방법에 대해

근로빈곤층 가계부채 문제는 각종 데이터에 기반을 둔 정량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문제에 대한 전체적 윤곽을 잡고, 자신이 규명하기 힘든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공백은 질적 접근방법을 통해 일정 부분 채워질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연구는 양적 접근방법과 질적 접근방법을 결합시킨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²⁴⁾

그렇다면 양적 접근방법과 질적 접근방법을 결합시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방법론을 통합하여 새로운 방법론을 만드는 것이다. 둘째는 하나의 접근방법에 따라 발견된 문제를 다른 접근방법을 통해 확인하고, 논박하고, 풍부하게 만들고, 설명하는 것이다. 셋째는 서로 다른 접근방법으로 발견한 문제를 하나의 정책 제안으로 묶어내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방법 중 첫 번째 방법은 거의 시도되지 않는 것이다. 반면에 뒤의 두 가지 방법은 빈곤 연구에서 매우 활용되는 것이다(Carvalho & White, 1997).

빈곤 연구에서 양적 접근방법과 질적 접근방법의 결합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것은 빈곤층의 경우 양적 분석을 위해 충분한 조사 표본을 확보하기 힘들고, 설사 데이터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담고 있는 정보를 통해 빈곤층이 처한 상황의 복잡성을 드러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더욱이 빈곤층이 다른 소득계층과 상이한 선

24) 사실 이러한 접맥은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사회학자들이 시도해 왔던 것이다. 가장 잘 알려진 사례 중 하나가 부르디외(Pierre Bourdieu)였다. 그는 실업과 빈곤 그리고 청년층의 계층이동 등 다양한 문제와 관련해서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결합시키는 방법을 활용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는 학문적으로 그가 이끄는 저널(Actes)을 통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

택을 하는 경우, 그것이 갖는 의미를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질적 연구방법이 갖는 강점이 양적 접근방법에도 큰 도움이 된다. 질적 접근방법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유형화하고 개념화하는 데 큰 강점이 있다. 이는 질적 연구방법이 개별 사례를 통해 다양한 문제를 드러내면, 양적 접근방법이 이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방식으로 연계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이처럼 양적 접근방법과 질적 접근방법의 결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빈곤 연구와 관련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양적 접근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의 결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거나, 양적 접근방법의 편향성을 해소하기 위해 질적 접근방법과의 접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빈곤층이 삶의 매 순간에 하는 결정이 나름의 합리성을 갖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조준용, 2012, pp. 285-312; 최종혁, 김수완, 2012, pp. 165-200).

이처럼 양적 접근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의 결합을 강조하는 이유는 질적 접근방법이 갖는 한계와 무관하지 않다. 특히 근거이론을 필두로 제시되는 일련의 질적 접근방법은 다양한 비판을 받아 왔다. 김인숙은 국내에서 질적 접근방법이 직면하고 있는 일련의 문제점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그 요지는 국내에서 근거이론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 실패했고, 사회복지 지식의 지형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사회세계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역동적 모습을 연구 질문으로 형상화하지 못하고, 과정이 어떤지만을 묻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의 근거이론은 미시세계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제도나 정책, 노동시장과 이념 등의 거시적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김인숙, 2012, pp. 114-115).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질적 접근방법을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가계부채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양적 접근방법을 통해 문제에 접근해 왔는데, 이를 근로빈곤층 가계부채 문제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다소 비판적으로 해석한다면, 근로빈곤층 가계부채 문제, 더 나아가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 신용공급자의 관점을 대변하고 국가의 관리책임을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은 채무자가 지는 것이 당연할지 모른다. 하지만 신용공급기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없는가. 개인파산을 지연시켜 긴 시간 가계부채를 상환하는 고통을 지게 하는 것이 서민금융시장의 건강성을 위해 바람직한 선택인가. 정부 또한 가계부채의 증가와 과중채무의 발생에 책임이 없는가.

그렇다면 질적 접근방법은 어떤 점에서 양적 접근방법이 제기한 질문에 답하는 데 강점을 갖고 있는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근로빈곤층의 소득과 재산, 저축과 부채, 소득과 지출의 관계를 제한된 정보 또는 수치만으로 해석하려 한다면, 부채가 발생하는 원인을 온전히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연구자는 종종 근로빈곤가구가 처한 상황의 특수성을 간과하게 된다. 예를 들면, 가계부채를 지고, 그것이 과중채무로 발전하고, 개인파산에 이르는 각 단계마다의 선택이 매우 비합리적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질적 접근방법을 택하는 경우, 인터뷰 과정에서 사건의 시간적 배열을 통해 하나의 스토리를 형성하고, 노동과 빈곤, 이혼과 부채, 과중한 채무와 탈출 노력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Dearden et al., 2010, pp. 9-11).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근로빈곤층의 부채 선택은 경제사회적 구조에 의해 부과된 것이거나, 본인의 의지에 따라 감수한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주어진 조건 자체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일 수도 있음을 의미한

다. 이러한 분석 사례는 양육미혼모의 자립 경험을 다룬 국내의 한 논문에서 찾을 수 있다. 양육미혼모가 처한 이혼과 부채의 문제, 양육 부담으로 일하기 힘든 상황, 이들에 대한 주거비 지원의 필요성 등은 근로빈곤층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도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김지혜, 조성희, 2016, pp. 149-180).

가계부채 문제, 특히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문제는 발생 원인이나 증가 경로와 속도, 그것이 본인이나 가족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의 측면에서 매우 복잡한 특성을 갖는다. 그리고 질적 접근방법은 기존 연구들이 천착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는 데 강점을 갖는다. 예를 들면, 근로빈곤층이 과도한 부채를 〈감수하게〉 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많은 근로빈곤층은 자신이 속한 세계와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속에서 나름대로의 합리적 선택을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터뷰 과정에서 자주 출현한 표현은 “다시 과거의 시점으로 돌아가더라도 과도한 부채를 감수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질적 접근방법은 근로빈곤층이 왜 부채를 지게 되었으며, 어떠한 경로로 과중한 채무로 발전하였고, 그로 인해 근로빈곤층과 가족이 치르고 있는 대가는 어떤 것인지 보다 생생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동과 복지 그리고 금융이 어떻게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근로빈곤층의 부채 증가를 묵인하거나, 이자를 낮춰 부채를 계속 유지하게 하는 방식이 바람직한 것인지 되돌아보게 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근로빈곤층의 과중채무 문제에 대해 사회보장제도는 어떻게 지원책을 강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2. 조사 대상과 질문 문항

앞서 언급했던 연구 질문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는 인터뷰 문항을 어떻게 구조화하고, 인터뷰 과정에서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도출할 것인지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조사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결정이 필요하다.

인터뷰를 위한 질문 문항은 근로빈곤층 부채 발생 - 과중채무 - 채무불이행 - 취업 제약 등으로 이어지는 제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다. 하지만 논의의 흐름을 고려하여 아래 순서에 따라 인터뷰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만 인터뷰 과정에서 그 답변을 재확인하였다. 예를 들면, 부채를 지게 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나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지게 된 사건, 가계의 재무상태에 대한 관리 태도, 채무상환을 위한 노력 등이 이 연구에서 주목했던 사안들이다. 그중에서도 부채를 지게 된 사유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조사 대상에게 그 사유를 재확인하였다. 이는 가계부채가 본인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배우자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각 응답자의 삶과 부채 문제를 시간적으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스토리가 완성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삶의 어느 시점에 어떠한 사건이 빈곤과 부채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 비교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성별, 연령, 교육 수준, 건강상태
- 가족관계(혼인상태)
- 부양 관련 특성: 질환자 및 장애인 존재 여부

- 가계부채의 발생 원인
- 부동산 마련을 위한 부채(대출)
- 생계비 조달을 위한 부채
- 의료비 조달을 위한 부채
- 교육비 조달을 위한 부채
- 타 가구원 부채 상황을 위한 부채 ==> 부채의 대물림
- 기타(세부 기술 후 재범주화)

- 가계부채의 증가 및 채무불이행의 원인
 - 소득 감소에 따른 상황 곤란
 - 실직/저임금/고용 단절로 인한 소득 감소
 - 사업 부진/폐업으로 인한 소득 감소
 - 신규부채 발생
 - 시장금리 및 정부정책(LTV, DTI) 변화

- 채무불이행 이후의 이행 경로
 - 개인회생
 - 파산신청
 - 기타

- 과중채무, 상환 연체, 채무불이행, 개인회생, 파산의 파급효과
 - 취업에 미치는 영향

○ 소비에 미치는 영향

- 식생활비 지출
- 주거비 지출
- 교육비 지출
- 문화여가 지출

○ 피부양자에게 미치는 영향

- 부모 등에게 미치는 영향
- 자녀 등에게 미치는 영향

○ 개인 및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 개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자살충동 등)

3. 조사 대상의 선정과 그 특징

조사 대상은 현재 과도한 가계부채를 지고 있거나, 채무불이행을 경험하였거나, 신용 회복 및 개인파산 등을 경험한 집단으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특징을 가진 집단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표본 추출 방법을 활용하기 힘들다. 따라서 근로빈곤층 과중채무자를 조사 대상으로 확보하기 위해 기존 마이크로-크레디트기관이 확보한 면접 대상을 표집 틀로 활용하였다. 참고로 면접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적용했던 기준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가구 특성: 일반근로연령가구, 한부모가구, 2) 가계부채의 특성: 금융권 및 제2금융권, 그리고 사채, 3) 현재의 신용상태: 과도한 가계부채, 채무불이행, 신용 회복 및 개인파산 등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조사 대상은 총 10명이었으며, 남성 3명과 여성 7명으로 구성되었다. 그것은 근로빈곤층 중 과중채무자의 인구학적 분포에 상응하는 것이다. 다만, 표집 틀 자체가 갖는 한계로 인해 연령분포에서 다양한 집단을 포함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표집 틀 내에서 청년층과 고령층을 포함한 다양한 인구집단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참고로 이 조사는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

아래 표는 피면접자의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표의 좌측 No.는 뒤에 인용된 응답자 또는 피면접자의 번호와 일치하도록 나열한 것이다. 응답자의 연령은 40대와 50대가 각각 4명이며, 20대 1명, 60대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표본 구성은 근로빈곤층 과중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라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20~30대 청년층에 대한 조사는 응답 거부 비율이 높아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성별로는 여성 7명과 남성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해당 가구 중 일반가구(부부가구)가 2케이스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확하게는 여성 5명, 남성 5명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들은 다양한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주로 서비스업종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구 여건을 살펴보면, 여성가장(여성가장+자녀)이 4명, 일반가구(부부+자녀)가 3명, 단독가구가 2명, 미혼가구가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로빈곤층 중 한부모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표의 가구 특성과 관련해서 해당 가구가 이혼을 경험한 가구인지, 이혼하였으나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인지 표기하였다. 이는 해당 가구의 부채 문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녀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1~3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2가구는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남성 응답자라는 특징을 보이

고 있다. 응답자의 건강상태와 관련해서는 현재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중 병명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질환이라고 표기하였으며, 병명을 특정할 수 없지만 상당 수준의 질환을 경험하였고 그것이 현재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미약이라고 표현하였다. 나머지 별다른 언급이 없는 경우는 건강한 상태 또는 인터뷰 과정에서도 질환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경우를 지칭한다. 끝으로 기타 항목에는 해당 가구가 현재 처하고 있는 부채 문제가 발생한 시점을 나타낸다. 10년+라고 표기한 경우에는 현재의 부채 문제가 시작된 단초가 10년도 넘는 시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표 6-1〉 인터뷰 응답자의 개인 및 가구 특성의 요약

No.	이름	성별	연령	교육	업종	가구 특성	자녀	건강	기타
1	오○○3	여	49세	고졸	미용실	여성가장*	2남		10년+
2	김○○1	남	50세	고졸	건강식품	단독가구*	1녀(a)	장애	10년+
3	손○○2	여	43세	대졸	피아노학원	일반가구	1남1녀	미약	10년+
4	안○○2	여	49세	고졸	음료판매	여성가장*	1남	질환	3년
5	이○○1	여	48세	고졸	미용실	여성가장*	1녀		10년+
6	김○○2	남	58세	대졸	편의점	단독가구**	1남(a)	미약	5년
7	이○○2	여	50세	대졸	음식점	여성가장*	2녀		10년+
8	손○○3	여	28세	대졸	식품판매	청년가장	미혼		10년+
9	김○○3	남	54세	고졸	분식점	일반가구	2남1녀	실명	10년+
10	최○○2	여	63세	고졸	분식점	일반가구	2녀(b)	질환	4년

주: 1) 가구특성 중 (*)는 이혼상태의 가구, (**)는 이혼하였으나 관계가 유지되는 가구.
 2) 자녀항목 중 (a)는 자녀와 비동거하나 왕래가 있는 가구, (b)는 결혼자녀와 동거하는 가구.
 3) 기타 항목은 현재 경험하고 있는 부채의 원인이 되었던 초기부채가 발생한 시점을 지칭.
 4) 이름에 붙여진 1~3은 소득 지위를 지칭. 1=빈곤, 2=저소득, 3=빈곤 탈출.

조사 인터뷰는 2017년 9월 4일(월)부터 9월 19일(화)까지 진행되었으며, 각 인터뷰는 국내의 대표적 마이크로-크레디트기관인 사회연대은행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면접은 사전에 인터뷰에 동의한 사람

을 대상으로 응답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진행하였다. 조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피면접자의 서면동의를 받았으며, 대화 내용에 대한 녹음 및 녹취에 대해서도 인터뷰에 앞서 동의를 구한 뒤 실시하였다. 그리고 녹음된 인터뷰 내용은 사후에 녹취록으로 작성하였다. 모든 인터뷰는 연구진이 직접 진행하였다.

4. 인터뷰 결과 해석을 위한 몇 가지 연구 질문

인터뷰 과정에서 응답자들이 진술한 내용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다. 첫째, 근로빈곤층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데이터 분석 결과(제4장과 제5장) 제기된 의문점에 답하는 형식을 취하고자 하였다. 둘째, 인터뷰 과정에서 파악된 가계부채 및 과중채무의 발생 원인을 그 복잡한 인과관계 또는 상관관계 측면에서 파악하기 용이한 형식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개별 가구 단위로 설명하는 방식은 피하고자 하였다. 응답자가 처한 상황이 우리 사회에서 가계부채의 발생 및 증가 원인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셋째, 이 조사의 가장 주된 목적인 가계부채, 특히 과중채무가 근로빈곤층 개인과 가족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것은 앞서 분석하였던 기본적인 생계 유지를 위한 가계부채 발생과 과중채무로의 악화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 넷째,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 지원 및 취업 지원을 담당하는 사회정책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특히 근로빈곤층 과중채무자들은 이 정책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위에 언급한 네 가지 문제에 초점을 두어 인터뷰 결과에 대한 해석을 크게 4개의 절로 구성하였다. 1) 가계부채 발생 원인, 2) 가계부채의 파급

효과, 3) 가계부채로부터의 탈출, 4) 사회정책의 역할이 그것이다. 각 절에서 제기할 주요한 연구 질문은 아래와 같다.

가. 가계부채 발생 원인에 대한 연구 질문

- 1) 가계부채 원인자가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외국에서는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배우자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것은 배우자의 부채로 인해 다른 배우자가 큰 고통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없는가.
- 2) 가계부채가 가족 해체에 미치는 영향: 근로빈곤층은 가계부채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증가하는 경우, 가족을 부양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왜 어떤 가구는 가족을 부양하고, 다른 가구는 가족 해체를 경험하게 되는가.

나. 가계부채의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질문

- 1) 가계부채의 무게감과 그 표출 양태: 근로빈곤층의 가계부채나 부채 상환액은 금액 측면에서는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작다. 그렇다면 부채금액에 대해 이들이 느끼는 무게감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 2) 가계부채가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근로빈곤층의 건강상태는 소득 감소와 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역으로 부채는 근로빈곤층 건강상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3) 부채 절감을 위한 생계비 절약의 파급효과: 근로빈곤층이 부채 상환을 위해 생계비를 줄인다. 그것은 어떠한 양태로 나타나고, 당사자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것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4) 주거 지출을 위한 가계부채가 발생하는 원인: 근로빈곤층에게 주거비란 가구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왜 어떤 가구는 전세를 선택하고, 어떤 가구는 월세를 선택하는가.
- 5) 가계부채가 자녀교육 및 양육에 미치는 영향: 근로빈곤층의 부채 문제는 자녀 양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미 교육비 지출이 낮은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교육비 감축은 어떠한 충격으로 나타나는가.
- 6) 가계부채가 가구원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근로빈곤층은 가구원 중 근로연령층 미취업자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가계부채가 과중한 상황에서 왜 이들은 취업하지 않는가. 왜 어떤 가구는 해당 가구원이 취업하고, 다른 가구는 그렇지 않은가.

다. 가계부채로부터의 탈출 노력

- 1) 가족/사회자본이 과중채무자에게 미치는 영향: 기댈 언덕이 있다는 것은 근로빈곤층 채무자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그 유무에 따라 어떠한 대응방식이 나타나는가. 가족의 경제력과 사회자본의 문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 2) 한부모 여성가장의 부채 문제와 대응방식의 특수성: 근로빈곤층 중 여성가구주, 특히 한부모가구의 가계부채 문제는 다른 근로빈곤가구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이들의 채무금액이나 연체율은 높지 않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3) 자영창업자의 가계부채 문제: 근로빈곤층 중 자영창업을 시도하는 집단은 어떠한 집단이며, 이들은 이 사업을 통해 부채를 상환하고 있는가.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라.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정책의 기여

- 1)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빈곤층 지원정책의 역할: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부조제도 및 사회서비스지원제도는 근로빈곤층 과중채무자 지원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 2) 근로빈곤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사업 등의 역할: 근로빈곤층 취업 지원을 담당하는 자활사업은 과중채무자의 자립과 관련해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
- 3) 근로빈곤층 과중채무자를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기여: 근로빈곤층 과중채무자에게 무담보 신용대출을 담당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이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제3절 가계부채 발생 원인과 그에 대한 인식

가계부채는 어떠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가. 그리고 가계부채, 특히 과중채무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책임은 무엇인가. 가계부채 문제로 고통받는 빈곤층은 부채 발생에 얼마나 많은 책임이 있는가. 많은 가구가 과중채무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당사자의 실직과 사업실패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상대 배우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계부채는 배우자의 무능력/낭비 등의 원인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가계부채 상환을 위한 절약과 박탈의 책임을 지게 된다. 그렇다면 이들은 이러한 책임을 져야 마땅한가.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가.

가계부채가 발생하고 증가하는 과정은 1) 물려받은 가난/건강/사업 실

패/배우자 → 2) 소득 감소/소득 단절 → 3) 가계부채 발생/증가(과중채무 1단계) → 4) 이혼/별거/가족관계 악화 → 5) 가계부채의 추가적 증가(과중채무 2단계)의 순으로 열거할 수 있다. 물론 가구마다 가계부채가 발생하는 원인과 경로는 상이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응답자 중 상당수가 성장 과정에서 빈곤을 경험했으며, 그것이 가난한 배우자와의 결혼, 결혼생활 과정에서의 지속된 궁핍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둘째, 실직 및 사업 실패가 과중채무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사업 실패 중 일부는 건강 악화와 관련이 있었다는 점이다.

1. 가계부채의 발생과 악화

위에 언급한 응답자 중 <응답자 1>과 <응답자 5>는 성장 과정에서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배우자 또한 경제적인 능력이 취약했던 경우이다. 그리고 이것이 지속적인 가난과 부채의 증가 그리고 이혼으로 이어진 경우이다.

(응답자 5) (남편은) 술을 좋아하고, 형제 중 중간이에요. 5형제 중에 딱 중간 3번째예요. 그러다 보니 책임감 같은 게 조금 덜했어요. 조금 나약했죠. 네. 책임감이 조금 부족한 사람이었고, 나는 말이다 보니 모든 걸 내가 좌지우지하고 경제적으로 생각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그러는데, 애기 아빠는 그게 안 되더라구요.

응답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는 특성을 반영하듯, 많은 응답자는 사업 실패로 과중채무에 처하게 되었다. 그중에는 과중채무에 이르기 이전에 상당한 규모로 사업이 확장되었던 사례도 존재하고 있었다. 하지만 치

열한 시장경쟁 속에서 그 성장세가 오래 지속되지 않는 불안정성이 이들을 괴롭히고 있으며, 운영자금이 부족한 경우 그것이 고금리의 부채와 사채를 사용하는 단계까지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응답자 1>은 자영업자들이 과중채무에 처하게 되는 상황의 절박성을 보여 주고 있다.

(응답자 1) 우리 자영업자는 저기 뭐야 좀 이자율이 싼 거 그걸 쓰기 힘들어요. 너무 형편이 힘들고 어려우면 이렇게 막 저기하거든요. 어디에 할 데도 없어요. 정말 최악의 순간이 오면 사채도 쓴단 말이에요. 그럼 원치 않아도 근데 그런 경우는 빛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왜 과중채무로 발전하는가와 관련해서 그것이 생활비 조달과 맞물려 있다는 점 또한 인터뷰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이다. 사업소득의 감소는 생활비 부담을 어렵게 하고, 필수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신용카드 대출(현금서비스)을 하게 되며, 이를 상환할 수 있는 소득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 <카드 돌려막기>에 이르고, 이것이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응답자 중 다수는 <카드 돌려막기>를 시작한 지 1~2년 이내에 상환하기 힘든 과중채무 상태에 빠졌다고 응답하고 있다. <응답자 5>와 <응답자 9>의 사례는 사업 부진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과중채무 상태로 이어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응답자 6) 저는 빛 얼마 안 저요. 원래요. 왜냐면 저는 돈 있으면 갚아요. 먼저 갚고 사업을 하는 거죠. 그때 당시 빛을 1200인가 졌어

요. 원금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돌려막기로 카드 값이 늘어나서 그렇지.

(응답자 9) 호프집은 2002년도인가 2003년도인가 했을 거예요. 빚이 수습되지 않으니, 그때 카드 돌려막기 시작한 거죠. 생활비도 그렇고, 보험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애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카드도 내 거 쓰다가 애기 엄마 것도 쓰다가 나중엔 처제 것까지 다 썼죠. 그렇게 신용불량자가 되었죠.

(응답자 10) 매상이 줄기 시작하니까 이제 돈을 빌려대고, 그 다음에 은행 가서 마이너스 통장을 쓰게 되고 했지요. 처음에 200만 원 쓰고 이러다가 점점 늘어나면서 2년 만에 신용불량이 되었지요.

자영업자 중 상당수는 사업 부진에 따라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급전을 사용하게 되며, 그중 상당수는 사채나 일수 등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응답자 2>는 사업 실패 이후 재기하는 과정에서 만성적으로 자금 부족에 시달려 왔으며, 일수를 사용하면서 과중채무에 이르게 된 사례이다. 이는 해당 사업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을 초과하는 채무를 안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사업 실패와 함께 과중한 채무를 지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응답자 2) 꽃집 3년 했죠 재활병원 옆에서. 그때도 사실은 점포만 했지 이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수에 손을 대요.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꽃집에서는 돈을 벌었다기보다는 일수 갚느라고....

이처럼 사업 부진이 시작된 시점에 해당 사업을 정리하지 못하고, 추가적인 채무를 지게 되는 이유는 사업 부진의 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입게 될 피해에 대한 우려와도 관련이 있다. 많은 자영업자는 사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사업장 인테리어 및 권리금 등에 투입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우려로 인해 쉽게 사업을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동일 사업에서의 성공했던 경험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2. 가계부채의 책임과 부담

가계부채는 부부관계와 가족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부채에 대한 원인 제공자가 느끼는 미안함과 좌절감, 그리고 상대 배우자의 불만은 부부관계의 불화와 가족 해체로 이어지는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아래 <응답자 10>의 사례는 부채를 지고 청산하는 과정에서 집을 잃고, 이로 인해 이혼의 위기를 맞이하는 과정, 그리고 다시 결합하여 재기하기까지의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응답자 10) (빚으로 집을 잃은 뒤) 이혼장을 써가지고 다녔어요. 남편이 이제 원망을 막 하더라고요. 이혼을 하게 될까 봐 제가 잠깐 피했어요. 그래서 별거를 한 1년 반 정도 하게 되었고요. 그때 5년 정도 제가 보험회사를 다녔고, 저희 아저씨도 택시를 잠깐 했어요. 제가 거기서 조금 벌고, 우리 아저씨가 택시 해서 조금 번 걸로 이제 다시 가게를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계부채 문제에서 아직 본격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지 않

고 있는 사항 중 하나가 가계부채 원인 제공자의 책임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가계부채 대부분이 특정 가구원에 의해 발생하며, 그것은 가계의 자산을 담보로 하는 경우 주거 상실과 가족 해체로 이어져 원인 제공자뿐 아니라 다른 가구 구성원의 취업과 삶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물론 가구의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설정하는 등의 방법이 있지만, 실제 과중채무에 이른 여성가장 중 대다수는 주택을 공동명의로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주저하거나 다른 배우자의 거부로 인해 그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응답자 7>의 사례는 이러한 문제점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로 인한 이혼과 그에 따른 법적 처리 절차와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응답자 7) 남편이 성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빚이 막 날아오는 걸 보면서 많이 갈등을 했어요.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중에 아이들이 결혼하면 문제(이혼)가 클 것 같아 조금 참고 있자. 그런데 (남편이) 집을 담보로 다 대출을 받은 상태더라고요. 32평 아파트가 있었는데, (대출한도) 90% 정도 최대로 그것도 서울 시내은행이 아니라 지방 저축은행을 통해서. 그런 게(독촉장) 날아오는 걸 보며 이제 안 되겠구나 싶어 이혼 그런 거 하는 데 문의를 해 봤어요. 근데 경제적인 것은 이혼 사유가 안 된다더라고요.

또 다른 사례는 학자금 대출이 결혼 이후의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미국의 경우, 학자금 대출이 청년층의 취업과 자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 또한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청년층이 사회에 첫발을 내미는 순간부터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문제가 그 하나라면, 이후 청년층이 가족을 이루고 생활하

는 과정에 미치는 충격이 다른 하나이다. <응답자 3>은 학자금 대출이 어떻게 가계부채의 증가와 과중채무에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 주고 있다.

(응답자 3) (남편이) 공부하면서 대학원 이렇게 하면서 학자금 대출을 하잖아요. 근데 대학 할 때부터 학자금 대출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거 갚고, 생활비며 아이들 그리고 아빠의 역할을 하느라 정신이 없죠. 그런데 저는 내일 당장 문을 닫을 그런 상황이에요.

3. 가계부채와 이혼

우리 사회에서 근로빈곤층 과중채무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이것은 부채의 여성화 또는 빈곤의 여성화와 무관하지 않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가. 하나는 노동시장에서 심각한 수준의 성별 임금격차이고, 다른 하나는 결혼한 여성의 재취업을 가로막는 유무형의 장애물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여성빈곤으로 발전하는 보다 분명한 원인은 이혼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많은 여성은 이혼 과정을 거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실직자가 된다. 그리고 이 여성들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재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떠안게 된다. 많은 여성가장이 주거 마련과 생계비 조달을 위해 가계부채를 지게 되는 이유를 말해 준다. 이처럼 과중채무 상태의 여성 근로빈곤층은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인해 빈곤과 부채의 악순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혼 과정에 이르기 전 상당 기간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아래 <응답자 1>과 <응답자 4>는 이러한 과정을 잘 보여 주는 사례이다.

(응답자 1) (남편이) 돈을 안 주었어요 거의.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내가 거의 생활하고. 몇 년을 거의 좀 힘든 생활을 하고. 그 상황에서 합의만 해 줘라. 그럼 내가 애들 데리고 서울에 가서 키우겠다 해가지고 합의해 주었어요. 저는 이제 애들 출세시키려면 무조건 서울로 가야 된다 싶어서 올라왔어요.

(응답자 4) 신랑이 젊었을 때부터 도박을 해가지고. 그런데다 이삿집센터 같은 일을 했는데, 여름하고 겨울은 놓고, 봄, 가을에 조금 일하는데 그런 식으로 탕진을 하는 거예요. (...) 여자가 별면 남자가 안 번다는 말도 있잖아요. 당장 애도 크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신랑이 그게 점점 심해져가지고 (...) 그런 생활을 14년 동안 했거든요. 집을 얻으려면 보증금이 있어야 하잖아요. 어느 날 주인아주머니에게 이야기하니까 남편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집 얻는다고. 그래서 시댁에서 14년 동안 살았으니까.

위의 사례 중 <응답자 4>의 태도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녀는 <여자가 별면, 남자가 안 번다>는 표현을 통해 배우자의 경제적 책임감 부재 문제를 내재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가난과 부채의 원인 제공자가 상대 배우자임에도, 그 책임의 일부를 스스로 떠안는 방식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자신이 해결하기 힘든 문제와 관련해서 갈등을 우회하는 방식, 또는 갈등을 봉합하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위에 언급한 사례들이 가난과 가계부채가 이혼의 사유가 된 경우라면, 반대로 이혼으로 인해 가계부채를 안게 된 경우도 존재한다. 이 경우에는 이혼에 이르게 된 원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중 하나는 가족관계에서

남성 배우자의 지나치게 엄격한 통제와 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래 <응답자 7>은 고학력 여성으로 결혼 전 충분한 생활력이 있었으나, 결혼 후 남편의 요구로 직장을 퇴직한 이후 장시간 박봉과 통제 속에서 생활하다 이혼한 사례이다. 하지만 이혼 시점에서 주거 마련을 위해 기본적인 재산조차 없어 부채를 지게 된 경우이다.

(응답자 7)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막 매도 맞고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 너무 엄하게 해서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 했어요. 이제 여자 셋이서 정말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몇 명과의 인터뷰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하다. 하지만 이혼한 여성가장 중 대부분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현재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녀 양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자녀의 성장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경우가 많았으며, 이것이 자녀 양육에 따른 생활비 증가와 취업 제약으로 인한 소득 감소와 맞물려 부채 증가를 유발하고 있었다. 따라서 자녀 양육을 미루고 자녀를 자신의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에게 맡겨 두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참고로 <응답자 4>는 이혼 직후 고시원에 거주하며 저축하여 전세자금을 확보한 뒤 자녀를 데려와 양육한 경우였다. 최근 사업이 잘 되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있지만, 오랜 기간 가난과 부채 문제에 시달려 왔다. 이는 여성 한부모가구의 주거 안정이 이들 가구의 과중채무와 과다노동, 가족 해체와 건강 악화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이라는 점을 말해 준다.

제4절 가계부채 및 과중채무의 파급효과

가계부채가 발생하고 과중채무로 발전하게 되는 경우, 그것은 근로빈곤층 당사자와 가족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여기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건강과 가족생활, 특히 생계와 주거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인터뷰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근로빈곤층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강력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강 악화와 심리적 스트레스, 소비생활의 제약과 주거 불안정 등 다양한 생활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로부터의 추심은 이들의 정신건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근로빈곤층의 건강과 가계부채의 관계는 일방적인 인과관계로 이해하기 힘들다. 건강이 가계부채를 유발한 원인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가계부채가 근로빈곤층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것은 가계부채를 상환하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무리한 노동을 감수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사례는 거의 모든 응답자에게서 나타났다. 근로빈곤층 과중채무자가 부채 상환을 위해, 그리고 자녀 부양을 위해 자신의 건강을 해치면서도 무리한 노동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일부 응답자는 이미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과중한 시간을 일하는 것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였다.

이어 가계부채는 근로빈곤층의 신체건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가계부채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장기적이고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연체 경험자 대부분은 심각한 수준의 추심행위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미안함, 자존감 상실에 따른 우울과 무력

감, 자신의 감정을 덮기 위한 과장, 부채 상환 의지의 포기 등의 형태로 표현되고 있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밝은 표정으로 인터뷰를 하던 중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어느 순간에 터져 나오는 울음이었다.

끝으로 인터뷰에 참여한 응답자는 모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정부로부터 생계비 지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 또한 갖고 있었다. 그리고 자립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생계비와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며 충분한 사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많은 가구는 절약을 넘어 심각한 수준의 박탈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다른 지원보다 주거비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표출되어 있었다. 이는 모두 전세나 월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그것이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신용카드 대출 등의 부담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으로 여겨졌다.

1. 건강에 미치는 영향

아래 세 응답자의 삶은 우리 사회에서 가계부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응답자 4>가 자녀 부양을 위해 취약한 건강 상태에서도 노동을 감수하는 경우였다면, <응답자 5>는 부채 상환을 위한 절박감에 시달리는 경우이며, <응답자 9>는 가족을 부양하며 부채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감수했던 힘겨운 노동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응답자 4) 외식업에 근무하던 중에 다리에 3번이나 하지정맥류 수술을 한 거예요. 하루 12시간에서 14시간씩 서 있으니까 이제 힘줄

이 다 터져가지고 피부가 썩고 그랬거든요. (...) 그래도 백화점하고 식당일을 번갈아 가며 했어요. 근데 백화점도 다 서서 일하는 거잖아요. 저 혼자 먹고 살면 조금 받아도 되지만, 아들이 있으니까. 한창 돈 쓸 나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더라고요. (...) 3~4년 동안 아무리 돈을 벌려고 해도 돈이 안 벌려지고 몸까지 상하고, 몸과 마음이 완전히.

(응답자 5) 돈이 막 급하니까. 빨리 돈 모아야 되니까. 돈 안 쓰고 모아야 된다. (...) 밤 11시에 밥을 먹으면서 맥주를 한 잔 하니 딱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때 딱 코피가 나.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쪽에서 나. 쌍코피가 나는 거야. 그래서 싱크대에 머리를 대고 있는데, 눈 떠 보니까 싱크대 밑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때 되게 서러웠어요.

(응답자 9) 리어커를 한 달 동안을 지하주차장에 끌고 다녔어요. 끌고 들어오고. 또 나중에는 인자 올 때 힘드니까 애들 학교 갔다 오면 밀고 올라오고 나가고 한 달 동안 했어요. 도저히 안 돼서 오토바이 하나 샀죠. 달고 끌고 올라오고 그러고 나서 무릎이 망가지는 거예요.

2.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채무자는 자신의 부채에 대한 도덕적 책무감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보통이다. 아래 <응답자 10>의 반응은 지인에게 큰 부채를 지게 된 사람이 느끼는 미안함과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부채를 청산한 이후의 심리적 상태를 보여 주고 있다.

(응답자 10) (채권자가) 집을 가져가니까 자더라도 벌떡 일어나는 게 없어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다가 막 벌떡벌떡 일어나요. 7억을 빚을 지니까 자다가 어떻게 하지 막 이려고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 집을 주고 나니까 집은 없어졌지만 마음은 되게 편해졌어요.

〈응답자 6〉은 부당한 추심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어떻게 사회생활에서의 우울과 불안감을 야기하는지 잘 보여 주고 있다. 실제로 이 응답자는 대부업체 등으로부터의 추심으로 많은 충격을 받은 경우이며, 그것이 가족 해체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응답자 6) 제가 지금도요 핸드폰 받기가 싫을 때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메시지를 보내는 게. 남들이 항상 저한테 통화할 때도 메시지를 많이 보내요. 남들은 전화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요 저는요. 전화하면요 왠지 막... 전화벨 울리면 불안한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당했어요 제가.

다음 사례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복잡한 심정과 무기력감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응답자 3〉은 장기간 낮은 소득과 부채 문제로 고통을 받아 왔던 경우이다. 특히 다중채무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파산을 한 사례이며, 추심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였다. 응답자가 쏟아낸 말들은 채권자와 건물주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자책감 등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언어의 저변에는 경제적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회생이나 자립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는 자존감의 약화로 표출되고 있었다.

(응답자 3) 걱정이 되는 건, 9월 24일에 신용불량이 풀리는데 신용 회복의 돈은 수년 남았어요. 수년 남았는데, 신용불량이 풀리면 제가 혹시라도 카드를 낼까 봐. 급할 때. 제가 2년을 카드를 안 쓴 것 같거든요. 나가는 거 없으니까. 그게 걱정이예요. 또 쓸까 봐 그거죠. 월세가 모자라면 또 현금서비스를 받을까 봐.

3. 주거에 미치는 영향

앞서 근로빈곤층 가계부채에 대한 실태 분석에서 확인한 것처럼, 임차 가구일수록 부채를 경험할 확률이 높고, 이들은 신용카드 대출 등을 이용할 확률 또한 높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소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매월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월세 등을 감당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응답자는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저축을 해서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과도한 노동을 감수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과도한 채무가 근로빈곤층의 자산 손실과 주거 상실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것이 다시 과도한 채무를 유발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주거란 누구에게나 자신과 가족이 식구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 따라서 가구주는 주거 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지난 십수 년간 전월세가 소득 증가보다 빠른 속도로 인상되었다. 이는 근로빈곤층이 자신의 소득으로 주거 안정을 꾀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아래 세 가지 사례는 어떤 근로빈곤층에게 주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잘 보여 준다. <응답자 1>은 배우자의 과도한 채무로 이혼한 이후 초기 정착 과정에서 주거를 마련하기 힘든 현실을 이혼여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을 통해 보여 주고 있다. 이어지는 <응답자 3>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빈곤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보여 준다.

(응답자 1) 아 그건 진짜 서러움이 있었어요. 서울로 이사하기 15일을 남겨놓고 남편이 나랑 이혼한 걸 이유로 (집주인이 임대)계약을 파기하더라구요. 너무 슬펐어요. 저는 오갈 데도 없고, 지하방에 들어갈 돈이 간신히 있었어요. 애를 방 한 칸이라도 지하방에 들어가서라도 키울 테니까 했는데. 그런데 딱 15일 남겨놓고 지하방 계약을 취소를 해버린 거예요.

(응답자 3) 아이들은 학원 보내 달라는 말은 절대 안 해요. 근데도 딸은 끊임없이 말하죠. 나도 내 방을 갖고 싶다고. 그러면 다이소에서 천 원이나 이천 원짜리 시트지를 사다가 “침대 여기가 네 방이야” 그러면서 핑크색 막을 붙여준 게 제일 미안하긴 해요. 겨울에 추운데 아이는 장판 하나 주고 난로라도 좀 줄 걸. 사무실인데, 천장이랑 벽이랑 바닥이랑 다 시멘트인데 애들을 거기다 놓고.

위의 두 사례가 여성가구주 가구의 주거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면, 아래 <응답자 2>의 사례는 남성 단독가구가 경험하는 주거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 준다. 이 응답자는 장애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을 하고 있지만, 운영자금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신용회복위나 대부업체 그리고 사회연대은행 등으로부터 다중채무를 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자립을 위해 최소한의 생활비라도 아끼려는 눈물겨운 노력이 함께 하고 있었다. 장애가 있음에도 택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주거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응답자 2) 택시 하기 전에 8월 9월 중순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게만 보러 다닐 때, 공원에서 자면서 막 그렇게 했죠, 근데 찬바람 부니까 추워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택시를 한 거죠. 거기서 자려고...

4. 소비생활에 미치는 영향

앞서 제5장 근로빈곤층 부채 실태에 대한 분석에서 확인한 것처럼, 근로빈곤층은 자녀를 양육한 가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기본적인 의식주를 감당하지 못하는 빈곤층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종종 생계비를 조달하기 위해 신용카드 대출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부채를 통해 생계비를 조달하는 상황에서 인간다운 기초생활을 영위하기는 매우 힘들다. 더욱이 성장기 자녀가 있는 근로빈곤가구는 이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응답자 3>과 <응답자 5>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식주 문제로 인한 근로빈곤층의 지출 부담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응답자 3) 먹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자라는 시기이다 보니까. 우선 지출은 월세가 되게 많구요. 월세와 전기세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먹는 것은 안 먹일 수가 없으니까 라면이라도 사 먹여야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응답자 3) 어제도 슈퍼에 가서 계란을 샀는데요. 요즘에 계란파동 인가요? (...) 옛날부터 우리 애기들 계란을 꼭 먹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유를 마음껏 먹이고 싶었어요. 요즘엔 우유도 사고 계란도 사는데 그럴 때 죄송하죠. 그런 걸 먹지 말고 빨리 모아서 돈(월세)을 드려야 하는데 실은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응답자 5) 모아 놓은 게 없죠. 빠듯하니까. 그냥 보험 든 게 다예요. 그리고 저축 같은 것은 꿈도 못 꾸죠. 애한테 뭐 다 쓰다가 보니까. 애들이 또 뭐 친구들이 뭐 사면 사야 되고, 신발 사고 옷 사고, 또 이런 게 비싸니까 요즘에는. 얼마나 비싸요. 그럼 또 나는 안 쓰더라도 애들은 또 써야 되니까.

5.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근로빈곤층은 다양한 측면에서 자녀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과중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과도한 노동으로 자녀를 방임하고 있다는 점, 한부모가구는 자신의 이혼 결정이 자녀의 성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물론 상대적으로 자신이 자녀를 잘 키우려고 최선을 다해 왔다는 자부심을 보이는 응답자도 있었지만, 다수는 방임과 미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응답자 9〉는 자신의 과중채무가 가족, 특히 자녀에게 미친 충격을 암시하고 있다. 참고로 이 응답자는 과중채무로 개인회생 과정에 있으며, 자립을 위한 과정에서 자녀들의 희생이 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업 실패 이후 행상을 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이 사춘기에 그것을 돕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한 것에 대한 고마움을 동시에 느끼는 형태였다. 그중에서도 아래 표현은 자녀가 차압 과정을 경험한 것에 대한 미안함을 말해 주고 있다.

(응답자 9) 애들이 4학년 1학년 때니까. 막내는 그때 몰랐었고 큰애는 느끼는 거죠. (차압) 찍으러 들어오고 보건보호법 뭐할 때 앞에서 뭐야 묻는 거예요. 다 이야기했어요. 나중에 크고 나서는 애기

엄마나 큰애한테 제일 미안한 게 그게 부모로서 숨길 건 좀 숨겼어야 되는데 오픈을 많이 했어요. 아들한테는.

근로빈곤층 과중채무가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느끼는 거의 공통적인 감정은 방임 또는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의 형태로 표현되고 있었다. 이는 근로빈곤층의 경우, 주거비와 생계비를 감당하기 위해 교육비 지출을 극도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앞서 제5장에서 분석 과정을 통해서도 그 개연성을 알 수 있었던 점이다. 이는 근로빈곤층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사업의 확대 필요성을 말해 주고 있다. 아래 <응답자 1>은 오랜 기간의 노력으로 사업에서 안정을 찾고 있지만, 생계를 위해 자녀들의 교육을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감정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응답자 1) (아이가) 1학년 때 아빠랑 헤어지기 전까지 공부 되게 잘했었는데. 이제 내가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의 방치된 거죠. 생활이 너무나 힘들니까. 그때는 제가 보조로 일하면서 배우는 입장이기도 하고 선생이 아니었어요. 10시 넘어서 들어오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신경을 쓸 수가 없었어요.

(응답자 5) 이혼한 엄마가 아빠 없이 혼자 키우는 거 자체가 말은 안 해도 사춘기 때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약간은 위축이 되거든요. 애가 어릴 때 미용실을 하면서 손님 머리 하느라 혼자 자게 했죠. 애는 엄마랑 같이 끌어안고 자고 싶은데, 이걸 못 해 준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그때 나보다 손님 애를 더 예뻐했지?” 상처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응답자 10) 저희가 가게를 하면서 잘못된 게 아이를 자주 방목했어요. 제가 가게를 30년이나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방목해서 아이들한테 미안하고. 학원 못 보내고 이런 거.

이혼한 남성이 자녀에게 갖는 감정과 자녀가 부모에게 갖는 감정 또한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었다. <응답자 2>는 사고로 장애를 입은 후, 사업이 파산하고 이혼의 과정을 경험한 남성 단독가구이다. 그는 매우 성실하게 일하고 있지만, 장애 발생과 사업 실패 그리고 이혼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자신의 무남독녀에 대한 미안함을 아래와 같이 표현하고 있었다. 이 표현을 통해 간접적으로 그 딸이 아빠에 대해 느끼는 복합적인 감정 또한 엿볼 수 있었다. 아빠와의 생활 경험에 축적된 부정적인 이미지와 현재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것이다.

(응답자 2) 우리 아이는 (가족과 함께한 것이) 초등학교 때 추억밖에 없잖아요. 이제 어른이 돼 아빠 걱정 안 해도 되겠다는 등, 맘 나도 되겠다는 등. 생각은 컸는데 비주얼은 하나도 안 컸어요. 안타깝더라고요. “아빠 닳지 말아야지” 이런 소리 하는 걸 들으니.

근로빈곤층의 가계부채 그리고 이혼에 이르는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방임이나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남성 배우자의 과도한 부채만이 이혼의 사유는 아니었으며, 매우 복잡적이라는 점을 말해 준다. <응답자 7>의 사례는 이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결혼 전 남편보다 좋은 직장에서 높은 임금을 받던 아내의 퇴직을 종용하고, 이후 결혼 생활에서 가족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으며, 자녀들에게 가혹하게 폭력을 행사했던 경우이다.

(응답자 7) 지금도 (아빠를) 안 만나고 싶어 해요. 사실 그 애들을 매를 때려도 피멍이 들게 때렸어요. 정말 가정폭력 옛날에 신고가 있었다면 우린 했었어야 될 정도였어요.

제5절 과중채무와 채무불이행으로의 진입과 탈출

한국의 근로빈곤층 중 실업자 비중은 높지 않다. 이는 전체 근로빈곤층에서 실직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유럽과는 크게 다른 것이다. 그것은 한국의 근로빈곤층이 취업을 기피하는 이른바 도덕적 해이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말해 준다. 하지만 그것은 이들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취약성에 기인하기도 한다. 현재 우리 사회의 근로빈곤층이 스스로 일해서 살아갈 방도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현실에서 과중채무를 가진 근로빈곤층은 이중 삼중의 고통으로 시달리고 있다. 그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긴 시간 일을 하고 있었으며, 그것이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라도 마다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으며, 부채를 상환하고 남은 소득으로 생계를 꾸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은 고사하고 자녀들을 제대로 부양하지 못하는 죄책감을 안고 있었다.

인터뷰 내내 이들이 이토록 힘들게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고통받는 것이 개인파산을 통해 그 부담을 더는 것보다 나은 선택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그것은 때로 자신이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부채로 인한 것이었으며, 때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부채였다. 설사 부채 발생의 책임이 해당 근로빈곤층에게 있다 하더라도, 이토록 오랜 기간 고통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었다. 응답자 중 일부는 힘겨운

과정을 거쳐 과중채무와 채무불이행 상태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더 많은 응답자는 긴 시간 일을 하고 있음에도 과중채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며, 여전히 빈곤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것은 분명 부채 상환을 위해 절약하는 차원을 넘어 가족 모두 결핍상태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는 근로빈곤층 과중채무자들이 부채 탈출과 자립을 위해 일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언급하고, 자립에 이르는 과정에서 중요한 지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1. 자립을 위한 노력과 패자부활의 어려움

근로빈곤층 과중채무자가 빚을 지고도 무책임하게 상환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비난은 적절하지 않다. 근로빈곤층이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창업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모든 근로빈곤층이 그러한 노력을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욕구에 주목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근로빈곤층 과중채무자는 좋은 일자리로 진입하기 힘들다. 특히 채무불이행이라는 이력은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상대적으로 힘든 직장에서 또는 영세한 사업장에서 가족의 생계를 꾸리기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 <응답자 4>와 <응답자 5>는 여성 과중채무자들이 어떻게 일해 왔으며 지금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잘 보여 주고 있다.

(응답자 4) 애기 학원비 벌려고 온 친구들은 회사 나가서 그냥 시간만 때운다고 자기 입으로도 그래요. 근데 저는 제 자식을 먹여 살려

야 하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굉장히 열심히 하기 때문에 사실 윗사람한테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응답자 5) 저는 맨날 가게에 나와요. 하루도 안 쉬고. 쉬는 날이 없거든요. 2년 반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일했는데 뭐. 물론 구정하고 추석 때만 하루씩 쉬고,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는 또 있기 싫은 거예요. 원룸이다 보니까. 딱딱 막히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려고 해도 직장에 취업이 힘들고, 창업을 하려 해도 여건이 따르지 못하는 경우 또한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건강상태가 취약한 집단이 많이 분포한 근로빈곤층의 특징이기도 하다. 아래 <응답자 2>의 사례는 지체장애로 많은 난관이 있음에도 자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취업하기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 등 많은 준비를 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받더라도 장애가 있거나 나이가 많은 근로빈곤층은 취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응답자 2) 이제 2006년에 2급 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동네친구가 2번 3번 찾아오더라고요. 교육 한번 받아보라 하더라고요. 답답하고 어딘가 나가고 싶고, 조금 움직이기 시작할 때니까. 현대해상에서 3개월 교육 받았죠. 지하철 타고 2시간을 가서. 2006년도에 서울직업학교 멀티미디어 과정에서 1년 배우고, 다음에 웹 개발과정 1년 더 배우고, 그 다음에 마케팅, 판매 준비를 했죠. 그러다 2008년 2009년에 장애인고용공단에서 또 배우고. 그 와중에 틈틈이 영업용 법인 택시를 했어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실패했거나 채무불이행 이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처럼 패자부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물론 법적으로 각종 채무불이행 이력은 일정 기간²⁵⁾이 지나면 소멸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각종 금융기관 등은 이러한 기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정작 채무불이행이 진행되고 있거나, 개인 파산 기간 중에는 신용 이력을 조회하는 일자리에선 사실상 취업이 불가능하다. 근로빈곤층 과중채무자가 저임금 일자리에서 장시간의 노동을 감수하거나 무리한 창업을 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 준다. <응답자 2>는 취업이 힘들고, 창업을 해야 하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힘들어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들이 무턱대고 자금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성실히 일하고 채무 상환을 위한 노력을 했던 사람이 느끼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응답자 2) 아직은 이자를 밀린다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고. 지금은 한 번도 안 밀리고 있어요. 아직은. 사실 뭐랄까. 사금융이 활성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구요. (...) 우리나라가 지금은 정책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망해도 뭔가 하려고 (노력하다) 망한 사람은 그거를 봐줘야 되는데. 해외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한 번 사장되면 재기하기 너무 힘들어요.

(응답자 6) 제가 옛날에 사업 실패를 했기 때문에 신용불량 경력이었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더라고 자금을 얻는 게. 시도를 해 봤죠.

25) 신용의 종류와 연체기간에 따라 채무불이행 이력의 보존기간이 1~5년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단기연체와 소액연체는 이력보존기간이 1년이다.

2. 창업과 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성공과 실패

현재 근로빈곤층이 모두 힘들었던 시기만을 지나온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이 가난했던 시절을 경험하였지만, 이들은 또 한때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다양한 이유로 직장을 떠나거나 사업에 실패하였다. 그중에서도 자영업 창업을 통해 성공하고 실패했던 경험, 그리고 현재 재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일반 자영업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는 부족한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큰 규모의 부채를 안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렇다면 자영업자 중 사업이 일정 궤도에 올라 부채를 상환하고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응답자 대부분은 과중채무의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큰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소액창업은 투자 대비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노동집약적 창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가급적 부채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안전한 투자를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사업자금의 대부분을 부채로 조달하는 경우, 사업의 수익률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대략 절반가량의 응답자는 사업이 부진하거나 매출이 안정적이지 못했다. 반면에 나머지 절반은 상대적으로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응답자 10〉은 외식업계에서 오랜 기간 창업을 해 왔던 사례이며, 그에 따른 시행착오가 많았다. 하지만 인터뷰 과정을 통해 오랜 창업 경험으로 인한 자신감과 성공과 실패 원인에 대한 자기평가를 들을 수 있었다. 일차적으로 창업의 성패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많은 경험을 가진 창업자의 경우에도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소자본으로 창업에 성공했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은 창업자 본인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응답자 10) 저희가 ○○해물탕에서 성공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주방장이 잘 들어온 거예요. 6개월 일을 하더니 사장님은 제과점을 하던 분이니까 솜씨도 있고 하니 제가 다 (요리 방법을) 알려 드릴 테니 직접 하세요 이려는 거예요. 6개월 만에 우리 아저씨가 배워 가지고 정말 맛있게 잘 했어요, 고마워서 그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응답자 중 가장 젊은 여성 청년창업자인 <응답자 8>의 사례는 치밀한 시장조사와 저리의 자금 조달을 통해 창업에 성공한 경우이다. 이 응답자는 대학에서 일본어 학과를 졸업하였지만, 그 시점에 부모의 파산과 채무 불이행으로 가계가 어려워지자 생계를 위해 창업을 한 경우이다. 창업 초기에는 동료들이 정장을 입고 출근하고 주말에 쉬는 것을 부러워했지만, 인터뷰 시점에는 월 소득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 사례이다. 그에 따라 3호점을 준비 중이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젊은 창업자가 인터넷이나 SNS 등의 정보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창업 아이템을 찾았고, 마찬가지로 저리의 신용대출이 가능한 자금조달기관으로부터 창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창업 아이템은 청년들이 기피할 법한 거리음식이었으며, 전통시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다.

(응답자 8) 인터넷에서 창업 아이템을 찾았어요, 자금이 덜 들고 단기간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러다 거리음식 파배기 프랜차이즈를 찾았어요. 새로 출범한 사업체이고 내야 하는 돈이 거

의 없었어요. 찾아가 보고 맛을 보고 젊은 층의 취향에 맞겠다고 생각했어요. 기존 파배기와 달리 건강에 좋은 새로운 재료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비영리 창업지원기관을 찾아 창업자금을 신청해서 되었어요. 재래시장에서 개업을 했는데 젊은 층이 많이 찾아요.

하지만 성공적인 창업도 영구적인 것이 아니며 다양한 원인에 의해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미용업처럼 같은 지역에서 장기간 운영이 가능한 업종도 있지만, 외식업처럼 주기적으로 사업 아이템을 바꾸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그리고 건물주에 의해 사업장을 옮겨야 하는 상황도 자주 발견되었다. 이처럼 사업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사업장 이전이 창업 실패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창업 실패의 일차적 요인은 사업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의 부족, 자신의 경험과 성공했던 사업 아이템에 대한 과신 그리고 사업 확장을 위한 무리한 차입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응답자 10) 거기 방이동은 완전 헛골목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거기서 잡어회를 하니까, 무슨 회인지 잘 몰라요. 도곡동에는 경상도 사람이 많이 살아서 잡어회를 잘 알아서 인기가 있었는데, (방이동은) 아니에요. 거기는 정말 아니어서 거기서 정말 쫓딱 망하고.

(응답자 10) 지금 생각에는, 욕심을 과하게 내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이래가지고 저희가 진짜 쫓딱 망해서 이제 신용불량이 되고.

물론 무리한 차입에 따른 운용자금 부족 문제는 사업 부진과 맞물려 단기간에 사업 실패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응답자 10>은 무리

한 사업 확장으로 부채 상환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이 큰 대규모 사업을 시작하였고, 이것이 사업 부진과 맞물려 창업 실패로 이어지고 하였다.

(응답자 10) 전에 ○○○할 때까지는 집도 있고 자금여유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을 개업할 때는 이게 없잖아요. 집도 없고 하나까 계속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데. 이러다 보니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평수가 크니까 아줌마들도 있어야 되고, 월급은 줘야 되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쫓딱 망해서.

그 밖에도 소자본 창업이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점 또한 도사리고 있었다. 이른바 골목상권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람들이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프랜차이즈의 횡포를 막는 대책에 대해 뜨겁게 토로하기도 했다. <응답자 6>은 이러한 문제점을 가장 적극적으로 개선한 경우였다. 이 응답자는 서울의 한 주변지역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 자신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점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하지만 이 응답자는 최저임금을 높여야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점을 강변하였다. 이는 골목상권의 프랜차이즈 가맹업주들의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었다.

(응답자 6)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저도 내년부터는 진짜 혼자 하려고 생각해요. (...) 그리고 대기업 본사한테 자꾸 요구를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어느 정도 영업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단가를 조정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제 돈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 인건비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름 같은 경우는 매출이

700 되고, 봄 가을 같은 경우 600 정도 되는데, 임대료, 전기세, 공과금 다 들어가야 돼요. (...) 본사는 물건으로 장난을 치고요. 마진 적게 남겨 주면 우리가 수익이 적어지는 거거든요. 거기다 정부도 장난치죠. 담뱃값이나 교통카드 서비스요금은 우리가 하나도 못 받아요. 교통카드는 돈 10원도 안 남아요. (...) 이번에도 정부에서 자꾸 무슨 체인점 닭 월가 어찌고 따지는데요. 그 왜 거기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대기업들 왜 놔두는지 모르겠어요.

3. 가계부채와 사회적 관계망의 동요

근로빈곤층이 과중채무와 채무불이행 그리고 취업 제약 등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상황은 이들이 그만큼 사회적 자본이 취약하다는 점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일단 과중채무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이 이들의 사회적 관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응답자 중 상당수는 자신의 가난과 부채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큰 문제를 초래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아래 <응답자 2>와 <응답자 3> 사례는 과중채무와 가난이 이들의 사회적 관계와 지지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 주고 있다.

(응답자 2) 제 자격지심인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동문동창 만나고 해야 되는데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죽었다고 소문나더라고요. 농사 쫓딱 망하고 그래서...

(응답자 3) 친구들 결혼식이나 돌잔치 못 갈 때. 저는 돈이 없어서 못 가겠더라고요. 제 아이 돌잔치에 와 줬는데 친구한테 못 갈 때.

그럴 때 혼자 앉아서 울었던 것 같아요. (...) 월세 낼 돈이 없잖아요. 그때 친구한테 한번 어렵게 저기 혹시 나 얼마 정도 빌려줄 수 있어? 하니까 친구가 미안해 이러는 순간, A형이거든요. 안 되겠다. 이걸 안 돼. 그때 말없이 돈을 빌려주는 카드 펄펄 써버렸어요.

그리고 <응답자 9>의 사례는 실제 돈을 융통하는 과정도 그리 순탄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상시적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융통할 수 있는 지인도 제한적이고, 돈을 융통하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인에게 돈을 빌려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다.

(응답자 9) (지인에게) 한 300, 400을 꾸잖아요. 그러면 며칠 지나 다시 그걸 메꾸려면 다시 또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인에게) 한 3일만 빌려줘 그렇게 하게 돼요. 뒤돌아보면 미안하니까 그냥 밥이라도 먹자 그렇게 하죠. 돈을 며칠 쓰고 이자 주기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며칠만 돈 좀 빌려달라고 전화가 오기도 해요. 그땐 보통 카드가 빚이 한 삼백, 사백, 오백 때 되는데.

4. 가계부채 극복과 가족의 지지

인터뷰 과정에서 응답자들은 과중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가족의 지지가 자신의 재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답하였다. 여기서 가족은 근로빈곤층 가구주의 부모와 형제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다. 때로 그것은 자녀를 의미하기도 했다. 이러한 관계는 대부분의 응답자에게서 발견할 수 있었는데, 특히 한부모 여성가장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론 각 근로빈곤층의 가족관계는 다양하다. 성장과정에서 부모나 형제가 없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으며, 이미 관계가 멀어진 경우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흥미로운 사례는 〈응답자 1〉의 경우였다. 성장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결혼생활도 많은 굴곡이 있었지만, 가족의 도움으로 자립에 이른 경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응답자의 형제와 그 배우자의 정신적 물질적 지원은 자녀의 성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메우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로 이 응답자 가구는 두 아들 중 둘째 아들이 취업하여 응답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실상 빈곤에서 탈출한 경우이다. 아래 설명은 가족이 이 응답자의 자립을 지원하고, 이 과정을 거쳐 성장한 자녀가 다시 이 응답자를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응답자 1) 난 서울에서 공부하면서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오빠의 경우에는 고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서울에서 검정고시를 치고 공무원시험을 봐서 공무원이 되고 대학도 나왔어요. 제가 오빠 도시락 싸주면서 “오빠 공부해!” 그랬어요. 오빠랑 나랑 정말 성공한 케이스죠. (...) 새언니가 엄청 마음이 좋아요. 그 언니가 우리 작은 애 공부를 다 시켰어요. 둘 다 공무원이니까 일찍 끝나잖아요.

(응답자 1) 군대 가기 전에도 큰애는 자립심이 강하고 책임감이 강했어요. 강원도에서 군 생활하면서 280만 원을 자기 30만 원만 빼고 다 부친 거예요. 생활비에 얼마나 보탬이 되었겠어요. 그래서 애가 용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가 항상 돈을 이렇게 넣어 줬어요. 그리고 또 면회 오라 하면 무조건 면회 가요.

하지만 모든 근로빈곤층이 이러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응답자에게는 가족적 지지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응답자 2>는 이혼과 채무불이행 상황에서 형제들과의 관계 또한 소원해진 경우이다.

(응답자 2) 형제들도 한두 번은 도와줘도 제가 어려워지니까. 나를 불편해하는구나. 혹시 손 벌릴까 봐. 제가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런 느낌을 내가 받고는 형제들하고도 연락 안 해요.

응답자가 가족적 지지망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해당 가족에게도 큰 부담이 되는 상황 또한 존재하고 있었다. 그것은 주로 근로연령대 응답자와 그 부모와의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응답자 3>의 사례는 이 점에서 전형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 피아노학원을 운영하며 실질적인 여성가장으로 생활하는 경우이나, 사업장이 구석진 곳에 위치하고 시설이 낡아 학생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응답자의 모친은 다양한 형태로 이 가구의 생활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모친의 건강이 악화된 것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다른 형제를 보기 미안한 마음이 종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응답자 3) 세탁기를 놓을 곳이 없으니까 친정어머니한테 1주일 치 (빨래) 이만큼을 드려요. 엄마가 빨래를 하시면 보따리를 싸서 주세요. 가방에 안 넣고. 보따리에 막 싸가지고 빨래를 이만큼씩 이렇게 주시거든요. 근데 엄마가 허리에 디스크가 온 거예요. 우리 빨래의 양은 너무 많고 1주일 치니까.

과중채무와 생활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이혼을 경험했지만, 가족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 또한 발견할 수 있었다. <응답자 6>이 그러한 경우이다. 이 응답자는 이혼 이후에도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왕래를 했던 경우이며, 최근 경제적 상황이 개선되면서 그러한 접촉이 증가하고 있었다. 아들이 그 매개적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아들과 부인과의 재결합이 경제적으로 더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응답자 6) 집사람하고 이혼은 도장은 찍었지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들이 있으니까. 여기(편의점) 아들이 한 번씩 오면 큰 박스에 담아 보내요. 엄마 것 네 것 이렇게 적어가지고. 왜냐하면 저 땀에 고생했잖아요. 옛날에 (제가) 무능력하니까 내보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만약 집사람이 저를 도와주면 제가 인건비가 덜 나가니까 훨씬 나올 것 같고. 그걸 생각해서 (박스를) 보내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가족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아들도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5. 여성 한부모가구의 가계부채 극복: 자녀와의 협력적 관계

인터뷰를 위해 만났던 응답자 중 4명의 여성가장이 있었으며, 이들 중 두 명은 경제적으로 자립의 단계에 이른 것으로, 다른 2명은 여전히 소득이 빈곤선 주위를 맴돌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들은 모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자녀의 연령이 20대 이상이었다. 이는 과중채무를 안고 있는 여성가장들의 경제적 자립과 부채 상황에 자녀들이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가 중요한 검토사항임을 말해 준다. 여성가장들은 상대적으로 부채금액이 크지 않았으며, 이를 상환하는 데 따른 부담 또한 상대

적으로 크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여성가장 다수가 자신의 소득능력을 과대평가하지 않으며, 창업 또한 투자금이 적게 소요되는 선택을 하고, 자녀를 부양하는 데 필요한 필수재 등의 구매에 국한하여 부채를 감수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흥미로운 것은 두 가구는 자녀들이 대학에 재학 중이었으며, 부모가 이들의 학비를 지원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반면에 다른 두 가구 중 한 가구는 자녀들이 취업을 통해 가계에 큰 보탬이 되고 있었으며, 나머지 한 가구는 자녀가 취업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자녀의 성장기에 가족적 지지망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응답자의 형제나 부모 같은 가족적 지지망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여성가장이 자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 <응답자 4>의 사례는 여성가장의 헌신이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의 근로빈곤층 가구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노고에 대해 보이는 감정은 애처롭다. 하지만 그것이 자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부모의 지원을 전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 사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면, 밤마다 외출하는 엄마를 이상하게 생각했던 아들이 밤새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자신을 부양하는 것을 확인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률이 높은 학과로 진학한 경우이다. 이는 해당 여성가장에게 자신이 맡은 바 역할을 잘 해냈다는 자긍심을 높이는 등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응답자 4)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엄마가 야간에 나가서 일을 하니까 아무래도 이상하게 생각했나 봐요. 오밤중에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전화 너머로) 저기서 야 빨리 시

금치 안 다듬고 뭐하냐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애가 갑자기 엄마 뭐 해 묻더라구요. 엄마 뭐하긴 뭐해. 쌀 1000인분 씻어야 해. 빨리 전화 끊어. 애가 그 다음부터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방사선과 보건계 열에 들어갔어요.

한부모가구의 여성가장의 힘겨운 자립 과정에서 자녀는 단순히 자신이 돌봐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상의하고 협력하는 존재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것은 앞서 언급했던 〈응답자 1〉의 경우였다. 참고로 이 응답자는 신앙생활을 통해 이러한 위안을 찾는 방식으로 어려움에 대처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그로부터 많은 위안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자녀의 언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한부모가구 여성가장이 자녀와의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과도 무관하지 않다.

(응답자 1) 가게를 하는 중이었는데 맹장(염)까지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 내가 이래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애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엄마는 쉬는 게 우선이지 돈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자녀가 성장하고 어머니와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한 경우, 이혼과 부채 정리 과정에서 여성들이 직면하게 되는 고민 또한 상대적으로 쉽게 해결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즉 자녀들을 위해 결혼생활을 인내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과 관련해서, 자녀들이 오히려 이혼을 지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가부장적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했던 모녀관계라는 특성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응답자 7) 나중에 아이들이 너무 아빠가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 그것도 좋지 않을 것 같아 (남편의 요구를) 수용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안 그래도 되는데, 우리 이 집에서 안 나가도 되는데. 그렇게 말하기도 했었죠.

제6절 복지정책과 비영리지원기관의 역할

근로빈곤층의 가계부채는 다양한 용도로 발생하게 된다. 발생빈도를 보면 가장 주된 용도는 생활비와 교육비 그리고 주거비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근로빈곤층이 처하고 있는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보면, 추가적인 부채 발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 준다. 그것이 부채 증가와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통제하는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반면에 사업자금 조달은 발생빈도는 낮지만 부채 규모와 파급효과 측면에서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해당 부채를 탕감하거나 하는 지원이 용이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측면이 있다. 그것은 자영창업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들의 취업이나 현재의 사업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과중채무자나 채무불이행자의 취업과 관련된 제약을 해소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근로빈곤층 그리고 과중채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제도가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빈곤층에 대한 지원제도라는 점에서 일정 소득기준 이하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활사업 그리고 취업성공패키지와 근로장려

세제 등이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근로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이나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는 이들의 욕구에 제대로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발견되고 있다. 이 점은 근로빈곤층 과중채무자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일부 응답자는 복지제도가 자신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지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대다수 응답자는 이 복지제도가 자신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1. 근로빈곤층 과중채무자와 기초생활보장제도

과중채무를 안고 있는 응답자 대부분은 자신의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문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 돌아오는 공통적인 답변은 근로능력이 있어 수급이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물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 유무와 관련 없이 소득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하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근로능력자의 수급에 매우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맞춤형 급여체제로 개편하고, 각 욕구별 급여의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기타 수급조건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였지만, 실제 그 효과는 이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인터뷰 과정에서 근로빈곤층의 복지욕구와 관련해 거의 모든 응답자는 생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하지 않았다. 어쩌면 신청 과정에서의 거절 경험 때문이었는지, 자신이 생계비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느끼는 것처럼 보였다. 실제로 <응답자 4>는 장기간 질환으로 시달려 직장을 잃었고, 건강을 회복한 뒤 생계나 취업 지원을 문의하러 주민센터를 방문했으나, 매우 부정적인 경험을 한 경우이다.

(응답자 4)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빚이라는 게 도대체 왜 생겼는지, 진짜 먹고 쓰고 도박하고 옷 사 입으려고 한 건지, 의료비 때문에 생긴 건지, 생활비 때문에 생긴 건지. 조금 그런 것도 좀 파악하면 좋을 거 같아요. 돈을 잘 벌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처음으로 거기 (주민센터) 갔는데 저한테 사지육신 멀쩡해가지고 뭐 하려고 구청에 (왔느냐고) 왜 일을 안 하냐고 막 혼내키는 거예요.

생계비를 감당하기 위해 부채를 지고 있음에도, 거의 모든 응답자가 공통적으로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은 주거 지원 또는 주거비 지원이었다. 대다수 응답자가 현재의 임대료 지출을 가장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었으며, 그것이 현금서비스 등 신용카드 대출을 이용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주거공간이 필요한 근로빈곤층에게 이 욕구가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응답자 10) 저희(4인 가구)가 집도 없구요. 그 가게도 월세고, 집도 저희가 월세를 살아요. 월세에 사는데 지금 감사한 게 빚이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3년 갚았고, 재료비도 많이 밀리지 않고, 한번 들어오는 거는 그분이 갚아주겠다고 해가지고 그 정도 운영하고 있어요. 임대주택이라도 하나 받았으면 좋겠는데.

(응답자 9) 우리 같은 경우, 원하면 대가족한테는 임대아파트 하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어요.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로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에도 불안감을 느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근로활동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영구임대아파트나 전세임대 등 현재 살고 있는 주거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단기간 근로소득이 증가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저가의 임대주택을 찾기 힘들다. 이는 결과적으로 다시 주거비 부담과 채무 상환의 압력 속에서 과도한 노동과 건강 악화 그리고 채무불이행이라는 악순환을 만들어 낼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아래 <응답자 6>의 사례가 그것이다.

(응답자 6) 저도 기초생활수급자지만 혜택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근로능력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오직 병원비, 병원비 조금 혜택받는 그것밖에 없거든요. 옛날에 처음에 제도를 막 시행할 때 수급자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임대주택에 살고 있거든요. 그것도 쫓겨나야 돼요. 그러면 하다못해 월세라도 얻을 돈이 있어야 하는 거죠. 큰일 났죠.

근로빈곤층 과중채무자가 전세임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문제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근로빈곤층이 전세임대를 신청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자격 제한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취업활동에도 제약이 있고, 월세 부담으로 인한 재정 압박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채무 상황의 추가적 부담을 지고 있는 근로빈곤층의 자립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응답자 3>은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응답자 3) 교육급여가 되면서 문화놀이 카드를 받아서 가족당 열 마씩 이렇게 해주셔 가지고 서점도 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세임대는 자격이 안 되더라고요. 거기 왜 자격이 안 되냐 하네요. 제가 작년에 신청을 해보려고 했는데 신용불량이라면서, 네. 신용불량이라서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 밖에도 자영업에 종사하는 근로빈곤층 한부모가구는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여행경비 지원과 같은 문화서비스를 요청하기도 했다. 사실 이러한 지원서비스는 서구의 사회부조제도에서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응답자 5) 제일 부족한 거는 생활비죠. 애를 데리고 어디 놀러가고 보여주고 교육시키고 이런 게 부족했구요, 제일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엄마들이 혼자 애 키울 때는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었어요. 엄마들이 자영업을 하거나 무엇을 하면, 여행경비 같은 것을 조금 대주든가. 이런 것이 제일 절실했어요. 가족끼리. 그런데 저는 그거 못 가요. 그럼 애는 되게 부러워해요. 나는 그걸 못 해요.

끝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에게 매우 중요한 지원제도임에 틀림없지만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에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다. 가장 큰 이유는 근로빈곤층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넘어서는 순간 지원이 끊긴다는 점에서 기존 수급자들이 일하기를 꺼리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제도를 개편하였다. 하지만 각종 욕구별 급여의 선정 기준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기타 수급 조건으로 인해 수급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²⁶⁾ 아래 <응답자 2>의 진술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여 주는 것이다.

26) 참고로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자격과 관련해서 2015년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으며, 2018년부터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수급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근로빈곤층은 여전히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응답자 2) 저도 지금도 수급자예요. 그런데 이제 (소득이 생겨서) 탈락될 거예요. 주변에 재능 있는 친구들 많아요. 그런데 (취업을) 안 해요. 어설피게 벌면 안 하는 게 낫고, 벌려면 아예 그 이상(수급액 이상)으로 두 배 세 배 벌어야지 지원 안 받고도 자립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안타깝죠.

2. 빈곤과 자활사업

근로빈곤층은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들이 노동을 통해 기대하는 근로소득의 수준도 상이하다. 이 점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은 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작동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해 보인다. 모든 참여자에게 100만 원 내외의 근로소득을 보장하는 방식으로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 근로빈곤층의 취업을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근로빈곤층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지원제도로 자활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가 있다. 그리고 응답자 중에는 자활사업을 지원하는 기관, 즉 자활지원센터를 방문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그녀의 경험은 자활사업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잘 보여 주고 있다고 여겨졌다.

따라서 여기서는 〈응답자 4〉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하겠다. 이 응답자는 호텔리어 경력 등 다양한 직업 이력을 갖고 있으며, 건강이 악화되기 전까지는 높은 소득을 올리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현재도 창업을 통해 빠르게 매출을 늘려 가고 있다. 이 응답자가 주민센터에서 생계비 지원과 관련해서 매물찬 소리를 듣고 일자리센터에 취업 지원을 신청하고, 자활사업을 경유하여 현재 창업에 이르게 된 과정이다.

(응답자 4) 밥을 굶고 있으니까 일자리센터가 글 올렸는데 사실 제가 300, 500, 700씩 받았던 사람이 주방 식당 120, 130 눈에 안 차거든요. 바리스타도 120 정도는 주거든요. 그래서 그 직장이 싫다 창업을 하겠다 했더니 한번 와 보라고. 갔더니 복지 담당하는 분이 자활센터를 알려 주시더라고요.

아래 대목은 현재 자활지원센터가 지원을 신청하는 방문자에게 어떠한 제안을 하고 있는가를 말해 주고 있다. 모든 기관이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처음 방문하는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취업능력이 높은 사람이라도 자활근로에 준하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업실적에 반영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대목이다. 응답자는 자신이 자활센터에 머물렀던 짧은 기간 만난 여성가장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였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이들의 자립 의지를 사라지게 만든다는 표현이었다. 물론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취업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획일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 4) 사실은. 그 자활센터에서도 자꾸 이렇게 그 거기서 하는 일을 하게 해요. (...) 자활사업에서 만난 언니들에게 내가 막 뭐라 했어요.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요. 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는지 “맞어! 맞아!”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웃긴 게 좀 적자가 나나 봐요. (사업이) 흑자가 나야지 적자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라에서 복구도 해 준다는 거예요. 기왕에 이런 가게를 하면 흑자가 나야지 거기 일하는 사람도 든든하지. 뭐 메꿔서 하는 게 말이 돼요.

하지만 자활지원센터 상담자가 <응답자 4>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응답자는 오랜 투병생활로 자존감이 떨어진 상황 이었고, 주민센터에서의 경험으로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고안한 창업 아이템에 대한 칭찬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한부모가구의 특성상 배우자나 다른 동료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응답자 4) 자활센터에서 여성창업 제 아이템이 굉장히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2005년 서울시에서 하는 창업소를 졸업을 했거든요. 나한테 이력이 상당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런 칭찬을 간만에 들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4~5년 동안은 솔직히 말해 그런 걸 접할 길이 없잖아요. 갑자기 이거 ○○○카페 창업 아이템도 그렇고.

3. 비영리 창업자금 지원기관의 역할

위에 언급했던 정부지원정책의 틈새 중 일부는 마이크로-크레디트기관이 메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물론 이명박 정부에서 미소재단이 마이크로-크레디트기관들을 대체 또는 약화시키는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현재 그 사업 규모는 크게 축소되어 있다. 하지만 이 기관들은 무담보 신용대출과 체계적인 창업 지원을 통해 근로빈곤층 과중채무자의 창업과 자립에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지원을 받은 응답자는 자신들이 시중금융기관이나 정부로부터 소외된 상황에서 손을 내밀어 준 이들 기관(사회연대은행)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하고 있었다.

(응답자 6) 제가 옛날에 사업 실패를 했기 때문에 신용불량 경력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금을 얻는 게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시도를 많이 해 봤죠. 근데 여기서(사회연대은행) 이렇게 도와준다니까 제가 얼마나 눈이 번쩍 뜨였겠어요.

하지만 이처럼 좋은 취지의 마이크로-크레디트사업이지만 제약이나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응답자 2>는 근로빈곤층의 취약한 자산구조상 자기자본금이 없이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소액지원이 갖는 문제점과 이를 받기 위해 자기부담금을 허위로 보고하는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창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도대출을 해야 한다는 점도 제안하였다.

(응답자 2) 2000만 원 가지고 무슨 창업을 해요 물론 안 받는 거보다 나은데. 조금 자기 기반이 있으면 2000만 원 보태서 하는데. 그리고 지원을 받으려고 자기자본이 있는 것처럼 해서 받기도 하고.

(응답자 2) 중도대출이 필요해요. 한번 하고 중간에 다 갚고 다시 주는 것도 원칙이기도 하고 리스크도 없어야 되는데. 근데 하던 중에 또 필요할 때 다른 데서 손 벌리지 않게 그런 지원도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이예요.

제7절 소결

한국 사회에서 근로빈곤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고통과 좌절 그

리고 상처를 감수하는 일이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일터와 가정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낮은 소득과 자신을 지탱해 줄 가족이나 사회적 지지망이 없는 사람이 겪게 되는 고통과 충격은 그와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절박성은 때로 근로빈곤층 당사자의 입을 통해 매우 희극적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한 인터뷰 중에 면접자가 했던 몇 마디는 근로빈곤층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을 잘 드러내고 있다. 오랜 기간 두 자녀를 부양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실질적인 여성가장은 의지할 곳 없이 자신이 부채를 지게 된 상황을 담담하게 표현하였다.

(응답자 3) “카드가 되게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월세도 내 주고 도와 주고, 아무 말 없이. 저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자가 비쌀 뿐이지.”

이 몇 마디 말 속에는 오랜 빈곤으로 가족에게마저 의존하기 힘든 여성가장이 가족의 생계를 꾸려 가기 위해 결과가 분명한 위험한 선택을 감수했다는 점을 말해 준다. 그녀가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가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한 번의 연체로도 이자가 급증하고, 매달 반복되는 상환 부담에 시달려야 한다는 점을 모르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녀는 하루하루의 삶을 견디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녀의 선택은 어떠한 논리로도 비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녀의 삶 속에는 우리 사회가 처한 다양한 문제가 그대로 응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혼한 여성이 취업하기 힘든 현실, 영세자영업자가 버티기 힘든 골목상권, 대중매체가 뿜어대는 소비 경쟁에 노출된 자녀들의 상대적 박탈감, 부모의 소득으로 감당하기 힘든 지나친 사교육비 경쟁, 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인상되는 임대료, 가난한 사람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지 못하는 취약한 사회보장제도,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삶 속에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바로 현재 한국의 근로빈곤층, 특히 과중채무자가 직면한 현실이다.

이러한 삶의 틈새를 부채 문제가 비집고 들어왔다. 그것은 물론 뉴스나 드라마에서 보는 악덕 사채업자의 형상을 한 것이 아니다. 그저 한 장의 플라스틱카드일 뿐이다. 하지만 그것은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국가도 도와주지 않는 지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친구 이상의 어떤 존재이기도 하다. 물론 그녀가 높은 이자를 충실하게 상환한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그녀는 근로빈곤층이다. 현재와 같은 노동시장구조하에서 그녀의 근로소득은 극적으로 나아지기 힘들다. 빈번하게 지출이 소득을 초과하는 적자상태가 발생하고, 부채를 상환하기는 더욱 힘들어지며,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미안함은 끝없이 그녀를 괴롭힌다. 부채지옥이 이런 상황을 지칭하는 것일지 모른다.

이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사실상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한 근로빈곤층이 부채 없이 살아가기 힘든 현실을 말해 준다. 노동과 복지라는 두 축이 모두 취약한 사회에서 이들에게 손을 내민 것이 대부업자라는 사실은 아이러니하기만 하다. 본래 사회보장제도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하게 된 이유를 묻고 따져 지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에서 여전히 많은 빈곤층은 그 도움을 받지 못한다. 부채를 상환하기 힘든 사람이 부채를 지게 되는 현실, 그것이 문제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의 부채를 이자 부담이 낮은 다른 부채로 갈음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다. <응답자 3>의 말처럼, 국가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도와주는 고마운 존재가 될 수는 없는가.²⁷⁾

27) 이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시점인 2017년 11월 정부가 1000만 원 이하의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연체한 159만 명의 빚을 탕감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월 소득이 99만 원 이하이고 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전제되어 있다. 그리고 12월 19일에는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이 발표되었다.

제 7 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연구 결과의 학술적 시사점

제2절 금융정책과 관련된 정책 제언

제3절 사회정책과 관련된 정책 제언

제1절 연구 결과의 학술적 시사점

이 연구는 근로빈곤층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 이들이 살아가는 작은 생활세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하지만 가계부채 문제는 그것이 생겨나고 확산되는 자본주의 경제시스템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이를 감독하고 규제하는 정부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가계부채 문제의 역사적 변화, 외국의 가계부채 관련 대책,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 특히 근로빈곤층의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우리가 근로빈곤층 과중채무자에 대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생각해 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와 외국 사례에 대한 검토, 그리고 질적 분석의 결과, 우리 사회의 근로빈곤층 가계부채 관련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근로빈곤층 가계부채 문제는 단순히 금융 정책 차원에서 해법을 찾기 힘들며, 고용과 복지정책이 적절하게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물론 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언급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여기서는 근로빈곤층의 취업과 창업을 통해 자립을 촉진한다는 정책 목표에 집착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상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것은 가계부채, 특히 과중채무 문제가 이들의 삶과 건강뿐 아니라 자녀들의 삶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터뷰를 통해서도 드러내기 힘든 문제였지만, 자녀들에 대한 방임과 폭력의 문제는 분

명 존재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근로빈곤층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한 정책 패러다임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근로빈곤층이 생계비를 이유로 가계부채에 시달리지 않게 함으로써 부채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대다수 가계가 신용을 통해 생활하는 상황에서 근로빈곤층에게도 이는 필수적인 서비스이다. 하지만 이들이 필수재라 할 수 있는 생계비와 주거비 그리고 교육비 등을 이유로 부채를 지고, 낮은 근로소득으로 인해 과중채무나 채무불이행 상황에 처하는 경로를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부채 발생 원인, 소득수준,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생계나 의료 그리고 주거 등의 이유로 빚을 지지 않도록 사회보장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제안하고 있는 이유는 근로빈곤층의 경우, 시장소득만으로 생계를 감당하기 힘든 집단이며, 부족한 소득의 상당 부분은 공적이전소득을 통해 충당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구 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근로빈곤층의 낮은 근로소득이 기초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출도 감당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조세와 복지급여를 통해 이를 보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것은 근로빈곤층의 취업과 자립을 촉진하는 정책을 강화하는 경향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빈곤층이 가계부채를 통해 조달하고 있는 생계비는 조세와 복지급여를 통해 보완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근로빈곤층의 자립을 위한 지원정책의 패러다임이 금융정책과 고용정책 그리고 복지정책의 적절한 역할분담 위에서 재구조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절한 소득 보장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취업과 자립을 기대하기 힘들다. 특히 근로빈곤층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요원해 보인다. 이는 금융정책

과 고용정책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은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된 금융정책의 정상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정책은 빈곤층과 저신용층의 부채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근로빈곤층의 기초적인 복지 욕구를 대체하지도, 금융시장의 투명한 질서를 유지하지도 못하는 모호한 정책기조였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금융시장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불가피한 일이다. 그것은 부당하게 높은 금리나 부당한 추심을 용인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다. 이는 금융시장의 질서라는 측면에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더욱이 금융기관이 저신용 계층에 대한 신용 공급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을 육성하여 저소득층 및 중하층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을 공급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들 금융기관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하나로 보다 투명하고 지역의 서민들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기존의 서민금융기관들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2절 서민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제언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은 근로빈곤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근로빈곤층 취업 및 자립촉진이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모든 근로빈곤층을 취업 지원 대상으로 설정하는 방식은 이들의 욕구와 능력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취업 준비가 된 집단을 대상으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본래의 역할에도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특히 근로빈곤층 과중채무자는 이러한 지원방식을 통해 취업이나 자립이라는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 이는 지난

10여 년간의 실험을 통해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중 많은 사람은 이미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보다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갖추어지는 것이다. 질적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은 보다 안정된 주거와 자녀를 보다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지원을 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질 때, 이들은 보다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립에 한 걸음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제3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물론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의 전제조건은 <사회보장제도>가 근로빈곤층 과중채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채무자에 대해 복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보장제도는 복지 욕구를 가진 사람을 지원하며, 특히 빈곤정책은 그가 어떠한 이유로 빈곤상태에 처했는지를 묻지 않고 그를 보호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사회권 보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이유이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필수재적 소비 지출을 위해 부채를 감수하는 상황은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특히 생계와 주거 그리고 최소한의 교육비 지출을 위해 부채를 지게 되는 문제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과중한 채무로 인한 파산, 우울, 자살, 범죄와 같은 사회적 병폐 중 일부는 분명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보장제도의 강화가 가계부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마르셀 모스(Marcel Mauss)는 20세기 초 생겨나던 복지국가에서 그러한 가능성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그는 사회보험을 통해, 또는 협동조합이나 공제조합 등 일종의 우애조합(Friendly Societies)을 통해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이 가진 자가 베푸는 선의나 고용주의 낮은 임금으로 생활하게 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하다는 것

이다(Mauss, 1923~1924, p. 93).

근로빈곤층 과중채무자들을 괴롭히는 문제 중 하나는 채무불이행, 즉 통상적으로는 신용불량자가 됨으로써 받게 되는 다양한 제약이었다. 그것은 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대출에 제약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신용사회를 살아가는 데 많은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취업이나 사회생활에도 많은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하지만 이들이 채무 상환을 위해 이러한 고통을 장시간 감내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신용 회복 지원이 이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과중채무가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들에게 미치는 충격을 감안하면, 개인파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채무자뿐 아니라 채권자도 보다 신중하게 신용을 공급하게 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파산이 반복되지 않도록 2차 진입에 대한 진입을 보다 엄격하게 통제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이들이 급박한 지출을 위해 대출에 의존하지 않도록 적절한 소득 보장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금융에 의존해야 하는 악순환 고리를 끊어 내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제2절 금융정책과 관련된 정책 제언

다소 이견이 있지만 서민금융시장은 소득이 낮고 신용 위험이 높은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시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저소득·저신용 계층이라 하더라도 신용대출뿐 아니라 담보대출, 지급결제, 보험, 연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필요로 하지만, 우리의 금융 현실에

서 문제가 되는 것이 신용대출에 대한 접근성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실용적 관점에서 서민금융시장을 신용대출시장만으로 한정하여 정의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차주의 신용 위험에 따라 대출 조건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처럼 신용 위험에 따라 은행대출시장 또는 프라임 대출시장과 서민금융시장으로 명확하게 분할되어 있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서민금융시장의 정상적 작동은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원활한 금융활동을 위해 중요하다. 정부는 이러한 관점에서 서민금융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지원과 개입 등 정책적 노력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최근 국내 외에서 주목하고 있는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서민금융시장은 1997년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위상과 기능이 크게 위축된 이후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대한 신용 공급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서민금융기관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저소득층이 신용 조달을 위해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지불하거나 금융 감독의 규율 범위 밖에 있는 불법 대부업체 또는 사인 간의 거래에 의존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서민금융기관의 원활한 작동 여부는 저소득층 부채 부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 서민금융시장의 실태와 문제점

가. 서민금융시장 실태 진단

서민금융시장에 대해 다양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민 대

상 신용 공급 위축, 이자율 쏠림 현상, 그리고 서민금융기관의 기능 약화 등을 대표적인 문제로 들 수 있다.

가계대출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개인 신용대출시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이 대폭 감소하였는데, 이는 저소득층의 부채 조달 여건이 악화되었음을 시사한다. 금융위원회(2016)의 발표에 따르면 2015년 말 신용등급 1~3등급에 해당하는 고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은 147조 5430억 원으로 2012년 말에 비하여 38% 증가하였으나 4~7등급 중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은 1% 감소하였고 8등급 이하 저신용자 대상 대출은 16%나 대폭 감소하였다.

〈표 7-1〉 신용등급별 신용대출 변화

(단위: 십억 원, %)

신용등급	2012년 말	2015년 말	증감률
1~3등급	106,827	147,534	38.1
4~7등급	85,812	85,105	-0.8
8~10등급	30,335	25,455	-16.1
총계	222,974	258,094	15.8

자료: 금융위원회. (2016).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방안.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대한 신용대출 감소는 최근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현상이다.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대한 신용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²⁸⁾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최근 들어 이들 계층에 대한 신용 공급 위축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28) 정책 당국은 미소금융대출이나 햇살론, 희망희씨대출 등과 같은 소위 정책금융상품을 통하여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대한 신용 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경주해 오고 있다.

서민금융시장의 또 다른 문제는 이자율 쏠림 현상이다. 소비자 금융시장이 고신용 계층 대상 프라임 시장(prime market)과 저신용 계층 대상 서브프라임 시장(sub-prime market)으로 구분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양 시장 간 분절이 너무 심해, 두 시장을 넘어서는 경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며 특히 서브프라임 시장에서는 경쟁의 결핍으로 인해 이자율 쏠림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서브프라임 시장에서 신용 수요자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저소득층의 상당수가 법정 최고금리에 가까운 고금리 대출 상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은행과 상호금융기관이 고신용 고객을 대상으로 10% 이하 금리로 신용대출을 하는 반면 할부금융, 저축은행, 대부업자 등은 저신용 고객을 대상으로 20% 이상의 금리로 대출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저신용자의 상당수가 법정 최고금리 수준에 집중되어 있어 10%대 중·후반 이자율 구간에서 소위 시장결핍(thin market)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017년 9월 말 기준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K 은행 2.71%, J 신용협동조합 5.22%, S 카드사 16.17%, H 캐피털 16.75%, O 저축은행 25.88%, S 대부 27.90%의 분포를 보였는데 소비자 신용대출시장에서 카드사나 캐피털사의 시장점유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10%대 금리의 신용대출 상품 거래가 극히 부진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2〉 신용대출 금리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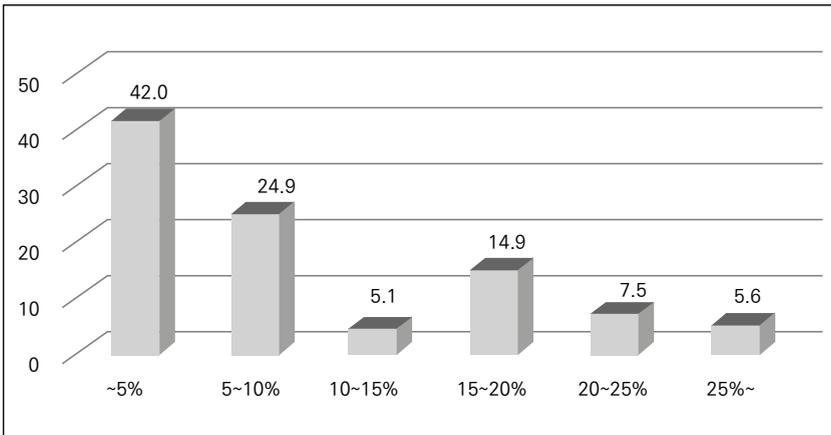
	K 은행	J 신협	S 카드	H 캐피털	O 저축은행	S 대부
금리	2.71	5.22	16.17	16.75	25.88	27.90

자료: 1) 2017년 9월 말 일반 개인 신용대출 평균금리.

2) 금융감독원, 신협중앙회, 대부금융협회. (2017. 9.). 기관 내부 자료.

한편 [그림 7-1]에는 금리구간별 가계신용대출 금액 비중이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서도 금리 10~15%에 해당하는 신용대출의 비중이 5.1%에 불과하여 소위 중금리 신용대출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1] 금리구간별 가계신용대출 비중



자료: 한국은행. (2015. 12.). 금융안정보고서.

이와 같이 저소득 계층이 주된 고객층을 구성할 것으로 추정되는 10%대 중금리 시장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대부분 저소득층은 법정 최고금리²⁹⁾ 수준을 지불하고 신용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여기서 지적해야 할 점은 서민금융기관으로 불리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기관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축은행은 대부업과 유사한 영업 행태를 보이고 신탁은 은행과 유사한 영업 행태를 보이는 등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미흡이 중금리 시장 결핍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기관이 고금리로 조달한 부채가 저소득층의 부채 부담

29) 2016년 3월 이후 법정 최고금리는 연 27.9%인데, 2018년 1월부터 24.0%로 인하될 예정이다.

가중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서민금융시장에서 자금 공급자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서민금융기관의 역할과 위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약화되어 저소득층의 금융생활에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소비자 금융시장에서 서민금융기관의 비중과 역할이 크게 축소되었다. 1996년 전체 가계대출에서 서민금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70.7%를 차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4년에는 26.6%에 불과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좀처럼 예전의 위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은행의 비중은 27.4%에서 73.4%로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는데 여기에는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먼저 외환위기 이후 수익성을 최우선의 목표로 설정한 은행이 소비자 금융시장에서 공격적으로 영업을 확대함에 따라 서민금융기관의 수익 기반이 약화되었다. 낮은 조달비용을 무기로 소비자 금융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은행이 신용 위험이 낮은 주택담보대출과 고소득·고신용 계층 대상 신용대출에서 종래 주된 공급자 역할을 하던 서민금융기관을 대체함에 따라 서민금융기관의 수익 기반이 크게 약화되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부실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여신 영업 역량이 위축되었던 점도 서민금융기관 위상 추락의 원인이 되었다. 외환위기로 인하여 촉발된 기업 부실로 인하여 대규모 부실채권이 발생하였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은 물론 금융시스템이 붕괴되는 상황으로까지 진전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체 금융권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특히 타격을 심하게 받은 것은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이었다. 외환위기 직전 231개에 달하던 상호저축은행은 2006년 110개로 감소하였으며 신용협동조합도 단위 조합 수가 1666개에서 1037개로 37.8% 감소할 정도로 급격한

구조조정을 거쳤다.

〈표 7-3〉 서민금융기관 구조조정 현황

(단위: 개, %)

구 분	97년 말 회사 수 (A)	구조조정				06년 말 회사 수	증감률 (B/A)
		인가취소	합병	신설	계 (B)		
상호저축은행	231	106	28	13	△121	110	△52.4
신 협	1,666	526	116	13	△629	1,037	△37.8
농협·수협·산림조합	1,739	13	293	38	△268	1,471	△15.4
새마을금고	2,743	402	873	135	△1,140	1,603	△41.6
합 계	6,379	1,047	1,310	199	△2,158	4,221	△33.8

자료: 예금보험공사. (2016). 기관 내부 자료.

부실 정리와 함께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응하여 서민금융기관이 규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신용대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또한 저소득층 대상 신용 공급에서 서민금융기관의 위상이 약화된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외환위기 이전 시기 한때 40%를 넘어섰던 상호금융기관의 신용대출 비중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크게 위축되었다.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2006년 말까지만 해도 신용대출의 비중이 21.9%에 달하였으나 2009년 12.1%, 2012년 8.7%, 2015년 7.5% 등으로 급격하게 하락하였다. 이처럼 상호금융기관의 위상 하락과 보수적인 영업 행태가 저소득층의 신용대출에 대한 접근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나. 서민금융시장의 문제점

정보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은 금융시장에서 시장 실패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금융회사는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거래 위축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기법을 활용하는데 서민금융시장에는 그러한 기법들이 적용되기 힘들다는 근본적인 어려움이 내재한다. 예를 들어 금융시장에서는 차주에게 담보를 요구함으로써 역선택이나 과도한 위험 추구의 문제점에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서민금융시장에서는 차주가 담보 가치가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이므로 위험관리 수단으로 담보를 활용하기 힘들다. 보다 적극적으로 신용평점모형(credit scoring model)과 같은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신용 위험이 낮은 차주를 선별할 수 있으나 서민의 경우 금융거래 기록이 충분하지 못하여 모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획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물론 관계형 금융(relationship banking) 기법을 활용하여 자료 부족으로 인한 신용평점모형의 한계를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서민금융기관이 보유한 역량을 감안할 때 큰 기대를 걸 수 없는 실정이다. 다른 한편으로 대출 시행 이후 차주의 행태를 면밀하게 감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수 있으나 여기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된다.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신용 위험 측정과 그에 대한 대응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서민금융시장은 벤처투자시장과 상당히 유사하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벤처캐피털이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선별(screening)과 감시(monitors)를 통해 자금을 공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투자가 성공하는 경우 소요된 비용을 회수하고도 남을 정도로 높은 기대수익률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민금융시장의 경우 비용에 상응하는 기대수익률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므로 차주가 상환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조달에 실패하는 신용 제약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시장을 통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의 개입이 요구된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어떤 방식과 강도로 개입할 것인지는 여전히 풀기 어려운 숙제이다. 정부가 신용 자원의 과소 거래를 해결하기 위해 자금 공급자로 직접 시장에 참여하거나 위촉된 서민금융기관의 기능 정상화를 지원하는 접근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양쪽 모두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정책 당국은 서민금융시장의 시장 실패로 인한 비효율적 신용 자원 배분을 교정하고 저소득·저신용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신용 공급에 직접 간여하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정책 서민금융 3종 세트>로 불리는 미소금융대출, 햇살론 대출, 바퀴드림론을 통해 서민을 대상으로 직접 신용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³⁰⁾

〈표 7-4〉 정책 서민금융상품 현황

(단위: 억 원, %)

	누계 대출액	대출 잔액	연체율
미소금융대출	24,140.6	7,039.7	7.1
햇살론 대출	125,941.0	24,063.0	3.7
바퀴드림론	9,696.2	3,106.0	28.5
총계	159,774.8	34,208.7	-

주: 2017년 6월 말 기준.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2017. 6.). 기관 내부 자료.

30) 미소금융대출은 휴면예금 및 보험금과 기업 기부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자영업 창업 또는 경영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는 용자 프로그램이다. 햇살론 대출은 자신의 신용으로는 제도권 금융회사로부터 자금 조달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계층을 대상으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기관이 생계자금과 자영업 운영자금을 10% 내외의 금리로 대여하는 정책 서민금융상품이다. 정부와 서민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조성한 기금을 재원으로 신용보증을 제공하여 대출에 수반되는 높은 신용위험을 분담하여 금융회사의 부담을 줄여 준다. 바퀴드림론은 자산관리공사가 국민행복기금을 재원으로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10%대의 대출로 차환하는 용자 프로그램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 기능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심각한 금융거래 애로를 완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였다. 점에서 정책 서민금융상품에 대해 일정 부분 불가피성을 인정할 수 있다. 출시 이후 2017년 상반기까지 3개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통하여 약 15조 9800억 원의 용자자금이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공급되었으며 현재도 3조 4209억 원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대출 중에 있다. 그러나 정부가 자금 공급자로 소비자 금융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유사한 예를 찾아보기 힘든 정책이다. 정책 당국도 이러한 점을 의식하여 정책 도입 시점에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참여가 시장 조성을 위한 마중물의 역할에 한정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으나 이러한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시장과 상당한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정책 대상이 저소득층이라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높은 신용 위험에도 불구하고 시장 이자율에 비하여 매우 낮은 이자율로 대출상품이 제공되고 있는데³¹⁾ 취약한 서민금융기관의 영업 기반에 타격을 가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단기성과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최소한의 위험관리 체제도 갖추지 못한 채 무리하게 대출이 확대되었는데 그에 따라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여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에 대하여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7-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바퀴드림론의 연체율이 28.5%에 달하고 있으며 미소금융대출의 경우에도 7.1%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햇살론의 연체율은 3.7%로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 또한 햇살론 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착시 현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가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통하여 추구

31) 2017년 8월 말 현재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금리는 미소금융대출 2~5.5%, 햇살론 대출 7~10%, 바퀴드림론 6.5~10.5% 등이다.

하는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시장 개입 목적은 상환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차주가 신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환능력을 갖춘 차입자가 시장을 통하여 자력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정책은 소득이나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모든 차입자가 시장 금리보다 낮은 수준의 저렴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와 같은 방식의 정부 개입이 시장 조성을 위한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영구적인 것으로 고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수십 년간 풀리지 않는 난제로 되어 버린 농가부채와 유사한 심각성을 가진 서민부채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저소득층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한 정책 제언

저소득층 가계부채 관련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과 관련하여 서민금융시장의 기능 정상화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이 신용도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다음 세 가지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기관 등 소위 서민금융기관과 미소금융,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이 충돌하지 않도록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어 본래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강점을 갖고 있는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협동조합형 서민금융기관의 육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끝으로 신용상담사(credit counselor) 제도를 도입하여 저소득·저신용 계층이 금융 관련 문제에서 합리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마치

막으로 부실화된 저소득층 부채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의 개인 부실채무 정리 체제를 대폭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가. 미소금융대출 사업의 재설계

서민금융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영구화와 그로 인한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출구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먼저 햇살론 보증 재원에 대한 정부의 출연을 중단하고 서민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보증기구를 운영하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금리와 자격요건을 포함한 햇살론 대출 조건을 보증기구와 참여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햇살론 보증기구에 대한 재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신용 위험을 분담하고 금융회사의 부담을 축소하여 궁극적으로 서민 대상 대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미소금융대출의 경우 금융정책이 아니라 복지정책의 관점에서 상품 운영방식을 전면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미소금융대출의 전범이라고 할 수 있는 후진국의 마이크로크레딧 성공 사례는 금융시장 환경이 근본적으로 다른 우리나라에서 재현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금융시장의 미성숙으로 경제 전반에 걸쳐 자본 부족 현상이 만연한 후진국에서 마이크로크레딧은 연대보증이나 강력한 감시 활동을 통하여 신용 위험을 통제함으로써 회수율을 높이고 차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후진국의 마이크로크레딧기관은 사업에 성공할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성이 기대되는 차주를 선별하여 신용을 제공했던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 영세자영업 문제의 핵심은 자본 부족이 아니라 낮은 기대수익률이다. 대부분의 영세자영업자가 속한 산업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매우

강력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어 위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할 수 있는 수준의 높은 기대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미소금융대출의 금리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를 부과하는 경우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차주가 다수 출현할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연 5% 내외의 현재 금리는 자본비용과 대손비용은 고사하고 대출 관련 행정비용(loan processing cost)을 충당하는 데도 충분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영세자영업자 대상 대출은 외부로부터의 지속적인 지원 없이는 지속 가능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며 따라서 미소금융대출을 금융상품으로 취급하는 현재의 접근방식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정책의 주관부처를 금융위원회에서 복지부로 되돌리고 회수율이나 자금 공급 실적에 지나치게 경도된 현재의 사업 수행 방식을 지양하고 저소득층의 소득 창출 기반 강화라는 미소금융대출의 원래 목적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체제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은행과 기업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1조 원이 넘는 자금 중 절반가량이 대출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예금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남은 자금을 컨설팅이나 경영 기법 지원 등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에 투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협동조합형 서민금융기관의 육성

서민금융시장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현재 크게 위축되어 있는 서민금융기관이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시장 기능을 통한 자금 배분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정부가 자금 공급자로 직접 시장에 참여하기보다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시장 기능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소비자 금융시장에서 신용을 공급하는 금융기관은 경영 목적에 따라 이윤 극대화를 통하여 주주 이익에 봉사하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주주가치(Shareholder Value: SHV) 추구 기관과 주주는 물론 이용자, 직원, 지역사회 거주자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해관계자가치(Stakeholder Value Maximization: STV) 추구 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는 주식회사 형태로 조직된 금융회사로 은행이나 저축은행, 여신금융회사 등이 이에 속하며 후자는 상호 소유(mutual ownership) 또는 지역 공동체 소유(community ownership) 형태로 조직되었는데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이 이에 속한다.

위험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기대수익률은 높지 않은 서민 금융시장의 특징을 감안할 때 이해관계자가치 추구 기관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이해관계자가치 추구 금융기관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은행 등 대규모 금융기관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소비자의 자조 조직으로 출발하였다. 점차 규모를 확대해 가면서 구성원의 재무적 이익은 물론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필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유대 강화 등과 같은 사회적 편익까지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조직 원리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이들 이해관계자가치 추구 금융기관은 은행 등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배제되는 저소득·저신용 차주에 대한 신용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조직 원리를 갖고 있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밀접하고 반복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획득한 정성적 정보를 활용하여 정량적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신용평가모형으로 측정하기 힘든 신용 위험을 비교적 정확하게 추정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소득·저신용 차주에 대한 신용 공급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상호금융기관은 금융감독 대상으로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구비되어 있고 예금이라는 안정적인 자금 조달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감안할 때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은 조직 목표나 구성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금융 접근성 확대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호금융기관의 현실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호금융기관이 저소득층에 대한 안정적인 신용 공급자로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으로서의 본질 회복과 역량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조합원에 대한 저축수단 제공과 신용 공급이라는 좁은 관심 영역에서 벗어나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을 둘러싼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이라는 본연의 모습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담보에만 매달리는 보수적인 대출 관행을 불식하고 일시적인 유행에 휩쓸려 별다른 전문성도 없으면서 회사채 투자나 부동산 대출 등 위험이 높은 투자처에 대규모 자산을 투입하는 행태를 지양하고 신용대출 확대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단위 조합 이사장에 대한 내부 견제 장치 강화, 단위 조합 이사의 전문성 제고, 협동조합 금융기관 중앙회의 감독 기능 증대 등의 조치를 통하여 지배구조를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추락한 경쟁력을 회복함으로써 서민이 필요로 하는 금융상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

조직의 내실을 다지고 체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모한 규모 확장과 과도한 위험 추구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과도한 수신

을 억제하는 방향에서 수신과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폐지해야 할 것이다. 대신 조합의 이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현재보다 대폭 확대함으로써 상호금융기관의 수익성 확보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극히 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신용대출 확대를 촉진하는 기제로 상호금융권 전체가 참여하는 신용보증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필요한 경우 정부가 재보증을 제공하여 위험을 분담함으로써 상호금융기관의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지역재투자기금(Community Re-investment Fund)과 유사한 기금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또는 저소득층 대상 금융서비스 제공에 기여가 큰 상호금융기관에 저리의 자금을 제공하는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상호금융기관 중앙회의 단위 조합 감독 기능 및 자산 운용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단위 조합의 건전성 유지와 수익원 확보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각종 상호금융기관의 중앙회에 소속된 단위 조합 감독 인력을 통합하여 별도의 단위 조합 감독기구를 설립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위임을 받아 단위 조합을 검사 및 감독하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상호금융기관을 규율하는 근거법과 주무관청이 상이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규제차이를 해소하고 투명하고 효과적인 감독시스템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재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중앙회의 금융 기능을 분리하여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는 금융투자회사의 설립을 허용함으로써 단위 조합 여유자금 운용에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상호금융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제도적인 틀로 “상호금융기본법”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호금융기본법은 서민의 금

용 접근성 확대의 주역으로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통일된 규율체계를 확립하고 이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등 상호금융기관을 규율하는 기존의 개별 법률을 통합하여 기본법의 기반으로 삼되 협동조합으로서 핵심적인 운영 원리를 구현할 수 있도록 조직 구성, 지배구조, 건전성 규제 등 영역에서 통일된 규율체제를 부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각각의 기관이 목적과 조직문화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이질성을 보유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현 조직 체제를 인정하고 현재의 주무관청에 인허가를 포함한 포괄적 감독권을 부여하되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 부문의 건전성 감독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역할 분담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기득권을 가진 세력의 저항을 최소화하고 통일된 규율체계를 도입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단위 조합에 대한 법인세 감면 확대, 신용보증기금의 설치와 이에 대한 정부 지원, 지역 재투자펀드 설치 등 앞에서 논의한 상호금융기관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기본법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다. 채무자 친화적 신용상담제도의 활성화

현재 우리나라에는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상담 서비스 공급 기관은 존재하지 않으며 비영리 기구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금융교육과 상담, 부채관리 등 신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교육은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등 각종 금융협회가 제공하고 있으며 금융상담 기능은 금융회사가 고객 서비스나 프라이빗뱅킹(private banking)의 일환으로 고객 자산가를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상담 서비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채관리 서비스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제공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가 그 접근성과 질의 측면에서 미주 각국에서 신용상담사가 제공하는 수준의 전문성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가령 금융교육 서비스의 경우 지리적 수혜 범위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접근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으며 교육 내용 측면에서도 금융 소비자의 재무적 의사 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보다 이론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현재 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금융상담 서비스는 소득이 높거나 자산이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부가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상담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부채관리의 경우에도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 재조정을 신청한 장기연체자에게 제공하는 채무 재조정 서비스는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다. 2016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신용회복위원회가 법적 기반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채권 금융회사 간 협약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채권 금융회사를 대표하여 채무자와 채무 재조정 협상을 수행하는 종래의 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용 회복 신청자에게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채권자를 대리하여 채무 재조정 협상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채무자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현실성 있는 채무 재조정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채권자가 그 정보를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정보를 토대로 신용회복위원회가 제시하는 채무 재조정안은 결국 회수채권 극대화라는 채권자 관점에서 작성된 것이며 채무자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신

용상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다(최경수 등., 2006, pp.289-290).

체계적이고 책임성 있는 신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신용상담사 제도를 금융업의 일부로 포함시켜 육성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신용상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공공재적·가치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도시행 초기에는 시장 조성을 위해 정부가 상당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자 금융시장이 충분한 성숙 단계에 도달하면 신용상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시장에 의하여 공급될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소비자 금융시장 관련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태라는 점에서 제도 도입 과정에서 정책 당국의 적극적인 시장 조성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민간이 제도 도입을 주도하되 초기 일정 기간 동안 정부가 신용상담기관의 운영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융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금융회사 종사 경험이 있는 퇴직자가 신용상담사 도입을 주도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신용상담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인증시험을 통과한 신용상담사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들이 제도 도입을 주도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배구조를 전면 개편하여 채권자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체제를 구축하고 채무자의 관점에서 신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상담시장 조성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이미 전국적 조직망과 상당한 수준의 채무자 상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에서 채권 금융회사 대표를 배제하고, 신용회복계획을 심사하는 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채권 금

용회사의 추천권을 인정하지 않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신용상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유료로 원칙으로 하더라도, 제도가 정착되어 자체 수입으로 수지 균형을 맞출 수 있을 때까지는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소득층이나 영세자영업자 등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신용상담 바우처(voucher)를 지급함으로써 이들이 신용상담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물론 신속한 채무 재조정을 통한 부실채권 정리가 채권금융기관에게도 상당한 편익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이들이 신용상담 서비스 제공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신용상담 업무를 사회적 일자리로 간주하고 이들의 인건비 일부를 보조하는 것은 현재의 제도적 틀하에서도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접근법은 최근 고용-복지정책의 세계적 기조에도 부합하는 것이며, 사회적으로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시장의 힘을 활용한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금융회사 퇴직자의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인적자본의 사장을 막고 고령화에 따른 노인층 소득 부족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방안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사회적 가치가 인정되는 신용상담 서비스를 통해 개인 부실채무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리에 기여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신용상담 서비스 지원은 복수의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된다.

제3절 사회정책과 관련된 정책 제언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에서 근로빈곤층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처럼 근로빈곤 문제가 심화된 저변에는 탈산업화와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에 따른 저임금과 고용 불안 그리고 실업 문제의 심화가 자리하고 있다. 물론 근로빈곤층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러한 구조적 요인 외에도 개인 차원의 건강 문제나 직업능력 문제, 가구 차원에서 취업을 가로막는 요인 등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결과적으로 근로소득이 낮아 가구의 생계를 감당하기 어려운 집단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재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적용 대상 기준 중 개인파산제도 대상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근로빈곤층의 가구소득은 최저생계비나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는 금융정책 차원에서도 이들의 가구소득이 채무를 상환하기 힘든 수준임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근로빈곤층 과중채무자는 개인파산에 이르기 전 상당기간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과정에 들어서게 된다. 물론 이러한 지원 조치를 통해 그들은 이자와 원금의 일부를 감면받기도 한다. 물론 채무자는 자신이 빌린 돈에 대해 성실히 상환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으며,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만큼 이 정도의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근로빈곤층 과중채무자들이 이러한 고통을 경험하고, 그것이 당사자와 가족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사회정책 차원의 지원 강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빈곤층이 낮은 근로소득으로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감당하기도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월 부채의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근로

빈곤층 과중채무자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지고 있는 집단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이들에게는 부채 상환으로 인한 소득 감소분에 상응하는 소득 지원과 자립을 촉진할 수 있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정책이 확대 적용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도 근로빈곤층의 소득을 보장하고,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근로빈곤층 과중채무자에 대한 인터뷰 결과는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 진단을 토대로 근로빈곤층 가계 부채 문제와 관련한 사회정책 측면에서의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근로빈곤층 지원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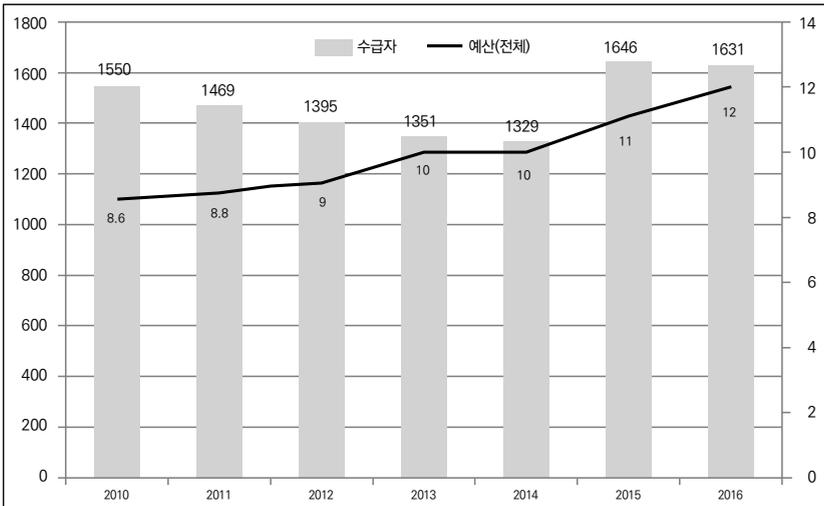
가. 정책 현황

우리 사회에서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제도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활사업, 취업성공패키지, 근로장려세제, 공공임대주택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이들이 이러한 지원제도의 혜택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는 파악하기 용이하지 않다. 그리고 인터뷰 결과 또한 이들에 대한 각 정책의 지원 실태를 확인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 다만, 응답자 중 일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활사업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사업 현황을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포괄적인 빈곤층 지원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5년 제도 개편 이후 빠른 속도로 수급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2016년 말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규모는 163만 명으로 2010년의 155만 명에 비해 약 8만 명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제도 개편 직전인 2014년의 수급자 규모 133만 명과 비교하면, 그것은 30만 명 이상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2014년 이전 4~5년간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시장소득 기준 빈곤층 및 근로빈곤층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림 7-2]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및 예산 추이



자료: 관계부처합동. (2017a. 7. 3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보도자료.

이처럼 뒤늦게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물론 2015년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규모 증가는 이미 교육부의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사업 수급자가 포함된 데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순증효과는 제한적이다. 하지만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통해 빈곤층이 필요로 하는 필수재를 보다 탄력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유연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포괄하고 있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그리고 교육급여를 근로빈

근층에게 보다 유연하게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외에는 근로빈곤층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주요한 사업이 존재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지원사업은 자활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를 들 수 있다. 이 두 사업은 미취업자의 취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취업과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빈곤층 과중채무자에게 중요한 지원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일을 하고 있음에도 가구소득이 일정 기준선 이하인 집단에 대해서는 근로장려세제 및 아동장려세제가 지원된다. 이는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해 준다. 하지만 정작 근로빈곤층 과중채무자들은 이러한 지원에 대해 잘 모르거나, 그 효과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문제점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활사업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지원의 사각지대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이는 빈곤층 중에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집단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그리고 근로빈곤층은 이러한 지원제도에 접근하는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에는 가처분소득이 역전되는 단계를 넘어, 격차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빈곤층 소득보장제도에서 배제된 빈곤층의 생계가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아래 <표 7-5>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는 수급가구와 그렇지 못한 비수급가구 사이에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비수급 빈곤층의 소득이 다소 높게 나

타나지만, 복지급여 등을 수급한 이후에는 그 소득이 역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집단 중 다수는 노인빈곤층이지만, 소득기준이 높아질수록 근로빈곤층 비중이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근로빈곤층이 빈곤선 주변으로 밀집되는 양상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리고 근로빈곤층은 일을 하더라도 대부분이 일용직이나 영세자영업자 등 고용이 불안정한 집단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근로빈곤층 과중채무자의 취업 특성과 매우 유사한 것이다.

〈표 7-5〉 수급가구와 비수급가구의 비교

(단위: 만 원)

구분	수급가구	비수급가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기준 중위소득 30~40%
총소득*(만 원/월)	95.7	50.3	68.1
경상소득**	95.2	49.3	67.7
시장소득 + 공적이전	45.0	46.8	66.9
시장소득	23.7	23.3	46.5
총재산(만 원)	2,578	2,819	2,950
거주용 재산	2,266	2,372	2,458

주: 1) 수급가구는 특례 수급자를 제외한 값임.

2) 총소득 = (경상소득 + 비정기적 소득) / 12

3) 경상소득 = (시장소득 + 기초생활보장급여 + 타 정부 보조금) / 12

자료: 관계부처합동. (2017a. 7. 3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보도자료.

2015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제로 개편했던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빈곤층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었다. 이 점에 비추어 보면,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여전히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욕구별 급여의 선정 기준과 급여 수준을 독자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지만, 정작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등 핵심 욕구별 급여는 빈곤층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소득 기준 및 기타

선정 기준(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지도, 실제 필수 욕구를 위한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급여 수준을 적정화하지도 못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근로빈곤층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자활사업이나 취업성공패키지 또한 이들을 지원하는 데 큰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것은 이 프로그램이 주로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사 취업 및 창업 지원이 필요한 근로빈곤층 과중채무자라도 취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미취업자라고 해서 큰 도움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이는 자활지원센터 등에 참여했던 응답자의 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근로빈곤층 과중채무자는 고사하고, 근로빈곤층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조차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근로빈곤층 대상 소득 보장이나 취업 지원의 사각지대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가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는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점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2. 근로빈곤층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한 고용복지 분야 정책 제안

근로빈곤층 과중채무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금융정책과 고용정책 그리고 복지정책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이를 전제로 한 협력이 필요하다. 그것은 금융서비스에 재분배의 역할을 강화하기보다, 금융정책이 해야 할 역할과 고용정책 및 복지정책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금융정책을 통해 근로빈곤층 과중채무자의 원리금 및 이자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근

로빈곤층의 소득 욕구 및 기초생활 관련 욕구 보장은 사회정책, 특히 복지정책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부는 2017년 10월 24일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장기간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연체자의 부채를 탕감하고,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근로빈곤층이 경험하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의미 있는 조치라고 말할 수 있다.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는 늦은 감이 있지만, 꼭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이 대책 발표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하여서 대상 집단을 네 개로 구분하고 그 특성에 맞게 지원한다는 발표이다. 그중에서도 <그룹 C>는 약 32만 가구로 추정되며, 상환능력이 부족하여 부채의 부실화가 우려되는 집단으로 이들이 안고 있는 부채는 약 94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룹 D>는 장기간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상환 불능 집단으로 그 규모는 정확하게 추정되지 않았지만, 이들이 안고 있는 부채는 약 100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대책은 <서민취약계층의 연체 발생을 예방>하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³²⁾

하지만 이러한 정책 방향은 사회정책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 근로빈곤층은 연체 발생을 예방하기보다, 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상황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에 대해서는 부채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사실 이들은 낮고 불안정한 근로소득으로 인해 연체 발생 위험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으며, 근로소득만으로는 연체 발생을 피하기 힘들다는 특성을 갖는다. 이 점에서 복지급여 등을 통한 소득 보장이 병행되지 않고서는 연체 발생을 예방하기 힘든 것이다. 더욱이 예방대책과 더불어 이미 과중채무나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여 있는 집단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한다.

32) 이 발표는 관계부처합동(2017b) 참조.

가. 근로빈곤층 과중채무자를 위한 소득 보장 강화

근로빈곤층의 가계부채가 발생하거나 증가하지 않도록 필수재와 관련된 지출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한 소득 보장을 확대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지원 등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연구의 정량분석 및 질적 연구 결과 또한 근로빈곤층 과중채무자들이 생활비와 주거비 그리고 교육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중에서 주거비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거급여나 공공임대에 대한 입주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을 통해 지출 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근로빈곤층이라 하더라도 대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이나 의료급여 등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 집단은 일상적 소비 지출에서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임대료 지원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주요 정책 제안은 아래와 같다.

1)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 기초생활보장제도 욕구별 급여의 수급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빈곤층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빈곤층 또한 이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사실 2015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제로 개편한 핵심적인 이유는 욕구별 급여의 선정 기준을 각 욕구에 대한 수요를 고려하여 빈곤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유연하게 확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개별 부처로 분산된 상황에서 이러한 장기발전계획이 일관성을 갖고 추진되기 힘들다. 따라서 빈곤층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욕구별 급여체계의 선정 기준을 조정하는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물론 각 욕구별 급여의 선정 기준 중 소득 기준을 상

향 조정하더라도 모든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 기준선을 상향 조정하는 대신, 소득 기준 조정에 따라 신규로 유입될 집단 중 아동이나 장애인 등 추가적인 복지 욕구를 가진 집단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2) 근로빈곤층 과중채무자에 대한 주거 지원 확대: 앞서 근로빈곤층 과중채무자와의 인터뷰에서 나타났던 가장 큰 복지욕구 중 하나는 바로 주거 지원, 즉 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 그리고 주거급여 지원이었다. 물론 제한된 수량의 영구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를 이들이 장기간 수급하게 하는 것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노인빈곤층이나 장애인처럼 생활능력이 크게 부족한 빈곤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빈곤층 과중채무자에게는 임대주택 외에도 주거급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주거급여 선정 기준(소득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차선으로는 가처분소득에서 원리금 및 이자 상환에 소요되는 지출을 뺀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집단에게 주거급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밖에도 인터뷰 응답자 중 일부가 지적했던 것처럼, 전세임대 입주 자격과 관련해서 채무불이행 기준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 위에 언급한 주거급여와 관련해서는 주거급여 수준을 적정화할 필요도 있다. 아래 표는 2018년 주거급여 산정을 위한 가구규모별 급지별 기준임대료이다.

〈표 7-6〉 2018년 기준 주거급여 지급을 위한 기준임대료

구분	기준임대료 (단위: 만 원/월)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	4급지 (그 외)
1인	21.3 (+1.3)	18.7 (+0.9)	15.3 (+0.6)	14.0 (+0.4)
2인	24.5 (+1.4)	21.0 (+1.0)	16.6 (+0.8)	15.2 (+0.5)
3인	29.0 (+1.7)	25.4 (+1.2)	19.8 (+0.9)	18.4 (+0.6)
4인	33.5 (+2.0)	29.7 (+1.4)	23.1 (+1.1)	20.8 (+0.8)
5인	34.6 (+2.1)	30.8 (+1.4)	24.2 (+1.1)	21.8 (+0.8)
6인	40.3 (+2.5)	36.4 (+1.7)	27.6 (+1.4)	25.2 (+1.0)

자료: 관계부처합동. (2017c. 12. 6).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보도자료.

3) **교육급여 급여 수준의 현실화**: 인터뷰에 응했던 근로빈곤층 과중채무자 중 상당수는 장시간의 노동과 낮은 근로소득으로 자녀의 학업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을 갖고 있었다. 특히 한부모가구는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교육급여이다. 하지만 현재 교육급여는 급여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그 수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아래 표는 2018년에 적용하게 될 교육급여 금액을 나타내고 있다. 2018년 중학생 대상 교육급여는 전년도에 비해 154.9% 증가하였다. 하지만 그 금액은 연간 10만 5000원에 불과하다. 이는 현실에서 근로빈곤층 과중채무자가 지출하고 있는 교육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하에서 최저교육비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저교육비를 저소득층 자녀들의 실질 교육비 지출을 고려하여 재산출함으로써 근로빈곤층 자녀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실질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표 7-7〉 2018년 교육급여의 지원 수준

지급대상	급여항목	1인당 지급금액		지급방법
		'17년	'18년	
초등학생	부교재비	41,200원	66,000원 (60.2% ↑)	연 1회 일괄지급
중·고등학생		41,200원	105,000원 (154.9% ↑)	
초등학생	학용품비	0원	50,000원 (순증)	연 2회 분할지급
중·고등학생		54,100원	57,000원 (5.4%↑)	
고등학생	교과서대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 1회 일괄지급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분기별 지급
	입학금			1학년 제1분기

자료: 관계부처합동. (2017c. 12. 6.).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보도자료.

4)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이후 적용하는 최저소득보장 기준의 보완: 과중채무자가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지원하는 경우, 자신의 소득에서 일정 금액만큼을 보호받게 된다. 이는 이들이 기초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이 기준은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제 가구 구성에 따른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현재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가구 규모별로 적용하고 있는 최저소득보장 기준을 아동 수 등 가구 특성을 고려하여 가중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나. 취업과 창업을 통한 소득 창출 능력 제고

인터뷰를 위해 만난 근로빈곤층 과중채무자 대부분은 자영업자이거나 임시일용직이었다. 그중에서도 자영업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사 표본 자체가 갖는 특성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실에서도 과중채무자들은 창업을 희망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주된 이유는 취업 이력이나 교육 수준 그리고 채무불이행 이력으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하기 힘들고, 저임금의 일자리에 취업해서는 부채를 상환하고 생활비를 조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이들은 창업을 통해 더 높은 소득을 올리려는 강한 욕구를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욕구는 인터뷰 과정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이 창업을 통해 기대했던 소득을 벌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외식업 등 서비스 업종의 경쟁이 치열하여 실패의 위험이 크고, 주로 노동집약적 업종에서의 소자본 창업이라는 점에서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 이는 제6장의 질적 분석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근로빈곤층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이 취약하다는 점에서 차입을 통해 창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들은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지속적으로 신용카드 대출이나 사금융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문제는 창업에 실패하는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더 큰 충격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이들은 창업에 따른 손실 외에도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 추가적 부채를 지고, 이른바 <카드 돌려막기>를 거쳐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근로빈곤층, 특히 근로빈곤층 중 과중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 지원 및 창업 지원 사업이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지금처럼 공공근로에 준하는 소득을 보장하는 취업이나 창업 지원으로는 근로빈곤층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힘든 상황을 인지해야 하는 것이다. 더불어 근로빈곤층 중 다양한 욕구와 여건을 가진 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만일 근로빈곤층에게 이러한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연계할 수 없다면, 이들이 기본적인 생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 보장과 연계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취업 기회를 확대한다는 구호를 넘어 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내실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하면 아래와 같다.

1) 욕구 맞춤형 대상자 지원체계의 구축: 지난 10년간 근로빈곤층 지원 정책은 취업을 통한 자립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여 왔으며, 그에 따라 모든 근로빈곤층을 고용센터에서 일차적으로 사정하게 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 하지만 이는 근로빈곤층의 다양한 욕구와 여건에 맞는 지원체계로 작동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앞서 질적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근로빈곤층, 특히 근로빈곤층 과중채무자는 취업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것이 자녀에 대한 방임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근로빈곤층에 대한 취창업 지원에 앞서 체계적인 사정을 통해 이들의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취업 여건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취업 여건이 갖추어진 집단에 대해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취창업을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근로빈곤층 및 과중채무자 취창업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를 <초기 사정 → 취업 여건 개선 → 취창업 지원>의 순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자활사업 및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구조 개편: 이미 17년의 역사를 가진 자활사업은 근로빈곤층의 취창업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지원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앞서 인터뷰 결과에 대한 분석에서 확인하였던 것처럼, 자활사업은 근로빈곤층의 다양한 욕구, 특히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희망하는 집단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들에 대한 창업 지원 또한 높은 소득을 보장하는 데 많은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따라서 자활사업을 근로빈곤층 중 상대적으로 취업능력이 미약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단일화하고, 취업성공패키지 등 고용지원센터(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상대적으로 취업능력이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기관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창업과 관련해서 자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 등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개인 창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창업 지원기관을 설립하거나 기존의 지원기관에 의뢰하는 전략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근로빈곤층 및 근로빈곤층 과중채무자 대상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참여자의 능력과 눈높이에 따라 전문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소득 보장 연계형 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 강화: 현재 운영 중인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 알선이나 직업훈련 등에 참여하는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 보장형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소득 보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는 근로빈곤층이 직업훈련 등을 통해 기술을 취득하고 취업하는 시점까지의 소득 보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소득보장제도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선정 기준의 엄격성과 제도 운영의 경직성 등으로 인해 많은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내실을 더 굳건히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직업훈련 등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취업률 외에도 임금과 취업기간 등에 대한 조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근로빈곤층이 프로그램에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회전문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참여 횟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취업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근로빈곤층 과중채무자들이 부채 상환과 생계비 조달을 위해 필요한 수준의 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에서 근로빈곤층 대상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참여 및 성과에 따른 수당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비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4)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을 위한 자금 및 경영지원체계 구축: 사회적경제 기업은 일반 기업에 비해 근로빈곤층이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강점을 가질 수 있다. 그것은 기업의 수익을 종사자에게 좀 더 배분할 수 있는 수익배분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적경제 기업의 창업을 전적으로 근로빈곤층의 책임으로 맡겨 두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근로빈곤층은 사회적경제 기업을 창업하는 데 필요한 자기자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및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에 따른 지원체계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조직인 자활사업 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기술 및 경영지원을 담당하는 전문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하고자 한다.

5) 빈곤층 한부모 여성가장 대상 자립 지원 프로그램 도입: 근로빈곤층 및 근로빈곤층 과중채무자 중 여성의 비율이 높다는 점과 이들이 과중채무에 이르게 된 원인의 상당수가 배우자의 부채와 관련이 있다는 점은 앞서 제6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결혼과 함께 장기간의 경력 단절을 경험했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하는데 제약이 크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중 삼중고에 시달리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여성 근로빈곤층의 취창업 여건이 남성 근로빈곤층과 상이하다는 점을 말해 준다. 그것은 취업과 자녀 양육이라는 두 가지 역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근로빈곤층 중 한부모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소득 보장과 사회서비스 그리고 취창업 지원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 근로빈곤층 과중채무자 관련 통계 인프라 확충

우리나라는 근로빈곤층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들의 가계부채 또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빈곤층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들 중 과중채무자 및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집단의 규모와 실태를 파악하는 통계 인프라가 취약한 상황이다. 따라서 통계 인프라 구축 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근로빈곤층 관련 통계 생산: 현재 우리나라는 근로빈곤층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통계 데이터가 부재한 상황이다. 공공기관에서 작성한 패널데이터 등이 존재하지만, 이는 패널데이터의 특성상 횡단면 데이터로서의 신뢰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으며, 근로빈곤층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반면에 통계청이 생산하는 가계동향조사나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근로빈곤층의 취업 특성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다. 마찬가지로 개인의 취업상태와 관련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는 가구 소득 및 지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다. 이는 개인 단위의 취업상태와 가구 단위의 소득 정보가 결합되어야 하는 근로빈곤층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데이터가 없다는 점을 말해 준다. 따라서 가계동향조사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가구의 취업 정보를 추가하거나,³³⁾ 가구의 소득 데이터와 개인 취업 관련 데이터를 연계하는 형태로 근로빈곤층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과중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통계 생산: 외국의 근로빈곤층 지원정책

33) 현재 통계청에서 가계동향조사를 가계지출조사로 개편하는 방안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검토가 필요.

은 대부분 과중채무자나 다중채무자에 대한 통계를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생활보호제도 수급자 및 생활곤궁자자립지원제도 수급자를 대상으로 다중채무자 실태를 파악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는 근로빈곤층 과중채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라고 말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의 개수와 총액 그리고 월 상환액을 파악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실태 진단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근로빈곤층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채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 내기란 쉽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자활사업 등 근로빈곤층 지원정책과 다중채무자 통계를 결합하여 근로빈곤층 다중채무자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3) 가계부채대책과 자살대책과의 연계: 우리 사회는 외환위기 이후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근로빈곤층 과중채무자에게서 더욱 심각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정작 이와 관련한 지원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후생노동성과 관련 부처가 함께 운영하는 <자살대책본부>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어 자살대책본부를 설립하고, 자살과 관련된 통계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다중채무 및 과중채무와 연계하는 정책 및 통계 인프라 구축을 제안하고자 한다.

1. 국내 문헌

- 금융위원회. (2016).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방안. 보도자료.
- 관계부처합동. (2017a. 7. 3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보도자료.
- 관계부처합동. (2017b. 10. 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보도자료.
- 관계부처합동. (2017c. 12. 6.).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보도자료.
- 김성천. (2011). 다중채무와 소비자정책의 과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책동향. 2011. 11. 18. 제28호, 1-15.
- 김우영, 김현정. (2009). 가계부채의 결정요인분석.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 Working Paper, 제380호.
- 김은하. (2008). 근로빈곤층의 일자리 특성과 빈곤지위: 성별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vol. 60, N. 4, 2008, 5-29.
- 김인숙. (2012). 근거이론 담론과 사회복지 지식형성. 비판사회정책, (34), 2012년 2월, 77-128.
- 김재철. (2017). 자영업가구의 부채 구조 분석 및 시사점. 자본시장포커스, 2017-17호, 1-5.
- 김정식, 오정근, 이영기, 박기영, 김광한. (2012). 주요국의 가계부채 조정과정 및 대응정책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 김종섭. (2010). 경제위기와 자살: 한국과 중남미 3개국의 비교. 라틴아메리카연구, 23(3), 45-65.
- 김주영, 장희순. (2016). 가계부채의 결정요인과 변화특성 분석: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한 미시분석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14(1), 221-230.
- 김지혜, 조성희. (2016). 양육미혼모의 자립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8(2), 149-180.
- 김태완, 이태진, 김문길, 전지현. (2009). 저소득층 금융지원 실태 및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태훈, 박상은. (2012). 늘어나는 빚, 어디서부터 해결할 것인가?: 가계부채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사회운동, 2012년 9-10월, 108호,
124-139.
- 김항기, 권혁용. (2017). 부동산과 복지국가: 자산, 부채, 그리고 복지태도. 한국
정치학회보, 51(1), 2017. 3, 261-285.
- 남선우, 이정연, 박민렬, 최영우. (2017). 가계부채 누증요인 및 대응 방향. 한국
은행 금융안정보고서, 83-89.
- 노대명, 최승아. (2004). 근로빈곤층의 소득·고용실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류주연, 전진규. (2017). 가계대출상품 선택과 연체율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
석. 대한경영학회지, 30(3), 2017년 3월, 363-390.
- 마남진. (2015). 영란은행의 가계부채에 대한 접근방법 및 시사점. 한국은행, 해
외경제포커스, pp. 1-16.
- 박정민, 오육찬, 구서정. (2017). 가계부채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우울감과
자살생각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vol. 69, n. 2, 2017. 5, 171-190.
- 박정민, 이승호. (2017). 가계부채와 기본적 욕구 결핍의 관계: 생계, 건강, 주거
차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vol.44, n. 2, 2017. 6, 87-110.
- 박창균. (2010).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변화를 위한 정책제안. 한국금융연구센터
정책심포지엄 발표자료.
- 박창균. (2016). 가계부채의 현황과 정책과제. 미발표논문.
- 배영목. (2015). 가계부채의 소득분위별 분포와 특성. 사회과학연구, 32(2),
75-99.
- 백은영, 성영애. (2012). 가계의 부채부담과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
리학회지, 제13권 제1호, 2012년, 207-219.
- 백학영. (2010). 비정규 노동과 근로빈곤의 관계: 임금차별과 근로시간의 영향을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10(3), 2010. 9, 87-117.
- 변금선. (2012). 청년층의 근로빈곤 요인에 관한 연구: 고용불안정과 고용상태가
빈곤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4(3), 2012. 8,
257-279.

-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엮음. (2016). 경제불평등과 금융부채. 한울.
- 석재은. (2004). 한국의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6(2), 167-194.
- 성명재. (2011). 소득·자산·부채 결합분포 분석 및 정책적 함의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성은애. (2014). 빛으로 빛은 플롯. 안과 밖, (37), 30-53.
- 세계법제정보센터. (2009). 일본 대금업법안(번역본)
- 송태경. (2011). 대출천국의 비밀: 내 빚더미에 감춰진 진실. 개마고원.
- 송호근. (2002). 빈곤노동계층의 노동시장구조와 정책. 한국사회학, 제36집 1호, 2002년, 23-50.
- 심상용. (2006). 우리나라 근로빈곤의 사회구조적 원인에 대한 실증 연구 (1982-2004). 한국사회복지학, 58(4), 313-339.
- 원승연. (2015). 가계의 금융부채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정책, 22(3), 41-72.
- 윤자영. (2015). 가계부채와 노동공급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이건호, 정찬우. (2010). 금융소외 해소를 위한 정책서민금융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
- 이병호, 김솔, 윤희진. (2015). 인구 고령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및 잠재리스크.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pp. 89-98.
- 이병호, 반정호. (2009). 근로빈곤층의 실태와 동향. 동향과 전망, 2009. 2, 215-244.
- 이윤정, 송인한. (2015). 자살과 연관된 경제적 요인에 관한 연구: 부채와 자살생각.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3(1), 58-82.
- 이재민. (2014). 가계부채가 내수에 미치는 영향. 국회예산정책처.
- 이종인. (2010). 일본의 서민금융제도와 소비자문제: 제도적 측면에서의 한국과의 비교 분석. 소비자문제연구, 제38호, 2010년 10월, 57-71.
- 장동호. (2012). 가계 신용카드 채무의 결정요인 분석: 가구특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vol. 39, no. 1, 2012. 3, 227-255.

- 장동호. (2014). 가계부채 문제와 복지국가의 관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정책, vol. 41 No. 4, 2014. 12, 201-226.
- 전성인. (2011). 금융규제 완화와 가계부채: 경과 및 해법. 황해문화, 73, 80-95.
- 정운영, 정세은. (2013). 소득계층별 부채가계의 특성과 결정요인의 비교: 부동산 요인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29권 제3호, 2013년 8월, 415-439.
- 조영무. (2015). 소득계층별 가계부채 진단: 저소득층 가계부채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LG Business Insight, 2015-3-25, 15-27.
- 조준용. (2012). 빈곤연구의 방법론적 편향성과 질적연구의 활용에 대한 탐색적 연구: 다차원성과 역동성 연구 측면에서. 한국사회정책 19(4), 2012. 12, 285-312.
- 주원. (2016). 가계부채 한계가구의 특징과 시사점. 부동산포커스, vol. 102, 27-34.
- 최경수, 이종욱, 여인만, 전인우, 이승렬, 박창균 등. (2006). 영세자영업자 지원대책 개선방안 연구. 재정경제부, 노동부, 중소기업청,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 최옥금. (2005). 근로빈곤층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이동에 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5(1), 1-42.
- 최옥금. (2008). 근로빈곤층의 직업력 분석: 비빈곤층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0(4), 2008. 11, 55-77.
- 최인협. (201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4개국의 가계부채 대응사례 및 시사점. 해외경제포커스, 제2015-5호, 1-24.
- 최종혁, 김수완. (2012). 공식화된 빈곤층의 자립의지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14권 4호, 2012.11, 165-200.
- 최철웅. (2016). 권리로서의 빚, 규율로서의 빚: 소비자금융의 발전과 부채를 통한 정치. 경제와 사회, Vol. 112, 106-136.
- 탁장한, 박정민. (2017). 과중채무자의 사회경제적 박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vol.48(2), 2017 여름, 173-201.
- 편도훈. (2015). 가계부채 부실위험가구 현황 및 잠재리스크 점검. 한국은행 금

- 융안정보고서, pp. 97-105.
- 한국은행. (2015. 12.). 금융안정보고서.
- 한국은행. (2016). 금융안정보고서. 2016. 6.
- 한정미, 양기진. (2013). 약탈적 대출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현대경제연구원. (2016). 국내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전망. 현안과 과제, 2016년 10월 31일, 16-42호, p. 10.
- 홍경준. (2005). 근로빈곤층에 대한 탐색적 연구: 개념정의와 실태파악. 한국사회복지학, 57(2), 2005. 5, 119-142.
- 홍경준. (2009). 근로빈곤, 그 생성과 확대의 사회경제적 메커니즘. 황해문화, 64, 2009. 9, 163-185.
- 휴 싱클레어. (2015). 빈곤을 착취하다. 이수경·이지연 옮김. 민음사.

2. 외국 문헌

- Alleweldt, F., Senda K. (ed.). (2013). The over-indebtedness of European households: updated mapping of the situation, nature and causes, effects and initiatives for alleviating its impact - Part 1: Synthesis of findings, Directorate General Health and Consumers (DG SANCO), Prepared by Civic Consulting of the Consumer Policy Evaluation Consortium(CPEC).
- Ando, A., & Modigliani, F. (1963). The "life cycle" hypothesis of saving: Aggregate implications and test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53(1), 55-84.
- André, C. (2016). Household debt in OECD countries : Stylised facts and policy issues.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1277.
- Andrés, J., Boscà, J. E., Ferri, J. (2013), Household Debt and Labor Market Fluctuations. Journal of Economic Dynamics & Control,

37(2013), 1771-1795.

Banque de France. (2015). Le surendettement des particuliers. Note d'Information, septembre 2015.

Banque de France. (2016a). Enquête sur le patrimoine et l'endettement des ménages de la zone euro : La situation de la France.

Banque de France. (2016b). Le Surendettement : Vos droits, vos obligations, Les solutions possibles, La vie de votre dossier.

Banque de France. (2017a). Enquête typologique 2017, donnés 2016.

Banque de France. (2017b). Le Surendettement, L'Eco en Bref, mai-juin.

Baumann, E., Bazin, L., Ould-Ahmed, P., Phelinas, P., Selim, M., & Sobel, R. (eds) (2008). L'argent des anthropologues, la monnaie des économistes. Paris : l'Harmattan.

Bénédict, R. F. (1998). Le Chrysanthème et le sabre. Editions Poche.

Bouyon, S., Musmeci, R. (2016). Two Dimensions of Combating Over-Indebtedness : Consumer protection and financial stability. European Credit Research Institute, Research Report No.18, October 2016.

Cabinet Office. (2011). Better Choices : Better Deals - Consumers Powering Growth.

Carvalho S., White H. (1997). Combining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pproaches to Poverty Measurement and Analysis : The Practice and the Potential. The World Bank. Technical Paper, No.366

Citizens Advice. (2015a). Banking with benefits : Exploring the need for basic banking in a world of Universal Credit.

Citizens Advice. (2015b). The Four Advice Gaps : An analysis of the unmet consumer needs around financial advice and public financial guidance.

Citizens Advice. (2016a). Payday Loans : An improved market?: Part I,

- March 2016.
- Citizens Advice. (2016b). Payday Loans after the cap : Are consumers getting a better deal?: Part I, August 2016.
- Clerc, D. (2003). Endettement, Maux et Bienfaits. *Revue Projet*, 2003/3, n.275, 78-84.
- D'Alessio, G., & Iezzi, S. (2013). Household over-indebtedness: definition and measurement with Italian data. *Questioni di Economia e Finanza Occasional Papers No.149*, February.
- Dearden, C., Goode, J., Whitfield, G. & Cox, L. (2010). Credit and debt in low-income families. October 2010, Joseph Rowntree Foundation.
- Debord, G. (1970). *La Société du Spectacle*. Editions Gallimards
- Deleuze, G., & Guattari, F. (1972). *L'Anti-Œdipe*, Editions de la Minuit.
- Dickerson, A. M. (2009). Consumer Over-Indebtedness: A U.S. Perspective. *Texas International Law Journal*, Vo. 43, 136-158.
- Dilan, Ö., & Santen, P. (2016). The Indebtedness of Swedish Households : update for 2016. *Sveriges Riksbank Economic Commentaries*, N.5, 22 november.
- Disney, R., Bridges, S., & Gathergood, J. (2008). Drivers of Over-Indebtedness. University of Nottingham, Centre for Policy Evaluation, pp. 27-34.
- DTI-MORI. (2005). Over-indebtedness in Britain: A DTI report on the MORI Financial Services survey 2004. London.
- Du Caju, P., Rycx, F. & Tojerow I. (2016). Unemployment risk and over-indebtedness : A micro-econometric perspective. *European Central Bank, Working Paper, No1908*, may 2016.
- GREGORY ELLIEHAUSEN, E. CHRISTOPHER LUNDQUIST and MICHAEL E. STATEN.

- Elliehausen, G., Lundquist, C. & Staten, M. (2007). The Impact of Credit Counseling on Subsequent Borrower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Affairs*, 41(Summer), 1-28.
- Elias N. (2012). *Civilization : On the Process of Civilisation*, edited by Stephen Mennell et. al, UCD Press.
- Elliott, A. (2005). Not waving but drowning: Over-indebtedness by misjudgement. CSFI, London.
- Ernst, P. (2014). Normalisation de l'endettement comme mode de vie. *Pensee Plurielle*, 2014/3, n. 37, 15-25.
- European Union. (2008). Toward a common operational european : Definition of over-indebtedness.
- Falconer, A. (2017). Debt on your doorstep. Citizens Advice.
- Fondeville, N., Özdemir, E. & Ward, T. (2010). Over-indebtedness : New evidence from the EU-SILC special module, European Commission, Employment, Social Affairs and Equal Opportunities. Social Situation Observatory -Living Conditions and Income Distribution, Research note 4/2010.
- Friedman, M. (1957). *A theory of the consumption function: A study by th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artner, K., Todd, M. (2005). *Effectiveness of Online "Early Intervention" Financial Education for Credit Card-holders*. Washington, DC: Federal Reserve System Community Affairs Research Conference (April).
- Gathergood, J. (2012). Self-control, financial literacy and consumer over-indebtedness.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33(3), 590-602.
- Gloukoviezoff, G. (2006). *Surendettement des particuliers en Franc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Geneva.

- Goetzmann, W. N., & Rouwenhorst, K. G. (ed.) (2005). *The Origins of Value: The Financial Innovations that Created Modern Capital Markets*. Oxford University Press.
- Graeber, D. (2011). *Debt: The First 5000 Years*. Melville House Publishing.
- Hartarska and Gonzalez-Vega. (2006). Evidence on the Effect of Credit Counseling on Mortgage Loan Default by Low income Households. *Journal of Housing Economics*, 15(1), 63-79.
- Hartfree, Y., & Collard, S. (2014). Poverty, debt and credit: An expert-led review. University of Bristol, Personal Finance Research Centre, Final Report to the Joseph Rowntree Foundation, March 2014.
- Hartfree, Y., & Collard, S. (2015). Locating credit and debt within an anti-poverty strategy for the UK. *Journal of Poverty and Social Justice*, vol 23, no 3, 203-214.
- IMF Country Report No. 16/278(2016. 8.).
- Guéin, I. (2012). Households' over-indebtedness and the fallacy of financial education: insights from economic anthropology, Microfinance in Crisis Project. Paris 1 Sorbonne University, Institute of Research for Development, Working Paper N.2012-1.
- Jappelli, Guiso, and Haliassos. (2002). *Household Portfolio*. MIT Press.
- Kahneman, D., & Tversky, A. (1979). Prospect theory: an analysis of decision under risk. *Econometrica*, 47, 263-291.
- Kumhof, M., Rancière, R. (2010). Endettement et inégalités. *Finances & Développement*, Décembre 2010, 28-31.
- Lane, J. (2016). A debt effect? : How is unmanageable debt related to other problems in people's lives? Citizens Advice.
- Lefebvre, H. (1961). *Critique de la Vie Quotidienne*. Editions L'Arche.

- Leventi, C., Sutherland, H., & Tasseva, I. V. (2017). Improving poverty reduction in Europe: what works best where? University of Essex, Euromod Working Papers 8/17, May 2017.
- Lewins, A., Silver, C. (2007). Using Software in Qualitative Research: A Step-by-Step Guide. London: Sage Publications.
- Mauss, M. (1923-1924). Essai sur le don : Forme et raison de l'échange dans les sociétés primitives. Année Sociologique, seconde série 1923-1924 (electronic edition par Jean-Marie Tremblay in 2002).
- McGuinness, F. (2016). Poverty in the UK : Statistics, House of Commons Library. Briefing Paper, N. 7096, 16 June 2016.
- Mian, A. R., Sufi A., & Verner, E. (2015). Household Debt and Business Cycles Worldwide. NBER Working Paper, No. 21581, 2015 september, p. 65.
- Monrose, M. (2003). Endettement et surendettement : des ménages aux caractéristiques différentes. Etudes et Résultats, N. 251, août 2003, 1-12.
- Mouillart, M. (2017). L'Observatoire des Credits aux Menages : le Tableau de bord. Universite Paris Ouest.
- Moulier-Boutang, Y. (2012). La dette : Illusion comptable et aveuglement suicidaire. Multitudes, 2012/2 n. 49, 173-181.
- Observatoire des Crédits aux Ménages. (2017). Enquête réalisée en novembre 2016.
- OECD. (2005). Improving Financial Literacy: Analysis of Issues and Policies. Paris: OECD.
- OECD, World Bank, DFID, CGAP. (2009). The Case for Financial Literacy in Developing Countries Promoting Access to Finance by Empowering Consumers. Washington: OECD, World Bank, DFID,

CGAP.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6). Household Debt Inequalities: Wealth in Great Britain. July 2012 to June 2014.
- O'Loughlin, D. (2006). Credit Consumption and Debt Accumulation among Low-Income Consumers : Key Consequences and Intervention Strategies. Poverty Research Initiative.
- Perrin-Heredia, A. (2009). Les logiques sociales de l'endettement : gestion des comptes domestiques en milieux populaires. *Sociétés contemporaines*, n°76, 95-119.
- Pena-Casas, R., Latta, M. (2004). Working Poor in the European Union. European Found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
- Phipps, J., Road, F. H. (2006). Deeper in debt : the profile of CAB debt clients. CAB briefing, May 2006, 1-16.
- Pressman, S., Scott III, R. H. (2010). Consumer debt and poverty measurement. *Focus* Vol. 27, No. 1, Summer 2010, 9-12.
- Road, F. H. (2006) Out of Pocket : CAB evidence on the impact of fee-charging cash machines. CAB evidence briefing, July 2006, 1-16.
- Rutherford, S. (2001). *The Poor and Their Money*.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Sarthou-Lajus, N. (1997). *L'Ethique de la Dette*. Presses Unversitaires de France.
- Schicks, J. (2011). Microfinance Over-Indebtedness: Understanding its Drivers and Challenging the Common Myths. Centre Emile Bernheim, CEB Working Paper, N. 10/048.
- Serminska, E. (2014). Indebtedness of households and the cost of debt by household type and income group. European Union, Directorate

Genral for Employment, Social Affairs and Inclusion, Research note 10/2014.

Servet, J.-M., Saiag, H(2013). Household over-indebtedness in contemporary societies: a macro-perspective. In Microfinance, debt and over-indebtedness : Juggling with money, Isabelle Guéin, Solene Morvant-Roux & Magdalena Villarreal(eds.), Routledge.

Sharp-Jeffs, N. (2015). Research into the extent and nature of financial abuse within intimate relationships in the UK. The Co-operative bank & Refuge.

State of Ohio, Department of Commerce. (2013). What is the Predatory Lending?

Step Change. (2014). The Debt Trap : exposing the impact of problem debt on children. The Childrens's Society, May 2014.

Sweet, Elizabeth, Arijit Nandi, Emma K. Adam, Thomas W. McDade. (2013). The high price of debt: Household financial debt and its impact on mental and physical health. Social Science & Medicine, 91(2013), 94-100.

Turner, A. (2016). Between Debt and The Evil: Money, Credit and Fixing Global Finance. Princeton University Press.

3. 일본어 문헌

家計相談支援・生活福祉資金のあり方について. 社会保障審議会 生活困窮者自立支援及び生活保護部会(第4回), 平成29年7月11日(資料4).

野村総合研究所(株). (2015). 生活困窮者の實態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宮坂順子. (2004). 有配偶者世帯における多重債務の要因. 日本家政学会誌, Vol. 55, No.4,273-283.

橘木俊詔・浦川邦夫. (2007). 日本の貧困と労働に関する実証分析. 日本労働研究

- 雑誌, No. 563, June 2007, 4-19.
- 金融庁. (2007). 2006年 貸金業法改正の目的.
- 金融庁/消費者庁/内閣府(自殺対策推進室). (2016). 多重債務問題をめぐる現状について.
- 社会保障審議会. (2017). 家計相談支援・生活福祉資金のあり方について, 社会保障審議会 生活困窮者自立支援及び生活保護部会(第4回), 7月11日(資料4).
- 塩津ゆりか. (2010). 負債からみた貧困の属性分析. Doshisha University Life Risk Research Center, Discussion Paper Series No. 2010-02, p. 16.
- 日本総合研究所(株). (2015). 家計相談支援事業の運営の手引き, 平成 26年3月.
- 総務省統計局. (2016). 家計調査報告(貯蓄/負債編) : 平成28年(2016年) 平均速報結果の概要.
- 八代田道子. (2015). 今日の社会的弱者の消費者問題 : 低所得者や障がい者における多重債務問題と消費者被害の解決に向けて一. 消費生活研究, 第17(1) : 消費生活をめぐる諸問題, 59-66.
- 厚生労働省. (2011). 貧困・格差, 低所得者対策に関する資料, 第2回社会保障審議会 生活保護基準部会, 平成23年5月23日.
- 厚生労働省. (2014). 第1回 生活困窮者自立支援制度ブロック会議説明資料, 社会・援護局 地域福祉課 生活困窮者自立支援室.

4. 기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1~11차 원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6년 원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원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http://fisis.fss.or.kr/fss/fsiview/indexw.html>

금융위원회 사이트. <https://www.fsc.go.kr/>

전국은행연합회 사이트. <http://www.kfb.or.kr/>

한국은행 사이트. <http://ecos.bok.or.kr/>

프랑스 중앙은행 사이트.

<https://particuliers.banque-france.fr/surendettement/etudes-sur-le-surendettement>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원종류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정기간행물회원 : 3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www.kihasa.re.kr) - 발간자료 - 간행물구독안내

▶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